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88호
2025. 8. 21.(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2449호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25-2450호	서울특별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3
제2025-245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
제2025-245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제2025-246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8
제2025-2472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4
제2025-2484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1
제2025-2487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7
제2025-2488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9
제2025-2500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8

◆ 고 시

제2025-450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고시	109
제2025-454호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0
제2025-455호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4
제2025-456호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24
제2025-457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254
제2025-458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3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69
제2025-459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86

제2025-460호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316
제2025-4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320
제2025-463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및 비오톱1등급 토지 지형도면 고시	322

◆ 공 고

제2025-2391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채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323
제2025-2458호	수도요금 채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325
제2025-2473호	수도요금 채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326
제2025-2474호	서서울호수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327
제2025-247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40
제2025-2480호	지방세 공시송달	361
제2025-2481호	지방세 공시송달	363
제2025-2497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69

◆ 서울특별시의회규칙

[규 칙]

제59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70
제60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76

◆ 구 고 시

제2025-1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강북구)	379
------------	-------------------------------------	-----

◆ 구 공 고

제2025-14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성북구)	383
제2025-149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385
제2025-1558호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금천구)	386
제2025-1619호	도시계획시설(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 (관악구)	399
제2025-163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414
제2025-163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서초구)	416

제2025-164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418
제2025-1945호	도시관리계획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르네상스 호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강남구)	424
제2025-1752호	도시관리계획(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강동구)	425

◆ 사업소고시

제2025-3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26
제2025-3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26
제2025-3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27
제2025-3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27

◆ 사업소공고

제2025-3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영등포소방서)	428
-----------	-----------------------------	-----

◆ 기 타

제2025-348호	하천점용(일시) 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429
------------	-------------------------------	-----

자치법규 등**[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49호****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서울시에서 조성 중인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운영 및 기능,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개관 및 휴관, 이용제한, 이용료,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 홍보단 운영에 관한여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동물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과(전화: 02-2133-7649, FAX: 02-2133-0796, E-mail: vetmi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이메일: vetmin@seoul.go.kr
-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동물보호과
-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차별화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테마파크”란 사람과 반려동물이 휴식,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원지, 공원 등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야영장 시설, 운동시설, 교육 관련 시설, 편의시설, 지원 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교감하는 휴식공간 제공
2.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복지향상 및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테마파크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테마파크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테마파크의 운영 성과분석
2. 테마파크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3. 테마파크의 시설물 점검 결과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행사 준비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객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테마파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4. 테마파크의 이용목적과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람과 동물의 안전 유지와 공공질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① 테마파크의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이내에서 각각 감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상 서울특별시 또는 테마파크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테마파크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테마파크 운영업무 소관 부서장, 테마파크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1명

2. 위촉직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반려동물, 교육, 관광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반려동물, 교육, 관광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마. 테마파크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지방의회가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를 따른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테마파크 운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홍보단 운영)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모집하여 홍보단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용료

1.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오토 캠핑장	1사이트 기준(1일)	50,000 ~ 100,000원	이용료의 가산, 할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글램핑 캠핑장	4인 기준(1일)	160,000 ~ 340,000원	
카라반 캠핑장	4인 기준(1일)	160,000 ~ 340,000원	
캠핑장 물품 대여료	바비큐존(1일)	10,000 ~ 40,000원	
	야영텐트(1일)	5,000 ~ 30,000원	
수영장	소형견(1회)	10,000 ~ 20,000원	
	중형견(1회)	15,000 ~ 30,000원	
	대형견(1회)	12,000 ~ 40,000원	
	견주(1회)	11,000 ~ 25,000원	
반려견 셀프 목욕방	소형견(1회)	7,000 ~ 20,000원	
	중형견(1회)		
	대형견(1회)		
반려견 호텔	1시간	3,000 ~ 10,000원	
	종일	25,000 ~ 110,000원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반려견 놀이터	소형견(1일)	3,000 ~ 7,000원	이용료의 가산, 할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중형견(1일)	5,000 ~ 8,000원	
	대형견(1일)	6,000 ~ 10,000원	
	견주(1일)	3,000 ~ 7,000원	
다목적 잔디마당	소형견(1일)	3,000 ~ 7,000원	
	중형견(1일)	5,000 ~ 8,000원	
	대형견(1일)	6,000 ~ 10,000원	
	견주(1일)	3,000 ~ 7,000원	

3. 학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교육 수강료	1회당	5,000 ~ 15,000원	이용료의 가산, 할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붙임]

(앞 쪽)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7년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완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지출	◦테마파크 조성	15,882	31,803				47,685
	◦테마파크 운영				1,337	1,337	2,674
	소계(a)	15,882	31,803		1,337	1,337	50,359
수입	◦테마파크 운영				4,335	4,335	8,670
	소계(b)				4,335	4,335	8,670
□ 총 비용(a-b)		1,5882	31,803		-2,998	-2,998	41,68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5,882	31,803		1,337	1,337	50,359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5,882	31,803		1,337	1,337	50,359

5. 덧붙이는 의견

- 물가상승률, 설계내용 등에 따라 지출비 변동 가능성 존재
- 운영방식, 운영내용 등에 따라 수입액 변동 가능성 존재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윤 민 주무관(2133-764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참고(조성비)
- 경기 북부권 서울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참고(운영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50호

서울특별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1. 제정이유

서울시에서 조성 중인 서울특별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공설 동물장묘시설 내 동물전용 봉안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내 금지행위, 변상조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동물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과(전화: 02-2133-7649, FAX: 02-2133-0796, E-mail : vetmi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이메일: vetmin@seoul.go.kr
-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동물보호과
-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란 서울특별시장(“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동물전용 봉안시설”이란 봉안당, 봉안담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관리·운영 및 반려동물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운영 성과분석
2.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3.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시설물 점검 결과 및 관리방안
4.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기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상 서울특별시 또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소

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동물전용 봉안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 내 동물전용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총 10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의처리 할 수 있다.

제7조(금지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동물전용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제8조(변상조치)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속 기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영업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비 고
화장	일반화장	1마리	120,000 ~ 290,000원	무게(kg)를 기준으로 기본 이용료를 산정하 되, 초과된 무게만큼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장례	기본 장례	1마리	240,000 ~ 500,000원	1. 장례비용에는 화장, 염습, 수의, 관이 포 함된다. 2. 고급 장례에는 기본 장례에 더불어 오동 나무관과 유골함 등이 포함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장례용품이 제공된다. 3. 최고급 장례에는 기본 장례에 더불어 오 동나무관과 유골함과 보자기와 액자와 현 화가 포함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장례용 품이 제공된다.
	고급 장례	1마리	360,000 ~ 720,000원	
	최고급 장례	1마리	520,000 ~ 1,010,000원	
봉안	일반 봉안당	1마리	80,000 ~ 350,000원	봉안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고급 봉안당	1마리	120,000 ~ 500,000원	
	프리미엄 봉안당	1마리	160,000 ~ 720,000원	
운구 서비스		1마리	60,000 ~ 200,000원	편도로 이동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스톤제작		1마리	200,000 ~ 1,100,000원	화장 후 수습한 유골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 다.

[붙임]

(앞 쪽)

서울특별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7년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완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지출	○ 추모관 조성	2,507	6,085				8,592
	○ 추모관 운영				810	810	1,620
	소계(a)	2,507	6,095		810	810	10,222
수입	○ 추모관 운영				1,404	1,404	2,808
	소계(b)				1,404	1,404	2,808
□ 총 비용(a-b)		2,507	6,095		-594	-594	7,41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2,507	6,095		810	810	10,222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507	6,095		810	810	10,222

5. 덧붙이는 의견

- 물가상승률, 설계내용 등에 따라 지출비 변동 가능성 존재
- 운영방식, 운영내용 등에 따라 수입액 변동 가능성 존재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윤 민 주무관(2133-764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참고(건립비)
- 경기 북부권 서울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참고(운영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5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4항 및 동 조례 부칙 제4조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부칙 제4조에 따라 회의록 외에 심의의결서도 작성·보관하도록 개정(안 제7조의2제1항)

나.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공개 방법 및 회의록 기재사항 규정(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전화: 02-2133-3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FAX : 02)2133-1030
- (2) E-mail : witch372@seoul.go.kr
- (3) 우 편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의 작성·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각각에 참석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③ 조례 제4조4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의2(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의 작성 ·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각각에 참석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5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별표 1」 시립청소년시설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며,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및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해 「별표 2」의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 추가

기 존	개 정
제2조(정의) ①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 청소년시설의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 개정)

1) 개편 : 성문화센터·인터넷중독예방센터 대표센터 외 분소 조례 삭제

구 분	기 존	개 정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삭 제>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삭 제>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구 분	기 준	개 정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삭 제〉
성문화센터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광진청소년문화센터	〈삭 제〉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삭 제〉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삭 제〉

2) 폐소 :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3) 위치변경 : 시설 이전에 따른 시립청소년시설 주소 현행화 2건

4) 명칭변경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등 14건

기 준	개 정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시립일시청소년이동쉼터(이동형, 서북)
	시립일시청소년이동쉼터(이동형, 서남)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시립일시청소년이동쉼터(이동형, 동북)
	시립일시청소년이동쉼터(이동형, 동남)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시립청소년음악센터

5) 기능 현행화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으로 현행화 5건

다.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 13세 → 9세

기 존	개 정
제8조(사용료 등)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제8조(사용료 등)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9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라.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기 존	개 정
제8조(사용료 등)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료 등)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이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10. < 조문삭제>

마.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한 용어 개선(별표 2)

〈기 존〉			〈개 정〉		
구 분	사용료	대 상	구 분	사용료	대 상
체육관		대학생, 성인	체육관		성인
		초·중·고생			청소년
		어린이			유아
수영장		대학생, 성인	수영장		성인
		초·중·고생			청소년
		어린이			유아
헬스장		대학생, 성인	헬스장		성인
		고등이하			청소년 이하

※ 비고 : 성인(25세 이상), 청소년(9~24세), 유아(8세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FAX: 02)2133-1430
- (2) E-mail: choi599@seoul.go.kr
-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 청소년정책과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13)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을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를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비숙박시설 :”을 “비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숙박시설 :”을 “숙박시설:”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13세”를 “9세”로, “경우 : 월 사용료”를 “경우: 월 사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를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시설의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설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거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동의를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종로구	시립종로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서북)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서남)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동북)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동남)	"	
	용산구	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만리재로 156-1
	강북구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한천로 140길 5-24
	종로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송림길 156
	은평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통일로 92길 37-6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종합형)	"	도당로 17길34 외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영신로 200
	양천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포함)	남부순환로54길 37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여의대방로 20길 33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길음로7길 20
3의3. 기타 청소년 시설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여의대방로20길 33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구분\사용료	대 상		1회(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청소년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유아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청소년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유아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청소년 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 장 등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 비 고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 1)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성인 : 25세 이상
 - 2) 청소년 : 9~24세
 - 3) 유아 : 8세 이하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시설 이용수업	성인	31,000	43,000	56,000	68,000	81,000	93,000	
	청소년 이하	25,000	37,000	50,000	62,000	72,000	80,000	
외국어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청소년 이하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예체능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118,000	
	청소년 이하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취미·교양 문화 등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84,000	
	청소년 이하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72,000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 비 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 4) 기타 취미·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의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성인 : 25세 이상
 - 2) 청소년 : 9~24세
 - 3) 유아 : 8세 이하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	청소년		성인		비 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인실	침대(1 bed)	50,000	52,000	52,000	54,000	
	객실(1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객실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객실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객실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객실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객실	160,000	180,000	180,000	200,000	
가족실	콘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씩 별도 요금 부과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 1일 기준)

구분	수용인원	이 용 료		비 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명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명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명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명	400,000	200,000	
분임회의실	20명	200,000	100,000	
비 고	1. 이용료 할인 : 금, 토, 공휴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 ----- -----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략)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밖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시설 또는 프	제7조(사용시간 등) ① ----- -----.

로그래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
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비숙박시설 : 09:00~22:00

2. 숙박시설 : 24시간

②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
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
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
다)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징
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
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
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
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
설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1. 비숙박시설: -----

2. 숙박시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
---- 범위-----

-----.
- 시장-----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9세 -----
----- 경우: 월
사용료의 -----

8. -----

- 경우: -----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

9. -----
-----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경우: 시설대관 사
용료의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서울특별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 . -----
----- 범위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 .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

범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

-----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개정 2015.10.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구분	대 상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 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대학생, 성인	4,8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수영장	초·중·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어린이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헬스장	강습, 무강습	300원 이하	250,000	가온 3시간, 초하 지 시간당 25,000원					
	300원 이하	350,000	가온 3시간, 초하 지 시간당 30,000원						
	400원 이하	450,000	가온 3시간, 초하 지 시간당 35,000원						
	강력연습실, 코트시설	유사시설 중용	가온 3시간, 초하 지 시간당 10,000원						
사설 다목적 체육관	유사시설 중용	학구장, 볼링장, 풋살장, 스피드스케이팅, 사물놀이, 악기 등							
	유사시설 중용	유사시설 중용							
	유사시설 중용	유사시설 중용							
	유사시설 중용	유사시설 중용							
비 고	1. 체육관 : 체육관을 개관하는 경우, 시설관리, 인력유지 등에 필요한 수 있음								
	2. 수영장 : 강습, 무강습, 수영장 등을 겸용(수영장)하는 경우 또는 수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속시설의 강습 및 수영 겸용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추가가산에 의함								
	4. 시설별 상한								
비 고	1) 로, 헬, 유망실(스포츠센터)의 경우, 로, 유망실의 전담은 가온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당할 수 있다.								
	2) 시설관리, 강습, 무강습, 수영장 등을 겸용(수영장)하는 경우 또는 수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속시설의 강습 및 수영 겸용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추가가산에 의함								
	4. 시설별 상한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구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체육관 이용수강	대학생, 성인	31,000	43,000	56,000	68,000	81,000	93,000
	초·중·고생, 어린이	25,000	37,000	50,000	62,000	72,000	80,000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수영장	초·중·고생, 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대학생,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118,0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헬스장	고등이하 (유아부터 성인)	대학, 강가체육관 등 유망스포츠센터 수속을 고려, 1시간당 수업료					
유아·교양 문화수강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86,000
	초·중·고생, 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72,000
수강	각종 실업자, 퇴직, 노인, 장애인 등	장기 소외계층, 특수, 수속제 여의 경우					
청소년 시설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유망스포츠센터 수속을 고려한가? 주(월), 주(야)별, 학기별, 개강시간, 개강인원, 개강 장소					
비	1. 프로그램 영역별 프로그램	1) 프로그램 : 수영, 탁구, 골프, 검도, 축구, 체력신체로 분류하여 성인과 대한 추가가산에 대해 과세					
	2. 이 조례에	1) 이 조례에					
	3. 이 조례에	1) 이 조례에					
	4. 이 조례에	1) 이 조례에					
	5. 이 조례에	1) 이 조례에					
	6. 이 조례에	1) 이 조례에					
	7. 이 조례에	1) 이 조례에					
	8. 이 조례에	1) 이 조례에					
	9. 이 조례에	1) 이 조례에					
	10. 이 조례에	1) 이 조례에					

[별표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구분	대 상	1회 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 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체육관	대학생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대학생	4,8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수영장	초·중·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어린이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대학생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헬스장	강습 무강습	300원 이하	250,000	가온 3시간, 초하 지 시간당 25,000원					
	300원 이하	350,000	가온 3시간, 초하 지 시간당 30,000원						
	400원 이하	450,000	가온 3시간, 초하 지 시간당 35,000원						
	강력연습실, 코트시설	유사시설 중용	가온 3시간, 초하 지 시간당 10,000원						
사설 다목적 체육관	유사시설 중용	학구장, 볼링장, 풋살장, 스피드스케이팅, 사물놀이, 악기 등							
	유사시설 중용	유사시설 중용							
	유사시설 중용	유사시설 중용							
	유사시설 중용	유사시설 중용							
비 고	1. 체육관 : 체육관을 개관하는 경우, 시설관리, 인력유지 등에 필요한 수 있음								
	2. 수영장 : 강습, 무강습, 수영장 등을 겸용(수영장)하는 경우 또는 수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속시설의 강습 및 수영 겸용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추가가산에 의함								
	4. 시설별 상한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원)	
구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체육관	성인	31,000	43,000	56,000	68,000	81,000	93,000		
	초·중·고생	25,000	37,000	50,000	62,000	72,000	80,000		
외국어	성인	59,000	59,000	73,000	92,000	103,000	120,000		
	초·중·고생	53,000	49,000	58,000	67,000	72,000	81,000		
체력증	성인	59,000	81,000	77,000	91,000	108,000	95,000		
	초·중·고생	53,000	59,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악기·교양 문화 등	성인	52,000	59,000	50,000	64,000	73,000	84,000		
	초·중·고생	47,000	53,000	45,000	56,000	65,000	75,000		
강습	학습·실습(악기·교양·볼링·스포츠 등)	월강 3시간 이상, 초·하·목요일에 각각 1시간							

비 고

1. 프로그램별 성격 구분
2. 체육관(체육관) : 체육, 축구, 탁구, 권투·태권도 등 체육활동에 관하여 성립된 단체(청소년기 체력 다짐) 또는 체육 교육 기관 : 동계, 여름 및 동계 체육 대회, 체육(태권, 탁구 등), 체육, 유도 등의 성격
3. 체력증 : 동계, 여름, 가을, 겨울, 체육대회, 운동경기 등, 체육, 유도 등의 성격
4. 기타 성격 : 문화, 악기, 예술, 체육활동(스포츠·태권 등)에 관한 성격의 성격
5. 악기 : 첼로, 기타, 피아노, 실용악기, 실용악기, 교육, 악기교류 등의 성격
6. 교양 : 전래 민속, 민속악기, 실용악기, 교육, 악기교류 등의 성격
7. 문화 : 교양, 문화, 교양, 문화,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객용기준	월요일		평일		비고
		좌석	비좌석	좌석	비좌석	
1인실	침대(I bed)	50,000	52,000	52,000	54,000	
	좌석(I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좌석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좌석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좌석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좌석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좌석	180,000	190,000	190,000	200,000	
가족실	콘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 해당 단위에 수시 1인당 10,000원 세 별도 포함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 1일 기준)

구분	수용인원	이용료		비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명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명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명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명	400,000	200,000	
분담회의실	20명	200,000	100,000	

1. 이용료 할인 : 급, 포, 공복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사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운영비의 이용자는 장수, 사설 운영 조율
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하고 인감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 이 조항에 명시된 금액은 추가/삭제 미포함 금액임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객용기준	월요일		평일		비고
		좌석	비좌석	좌석	비좌석	
1인실	침대(I bed)	50,000	52,000	52,000	54,000	
	좌석(I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좌석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좌석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좌석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좌석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좌석	180,000	190,000	190,000	200,000	
가족실	콘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 해당 단위에 수시 1인당 10,000원 세 별도 포함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 1일 기준)

구분	수용인원	이용료		비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명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명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명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명	400,000	200,000	
분담회의실	20명	200,000	100,000	

1. 이용료 할인 : 급, 포, 공복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사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운영비의 이용자는 장수, 사설 운영 조율
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하고 인감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 이 조항에 명시된 금액은 추가/삭제 미포함 금액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6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소속기관별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무직을 서울특별시 인사과 주관으로 통합채용하기 위해 채용계획 및 채용절차 이행권자를 인사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제출 요구, 채용 승인 요청권자를 소속기관의 장에서 인사과장으로 변경(안 제4조)

나.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의 작성 보관·관리권자를 소속기관의 장에서 인사과장으로 변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02)2133-0773

(2) E-mail: seoulzzi@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인사과 ☎02-2133-556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소속기관의 장” 을 각각 “인사과장” 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을 “인사과장은 공무원”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_____(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계약기간

-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__년 월 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②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① 근무장소 : 근무장소는 서울시 공무원 소속기관 중 사용자가 정하는 곳으로 하며, 서울시의 인사 명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업무내용 : 업무내용은 _____으로 하며, 사용자의 새로운 업무명령에 따라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③ 직 종 : _____

4. 근무형태

- 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장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한다.
-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추가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따른다.

5. 근로일과 휴일

- ① 근로자의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장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② 근로자의 휴일은 주휴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한다.

6. 연차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②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7. 임 금

- ① 근로자의 임금은 본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서울시 공무원 임금-단체협약에 따른다.
- ② 근로자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해 매월 2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 단, 수당의 성격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8.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 ①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 ②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과 관련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9. 복무의무

- ① 근로자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근로자는 직무수행 상 획득한 공무상 비밀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근로자는 맡은 바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근로자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⑦ 근로자는 사내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11.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붙임] 공무원직 봉급표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근로자

(인)

■ 서울특별시 공무원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에서 규정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따른다.
3. 기관 내 각종 시설 및 장비·물품 등을 위법하게 손괴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4. 근로시간 여부를 막론하고 근무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의무를 지니며,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5. 출·퇴근 시간 등 근로와 관련한 제반 기준과 근로 수칙을 준수한다.
6.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솔선수범한다.

20 . . .

서약자 : 서명(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 직 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근무기간	~ (년 월)
	구분(직종)	공무직()		
	주 소			
사직사유				
사직희망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중

■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 고 예 고 통 보 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구분 (직종)	
	주소			

귀하를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해고함을 통보합니다.

해고사유	
해고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자 르 는 선

해 고 예 고 통 보 서 수 령 증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종)	
	주소			

상기 본인은 해고예고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채용) ① (생략)	제4조(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공고 이전에 세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인사과장----- ----- ----- ---
③ 인사위원회에서 그 의결로 채용계획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채용계획을 보완하여 인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인사과장----- ----- ----- -----,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 직종, 업무내용, 응시 자격,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인사과장----- ----- ----- ----- ----- ----- -----,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⑤ 인사과장----- ----- ----- --, -----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고, 선정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세부 채용 계획, 제5항에 따른 서류 및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를 첨부하여 채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채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에 대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에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

1. ~ 5. (현행과 같음)

⑥ 인사과장-----

-----.

⑦ 인사과장-----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인사과장은 공무직-----

-----.

-----.

- ⑤ 연차유급휴가는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기본화하여 부여하며, 이후 매 5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5일로 한다.

8. 임금

- ①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월급액: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서울시 공무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다.
[붙임] 공무원 봉급표 참조

(2) 명월유급비: 월, 추월에 월급여액의 50%씩 각각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서울시 공무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다.
배 입시, 복직 휴직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월유급비는 일할 계산한다.

(3) 계속당 계속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기능장려수당, 통수지 근무수당 등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서울시 공무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다.

- ② 지 급 일: (매월 1일부터 월말까지의 근무에 대해) 매월 _____ 일에 지급.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③ 지급방법: 근로자 예금통장에 입금

(금융기관명: _____ 계좌번호: _____)

9.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의 경우에만 지급가능하다.
- ③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입사일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④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과 관련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10. 복무의무

- ① 근로자는 말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근로자는 직무수행 상 획득한 공무상 비밀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근로자는 말은바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근로자는 성관련 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⑦ 근로자는 사내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항)

12. 기타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붙임] 공무원 봉급표

작성일자: 20 ____년 ____월 ____일

(사용자) 서울특별시 ○ ○ ○ 장

(인)

(근로자) 성 명 (인)

※ 본 서식은 표준안이므로 근로시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사용 가능

[별지 제2호서식]

■ 서울특별시 공무원직 채용 및 복직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제2호서식

공무직(교대제)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0000장(하)사용자와 한도(과) 근로자 (이하(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 소
성명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요경력:		주요경력:		

2. 계약기간: 20 년 월 일 부터로 한다.

※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 : 근무장소는 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새로운 업무명령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위 사항에 대한 근로자 동의여부 : 동의 [], 부동의 []

② 업무내용 : 업무내용은 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새로운 업무명령에 따라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위 사항에 대한 근로자 동의여부 : 동의 [], 부동의 []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① 직 종 : 일반공무원 중 7개 공무원 직종 중 직종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자의 교대제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각 교대교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

1조	00시 00분 ~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2조	00시 00분 ~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3조	00시 00분 ~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 위 근무형태의 구체적 시행은 「공무원법」의 근무편성표에 따른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초과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추가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동의한다.

※ 위 사항에 대한 근로자 동의여부 : 동의 [], 부동의 []

5. 근로일

근로일은 근무편성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주휴일을 제외한 비번일은 휴무일로 한다.

6. 휴일

휴일은 다음과 같다.

- (1)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중 재근한 경우 부여)
 ※ 교대제 근로자는 1주(일요일부터 토요일) 중 2회 비번일중 주휴일로 함.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3) 근로자의 날(5월1일)

7. 연차 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88조에 따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가산하여 부여하며, 이후 매 5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5일로 한다.

8. 임금

①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월급액: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해 월급액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서울시 공무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다.
 [붙임] 공무원 봉급표 참조
 (2) 명령유급가비: 월, 주석에 월급액의 50%씩 각각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서울시 공무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다.
 ※ 입식, 복직, 휴직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령유급가비는 일괄 계산한다.
 (3) 제수당: 제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기능장려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서울시 공무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다.

② 지 급 일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매월 _____일에 지급(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근로자 예금통장에 입금

(금융기관명: _____ 계좌번호: _____)

9.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의 경우에만 지급가능하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입사일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과 관련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10. 복무여부

- ① 근로자는 말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청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근로자는 직무수행 상 획득한 공무상 비밀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근로자는 말은바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근로자는 성관련 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⑦ 근로자는 사내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행)

12.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붙임】공무직 봉급표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사용자) 서울특별시 ○ ○ ○ 장 (인)

(근로자) 성 명 (인)

※ 본 서식은 표준안이므로 근로시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사용 가능

[별지 제3호서식]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에서 규정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따른다.
3. 기관 내 각종 시설 및 장비·물품 등을 위법하게 손괴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4. 근로시간 여부를 막론하고 근무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의무를 지니며,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5. 출퇴근 시간 등 근로와 관련한 제반 기준과 근로 수칙을 준수한다.
6.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슬선수범한다.

20 年 月 日

서약자 : 서명(인)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장) 귀하

210mm×297mm(세로지: 80g/㎡)

[별지 제4호서식]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 직 원

인직사항	성명	성년월일	
	부서	출퇴근일	()년()월
	직급(직종)	공무직()	
	주 소		
사직사유			
사직희망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소속기관) 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에서 규정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따른다.
3. 기관 내 각종 시설 및 장비·물품 등을 위법하게 손괴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4. 근로시간 여부를 막론하고 근무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의무를 지니며,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5. 출퇴근 시간 등 근로와 관련한 제반 기준과 근로 수칙을 준수한다.
6.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슬선수범한다.

20 年 月 日

서약자 : 서명(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세로지: 80g/㎡)

[별지 제4호서식]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 직 원

인직사항	성명	성년월일		
	부서		근로기간	()년 ()월
	주요(직종)	공무직 : /		
	주 소			
사직사유				
사직희망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별지 제5호서식]

※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별지 제5호서식]

해 고 예 고 통 보 서

발급	수령
인장사관	인장사관
주요	주요

기타사항 「공공기관법」 제28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발급하는」 제5호에 의하여 최고일을 통보합니다.

해고사유: _____

해고사유: _____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소속기관) 장

..... 자 루 은 인

해 고 예 고 통 보 서 수 령 증

발급	수령
인장사관	인장사관
주요	주요

상기 증빙은 최고예고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발 (인장 사관 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소속기관) 장 기명

[별지 제5호서식]

※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별지 제5호서식]

해 고 예 고 통 보 서

발급	수령
인장사관	인장사관
주요	주요

기타사항 「공공기관법」 제28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발급하는」 제5호에 의하여 최고일을 통보합니다.

해고사유: _____

해고사유: _____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 자 루 은 인

해 고 예 고 통 보 서 수 령 증

발급	수령
인장사관	인장사관
주요	주요

상기 증빙은 최고예고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발 (인장 사관 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72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시립과학관 운영 효율 증대 및 대관 활성화를 위하여 대관 사용시간을 4시간 단위로 변경하고, 조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과학관 대관 사용시간을 4시간 단위로 변경(안 제9조제2항)

나. 조례 일부개정('25.7.14.)으로 일반전시물 관람료 무료화 및 감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람자 구분을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02-2133-5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1) E-mail : kdk77@seoul.go.kr
- (2)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경제정책과
- (1) F A X : 02-768-8847
-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4조 제2항 제3호” 를 “제4조제2항제3호” 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 ‘대관자’ ” 를 “ ‘대관자’ ” 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별지 제7호” 를 “별지 제7호서식”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항 중 “제6조” 를 “제7조”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20 . . . ()

결 재	담 당	과 장

구 분		일 계		누 계	
		인원	총액	인원	총액
개 인					
단 체					
총 계					

〔별지 제1호서식〕

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20 . . . ()

결 재	담 당	과 장

구 분		일 계		누 계	
		인원	총액	인원	총액
개 인					
단 체					
총 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필요한</u> ----- -----.
제2조(임시휴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휴관(이하 "임시휴관"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임시휴관) ----- ----- ----- <u>제4조제2항제3호</u> ----- ----- ----- ----- ----- ----- ----- ----- -----.
제4조(매표) ① ~ ④ (생략) ⑤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받은 자(이하 ' <u>대관자</u> '라 한다)의 책임으로	제4조(매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대관자</u> "-----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과학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8조(대관허가 신청) ① ~ ⑤
(생 략)

⑥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 사용시간)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① (생 략)

② 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대관허가 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별지 제7호서식 -----
-----.

제9조(대관 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7조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20 . . . ()	관 저	발	달	과	년

구	분	일		주	
		일	월	일	월
가	월-일 및 이월-이				
	대				
	월				
나	월-일				
	대				
	월				
다	월-일 및 이월-이				
	대				
	월				
라	월-일				
	대				
	월				
총		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 단 제 명 :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전 시 명 :
○ 장 소 :
○ 판매기간 : 20 ~ 20
○ 판매권 판매 점인 신청내역

구분	참여요청		비고
	금액	수령	
활동비 및 여행비 (7월~12월) 이 단 (20세~64세)			
숙박비	-		
기타			

* 부록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조항 16에 해당하는 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할권 점인을 신청합니다.

출판 : 2002년 1월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20 . . .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일 일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가		
나		
다		
라		
총 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 단 처 명 :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전 시 명 :
○ 장 소 :
○ 판매기간 : 20 . . . ~ 20 . . .
○ 판매권 판매 점인 신청내역

관망권 구분	관망요원		비고
	감독	수장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 관광권 종별 각 1부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84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자문 위원회인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 나. 위원회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금융투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과(02-2133-4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FAX: 02)2133-0835
- (2) E-mail: yjhns1@seoul.go.kr
-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금융투자과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신청:”을 각각 “신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원대상:”을 각각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③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 of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23조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상시 고용인원"이란 해당 금융기관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일용노동자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1. ----- ----- -----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2호-----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 ----- ----- -----.
1.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	1. -----

(조례 제5조제1항) : 별지 제1
호서식

2.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
신청(조례 제5조제2항) : 별지
제2호서식

3.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
금 신청 : 별지 제3호서식

4.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 : 별지 제6호서
식

5. 임시사무소의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 : 별지
제7호서식

② (생 략)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
원대상 : 보조금을 수령한 날
(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
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
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
하는 경우 또는 2년 동안 월평

--- 제5조제1항): -----

2. -----
----- 제5조제2항): -----

3. -----
-- 신청: -----

4. -----
----- 신청: -----
--

5. -----
----- 신청: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후관리) ① -----

-----.

1. ----- 지
원대상: -----

군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 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지 않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3명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② (생략)

제10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 지
원대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u><신 설></u> 1. 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23조(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① ~ ⑤ (생 략)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금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인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필요한 ----- ----- ---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87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업무 중요도 구분에 따른 전결권 조정 및 보완사항 반영 등을 반영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 결재 관련 전결권 정비(안 별표2)

나.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에 대한 전결권 조정(안 별표 2)

다. 위원회 운영 방침 수립 시 협조 관련 세부항목 명확화(안 별표 2)

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결 협조처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2133-6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 02-2133-0822

2) 이메일 : chaechae23@seoul.go.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2]

각 과 · 담당관 공통사항(제6조 관련)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총 괄 책임자					
1. 정원조정	1. 실·국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직 렬·직급 조정제외) 2. 실·국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가. 정원 증원요구 나. 직급 상향조정 다. 직급·직렬 간 상계조정	기안			○		조직담당관	
2. 비정규인력 정수 관리	비정규인력 정수책정 승인 요구	기안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사무소관 조정요구	기안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가. 실·본부·국 간 직제개정 요구 나. 실·본부·국 내 직제개정 요구	기안	기안		○	○	조직담당관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유연근무 제외) 가. 3급이상 실·본부·국장 나. 3급 보좌 기관 다. 4급 라. 5급이하 2. 유연근무 가. 3급이상 실·본부·국장 나. 3급 보좌 기관 다. 4급	기안		○			성과관리 담당사무관	
		기안		○			성과관리 담당사무관	
		기안		○				
		기안		○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라. 5급	기안		○						
	마. 6급이하	기안	○							
	3. 공무원외여행 계획 수립									
	가. 3급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도시외교담당관, 인력개발과장
	나. 4급이하	기안				○				
	4.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기안			○					
	5.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기안	○							
	6. 소속직원의 대체휴무 허가	기안			○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기안				○				
	2. 실·국내 전보	기안				○				
	3. 교육파견 명령	기안				○				
	4. 호봉승급획정·정정	기안			○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								
	6.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전산발급에 한함)	○								
7. 예 산	1. 예비비 사용방침									
	가. 5억원 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나. 5억원 미만	기안				○				예산담당관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3. 예산의 이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4. 같은 사업내 예산의 전용	기안				○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기안			○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기안			○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기안				○				재정담당관

8. 지방채	9.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요구	기안		○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기안		○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기안		○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기안			○			
	3. 원리금 상환	기안		○				
9. 기금운용 계획 변경	1. 주요항목 지출금액 1/2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2. 주요항목 지출금액 1/2미만	기안		○				
10. 규제개혁	1.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창의규제담당관
	가. 조례·규칙 제·개정시		기안			○		
	나. 훈령·예규 제·개정시	기안			○			
11.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2. 공사집행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3. 공사착공 명령	기안		○				
	4.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기안	○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 배정	기안	○					
	7. 공사용 자재의 사용 승인	기안		○				
	8. 도급공사의 중지·재개 결정 및 준공 기간의 연기결정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기안		○				
	9. 도급공사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12. 설계·공사 감리 용역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11. 준공검사원의 지정	기안		○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기안		○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 전허가	기안			○				
	14. 설계변경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 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 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 한 사항 변경	기안		○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용역착공 명령	기안		○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13. 물건의 제조·구매·임대차 및 그 밖의 품의	가. 1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	기안		○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7. 용역의 준공검사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8. 용역의 설계변경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경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안		○				
	9. 책임감리용역 운영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 담당관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기안		○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 단속	기안		○				
	라. 감리단 이력승인	기안		○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방침)	기안			○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기안		○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예산담당관	
	2. 물품제조 및 용역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14. 재산 및 채권관리	3. 물품구매·임대차 등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가. 공유재산취득·처분 및 교환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1) 건당 10,000㎡ 이상			기안			○	
	(2) 건당1,650㎡ 이상 10,000㎡ 미만		기안				○	
	(3) 건당 330㎡ 초과 1,650㎡ 미만	기안				○		
	(4) 건당 330㎡ 이하	기안			○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의 취득·처분	기안			○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단, 대부료·사용료 5억원 이상일 경우 협 조)	기안			○			재산관리과장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가격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단, 재산가액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기안				○		재산관리과장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 정 및 가격사정 의뢰	기안				○		
	5. 부동산 전임대 보증금 채권 (계약 후 임대보 증금 지급전 보증금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기안				○		재무과장
	나. 건당 1억원 미만	기안				○		재무과장
	6. 민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 한 사전 서면협조)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가. 1억원 이상	기안			○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나.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기안		○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기안			○		재무과장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3. 분담금 감액 결정	기안			○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기안			○	
	1)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2) 10억원 미만 또는 계속사업	기안			○		
	(2) 자치구	기안			○		
	나. 경미한 계획변경	기안			○		
	다. 지급결정						
	(1) 3,000만원이상	기안			○		
	(2) 3,000만원미만	기안		○			
16. 보 상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기안		○			
	1. 보상업무 계획	기안			○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기안			○		
	나. 1억원미만	기안		○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기안		○			
	4. 보상금 재심결정	기안		○			

17. 수수료 및 사용료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기안		○				
	6. 보상금 재결신청	기안		○				
	7. 보상금 사건확인	기안		○				
	8. 보상금 지급	기안		○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000만원미만	기안		○				
	2. 수입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기안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기안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기안		○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기안		○				
	2. 특별표창 계획수립		기안			○		인사과장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기안			○			
20. 의회업무	1. 시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기안			○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기안			○		
	2.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21. 행정심판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보충서면 등 제출	기안		○					
22. 민사, 행정 등 소송	1. 응소·제소·상소·청구·인락·소취하·구상권 행사·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법률지원담당관	
	가. 중요 소송		기안			○			
	나. 일반 소송	기안			○				
	다. 집행정지	기안		○					
	2.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기안		○					
	나.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다. 그 밖에 쟁송관계 자료제출	기안○							
23. 법규(법령·조례·규칙) 입법(제정·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광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기안			○			창의규제담당관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기안			○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기안			○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기안		○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기안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	기안			○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기안		○					
	7.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법무담당관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및 폐지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2) 조례 개정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기안				○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시장발의 조 례안)			기안				○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기안			○				법무담당관
	9. 고시·공고문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 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24. 자료제출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기안			○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청 내, 왕복문서)	기안			○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기안	○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기안			○				
	5. 정기보고	기안			○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기안			○				

25. 위원회 운영	7.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1회 보고 승인)	기안		○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기안		○					
	1. 위원회 신설 및 위원(재)구성에 관한 방침							조직담당관	
	가. 위원장이 시장인 경우		기안				○		
	나.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		기안			○			
	다. 위원장이 실·국장인 경우	기안			○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호선인 경우 등	기안			○				
	2. 위원회 개최, 안전상정 및 결과 보고	기안			○				
26. 회 의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기안		○					
	1. 회의소집								
	가. 자치구,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27. 민원 서류처리	나. 그 밖의 직원회의	기안		○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8. 지방공사 지도 감독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진행상황, 처리결과,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및 처리 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사항								
	가. 일반적 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 종결처리	기안			○				
	나.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의뢰	기안			○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기안				○			
	나. 사업계획 승인	기안				○			
	다. 기구조정								
	(1) 부급이상 기구	기안				○			
	라. 정원조정	기안				○			
	마. 임원의 임면승인				기안			○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안			○			
29.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조직담당관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조직담당관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위탁의 내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30. 자치구 분쟁조정 신청서처리	2. 실행계획 수립·집행	기안			○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기안			○		자치행정 과장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조정	기안			○			
	2. 시정 주요정책(혁신, 청년, 일자리, 복지, 문 화, 안전, 도시공간, 주택) 중 부시장 이상 결 재문서							젠더자문관
32. 의전행사	1. 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총무 과장
	가. 주 요 행 사	기안			○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기안		○				
33. 그 밖의 업무	1. 각종 심의회·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기안			○			
	2. 실·국간의 사업협조	기안			○			
	3.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구,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34. 의료보험	5. 사무인계·인수								
	가. 부서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기안		○					
	7.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기안			○		
	나. 4급 부여자		기안			○			
	다. 5급이하 부여자	기안			○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기안	○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기안	○						
	10. 물품의 반납	기안		○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기안	○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기안		○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기안	○						
	14. 차량 배차신청	○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 (중앙부처, 타 기관)	기안		○					
	16. 소속직원 교육	기안		○					
	17. 대부알선	○							
	18. 대여장학금 승인	기안	○						
	19. 사망조위금 신청	○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상실	○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35.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기안		○					
	2.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기안		○					
36. 친환경 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기안		○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기안		○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기안	○						
	4. 용역·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기안		○					
37. 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안			○				
	나. 정책자료집 발간	기안		○					
38. 행정 정보공개 (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39. 행정 정보공개 (원문공개)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40. 처리과 기록물 관리	1. 문서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록물조사·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기안		○					
	3.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폐기 여부 의견 제출	기안		○					
	4. 기록물 인계·인수	기안		○					
41.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42. 공모전 운영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6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기안	○					
	1.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공정경제정책 담당사무관
	2. 공모전 심사, 결과보고	기안	○					
	3. 그 밖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표준
시·구·군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생략)									
각 과 · 담당관 공통사항(제6조 관련)									
단위 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6급이하 부	5급 담당자	총괄 과장	심·본부 ·국장	부시장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 무상황 관리(유연 근무 제외)								
	가. 3급이상 실·본 부·국장	기안		○				성과관리 담당사무관	
	나. 3급 보좌 기관	기안		○					
	다. 4급	기안		○					
	라. 5급이하	기안		○					
	2. 유연근무								
	가. 3급이상 실·본 부·국장	기안		○				성과관리 담당사무관	
	나. 3급 보좌 기관	기안		○					
	다. 4급	기안		○					
	라. 5급	기안		○					
	마. 6급이하	기안	○						

현		개 정 안									
(생략)		(생략)									
2. 공무원의여행 계획 수립	가. 3급이상	기안						기안			예산담당관 도시행정과 인사개발과
	나. 4급이하	기안						기안			
	3. 5급이하 특근명령 (승인)	기안						기안			
	4. 소속직원의 당직 변경	기안						기안			
	5. 소속직원의 대체 휴무 허가	기안						기안			
(생략)		(생략)									
10. 규제개혁		1. 규제외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청의규제담당관	
(생략)		(생략)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1. 청산금 교부 및 정수액 산출 기준 결정	기안						기안			재무과장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기안						기안			예산담당관
	3. 분담금 감액 결정	기안						기안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현행		개정안	
가. 지급계획 (1) 민간 1) 5억원 이상 2) 5억원 미만 (2) 자치구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권이 있는 경우 기획권 전결)	기간	기간	○
	기간	기간	○
	기간	기간	○
	기간	기간	○
(생략)		(생략)	
23. 법규·법령·조례·규칙) 입법(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기간	기간	○
별무담당관		별무담당관	
가. 지급계획 (1) 민간 1) 5억원 이상 2) 5억원 미만 (2) 자치구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권이 있는 경우 기획권 전결)	기간	기간	○
	기간	기간	○
	기간	기간	○
	기간	기간	○
(생략)		(생략)	
25.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조에 관한 방법	1. 위원회 신설 및 위원(제)구성에 관한 방법	조직담당관

현					개 정 안				
38. 행정 정보공개 (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부존채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3. 부존채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39. 행정 정보공개 (원문공개)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생략)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88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능 수행을 명확히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및 해촉기준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에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내용 명확화(안 제1조 ~ 제3조)
-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강화(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7, 팩스: 02-768-8846, 이메일: bigbell7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우편 · 온라인

- (1) FAX: 02-768-8846
- (2) E-mail: bigbell77@seoul.go.kr
-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2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27)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
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3.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그 시행

제2조제4호 중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 등”을 “감사,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다만,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위원장에 한정한다.

제3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제2항제10호 본문 이외의 사항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직한 자” 를 “재직한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서” 로, “경력자” 를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로” 를 “사람으로” 로, “있는 자” 를 “있는 사람”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청원법」 제5조” 를 “「청원법」 제5조”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5조” 를 “제27조”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 을 “제8항” 으로 한다.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민참여옴부즈만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 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3.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그 시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청렴계약 이행”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5. (현행과 같음) 6.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감사, 인권보
호 및 증진 업무 등-----

-----.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다만,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이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다.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

-----, 다만, 제2호의 사
항은 위원장에 한정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제2항제

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료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생략)

③ (생략)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10호 본문 이외의 사항

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재직한 사람
2. -----
----- 사람으로서 -----
----- 경력이 있는 사람
3. -----
----- 사람
4. -----
----- 사람
5. -----
사람으로 -----
----- 있는 사람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여 감사·조사·감시 활동을 독립적
으로 수행한다.

1. ~ 7. (생 략)

8. 「청원법」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
에 대한 조사

③ (생 략)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
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 5. (생 략)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8. (생 략)

③ (생 략)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 ①·

② (생 략)

③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위원의 참관
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
이나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참여
옴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청원법」 제5조-----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

7.·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7조-----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④ (생 략)

⑤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단서 삭제>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민참여옴부즈만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⑥·⑦ (생략)

⑦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⑧·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
 ----- 제8항-----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500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서울영화센터’의 관람료 등 이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치, 명칭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울영화센터가 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시설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영화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위치 명확화(안 제9조제3항 및 별표 1)
- 나. 서울영화센터의 상영관 관람료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근거 조항 및 그 외 이용료에 대한 재량 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및 별표 2)
- 다. 서울영화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창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조산업과(02-2133-9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이메일: ysh0628@seoul.go.kr
-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7층 창조산업과
-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관 부서장이 된다”를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나.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를 “시에”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상영관 관람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6.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제10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전시·교육 등을 위한 이용료는 제10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가. 영화 감독,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다.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영화센터의 위치(제9조제3항 관련)

이름	주소
서울영화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

[별표 2]

상영관 관람료 부과기준 (제9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 부과기준
• 상영관 관람료	개인: 5,000원 ~ 15,000원
	단체(10인 이상):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2. (현행과 같음)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나.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⑥ -----

---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생 략)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생 략)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⑬ (현행 제7항과 같음)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

----- 시
에 -----
한정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2(상영관 관람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

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
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
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
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6.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
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
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제
10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전시·교육 등을 위한 이용료는 제10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화 감독,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협이 풍부한 사람

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별 표 1]

서울영화센터의 위치(제9조제3항 관련)

이름	주소
서울영화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 38

<신 설>

[별 표 2]

상영관 관람료 부과기준 (제9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 부과기준
• 상영관 관람료	개인: 5,000원 ~ 15,000원
	단체(10인 이상):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0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시장

1. 기준자료: 2025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2.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지목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원/㎡)	지목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원/㎡)
전	1,734,687	철도용지	3,520,369
답	1,839,483	제방	1,237,282
과수원	391,694	하천	669,415
목장용지	-	구거	1,940,204
임야	559,150	유지	2,518,159
광천지	-	양어장	-
염전	-	수도용지	1,217,270
대	7,937,541	공원	1,388,752
공장용지	5,718,231	체육용지	6,611,637
학교용지	4,806,501	유원지	4,384,816
주차장	4,589,578	종교용지	6,028,697
주유소용지	9,646,790	사적지	1,670,784
창고용지	3,846,957	묘지	827,414
도로	2,560,293	잡종지	2,228,44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4호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99호(2009.05.2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9호(2012.6.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1호(2019.10.10.)로 변경되고, 노원구 고시 제2021-43호(2021.03.04.)로 사업시행인가되고, 노원구 고시 제2024-21호(2024.03.1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5.4.24.)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187,979	감) 27.3	187,951.7	-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	변경사유
변경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정비구역 면적 변경 187,979㎡ → 187,951.7㎡ (감 27.3㎡)	•면적 변경 - 구역계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일부 구역계 변경을 반영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87,979	감) 27.3	187,951.7	100.0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정비기반시설	소 계	42,781	감) 6,719.6	36,061.4	19.2	
	도로	6,740	감) 2,292.7	4,447.3	2.4	중로 1개소, 소로 2개소
	공원	15,592	감) 499.6	15,092.4	8.0	소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15,592	감) 11,043.1	4,548.9	2.4	
	근린공원	-	증) 10,543.5	10,543.5	5.6	공공청사 중복결정
	녹지	19,318	감) 2,796.3	16,521.7	8.8	-
	연결녹지	6,113	증) 10,408.7	16,521.7	8.8	2개소
	경관녹지	13,205	감) 13,205	-	-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1,131	감) 1,131	(2,427.2㎡)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획지	소 계	145,198	증) 6,692.3	151,890.3	80.8	-
	A1	102,730	증) 48,815.3	151,545.3	80.6	공동주택용지
	A2	40,832	감) 40,832.0	-	-	주거지보전용지
	C1	443	감) 443.0	-	-	근린생활 시설용지
	C2	444	감) 444.0	-	-	
	E1	749	감) 749.0	-	-	유치원용지
	F1	-	증) 345.0	345.0	0.2	종교용지(신설)

※ ()의 면적은 지하 공간에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임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7,979	감) 27.3	187,951.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53,655	증) 2,682.6	156,337.6	83.2	
	제1종일반주거지역	44,575	감) 40,127.7	4,447.3	2.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049	감) 3,704.0	345.0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031	증) 46,514.3	151,545.3	80.6	
녹지 지역	소 계	34,324	감) 2,709.9	31,614.1	16.8	
	자연녹지지역	34,324	감) 2,709.9	31,614.1	16.8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후	
자연녹지지역	34,324	감) 2,709.9	31,614.1	•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 역 상향
제1종일반주거지역	44,575	감) 40,127.7	4,447.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049	감) 3,704.0	34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031	증) 46,514.3	151,545.3	

나.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49	20	집산도 로	95	중계동 27-6 (중로1-371)	중계동27-45	일반도 로	-	서고2009-99 ('09.05.28)	-
변경	중로	1	449	21~23	집산도 로	105	중계동 27-6 (중로1-371)	중계동27-45	일반도 로	-	-	-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 로	135	중계동 27-10 (중로1-499)	중계동27-73 (중로3-A)	일반도 로	-	서고2012-159 ('12.06.21)	-
변경	소로	1	A	10	국지도 로	152	중계동 27-10 (중로1-499)	중계동28-2 (소로 3-A)	일반도 로	-	-	-
기정	중로	3	A	12.8	국지도 로	56	중계동 27-73 (소로 1-A)	중계동27-48 (중로1-37)	일반도 로	-	서고2019-341 ('19.10.10)	-
변경	소로	3	A	6	국지도 로	74	중계동 28-2 (소로 1-A)	중계동27-48 (중로1-37)	일반도 로	-	-	-
폐지	소로	2	A	8~13	국지도 로	268	중계동 산16-63 (중로1-371)	중계동23-32	일반도 로	-	서고2012-159 ('12.06.21)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49	중로1-449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B= 20→21~23m, - L= 95→105m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시 차량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의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1-A	소로 1-A	- 도로 종점 변경 - 중계동 27-73(중로 3-A) → 중계동 28-2(소로 3-A)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L=135m→152m	-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폭원 확보 및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의 등급 변경으로 종점 변경 -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의 선형 일부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A	소로 3-A	•도로 기점 변경 - 중계동 27-73(소로 1-A) → 중계동 28-2(소로 1-A)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B= 12.8m→6m, - L=56m→74m	•소로 1-A 노선의 연장계획에 따라 도로의 기점 변경 •차량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도로의 폭원과 연장을 변경 •안전한 도로 관리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중계로변 법면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포함
소로 2-A	-	•도로 폐지	•주거지보전용지의 내부도로 및 공동주택용지 교통동선 연계를 위해 계획된 도로로 통합계획으로 인해 해당 도로가 불필요함에 따라 금회 폐지

나. 공간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원	소공원	중계동 산16-64 일대	3,374	감) 3,374	-	서고2019-341 ('19.10.10)	-
폐지	2	공원	소공원	중계동 산106 일대	4,488	감) 4,488	-	서고2019-341 ('19.10.10)	-
폐지	3	공원	소공원	중계동 12-1 일대	4,414	감) 4,414	-	서고2019-341 ('19.10.10)	-
폐지	4	공원	소공원	중계동 15 일대	2,133	감) 2,133	-	서고2019-341 ('19.10.10)	-
변경	1	공원	소공원	중계동 27-4 일대	1,183	증) 3,365.9	4,548.9	서고2012-159 ('12.06.21)	기정 소공원5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중계동 산104-42 일대	-	증)10,543.5	10,543.5	-	하부 공공청사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소공원	• 폐지 - 면적 : 3,374㎡	• 편중된 공원의 위치로 대상지 내 적정 위치에 녹지 제공을 위하여 구역 내 편입
2	소공원	• 폐지 - 면적 : 4,488㎡	•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녹지축의 연결성을 위해 연결녹지2로 편입에 따른 시설 폐지
3	소공원	• 폐지 - 면적 : 4,414㎡	• 기존 연결녹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결녹지1로 편입하기 위해 폐지
4	소공원	• 폐지 - 면적 : 2,133㎡	• 기존 연결녹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근린공원1로 편입하기 위해 폐지
1	소공원	• 시설의 면적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 면적 : 1,183㎡ → 4,548.9㎡ (증) 3,365.9㎡ - 도면표시번호 : 소공원 5 → 소공원 1	• 공공성과 개방성을 위해 단지와 인접하여 대기와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소공원 변경 • 시설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급히 폐지되는 공원 및 변경되는 공원 번호 정정
1	근린공원	• 신설 - 면적 : 10,543.5㎡	• 주민들의 휴식 함양과 공공청사 증복결정을 위한 근린공원 신설

2)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녹지	연결녹지	중계동 산104-42 일대	3,668	감) 3,668	-	서고 2012-159 ('12.06.21.)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중계동 16-4 일대	2,445	증) 2,868.2	5,313.2	서고 2012-159 ('12.06.21.)	기정 연결녹지2
변경	2	녹지	연결녹지	중계동 25-18 일대	11,658	감) 449.5	11,208.5	서고 2012-159 ('12.06.21.)	기정 경관녹지1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녹지	경관녹지	중계동 39-1 일대	1,547	감) 1,547	-	서고 2012-159 ('12.06.21.)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결녹지	• 연결녹지 폐지 감) 3,668㎡	• 주민들의 휴식함양과 공공청사 중복결정을 통해 토지이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치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기 연결녹지를 폐지
1	연결녹지	• 연결녹지 면적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 면적 : 기정 2,445㎡ → 변경 5,313.2㎡ (증) 2,868.2㎡ - 도면표시번호 : 연결녹지2 → 연결녹지1	• 신설되는 근린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연결녹지의 면적 변경 • 시설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급히 폐지되는 녹지 및 변경되는 녹지 번호 정정
2	연결녹지	• 시설의 종류 및 면적 변경 - 시설의 종류 : 경관녹지1 → 연결녹지2 - 면적 : 기정 11,658㎡ → 변경 11,208.5㎡ 감) 449.5㎡	• 시설의 성격에 맞는 시설의 종류 변경과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녹지축의 연결성을 위해 소공원2의 편입 및 연결녹지의 조성기준에 맞는 적정 폭원으로 변경
1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감) 1,547㎡	• 주민들의 휴식함양과 공공청사 중복결정을 통해 토지이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치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기 경관녹지를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중계동 산104-42일대	1,131	감) 1,131	- (2,427.2㎡)	서고 2012-159 ('12.6.21.)	• 공원하부 중복결정 - 층수 지하1층~지하3층 • 관리청 : 노원구청

- ※ 공공청사는 노원구청으로 귀속되며, 노원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면적충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의 면적은 지하 공간에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임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1	공공청사	20% 이하	-	지하1층~지하3층	연면적 3,300㎡ 이하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위치 : 중계동 27-58 일대 → 중계동 산104-42일대 • 용적률 변경 : 200%이하 → - • 건폐율 변경 : 60%이하 → 20%이하	• 공원의 입체화를 통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시설 중복결정을 적용

2)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사회 복지시설	중계동 산104-42일대	1,131	감) 1,131	- (2,427.2㎡)	서고 2012-159 ('12.6.21.)	• 공원하부 중복결정 - 층수 지하1층~지하3층 • 관리청 : 노원구청

- ※ 사회복지시설은 노원구청으로 귀속되며, 노원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면적충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의 면적은 지하 공간에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임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1	사회복지시설	20% 이하	-	지하1층~지하3층	연면적 1,250㎡ 이하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 위치 : 중계동 27-58 일대 → 중계동 산104-42일대 • 용적률 변경 : 200%이하 → - • 건폐율 변경 : 60%이하 → 20%이하	• 공원의 입체화를 통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시설 증복결정을 적용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관리사무소	A1 (공동주택용지)	329.0	
	경로당		724.3	
	어린이놀이터		2,128.0	
	어린이집		953.0	
	주민운동시설		3,131.7	
	작은도서관		1,256.0	
	주민공동시설		4,422.5	
	경비실		175.7	
	어린이집	A2 (주거지보전용지)	235.9	
	경로당		281.5	
	작은도서관		235.8	
	주민운동시설		514.6	301.47(실내) 119.75(옥외)
	어린이놀이터		692.0	
	주민휴게시설		-	
	독서실(마을공부방)		145.7	
	공용세탁실(공유빨래방)		89.4	
	전시관 및 마을박물관		1,170.5	
	도시농업센터		-	
	마을기업센터		60.0	
	관리사무소		134.6	
	공동육아방		124.5	
	아이휴센터		-	
	커뮤니티센터		221.6	
	마을식당, 나눔냉장고		194.8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55.6	
	생협출장소		47.4	
	의료생협출장소		55.2	
	게스트룸		249.1	
	독립임대공간		2,265.8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변경	돌봄시설	공동주택용지	2,229.09	66㎡ 이상 설치
	어린이집		1,133.12	법정 기준 960.6㎡
	경로당		1,022.62	법정 기준 960.6㎡
	작은도서관		1,052.46	법정 기준 533.6㎡
	스카이 라운지		1,091.67	-
	관리사무소/방재실/MDF		709.15	법정 기준 100㎡ 이상
	경비실/용역휴게실		202.25	-
	주민운동시설 및 기타시설		8,899.88	-
	지역활성화시설		662.83	-
	소방활동공간		106.00	
	어린이 놀이터		2,779.78	법정 기준 2,724.60㎡ 이상
	합계		19,888.85	법정 기준 8,445.0㎡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설치해야 함. $500 + (3,178 \text{세대} \times 2\text{㎡}) \times 1.25 = 8,445.0\text{㎡}$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 정	중계본동 주택 재개발 구역	합계	187,979	-	187,979	-	960	-	-	-	-
		공동 주택 사업 부지	143,562	A1	102,730	중계동 18-1 일대					공동주택 용지
				A2	40,832	중계동 29-20 일대					주거지 보전용지
		개별 택지 사업 부지	2,767	C1	443	중계동 27-27 일대					근린생활 시설용지
				C2	444	중계동 27-40 일대					
				D1	1,131	중계동 27-58 일대					공공청사 · 사회복지 시설
				E1	749	중계동 27-82 일대					유치원 용지
		도로	6,740	-	-	-					-
		공원	15,592	-	-	-					-
		녹지	19,318	-	-	-					-
변 경	중계본동 주택 재개발 구역	합계	187,951.7	-	151,890.3	-	980	-	-	-	-
		공동 주택 사업 부지	151,545.3	A1	151,545.3	중계동 18-1 일대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개별 택지 사업 부지	345.0	F1	345.0	중계동 27-27 일대					종교용지
		도로	4,447.3	-	-	-					-
		녹지	16,521.7	-	-	-					-
		공원	15,092.4	-	-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중계본동 주택 재개발 구역	187,979	A1	102,730	중계동 18-1 일대	공동주택 용지(분양)	30% 이하	200% 이하	20층/60m (평균12층)	대지레벨 60m이상에서 20층 불허
			A2	40,832	중계동 29-20 일대	주거지보전 용지(임대)	60% 이하	150% 이하	4층 (16m)	-
			C1	443	중계동 27-27 일대	근린 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25m)	-
			C2	444	중계동 27-40 일대					
			D1	1,131	중계동 27-58 일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25m)	관계 법령에 의함
			E1	749	중계동 27-82 일대	유치원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25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총 세대수 : 2,437세대(일반분양 1,953세대, 임대 484세대) ▶ 일반분양(A1) : 1,953세대 •전용 85㎡ 이하 : 1,657세대(84.8%) - 59㎡ : 483세대(24.7%), 74㎡ : 437세대(22.3%), 84㎡ : 737세대(37.8%) •전용 85㎡ 초과 : 296세대(15.2%) - 101㎡ : 189세대(9.7%), 114㎡ : 89세대(4.6%) 129㎡ : 2세대 (0.1%) 135㎡ : 2세대 (0.1%) 145㎡ : 12세대 (0.6%) 190㎡ : 2세대 (0.1%) ▶ 임대(A2) : 484세대 • 30㎡ 이하 :191세대(39.46%), 30㎡ 초과~50㎡ 이하 : 215세대(44.42%), 50㎡ 초과~60㎡ 이하 : 50세대(10.33%), 60㎡초과~85㎡ 이하 : 28세대(5.79%), 85㎡ 초과 : 0세대							
심의원화 사항			• 특별경관관리(우수디자인)를 통한 디자인적 요소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200% 이하)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10-662호(2010. 12. 27)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임대주택비율 완화적용 (50 → 1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C1, C2, D1, E1 도로에 접하는 경계부 : 2m - 대지 내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기준 완화	허용	상한		
변경	중계본동 주택 재개발 구역	187,951.7	A1	151,545.3	중계동 18-1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150.0이하	161.29이하	193.25 이하	223.49이하	105m 이하 /35층 이하	-
			F1	345.0	중계동 27-27 일대	종교용지 (신설)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3,178세대(분양 2,613세대, 임대 565세대)										
			구분 (전용면적)		계	분양	의무임대	기부채납	국민주택 규모주택				
			계		3,178	2,613	480	85	-				
			85㎡ 이하	60㎡이하	1,019	489	480	50	-				
				60㎡~85㎡이하	1,714	1,679	-	35	-				
			85㎡초과		445	445	-	-	-				
심의위원회 사항			•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른 소형분양주택 공급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 : 11.29% - 40㎡ 이하 분양주택 공급 : 1.29%, 50㎡~60㎡이하 분양주택 공급 : 10.0%										
			•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 : 15.98% (공공보행통로 7.14%, 돌봄 시설 3.84%, 방재안전 5.00%)										
			•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2.0										
			•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 수립을 통한 건축배치 등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령의 건축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한계선 지정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내 경계부 : 3m - 대지 내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불암산 등산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1에서 연결녹지2까지 연결되는 폭 25m, 연장 288m의 공공보행통로 지정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노원구)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환산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토지이용계획		187,951.7	151,545.3	36,061.4	3,552.9	10,682.1	4,191.6	16,826.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의무 순부담 비율 : 17.51% •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36,061.4㎡ + 3,552.9㎡ + 10,682.1 - 4,191.6㎡ - 16,826.3㎡ (17.54%)						
신설 기반시설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면적	• 토지이용 : 도로 4,447.3㎡, 공원 15,092.4㎡, 녹지 16,521.7㎡ • 건축물 토지지분 : 공공주택(전용 59㎡ 1,814.5㎡, 전용 76㎡ 464.1㎡, 전용 84㎡ 1,274.3㎡)						
	건축물 환산부지면 적	• 환산부지 면적 = 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②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건축물(임대주택, 공공청사)환산부지 면적 : 10,682.1㎡(임대주택 5,835.6㎡, 공공청사 4,846.5㎡)						
	공공 청사 및 사회 복지 시설	•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연면적 : 4,472.87㎡ •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공시지가 2배)(원/㎡) = 1,785,861원/㎡(2024년 공시지가 가중평균) × 2 = 3,571,721원/㎡						
		건축물 설치 환산부지 면적 산출근거						
		공공청사	표준건축비	4,067,000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동청사1,5천㎡~2천㎡)			
			시설연면적	1,801.07㎡	-			
			환산부지면 적	1,864.4㎡	표준건축비 ÷ 1.1(면세) × 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작은도서관	표준건축비	4,465,000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도서관 1,5천㎡미만)			
			시설연면적	308.42㎡	-			
			환산부지면 적	350.5㎡	표준건축비 ÷ 1.1(면세) × 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아이휴센터 및 공동육아방		표준건축비	4,577,000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육아보육커즈센터 5천㎡미만)				
		시설연면적	873.03㎡	-				
		환산부지면 적	1,017.0㎡	표준건축비 ÷ 1.1(면세) × 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장애인 복지시설		표준건축비	3,969,000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장애인복지관1천㎡미만)				
		시설연면적	372.36㎡	-				
		환산부지면 적	376.2㎡	표준건축비 ÷ 1.1(면세) × 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체육시설		표준건축비	4,352,000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체육관, 체육센터 3.5천㎡미만)				
		시설연면적	1,117.98㎡	-				
		환산부지면 적	1,238.4㎡	표준건축비 ÷ 1.1(면세) × 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공공 주택		•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공시지가 2배)(원/㎡) = 1,785,861원/㎡(2024년 공시지가 가중평균) × 2 = 3,571,721원/㎡						
	건축물 설치 환산부지 면적 산출근거							
	전용 59㎡	표준건축비	2,230,667원/㎡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중 50㎡초과 60㎡이하 5층~35층이하 건축비 평균)				
		시설연면적	4,039.6㎡	-				
환산부지면 적		2,293.5㎡	표준건축비 ÷ 1.1(면세) × 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구분		산정내용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환산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건축물 설치 환산부지 면적 산출근거							
		전용 76㎡	표준건축비	2,132,667원/㎡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중 60㎡ 초과 85㎡ 이하 5층~35층이하 건축비 평균)				
			시설연면적	1,030.5㎡	-				
			환산부지면적	559.4㎡	표준건축비 ÷ 1.1(면세) × 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전용 84㎡	표준건축비	2,132,667원/㎡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중 60㎡ 초과 85㎡ 이하 5층~35층이하 건축비 평균)				
			시설연면적	2,820.5㎡	-				
			환산부지면적	1,531.0㎡	표준건축비 ÷ 1.1(면세) × 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지하층	표준건축비	1,009,000원/㎡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				
			시설연면적	5,652.9㎡	-				
			환산부지면적	1,451.8㎡	표준건축비 ÷ 1.1(면세) × 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상향 =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 150%+11.29% = 161.29%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상향) + 인센티브(최대 20%) × 사업성 보정계수 2.0 = 161.29% + 31.96% = 193.25% • 인센티브 = 15.98% [공공보행통로(7.14%) + 돌봄시설(3.84%) + 방재안전(5.00%)]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25.02.07.)」 적용 • 상한용적률 = 완화된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토지) + (허용용적률※ × 0.7 × α 건축물) + (허용용적률※ × 1.0 × α 임대주택)) = 193.25% + ((170% × 1.3 × 0.7073 × 0.1257) + (170% × 0.7 × 0.0327) + (170% × 1.0 × 0.0394)) = 223.49% ※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39,614.3㎡ - 4,191.6㎡ - 16,826.3㎡) / (187,951.7㎡ - 345㎡ - 36,061.4㎡ - 3,552.9㎡) = 18,596.4/147,992.4 = 0.1257 ※ α 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 중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4,846.5㎡ / (187,951.7㎡ - 345㎡ - 36,061.4㎡ - 3,552.9㎡) = 4,846.5/147,992.4 = 0.0327 ※ α 임대주택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 중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5,835.6㎡ / (187,951.7㎡ - 345㎡ - 36,061.4㎡ - 3,552.9㎡) = 5,835.6/147,992.4 = 0.0394 ※ 가중치 = 공공시설 용적률(가중평균) / 사업부지 용적률(가중평균) = 120.25% / 170.0% = 0.7073 • 허용용적률※ : 서울시 정비계획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 상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배제)								

■ 가중치에 관한 사항

구 분	현황 용도지역	계획 용도지역	면적 (㎡)	무상양도 (㎡)	순부담(A) (㎡)	허용용적률 (B)	A×B	토지가중치
계	-	-	39,614.3	21,017.9	18,596.5	-	-	0.7073
도로, 공원, 녹지	자연녹지	-	24,733.1	17,794.5	6,938.6	50%	3,469.3	
	제1종		9,274.6	2,908.4	6,366.3	150%	9,549.4	
	제2종7층		2,053.7	315.0	1,738.7	190%	3,303.5	
임대주택지분	자연녹지	제2종	3,552.9	-	3,552.9	170%	6,039.9	

■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

세부내용	완화기준	완화량	
40㎡ 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용적률 완화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증가용적률(10%)에 대한 연면적 = 151,545.3㎡×10% 이상 = 15,154.5㎡ 이상 - 전용 39㎡ 36세대 공급에 따른 연면적 54.32㎡ (공급) × 36세대 = 1,955.62㎡ (1.29%)	최대 10%	1.29%
50~60㎡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용적률 완화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증가용적률(10%)에 대한 연면적 = 151,545.3㎡×10% 이상 = 15,154.5㎡ 이상 - 전용 59㎡ 453세대 공급에 따른 연면적 80.79㎡ (공급) × 453세대 = 36,598.4㎡ (24.15%)	최대 10%	10.0%
최대 20%p 이내			11.29%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항 목	인센티브 산정 방식	인센티브량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 인센티브(최대 10%p)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a = 1이하 - 150%×(7,209.2㎡/151,545.3㎡)×1.0 = 7.14%	7.14%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인센티브(최대 5%p)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주민공동시설면적)×a ※ a=0.1이하 - 150%×((2,229.1㎡-66㎡)/8,445.0㎡)×0.1 = 3.84% (단, 법적·무설치 면적 제외, 건축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복 불가)	3.84%

항 목	인센티브 산정 방식	인센티브량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 안전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p 이내	5.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합계		15.98%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의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사업성 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 5,969,319 / 2,208,899 = 2.70 → 2.0 적용	2.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31.96% 적용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 전체세대수 : 3,178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480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 3,178세대의 15%이상 : 3,178세대 × 15% = 477세대 이상 < 480세대 계획 - 전체 연면적 기준 10%이상에 해당하는 연면적 : 577,344.34㎡ × 10% = 57,734.43㎡ < 57,815.57㎡ 계획 -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전체 임대주택(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체 임대주택 565세대 × 30% = 170세대 이상 < 188세대 - 주택 전체 세대수 3,178세대 × 5% = 159세대 이상 < 188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480	15.10%	100.0%
40㎡ 이하	188	5.92%	39.2%
50~60㎡ 이하	292	9.19%	60.8%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 보전	1. 구역 내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은 원지형을 보존 또는 수목 이식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기존 자연환경 특색 유지	-
재난 방지	1. 구역 내 피난처 및 자동식소화기 설치 2. 충분한 우수관망과 투수포장재 사용으로 수해 대비 3. 재해대비 내부동선체계 구축 및 교통경보장치 설치로 교통문제 저감	-

10.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름	비오름 보전 등급 향상	○	• 비오름유형평가 2~5등급, 개별비오름 평가 2~3등급, 도로, 제의 등급으로 조사됨	•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2.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기존 시가지 상태로 주변 녹지가 미미한 상태임	•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 녹지평가지표 1등급으로 계획됨	-
3.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동식물상 보호	○	• 현존식생은 경작지, 도로, 시가지지역, 아까시나무림이며, 생태·자연도 2, 3등급으로 조사됨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생물서식공간 마련	-
	자연환경 보전	○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4.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노후주택지역으로 주변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사업 대상지 다수 위치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주거 유형별 계획적 관리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5.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 지장물 철거 및 공사장비를 통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계획 수립	-
6.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최저표고 45m, 최고표고 112m • 평균경사 11.0° •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 서울화강암 • 대부분 70%이상~90%미만	• 부지계획고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절성토고를 최소화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
7.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 생태면적률 30% 이상 계획	•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30%이상 계획 • 저영향개발(LID) 적용 검토	-
8.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수질현황(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만족) •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 운영시 계획인구에 의한 오수발생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지역 '한강H' 유역에 해당	• 공사시 토사유출저감대책 수립 (유출지하수저감대책, 침사지 설치) • 운영시 상수공급계획, 오수수 처리 계획 수립 (저영향개발계획 등)	-
9. 바람	바람길 확보	○	•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10. 열	열환경 환경 최소화	○	• 열환경 공간 유형 조사 •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해당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11.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PM-2.5제외 모든 항목 대기환경기준 이내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영향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살수, 가설방진망 등)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친환경 보일러, 녹지조성 등)	-
12.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온실가스 전년대비 감소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폐기물 재활용, 등) • 운영시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3. 에너지	에너지 절약	○	- 대상지는 황함유량 0.1%이하의 경우 및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사용지역에 해당함 - 향후 에너지사용량 증가	-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의 반영	
14.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생활·건설폐기물·폐유 및 분뇨 발생 예상 -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뇨발생 저감대책 수립	-
15.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현재 교통소을 영향 지역 - 공사시 소음영향이 예상 -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공사시 소음저감방안 수립(저소음장비, 가설 방음판넬 등)	-
16. 경관	Skyline 보전	○	도심지 경관이며 근거리에 시가지경관, 산림녹지경관이 위치함	- 건축물 색채 및 식재계획 수립 - 열린 경관 확보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17.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노원구 관내에 공원,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위치 - 대상지와 인근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이 위치함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주민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공동이용시설 등 마련	-
18.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지형적 단차가 큰 지역에 위치한 노후된 주거지역 및 급경사 구릉지 - 사업대상지 북측 주거지에서 일조피해가 예상됨	- 건축물 적정 이격거리를 설정한 위치선정 - 건축물 주변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 관련법을 준수한 건축계획 수립	-
19. 보행친화공간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대상지 서측 중계로가가, 하계역, 상계역이 위치해 도로망을 형성	- 주변가로 및 교차로 구조 개선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20. 인구 및 주거	인구 고려한 계획	○	인구밀도 감소, 고령자수 증가 추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개발로 인해 상주인구 증가 및 생활권 접근성 향상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방식)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2년 이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증)1,243세대 (보전구역 임대세대 포함)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방식)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증)1,984세대 (임대세대 포함)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사업부지 내 유치원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에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음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에 의거하여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하여야 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유치원) 2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	-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기법 CPTED(Crime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용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기본방향에 따름 -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정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정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함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지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중계로4길2 (30-3) 일대	187,979	감) 27.3	187,951.7	서울시고시 제2009-99호 (2009.5.28)	-
	중계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중계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중계로4길2 (30-3) 일대	187,951.7 (감 27.3)	• 구역명 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구역명 변경 • 면적 변경 - 구역계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일부 구역계 변경을 반영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7,979	감) 27.3	187,951.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53,655	증) 2,682.6	156,337.6	83.2	
	제1종일반주거지역	44,575	감) 40,127.7	4,447.3	2.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049	감) 3,704.0	345.0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031	증) 46,514.3	151,545.3	80.6	
녹지 지역	소 계	34,324	감) 2,709.9	31,614.1	16.8	
	자연녹지지역	34,324	감) 2,709.9	31,614.1	16.8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후	
자연녹지지역	34,324	감) 2,709.9	31,614.1	•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제1종일반주거지역	44,575	감) 40,127.7	4,447.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049	감) 3,704.0	34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031	증) 46,514.3	151,545.3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3.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49	20	집산도로	95	중계동 27-6 (중로1-371)	중계동27-45	일반도 로	-	서고2009-99 (09.05.28)	-
변경	중로	1	449	21~23	집산도로	105	중계동 27-6 (중로1-371)	중계동27-45	일반도 로	-	-	-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로	135	중계동 27-10 (중로1-499)	중계동27-73 (중로3-A)	일반도 로	-	서고2012-159 (12.06.21)	-
변경	소로	1	A	10	국지도로	152	중계동 27-10 (중로1-499)	중계동28-2 (소로 3-A)	일반도 로	-	-	-
기정	중로	3	A	12.8	국지도로	56	중계동 27-73 (소로 1-A)	중계동27-48 (중로1-37)	일반도 로	-	서고2019-341 (19.10.10)	-
변경	소로	3	A	6	국지도로	74	중계동 28-2 (소로 1-A)	중계동27-48 (중로1-37)	일반도 로	-	-	-
폐지	소로	2	A	8~13	국지도로	268	중계동 산16-63 (중로1-371)	중계동23-32	일반도 로	-	서고2012-159 (12.06.21)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49	중로1-449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B= 20→21~23m, - L= 95→105m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시 차량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의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1-A	소로 1-A	- 도로 종점 변경 - 중계동 27-73(중로 3-A) → 중계동 28-2(소로 3-A)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L=135m→152m	-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폭원 확보 및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의 등급 변경으로 종점 변경 -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의 선형 일부 변경
중로 3-A	소로 3-A	- 도로 기점 변경 - 중계동 27-73(소로 1-A) → 중계동 28-2(소로 1-A)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B= 12.8m→6m, - L=56m→74m	- 소로 1-A 노선의 연장계획에 따라 도로의 기점 변경 - 차량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도로의 폭원과 연장을 변경 - 안전한 도로 관리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중계로변 법면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포함
소로 2-A	-	도로 폐지	주거지보전용지의 내부도로 및 공동주택용지 교통동선 연계를 위해 계획된 도로로 통합계획으로 인해 해당 도로가 불필요함에 따라 금회 폐지

나. 공간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원	소공원	중계동 산16-64 일대	3,374	감)3,374	-	서고2019-341 (19.10.10)	-
폐지	2	공원	소공원	중계동 산106 일대	4,488	감)4,488	-	서고2019-341 (19.10.10)	-
폐지	3	공원	소공원	중계동 12-1 일대	4,414	감)4,414	-	서고2019-341 (19.10.10)	-
폐지	4	공원	소공원	중계동 15 일대	2,133	감)2,133	-	서고2019-341 (19.10.10)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소공원	중계동 27-4 일대	1,183	증)3,365.9	4,548.9	서고2012-159 (12.06.21)	기정 소공원5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중계동 산104-42 일대	-	증)10,543.5	10,543.5	-	하부 공공청사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소공원	• 폐지 - 면적 : 3,374㎡	• 편중된 공원의 위치로 대상지 내 적정 위치에 녹지 제공을 위하여 구역 내 편입
2	소공원	• 폐지 - 면적 : 4,488㎡	•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녹지축의 연결성을 위해 연결녹지2로 편입에 따른 시설 폐지
3	소공원	• 폐지 - 면적 : 4,414㎡	• 기존 연결녹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결녹지1로 편입하기 위해 폐지
4	소공원	• 폐지 - 면적 : 2,133㎡	• 기존 연결녹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근린공원1로 편입하기 위해 폐지
1	소공원	• 시설의 면적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 면적 : 1,183㎡ → 4,548.9㎡ 증) 3,365.9㎡ - 도면표시번호 : 소공원 5 → 소공원 1	• 공공성과 개방성을 위해 단지와 인접하여 대기와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소공원 변경 • 시설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급회 폐지되는 공원 및 변경되는 공원 번호 정정
1	근린공원	• 신설 - 면적 : 10,543.5㎡	• 주민들의 휴식 함양과 공공청사 중복결정을 위한 근린공원 신설

2)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녹지	연결녹지	중계동 산104-42 일대	3,668	감) 3,668	-	서고 2012-159 ('12.06.21.)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중계동 16-4 일대	2,445	증) 2,868.2	5,313.2	서고 2012-159 ('12.06.21.)	기정 연결녹지2
변경	2	녹지	연결녹지	중계동 25-18 일대	11,658	감) 449.5	11,208.5	서고 2012-159 ('12.06.21.)	기정 경관녹지1
폐지	1	녹지	경관녹지	중계동 39-1 일대	1,547	감) 1,547	-	서고 2012-159 ('12.06.21.)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결녹지	• 연결녹지 폐지 감) 3,668㎡	• 주민들의 휴식함양과 공공청사 증복결정을 통해 토지이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치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기 연결녹지를 폐지
1	연결녹지	• 연결녹지 면적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 면적 : 기정 2,445㎡ → 변경 5,313.2㎡ 증) 2,868.2㎡ - 도면표시번호 : 연결녹지2 → 연결녹지1	• 신설되는 근린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연결녹지의 면적 변경 • 시설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급히 폐지되는 녹지 및 변경되는 녹지 번호 정정
2	연결녹지	• 시설의 종류 및 면적 변경 - 시설의 종류 : 경관녹지1 → 연결녹지2 - 면적 : 기정 11,658㎡ → 변경 11,208.5㎡ 감) 449.5㎡	• 시설의 성격에 맞는 시설의 종류 변경과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녹지축의 연결성을 위해 소공원2의 편입 및 연결녹지의 조성기준에 맞는 적정 폭원으로 변경
1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감) 1,547㎡	• 주민들의 휴식함양과 공공청사 증복결정을 통해 토지이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치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기 경관녹지를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중계동 산104-42일대	1,131	감) 1,131	- (2,427.2㎡)	서고 2012-159 ('12.6.21.)	• 공원하부 중복결정 - 층수 지하1층~지하3층 • 관리청 : 노원구청

- ※ 공공청사는 노원구청으로 귀속되며, 노원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면적총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의 면적은 지하 공간에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임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1	공공청사	20% 이하	-	지하1층~지하3층	연면적 3,300㎡ 이하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위치 : 중계동 27-58 일대 → 중계동 산104-42일대 • 용적률 변경 : 200%이하 → - • 건폐율 변경 : 60%이하 → 20%이하	• 공원의 입체화를 통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시설 중복결정을 적 용

2)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사회 복지시설	중계동 산104-42일대	1,131	감) 1,131	- (2,427.2㎡)	서고 2012-159 ('12.6.21.)	• 공원하부 중복결정 - 층수 지하1층~지하3층 • 관리청 : 노원구청

- ※ 사회복지시설은 노원구청으로 귀속되며, 노원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면적총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의 면적은 지하 공간에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임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1	사회복지시설	20% 이하	-	지하1층~지하3층	연면적 1,250㎡ 이하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 위치 : 중계동 27-58 일대 → 중계동 산104-42일대 • 용적률 변경 : 200%이하 → - • 건폐율 변경 : 60%이하 → 20%이하	• 공원의 입체화를 통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시설 증복결정을 적용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 지	합 계	146,329	증) 5,561.3	151,890.3	80.8	-
	A1	102,730	증) 48,815.3	151,545.3	80.6	공동주택용지
	A2	40,832	감) 40,832.0	-	-	주거지보전용지
	C1	443	감) 443.0	-	-	근린생활시설용지
	C2	444	감) 444.0	-	-	
	D1	1,131	감) 1,131.0	-	-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용지
	E1	749	감) 749.0	-	-	유치원용지
	F1	-	증) 345.0	345.0	0.2	종교용지

※ 비율은 전체 정비구역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A1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폐지	허용용도 A2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폐지	허용용도 C1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폐지	허용용도	C2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신설)	
폐지	허용용도	D1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둑, 사목에 해당하는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폐지	허용용도	E1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신설	허용용도	F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 고
A1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3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60% 이하	
F1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60% 이하	종교용지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기준완화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A1	기정	200% 이하				• 특별경관관리(우수디자인)를 통해 용적률 200% 확보
	변경	150% 이하	161.29% 이하	193.25% 이하	223.49% 이하	
F1	신설	200%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 고
	특별경관관리 우수디자인	공공보행통로	돌봄시설	방재안전	
기정	20%	-	-	-	총 20%
변경	-	7.14%	3.84%	5.00%	총 15.98%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토지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	임대주택 지분 면적	건축물 환산부지	임대주택 환산부지	
신설	15.54%	3.67%	5.01%	6.03%	총 30.24%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 고
A1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20층이하(60m)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105.00m이하(35층 이하)	
F1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7층 이하	종교용지

다. 건축물 배치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기정	근린생활시설용지(C1,C2), 공공청사(D1), 유치원용지(E1)	• 건축한계선 : 도로에 접하는 경계부 2m
변경	공동주택용지(A1)	• 건축한계선 : 획지 내 경계부로부터 3m
	종교용지(F1)	• 건축한계선 : 도로에 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라. 경관계획(배치·형태포함)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각 획지 (공동주택용지)	• 건폐율을 고려한 대상지 내 적절한 통풍, 채광, 개방감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 • 생활가로를 향해 열려 있는 가로친화형 주동 배치
건물 진출입구		•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차가 발생하는 지점에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
건축물의 외부형태		• 주변의 경관을 고려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입면 다양화
재료 및 색채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조명계획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계획
스카이라인		• 불암산의 7부능선을 넘지 않고, 서울시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계획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도서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제어내용
기정	C1,C2,D1,E1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A1	공공보행통로	• 구간 1 - 중계동 27-6 ↔ 중계동 22-45 - 폭원 3.5m 이상, 연장 490m • 구간 2 - 중계동 27-6 ↔ 중계동 29-13 - 폭원 3.5m 이상, 연장 184m • 구간 3 - 중계동 산104-33 ↔ 중계동 29-41 - 폭원 3.5m 이상, 연장 186m	기존 등산로를 활용한 생태하천수로 조성과 연계하여 공공보행기능을 갖는 보행통로 확보
변경	A1, F1	전면공지	• A1 : 획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 F1 :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A1	공공보행통로	• 구간 1 - 소공원1 ↔ 연결녹지2 - 폭원 25m 이상, 연장 288m	대상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열린 경관을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제어내용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노원구)	제공하고, 기존 등산로 등과 연계된 녹지축과의 연결성 강화

2) 환경관리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2~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 2~3등급, 도로, 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2.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기존 시가지 상태로 주변 녹지가 미미한 상태임	•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 녹지평가지표 1등급으로 계획됨	-
3.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동식물상 보호	○	• 현존식생은 경작지, 도로, 시가지지역, 아까시나무림이며, 생태·자연도 2, 3등급으로 조사됨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생물서식공간 마련	-
	자연환경 보전	○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4.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노후주택지역으로 주변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사업 대상지 다수 위치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주거 유형별 계획적 관리	-
5.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 지장물 철거 및 공사장비를 통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계획 수립	-
6.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최저표고 45m, 최고표고 112m • 평균경사 11.0° •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 서울화강암 • 대부분 70%이상~90%미만	• 부지계획고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절성토고를 최소화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7.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30% 이상 계획	-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30%이상 계획 - 저영향개발(LID) 적용 검토	-
8.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수질현황(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만족) -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 운영시 계획인구에 의한 오수발생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지역 '한강' 유역에 해당	- 공사시 토사유출저감대책 수립 (유출지하수저감대책, 침사지 설치) - 운영시 상수공급계획, 오수수 처리 계획 수립 (저영향개발계획 등)	-
9. 바람	바람길 확보	○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10. 열	열환경 환경 최소화	○	- 열환경 공간 유형 조사 -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해당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11.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PM-2.5제외 모든 항목 대기환경기준 이내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영향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살수, 가설방진망 등)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친환경 보일러, 녹지조성 등)	-
12.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온실가스 전년대비 감소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폐기물 재활용, 등) - 운영시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13. 에너지	에너지 절약	○	- 대상지는 황함유량 0.1%이하의 경유 및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사용지역에 해당함 - 향후 에너지사용량 증가	-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의 반영	-
14.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생활·건설폐기물·폐유 및 분뇨 발생 예상 -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뇨발생 저감대책 수립	-
15.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현재 교통소음 영향 지역 - 공사시 소음영향이 예상 -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공사시 소음저감방안 수립(저소음장비, 가설 방음판넬 등)	-
16. 경관	Skyline 보전	○	도심지 경관이며 근거리에 시가지경관, 산림녹지경관이 위치함	- 건축물 색채 및 식재계획 수립 - 열린 경관 확보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17.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노원구 관내에 공원,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위치 - 대상지와 인근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이 위치함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주민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공동이용시설 등 마련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8.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지형적 단차가 큰 지역에 위치한 노후된 주거지역 및 급경사 구릉지 - 사업대상지 북측 주거지에서 일조피해가 예상됨	- 건축물 적정 이격거리를 설정한 위치선정 - 건축물 주변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 관련법을 준수한 건축계획 수립	-
19. 보행친화공간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대상지 서측 중계로가가, 하계역, 상계역이 위치해 도로망을 형성	- 주변가로 및 교차로 구조 개선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20. 인구 및 주거	인구 고려한 계획	○	인구밀도 감소, 고령자수 증가 추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개발로 인해 상주인구 증가 및 생활권 접근성 향상	-

3)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의무임대주택 건설계획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 전체세대수 : 3,178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480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 3,178세대의 15%이상 : 3,178세대 × 15% = 477세대 이상 < 480세대 계획 - 전체 연면적 기준 10%이상에 해당하는 연면적 : 577,344.34㎡ × 10% = 57,734.43㎡ < 57,815.57㎡ 계획 -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전체 임대주택(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체 임대주택 565세대 × 30% = 170세대 이상 < 188세대 - 주택 전체 세대수 3,178세대 × 5% = 159세대 이상 < 188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480	15.10%	100.0%
40㎡ 이하	188	5.92%	39.2%
50~60㎡ 이하	292	9.19%	60.8%

4)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주변 가로 및 교차로	-	주변 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 : 5개소
	㉠	- 사업지 입구 교차로(①우암타운앞)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방안 개선 - 교통섬 축소를 통한 차로변경구간 개선 - 우회전 가각 회전반경 개선 : R=6.0 → 10.0m
	㉡	- 교통섬 조정 및 보도채움을 통한 우회전차로 개선 - 우회전 선형 개선 : 직선 → 곡선 - 교원식횡단보도 및 일반 횡단보도 설치
	① ㉢ ㉣ ㉤ ㉥ ㉦ ㉧ ㉨	- 버스차고지 미운영으로 인한 교차로 폐쇄 - 공동주택 부출입구(EL+71.7) 개설에 따른 교차로 신설 (㉢신설교차로) - 기하구조 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 중계로 방면 좌우회전 분리 -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 신호운영방안 제시 - 가속완화차로 설치(B=3m, L=32m(테이퍼 12m포함)) - 감속완화차로 설치(B=3.25m, L=36m(테이퍼 12m포함)) - 공동주택 부출입구(EL+58.5) 개설에 따른 교차로 신설 (㉤신설교차로) - 기하구조 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 중계로 방면 좌우회전 분리 -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 신호운영방안 제시 - 가속완화차로 설치(B=3.0m, L=115m(테이퍼 17m포함)) - 감속완화차로 설치(B=3m, L=52m(테이퍼 12m포함))
진출입 동선	-	- 내부 가로별 운영방안 제시 - 도시계획도로 - 중로1-449호선 : 21.0~23.0m(왕복5차로) - 소로1-A호선 : 10.0m(왕복2차로) - 소로3-A호선 : 6m(일방1차로)
	-	- 내부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신호 교차로 운영 : 1개소 (㉢신설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공공청사 출입구 교원식 교차로 설치) - 그 외 비신호교차로 운영(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 교차로)
	-	사업지 내부 교차로 및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보 : R=6.0m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㉔	○ 공동주택 용지 주차장 진출입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3개소																										
	㉕	○ 중로2-A호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대중 교통 보행 및 자전거	-	○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 2개 교차로 (㉔신설교차로, ㉕신설교차로)																										
	-	○ 자전거 주차시설(보관소) 법정주차의 20%이상 설치																										
	-	○ 버스노선 추가 및 배차간격 조정 건의																										
	㉖	○ 버스정류장(중계본동종점) 정차면 설치 : 4면 - 중계본동 주민센터 방면 정차면 북측으로 이전(L=8.0m) 및 보도일부 채움																										
	㉗	○ ㉔신설교차로 버스정류장 신설(방향별 1개소) - 남→북 방향 정류장 버스베이 설치																										
	-	○ 버스정류장 신설 및 이설 관련 세부설계 완료 후 관계기관 (서울시 버스정책과, 교통행정과 등) 협의																										
	-	○ 사업부지 내·외에 택시승차대를 신설·이설(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 협의																										
대중 교통 보행 및 자전거	-	○ 도시계획도로로 보도 및 보행공간 확보 - 중로1-449호선 · 보도 B=2.25 ~ 4.5m(양측) - 소로1-A호선 · 보도 : B=1.5m(양측) - 소로3-A호선 · 보도 B=2.5 ~ 3.65m(양측)																										
	-	○ 건축선 후퇴를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장물 설치 금지																										
	-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서울시 가로설계 관리 매뉴얼」, 「보도공사 설계 시 공매뉴얼」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설계·시공																										
	-	○ 횡단보도 턱낮춤은 전체 폭 턱낮춤 및 무단차로 조성 (단차높이 : 0 cm)																										
	-	○ 자전거 주차시설(보관소) 설치 - 총 48개소(동별 1개소 이상 설치) ○ 자전거 주차시설(보관소) 부대시설 설치 - 자전거 주차시설은 프레임류음형 형태로 설치하고, 흰색노면마킹으로 주차공간 영역표시 - 자전거 주차장시설에는 훼손방지용 CCTV, 공기주입기,안내표지판 설치																										
주차 시설	-	○ 주차장 동선체계 수립 - 양방향통행 운영(일부 구간 일방 운영) -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순환형 동선체계 구축 및 막다른 곳 회차공간 확보																										
	-	○ 주차수급 계획 - 공동주택 총 4,551대 확보 · 법정주차대비 130.4%, 수요대비 126.4% - 기타시설 용지 개별 건축시 법정주차 이상의 주차 계획대수 확보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주거시설 용지</th><th rowspan="2">합계</th></tr><tr><th>공동주택</th><th>기타시설</th></tr><tr><td>법정주차</td><td>3,491</td><td>26</td><td>3,517</td></tr><tr><td>주차수요</td><td>3,601</td><td>28</td><td>3,629</td></tr><tr><td>계획주차</td><td>4,551</td><td>26</td><td>4,577</td></tr><tr><td>법정대비</td><td>130.4%</td><td>100.0%</td><td>-</td></tr><tr><td>수요대비</td><td>126.4%</td><td>92.9%</td><td>-</td></tr></table>	구분	주거시설 용지		합계	공동주택	기타시설	법정주차	3,491	26	3,517	주차수요	3,601	28	3,629	계획주차	4,551	26	4,577	법정대비	130.4%	100.0%	-	수요대비	126.4%	92.9%	-
구분	주거시설 용지			합계																								
	공동주택	기타시설																										
법정주차	3,491	26	3,517																									
주차수요	3,601	28	3,629																									
계획주차	4,551	26	4,577																									
법정대비	130.4%	100.0%	-																									
수요대비	126.4%	92.9%	-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	○ 법정기준의 유형별 주차면수 확보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주거시설 용지</th><th rowspan="2">합계 (대)</th><th rowspan="2">비율 (%)</th></tr><tr><th>공동주택</th><th>기타시설</th></tr><tr><td>일반</td><td>2,695</td><td>22</td><td>2,717</td><td>59.48</td></tr><tr><td>확장형</td><td>1,722</td><td>4</td><td>1,726</td><td>37.78</td></tr><tr><td>장애인</td><td>124</td><td>1</td><td>125</td><td>2.74</td></tr><tr><td>합계</td><td>4,541</td><td>27</td><td>4,568</td><td>-</td></tr><tr><td>친환경주차</td><td>459</td><td>-</td><td>459</td><td>-</td></tr><tr><td>가족배려</td><td>504</td><td>-</td><td>504</td><td>-</td></tr></table>	구분	주거시설 용지		합계 (대)	비율 (%)	공동주택	기타시설	일반	2,695	22	2,717	59.48	확장형	1,722	4	1,726	37.78	장애인	124	1	125	2.74	합계	4,541	27	4,568	-	친환경주차	459	-	459	-	가족배려	504	-	504	-
	구분	주거시설 용지		합계 (대)	비율 (%)																																		
		공동주택	기타시설																																				
	일반	2,695	22	2,717	59.48																																		
	확장형	1,722	4	1,726	37.78																																		
장애인	124	1	125	2.74																																			
합계	4,541	27	4,568	-																																			
친환경주차	459	-	459	-																																			
가족배려	504	-	504	-																																			
-	○ 주차장 램프 적정 폭원 및 경사 확보 - 공동주택 용지 · 램프폭원 : 7.0m(직선형, 2차로), 7.0m(곡선형, 2차로) · 램프경사 : 13.21 ~ 16.95%(직선형, 2차로), 9.42 ~ 14.65%(곡선형, 2차로)																																						
-	○ 첨단안내시스템 구축 - 주차안내시스템(PIS) 및 주차유도시스템(PGS)구축																																						
-	○ 주차장 내부 편의 및 안전시설 확보 - 공동주택 용지 · 차량경보등 설치: 42개소 · 반사경 설치: 57개소 · EV 충전시설 설치 : 240개소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어린이버스 전용 주차차 공간 확보 : 3개소 - 공동주택 주출입구: 2개 - 공동주택 부출입구(LV+71.7): 1개																																						
교통 안전 및 기타	- ㉔ ㉓ ㉒	○ 사업지 외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중계로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L=553m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35개소 -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 L=961m - 과속방지턱 설치 : 1개소 - 반사경 설치 : 4개소																																					
	㉑	○ 유치원용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중계행복어린이집’ 과 통합하여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유색포장 설치 : L=777m -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 L=961m -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표지판 설치 : 29개소 -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	○ 사업지 입구 교차로(①우암타운앞)안전시설 설치 -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III. 2025년 제3차('2025.04.24.)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구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반영여부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1. 용적을 산정식 재검토하여 고시바람	재검토 및 오류 정정 - 기정 : 0.4089 → 변경 : 0.7073	반영
		2. 근린공원-공공청사 중복결정은 공공 공간 접도를, 공동주택단지 경계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계획 검토 바람	- 근린공원은 불암산, 단지, 타부지로 위요되어 기존 접도를 확보에 제약이 있었으나 공공성, 접근성 극대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 접도율을 최대한 확보하였음 -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청사 우측 공원 진입부 확보, 청사 내 공원 진입부 확장 및 공원 서측 진입부 추가로 공원 진입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였음	부분반영
		3. 인센티브 항목인 공공보행통로는 방향과 공공성을, 열린단지는 실효성 고려하여 적용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는 불암산의 자연경관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동 동선을 제공하고, 단지 내 시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열린단지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성을 통해 도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본 대상지는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미적용하였음	반영
		4. 입주민을 고려하여 주택 단지를 관통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구역 남측불암산 근린공원 등산로로 이동하는 경로를 계획 바람	불암산 근린공원의 등산로는 중계로 및 남측의 연결녹지(연결녹지 2)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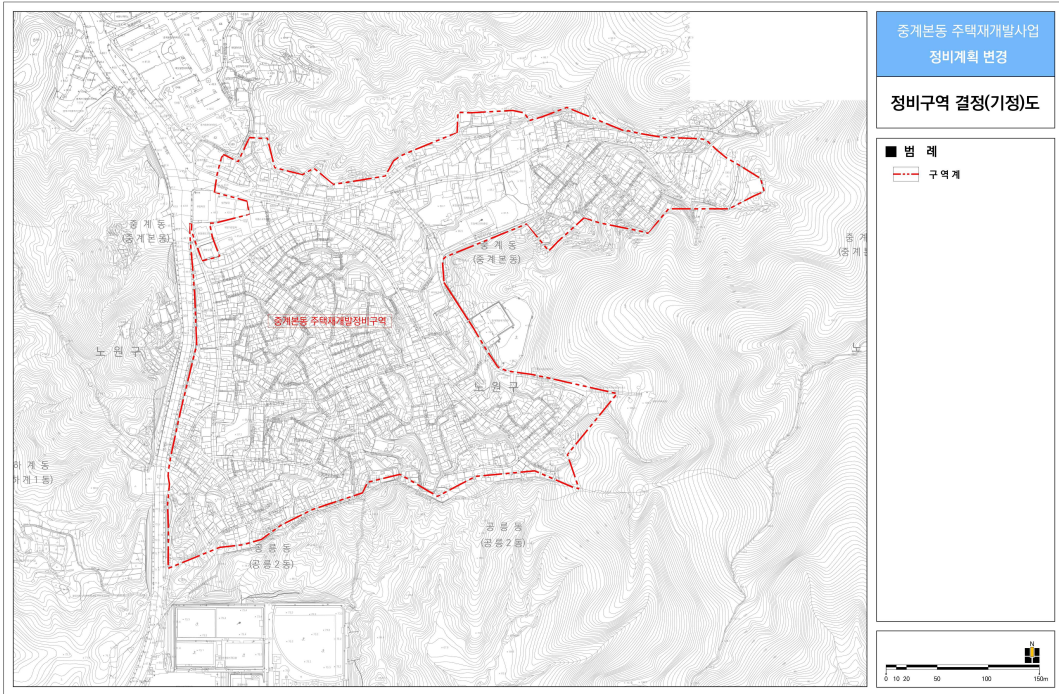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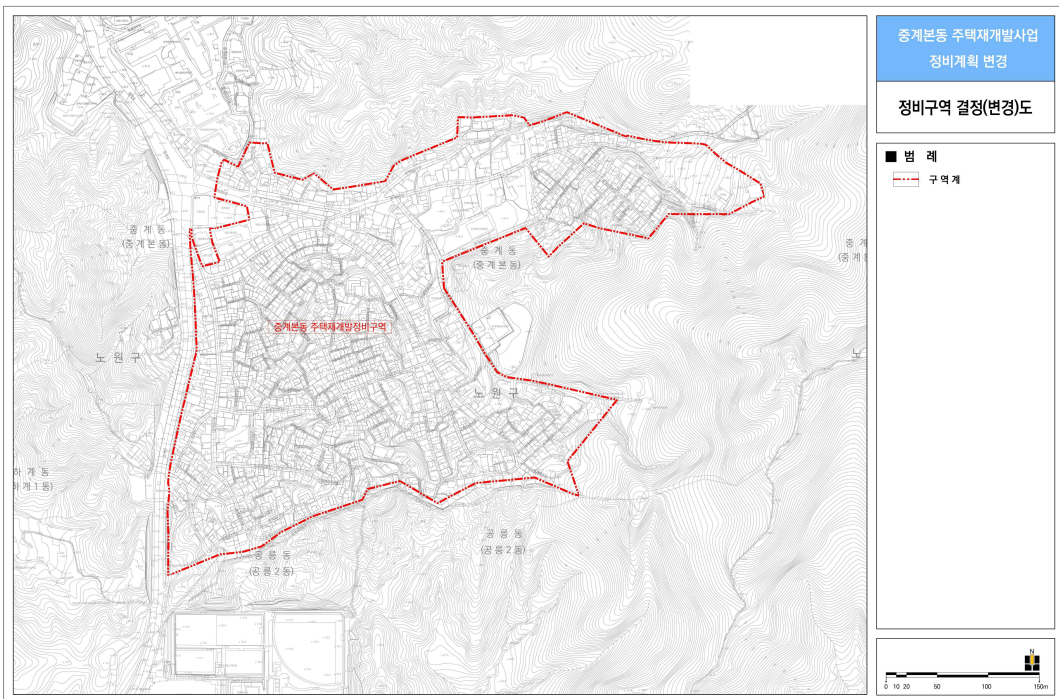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52), 노원구 재건축사업과(☎02-2116-3918)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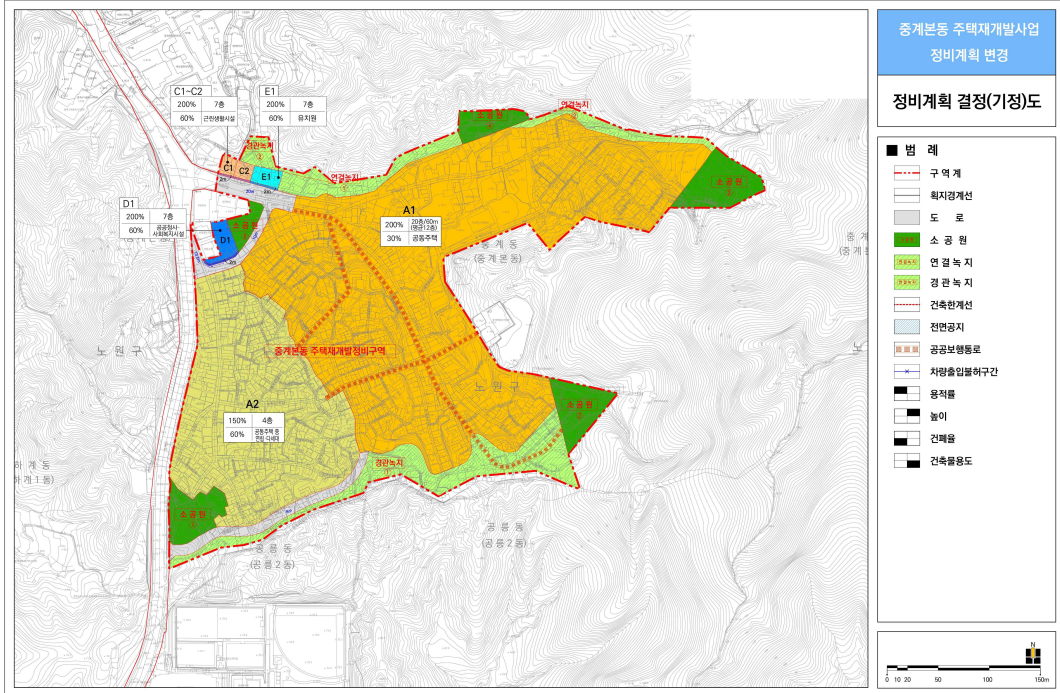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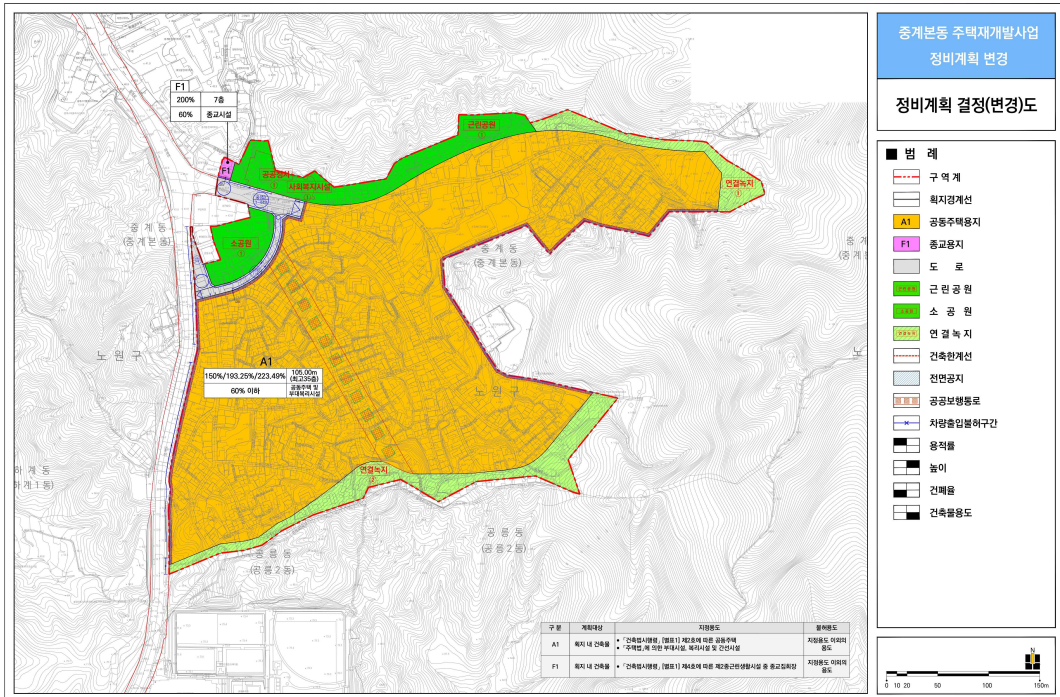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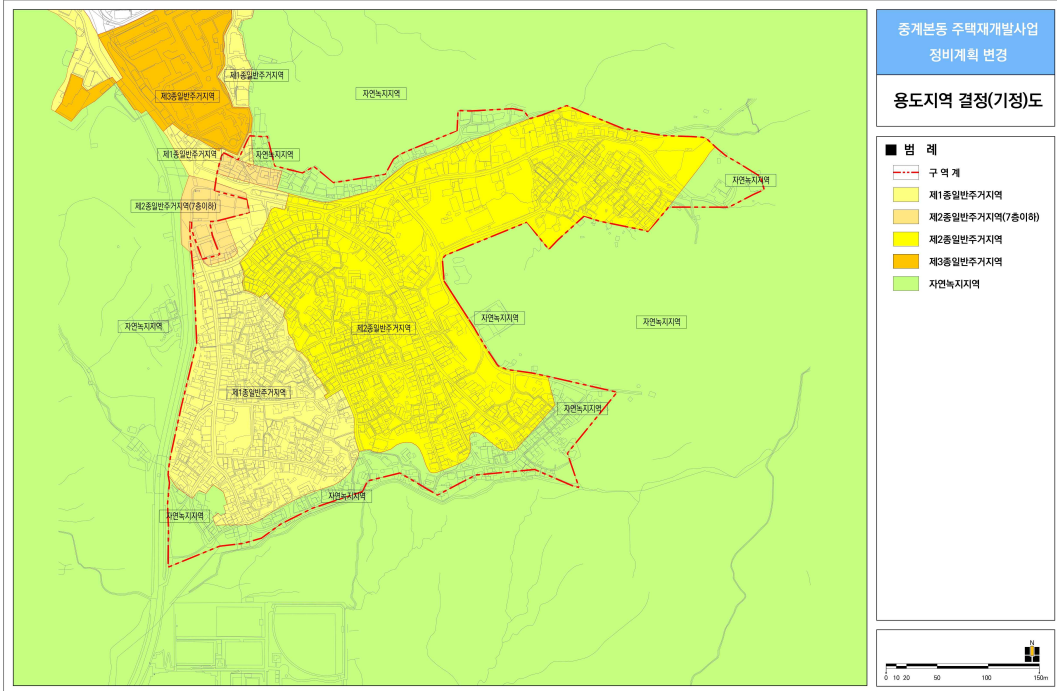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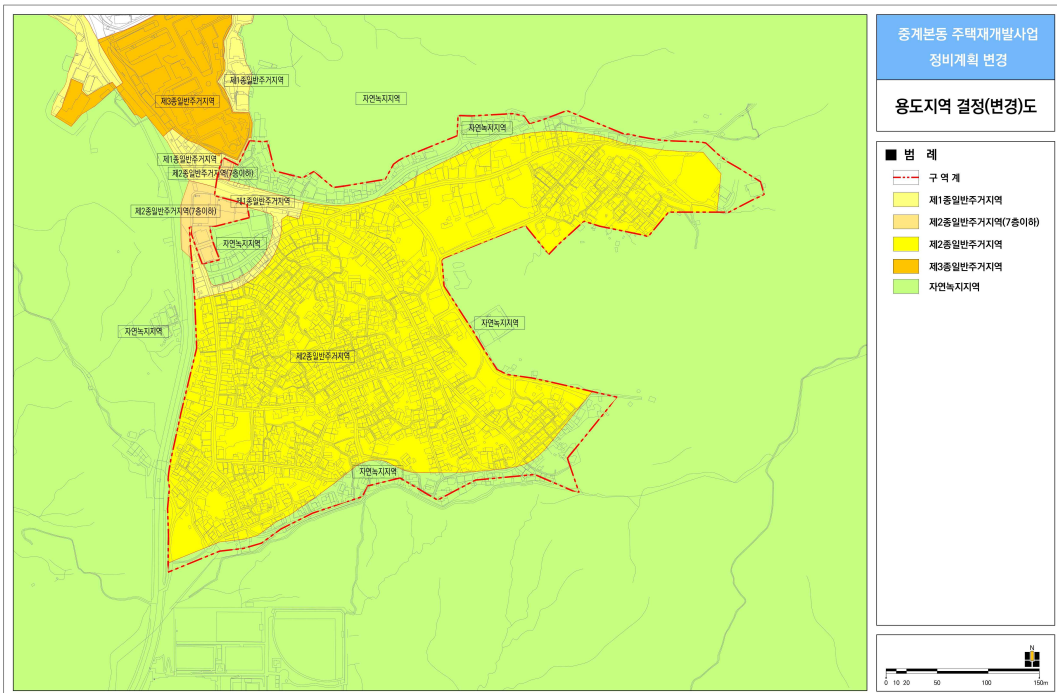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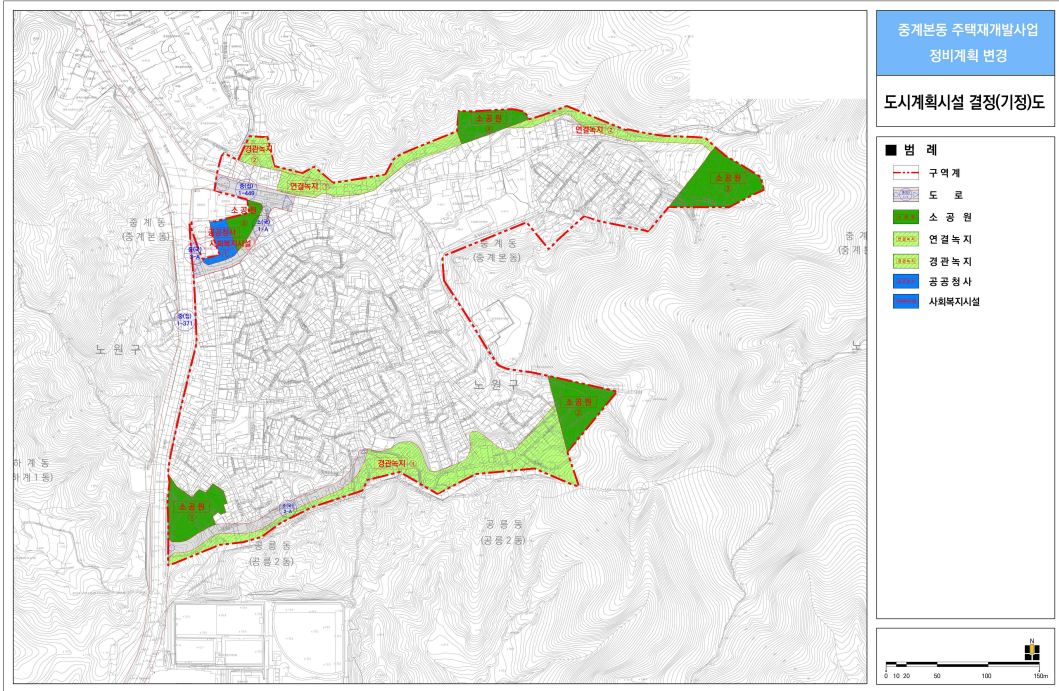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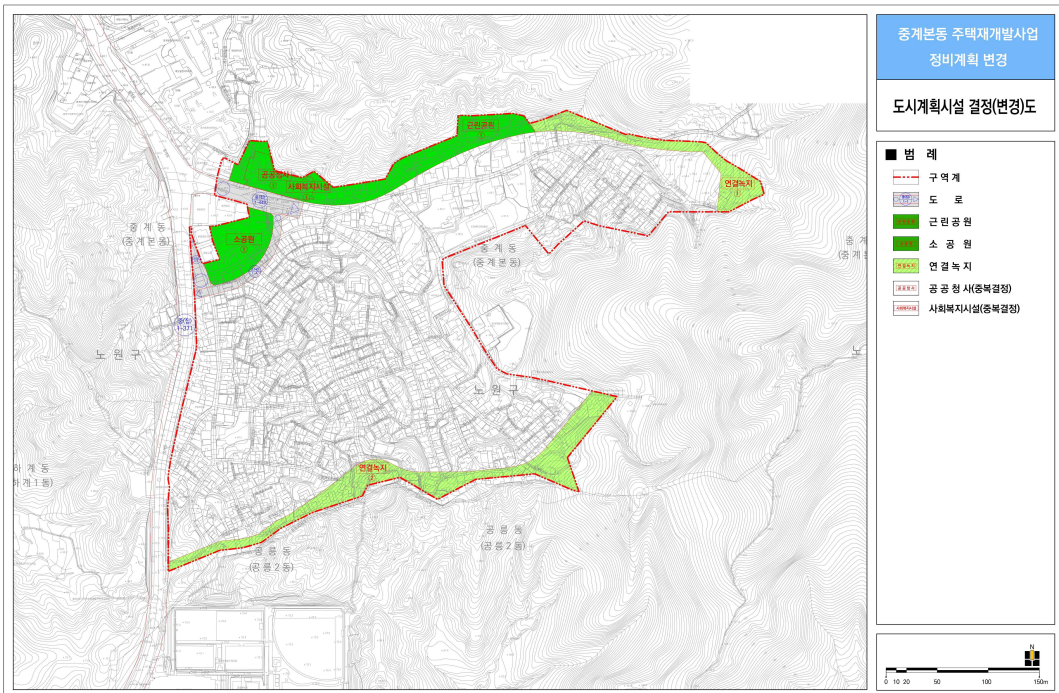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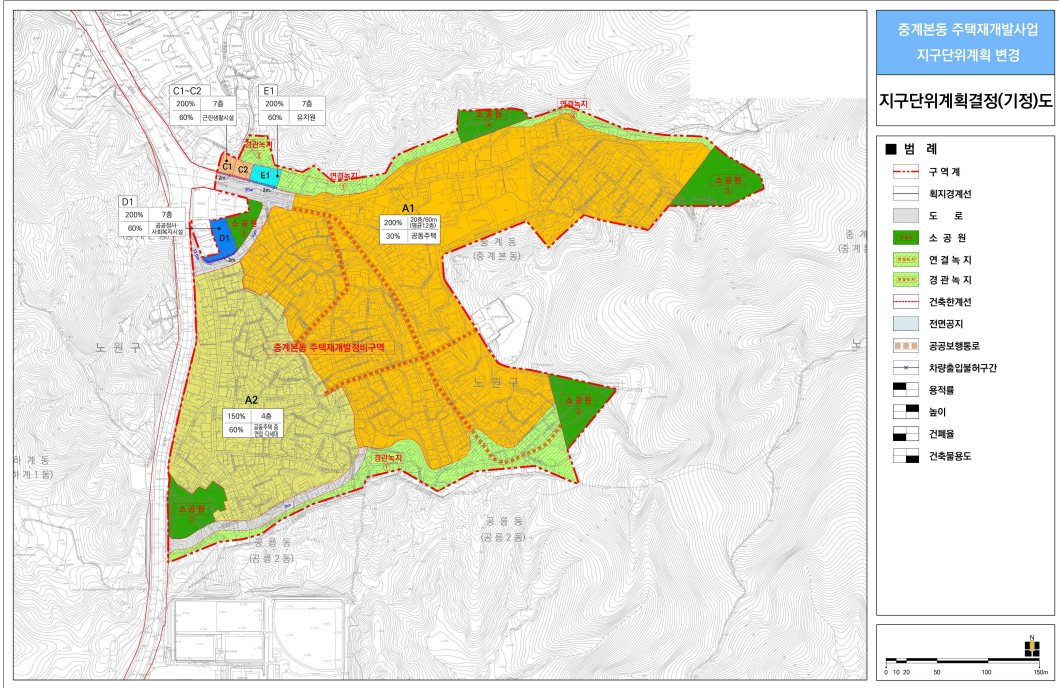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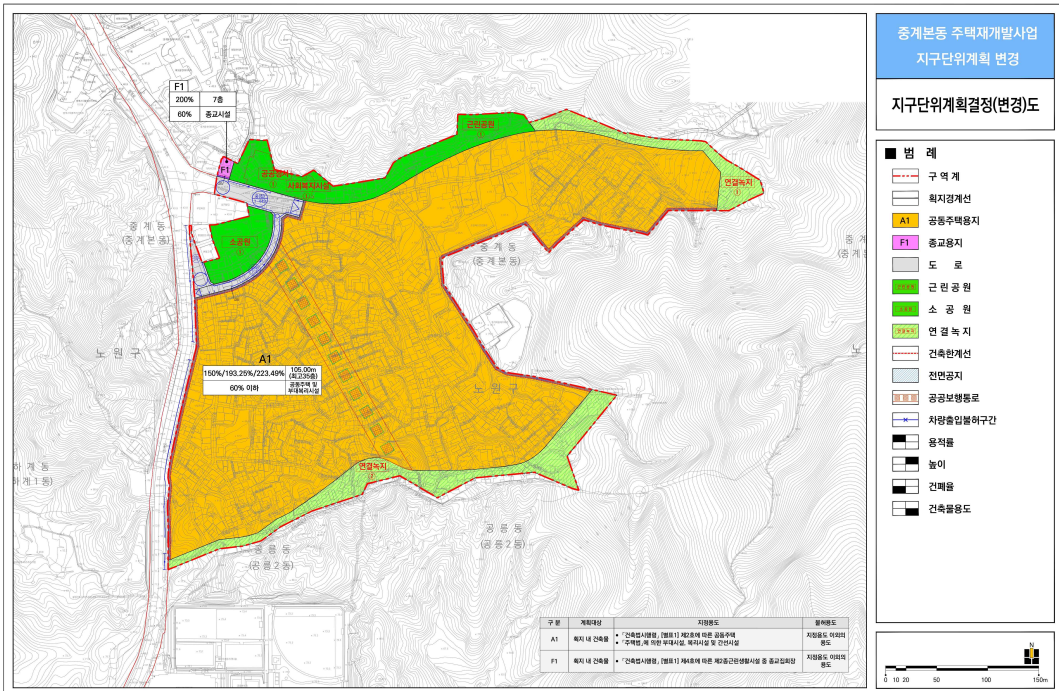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5호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0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5-361호(2025.07.0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공원 내 훼손된 무단경작지를 생태적으로 회복하고, 자연과 도시농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여가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69-482 일대(용마산근린공원)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02-2094-2356)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마산근린공원 총괄표 (위치 : 광진구 중곡4동 176-110 일대, 중랑구 망우동 산69-482 일대)

구	분	변				경				변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원 시설 지구	계	866,067.90	279,520.86	11,938.39	24,042.14		677	866,067.90	284,403.60	45	12,331.39	24,435.14		703
	소계	866,067.90	279,520.86	11,938.39	24,042.14		677	866,067.90	284,403.60	45	12,331.39	24,372.14		703
	1지구	318,449.90	110,754.53	7,578.50	15,575.50		152	318,449.90	115,637.27	22	7,971.50	15,968.50		178
	2지구	70,709.30	24,283.68	1,452.00	4,876.00		44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3지구	199,712.30	45,854.41	2,132.53	2,712.70		303	199,712.30	45,854.41	10	2,132.53	2,712.70		303
	4지구	15,283.80	7,566.61	-	-		6	15,283.80	7,566.61	-	-	-		6
	5지구	39,077.00	13,966.66	144.48	122.44		25	39,077.00	13,966.66	2	144.48	122.44		25
	6지구	148,569.50	46,952.22	630.88	755.50		99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구	단	경				전				변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공작물 (기)	
	7지구	74,266.10	30,142.75	-	-	48			74,266.10	30,142.75	-	48	
	시 설 을 (보정 40%)	(279,520.86 / 866,067.90) × 100 = 32.27%					(284,403.60 / 866,067.90) × 100 = 32.83%						
	건 폐 을 (보정 10%)	(11,938.39 / 866,067.90) × 100 = 1.38%					(12,331.39 / 866,067.90) × 100 = 1.42%						

1-1. 용마산근린공원 1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69-482 일대, 망우지구, 구 보육원지구, 서일대지구, 배밭지구)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318,449.90	110,754.53	7,578.50	18	15,575.50	152	318,449.90	115,637.27	22	7,971.50	15,968.50	178	증 4,882.74㎡
기 반 시 설	33,391.91	33,391.91	-	-	-	-	35,747.32	35,747.32	-	-	-	-	증 2,355.41㎡
	27,367.69	27,367.69	-	-	-	-	29,578.81	29,578.81 (1,064.9)	-	-	-	-	증 2,211.12㎡
	6,024.22	6,024.22	-	-	-	-	6,168.51	6,168.51	-	-	-	-	증 144.29㎡
조경시설	31,640.13	31,640.13	-	-	-	12	31,744.00	31,744.00	-	-	-	12	증 103.87㎡
휴양시설	11,252.80	11,252.80	120.00	1	120.00	66	11,431.11	11,431.11	1	120.00	120.00	87	증 178.31㎡
유흥시설	606.85	606.85	-	-	-	2	715.19	715.19	-	-	-	5	증 108.34㎡
운동시설	9,875.01	9,875.01	375.00	1	450.00	46	9,854.84	9,854.84	1	375.00	450.00	46	감 20.17㎡

구	경 전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등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등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작물 영 (기)						교작물 영 (기)
교양시설	4,534.31	4,534.31	3	3,969.00	11,358.00	4	4,534.31	3	3,969.00	11,358.00	4
편익시설	12,469.24	12,469.24	8	2,348.00	2,510.00	-	12,469.24	8	2,348.00	2,510.00	-
관리시설	837.50	837.50	5	766.50	1,137.50	16	904.00	8	829.50	1,200.50	18
도시농업시설	6,146.78	6,146.78	-	-	-	6	8,237.26	1	330.00	330.00	6
복지 및 기타	207,695.37	-	-	-	-	-	202,812.63	-	-	-	-
											증 66.50㎡
										</	

1-2. 용마산근린공원 망우지구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18,449.90	110,754.53	-	18	7,578.50	15,575.50	152			318,449.90	115,637.27	-	22	7,971.50	15,968.50	178			
	소 계		33,391.91	33,391.91	-	-	-	-	-			35,742.32	35,742.32	-	-	-	-	-	중 2,355.41㎡		
		도 로		27,367.69	27,367.69 (1,064.9)	-	-	-	-	-			29,578.81	29,578.81 (1,064.9)	-	-	-	-	-	중 2,211.12㎡	
	광장	가	20개소	6,024.22	6,024.22	-	-	-	-	-	가	23개소	6,168.51	6,168.51	-	-	-	-	-	중 144.29㎡	
		가-1	망우동 산69-1임	(777.91)	(777.91)	-	-	-	-	-	가-1	망우동 산69-1임	(777.91)	(777.91)	-	-	-	-	-		
		가-2	망우동 산69-1임	(491.18)	(491.18)	-	-	-	-	-	가-2	망우동 산69-1임	(491.18)	(491.18)	-	-	-	-	-		
가-3		망우동 산69-1임	(391.23)	(391.23)	-	-	-	-	-	가-3	망우동 산69-1임	(391.23)	(391.23)	-	-	-	-	-			
	가-7	망우동 산69-1임	(239.05)	(239.05)	-	-	-	-	-	가-7	망우동 산69-1임	(239.05)	(239.05)	-	-	-	-	-			
	가-4	망우동 산69-1임	(1,077.80)	(1,077.80)	-	-	-	-	-	가-4	망우동 산69-1임	(1,077.80)	(1,077.80)	-	-	-	-	-			
	가-6	망우동 산69-482임	(532.34)	(532.34)	-	-	-	-	-	가-6	망우동 산69-482임	(532.34)	(532.34)	-	-	-	-	-			
	기 반 시 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가-5	망우동 산69-482임	(82.31)	(82.31)	-	-	-	-	-	-
	가-8	망우동 산69-1임	(62.00)	(62.00)	-	-	-	-	-	-
	가-9	망우동 산69-508공	(177.00)	(177.00)	-	-	-	-	-	-
	가-10	망우동 산69-508공	(13.00)	(13.00)	-	-	-	-	-	-
	가-11	망우동 산69-203공	(27.00)	(27.00)	-	-	-	-	-	-
	가-12	망우동 산69-203공	(729.00)	(729.00)	-	-	-	-	-	-
	가-13	망우동 산69-203공	(315.00)	(315.00)	-	-	-	-	-	-
	가-14	면목동 산9-1공 외	(83.00)	(83.00)	-	-	-	-	-	-
	가-15	면목동 산5-1공	(16.00)	(16.00)	-	-	-	-	-	-
	가-16	면목동 산17-2	(140.23)	(140.23)	-	-	-	-	-	-
	가-17	면목동 산19	(41.33)	(41.33)	-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담면적	연면적	
		가-1 8	면목동 산17-2	(239.61)	(239.61)	-	-	-	-	가-1 8	면목동 산17-2	(239.61)	(239.61)	-	-	-	-	-	-
		가-1 9	면목동 33-1	(255.23)	(255.23)	-	-	-	-	가-1 9	면목동 33-1	(255.23)	(255.23)	-	-	-	-	-	-
		가-2 0	면목동 산33-3 외	(334.00)	(334.00)	-	-	-	-	가-2 0	면목동 산33-3 외	(334.00)	(334.00)	-	-	-	-	-	-
										가-21	면목동 산23-3과 외	(64.63)	(64.63)	-	-	-	-	신설	
										가-22	면목동 산23-3과	(37.71)	(37.71)	-	-	-	-	신설	
										가-23	면목동 산23-4과	(41.95)	(41.95)	-	-	-	-	신설	
소계				31,640.13	31,640.13	-	-	-	12			31,744.00	31,744.00	-	-	-	12	증 103.87㎡	
조경시설		나	3개소	1,080.80	1,080.80	-	-	-	-	나	3개소	1,080.80	1,080.80	-	-	-	-	-	
		나-1	망우동 산69-1임	(815.30)	(815.30)	-	-	-	-	나-1	망우동 산69-1임	(815.30)	(815.30)	-	-	-	-	-	-
		나-2		(61.00)	(61.00)	-	-	-	-	나-2		(61.00)	(61.00)	-	-	-	-	-	-
캐스케이드		나-3		(204.50)	(204.50)	-	-	-	-	나-3		(204.50)	(204.50)	-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하부원	다	망우동 산69-1임	2,749.11	2,749.11	-	-	-	-	다	망우동 산69-1임	2,749.11	2,749.11	-	-	-
	라	7개소	7,812.25	7,812.25	-	-	-	-	라	7개소	7,812.25	7,812.25	-	-	-
	라-1	망우동 산69-1임	(770.94)	(770.94)	-	-	-	-	라-1	망우동 산69-1임	(770.94)	(770.94)	-	-	-
	라-2	망우동 산69-1임	(3,869.83)	(3,869.83)	-	-	-	-	라-2	망우동 산69-1임	(3,869.83)	(3,869.83)	-	-	-
	라-3	망우동 산69-508	(1,353.85)	(1,353.85)	-	-	-	-	라-3	망우동 산69-508	(1,353.85)	(1,353.85)	-	-	-
	라-4	망우동 산69-508	(141.63)	(141.63)	-	-	-	-	라-4	망우동 산69-508	(141.63)	(141.63)	-	-	-
	라-5	망우동 산69-508	(176.31)	(176.31)	-	-	-	-	라-5	망우동 산69-508	(176.31)	(176.31)	-	-	-
	라-6	면목동 산9-1	(1,257.69)	(1,257.69)	-	-	-	-	라-6	면목동 산9-1	(1,257.69)	(1,257.69)	-	-	-
미당	커-5	면목동 산33-3 외	(242.00)	(242.00)	-	-	-	-	커-5	면목동 산33-3 외	(242.00)	(242.00)	-	-	-
	마	3개소	124.26	124.26	-	-	-	-	마	3개소	124.26	124.26	-	-	-
	마-1	망우동 산69-1임	(45.00)	(45.00)	-	-	-	-	마-1	망우동 산69-1임	(45.00)	(45.00)	-	-	-

구분	변경						변경						비고				
	전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마-2	망우동 산69-1임	(30.76)	(30.76)	-	-	-	-	-	마-2	망우동 산69-1임	(30.76)	(30.76)	-	-	-	-
	마-3	망우동 산69-482임	(48.50)	(48.50)	-	-	-	-	-	마-3	망우동 산69-482임	(48.50)	(48.50)	-	-	-	-
	돌담	바	망우동 산69-1임	79.86	79.86	-	-	-	-	바	망우동 산69-1임	79.86	79.86	-	-	-	-
잔디광장	사	망우동 산69-482임	1,575.00	1,575.00	-	-	-	-	-	사	망우동 산69-482임	1,575.00	1,575.00	-	-	-	-
화목원	저	면목동 산33-3 외	17,293.09	17,293.09	-	-	-	-	-	저	면목동 산33-3 외	17,293.09	17,293.09	-	-	-	-
돌병1	차-1	면목동 산33-3 외	36.04	36.04	-	-	-	-	-	차-1	면목동 산33-3 외	36.04	36.04	-	-	-	-
돌병2	차-2	면목동 산33-3 외	42.77	42.77	-	-	-	-	-	차-2	면목동 산33-3 외	42.77	42.77	-	-	-	-
저류습지	차-3	면목동 산33-3 외	218.10	218.10	-	-	-	-	-	차-3	면목동 산33-3 외	218.10	218.10	-	-	-	-
빗물습지1	차-4	면목동 산33-3 외	36.05	36.05	-	-	-	-	-	차-4	면목동 산33-3 외	36.05	36.05	-	-	-	-
빗물습지2	차-5	면목동 산33-3 외	29.00	29.00	-	-	-	-	-	차-5	면목동 산33-3 외	29.00	29.00	-	-	-	-
전망데크	커-1	면목동 산33-3 외	76.52	76.52	-	-	-	-	-	커-1	면목동 산33-3 외	76.52	76.52	-	-	-	-
관촬데크	커-2	면목동 산33-3 외	8.70	8.70	-	-	-	-	-	커-2	면목동 산33-3 외	8.70	8.70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정미원	커-3	면목동 산33-3 외	270.00	270.00	-	-	-	-	-	-							
	커-4	면목동 산33-3 외	197.08	197.08	-	-	-	-	-	-							
	㉑	면목동 산33-3 외	11.50	11.50	-	-	-	-	-	3							
	㉒	면목동 산33-3 외	-	-	-	-	-	-	-	2							
	㉓	면목동 산33-3 외	-	-	-	-	-	-	-	5							
통나무의자	㉔	면목동 산33-3 외	-	-	-	-	-	-	-	2							
	㉕	면목동 산33-3 외	-	-	-	-	-	-	-	5							
그루터기의자	㉖	면목동 산33-3 외	-	-	-	-	-	-	-	2							
	건천			103.87						-	신설						
한양시설	소계		11,252.80	11,252.80	연외조	1	120.00	120.00	66	11,431.11	11,431.11	연외조	1	120.00	120.00	87 증 178.31㎡	
	캠핑장	아	망우동 산69-1임	6,477.03	6,477.03	-	-	-	-	아	망우동 산69-1임	6,477.03	6,477.03	-	-	-	-
	쉼터	자	33개소	4,775.77	4,775.77	-	-	-	-	자	40개소	4,718.75	4,718.75	-	-	-	-
		자-1	망우동 산69-1임	(73.20)	(73.20)	-	-	-	-	자-1	망우동 산69-1임	(73.20)	(73.20)	-	-	-	-
		자-2	망우동 산69-1임	(82.20)	(82.20)	-	-	-	-	자-2	망우동 산69-1임	(82.20)	(82.20)	-	-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자-3	망우동 산69-1임	(150.00)	(150.00)	-	-	-	-	-	자-3	망우동 산69-1임	(150.00)	(150.00)	-	-	-	-	-	-
	자-4	망우동 산69-1임	(127.26)	(127.26)	-	-	-	-	-	자-4	망우동 산69-1임	(127.26)	(127.26)	-	-	-	-	-	-
	자-5	망우동 산69-1임	(203.78)	(203.78)	-	-	-	-	-	자-5	망우동 산69-1임	(203.78)	(203.78)	-	-	-	-	-	-
	자-6	망우동 산69-1임	(12.00)	(12.00)	-	-	-	-	-	자-6	망우동 산69-1임	(12.00)	(12.00)	-	-	-	-	-	-
	자-7	망우동 산69-1임	(12.00)	(12.00)	-	-	-	-	-	자-7	망우동 산69-1임	(12.00)	(12.00)	-	-	-	-	-	-
	자-8	망우동 산69-1임	(22.50)	(22.50)	-	-	-	-	-	자-8	망우동 산69-1임	(22.50)	(22.50)	-	-	-	-	-	-
	자-9	망우동 산69-1임	(730.50)	(730.50)	-	-	-	-	-	자-9	망우동 산69-1임	(730.50)	(730.50)	-	-	-	-	-	-
	자-1 0	망우동 산69-1임	(87.31)	(87.31)	-	-	-	-	-	자-1 0	망우동 산69-1임	(87.31)	(87.31)	-	-	-	-	-	-
	자-1 1	망우동 산69-1임	(94.50)	(94.50)	-	-	-	-	-	자-1 1	망우동 산69-1임	(94.50)	(94.50)	-	-	-	-	-	-
	자-1 2	망우동 산69-1임	(188.52)	(188.52)	-	-	-	-	-	자-1 2	망우동 산69-1임	(188.52)	(188.52)	-	-	-	-	-	-
자-1 3	망우동 산69-1임	(63.11)	(63.11)	-	-	-	-	-	자-1 3	망우동 산69-1임	(63.11)	(63.11)	-	-	-	-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자-1 4	망우동 산69-508	(843.00)	(843.00)	-	-	-	-	-	자-1 4	망우동 산69-508	(843.00)	-	-	-	-	-
	자-1 5	망우동 산69-508	(132.00)	(132.00)	-	-	-	-	-	자-1 5	망우동 산69-508	(132.00)	-	-	-	-	-
	자-1 6	망우동 산69-203	(74.00)	(74.00)	-	-	-	-	-	자-1 6	망우동 산69-203	(74.00)	-	-	-	-	-
	자-1 7	면목동 9-5	(356.00)	(356.00)	-	-	-	-	-	자-1 7	면목동 9-5	(356.00)	-	-	-	-	-
	자-1 8	면목동 9-5	(21.00)	(21.00)	-	-	-	-	-	자-1 8	면목동 9-5	(21.00)	-	-	-	-	-
	자-1 9	면목동 산8-1	(14.50)	(14.50)	-	-	-	-	-	자-1 9	면목동 산8-1	(14.50)	-	-	-	-	-
	자-2 0	면목동 산8-1	(40.00)	(40.00)	-	-	-	-	-	자-2 0	면목동 산8-1	(40.00)	-	-	-	-	-
	자-2 1	면목동 산4	(14.50)	(14.50)	-	-	-	-	-	자-2 1	면목동 산4	(14.50)	-	-	-	-	-
	자-2 2	면목동 산5-1	(43.00)	(43.00)	-	-	-	-	-	자-2 2	면목동 산5-1	(43.00)	-	-	-	-	-
	자-2 3	면목동 산19	(271.76)	(271.76)	-	-	-	-	-	자-2 3	면목동 산19	(134.07)	-	-	-	-	변경
	자-2 4	면목동 산19	(213.23)	(213.23)	-	-	-	-	-	자-2 4	면목동 산19	(202.00)	-	-	-	-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자-2 5	면목동 산1-25외	(242.34)	(242.34)	-	-	자-2 5	면목동 산1-25외	(242.34)	(242.34)	-	-	-
	자-2 6	면목동 산1-50	(98.80)	(98.80)	-	-	자-2 6	면목동 산1-50	(98.80)	(98.80)	-	-	-
	자-2 7	면목동 산29-5	(21.00)		-	-	자-2 7	면목동 산1-3	(401.93)		-	-	3
	자-2 8	면목동 산29-8	(38.17)		-	-	자-2 8	면목동 산29-5	(21.00)		-	-	-
	자-2 9	면목동 산1-3	(401.93)		-	-	자-2 9	면목동 산29-8	(38.17)		-	-	-
	자-3 0	면목동 산33-3 외	(44.16)				자-3 0	면목동 산33-3 외	(44.16)				
	자-3 1	면목동 산33-3 외	(30.00)				자-3 1	면목동 산33-3 외	(30.00)				
	자-3 2	면목동 산33-3 외	(18.00)				자-3 2	면목동 산33-3 외	(18.00)				
	자-3 3	면목동 산33-3 외	(11.50)				자-3 3	면목동 산33-3 외	(11.50)				
								자-34	면목동 산16-8외	(28.77)	(28.77)		
							자-35	면목동 산23-3 과	(9.62)	(9.62)			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노인정	1	망우동신69-1	168.00	168.00	연외조	1	120.00	120.00	-	
	①	전지역	-	-	-	-	-	-	-	6
	②	전지역	-	-	-	-	-	-	-	31
	③	전지역	-	-	-	-	-	-	-	30
	④	전지역	-	-	-	-	-	-	-	5
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양희시설	팔각정	⑥	면목동 산19	-	-	-	-	1	⑥	면목동 산19	-	-	-	-	-	1	
	조정	⑮	면목동 산33-3 외	-	-			1	⑮	면목동 산33-3 외	-	-				1	
	데크								퍼	면목동 산23-3과	67.33	67.33					신설
	원형 파고라								⑩	면목동 산23-3과 외						6	신설
	테이블								⑱	면목동 산16-8임						1	신설
	앉음벽								⑩	면목동 산23-3과 외						2	신설
	스탠드								㉑	면목동 산16-8임						1	신설
	소계			606.85	606.85	-	-	-	2		715.19	715.19	-	-	-	5	증 108.34㎡
	모함의숲	차	산69-1임	276.18	276.18	-	-	-	-	차	산69-1임	276.18	276.18	-	-	-	-
어린이놀이터	카	2개소	330.67	330.67	-	-	-	-	카	3개소	439.01	439.01	-	-	-	-	
	카-1	망우동 산69-203	(137.00)	(137.00)	-	-	-	-	카-1	망우동 산69-203	(137.00)	(137.00)	-	-	-	-	

유 의 시 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동시청	배드민턴장	카-2	면목동 31-25외	(193.67)	(193.67)	-	-	-	-	카-2	면목동 31-25외	(193.67)	(193.67)	-	-	-	-	-	
										카-3	면목동 산23-3과	(108.34)	(108.34)						
	조합놀이대	㉠	면목동 31-25외	-	-	-	-	-	1	㉠	면목동 31-25외	-	-	-	-	-	-	1	
		㉡	면목동 31-25외	-	-	-	-	-	1	㉡	면목동 31-25외	-	-	-	-	-	-	1	
	숲속 놀이기구									㉢	면목동 산23-3과							3	
소계			9,875.01	9,875.01	-	1	375.00	46				9,854.84	9,854.84	-	1	375.00	450.00	46	감 20.17㎡
배드민턴장	타			-	-	-	-	-	-			-	-	-	-	-	-	-	-
		2개소	1,205.12	1,205.12	-	-	-	-	-	타	2개소	1,205.12	1,205.12	-	-	-	-	-	
	타-1	망우동 산69-1	(631.62)	(631.62)	-	-	-	-	-	타-1	망우동 산69-1	(631.62)	(631.62)	-	-	-	-	-	-
	타-2	망우동 산69-508	(573.50)	(573.50)	-	-	-	-	-	타-2	망우동 산69-508	(573.50)	(573.50)	-	-	-	-	-	-
골프 연습장	파	망우동 산69-1외	6,350.00	6,350.00	철근조	1	375.00	450.00	-	파	망우동 산69-1외	6,350.00	6,350.00	철근조	1	375.00	450.00	-	-

안민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게이트물장	하	망우동 산69-508	423.00	423.00	-	-	-	-	-	-				
	거	망우동 산69-508	1,441.50	1,441.50	-	-	-	-	-	-				
채력단원장	너	6개소	455.39	455.39	-	-	18	너	6개소	455.39	455.39	-	-	18
	너-1	망우동 산69-508	(85.00)	(85.00)	-	-	4	너-1	망우동 산69-508	(85.00)	(85.00)	-	-	4
	너-2	망우동 산69-508	(5.00)	(5.00)	-	-	1	너-2	망우동 산69-508	(5.00)	(5.00)	-	-	1
	너-3	망우동 산69-508	(48.00)	(48.00)	-	-	3	너-3	망우동 산69-508	(48.00)	(48.00)	-	-	3
	너-4	면목동 산19	(53.13)	(53.13)	-	-	-	너-4	면목동 산19	(32.96)	(32.96)	-	-	-
	너-5	면목동 31-50	(86.23)	(86.23)	-	-	-	너-5	면목동 31-50	(86.23)	(86.23)	-	-	-
	너-6	면목동 산29-8	(98.03)	(98.03)	-	-	4	너-6	면목동 산29-8	(98.03)	(98.03)	-	-	4
북한문사설	너-7	면목동 산33-3 외	(80.00)	(80.00)	-	-	6	너-7	면목동 산33-3 외	(80.00)	(80.00)	-	-	6
	⑨	면목동 산19	-	-	-	-	1	⑨	면목동 산19	-	-	-	-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규모	시설면적 (㎡)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체력단련시설	㉠	전지역	-	-	-	-	19	전지역	-	-	-	-	19							
	소계			4,534.31	4,534.31	-	3,969.00	11,358.00	4		4,534.31	-	3,969.00	11,358.00	4						
	디자인전시관	2	망우동 산69-1임	3,077.00	3,077.00	철골	1	2,988.00	10,196.00	-	2	망우동 산69-1임	3,077.00	철골	1	2,988.00	10,196.00	-			
	온실	3	망우동 산69-1임	812.00	812.00	철골	1	800.00	800.00	-	3	망우동 산69-1임	812.00	철골	1	800.00	800.00	-			
	하느 체험관	4	망우동 산69-1임	187.00	187.00	-	1	181.00	362.00	-	4	망우동 산69-1임	187.00	-	1	181.00	362.00	-			
	신도비	더	망우동 산69-1임	50.97	50.97	-	-	-	-	더	망우동 산69-1임	50.97	-	-	-	-	-	-			
	자연 학습장	러	망우동 산69-203	306.00	306.00	-	-	-	-	러	망우동 산69-203	306.00	-	-	-	-	-	-			
	생태학습원	러-1	면목동 산33-3 외	101.34	101.34	-	-	-	-	러-1	면목동 산33-3 외	101.34	-	-	-	-	-	-			
	숲속놀이대	12	숲속놀이대	-	-	-	-	-	1	숲속놀이대	-	-	-	-	-	-	-	-	1		
	소계			12,469.24	12,469.24	-	8	2,348.00	2,510.00	-		12,469.24	-	8	2,348.00	2,510.00	-	-			
편의시설	주차장	머	8개소	9,949.40	9,949.40	-	-	-	-	머	8개소	9,949.40	-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마-1	산69-482임	(1,094.02)	(1,094.02)	-	-	-	-	마-1	산69-482임	(1,094.02)	(1,094.02)	-	-	-	-	-	-	-
	마-2	산69-482임	(1,056.12)	(1,056.12)	-	-	-	-	마-2	산69-482임	(1,056.12)	(1,056.12)	-	-	-	-	-	-	-
	마-3	산69-1임	(507.31)	(507.31)	-	-	-	-	마-3	산69-1임	(507.31)	(507.31)	-	-	-	-	-	-	-
	마-4	산69-1임	(1,025.96)	(1,025.96)	-	-	-	-	마-4	산69-1임	(1,025.96)	(1,025.96)	-	-	-	-	-	-	-
	마-5	산69-1임	(655.05)	(655.05)	-	-	-	-	마-5	산69-1임	(655.05)	(655.05)	-	-	-	-	-	-	-
	마-6	산69-1임	(3,159.65)	(3,159.65)	-	-	-	-	마-6	산69-1임	(3,159.65)	(3,159.65)	-	-	-	-	-	-	-
	마-8	산69-486임	(1,101.55)	(1,101.55)	-	-	-	-	마-8	산69-486임	(1,101.55)	(1,101.55)	-	-	-	-	-	-	-
	마-7	산69-485임	(1,349.74)	(1,349.74)	-	-	-	-	마-7	산69-485임	(1,349.74)	(1,349.74)	-	-	-	-	-	-	-
음수장	버	2개소	56.90	56.90	-	-	-	-	버	2개소	56.90	56.90	-	-	-	-	-	-	-
	버-1	망우동 산69-508	(8.40)	(8.40)	-	-	-	-	버-1	망우동 산69-508	(8.40)	(8.40)	-	-	-	-	-	-	-
	버-2	망우동 산69-203	(48.50)	(48.50)	-	-	-	-	버-2	망우동 산69-203	(48.50)	(48.50)	-	-	-	-	-	-	-
일반 음식점	5	2개소	2,013.00	2,013.00	-	2	1,966.00	2,128.00	-	5	2개소	2,013.00	2,013.00	-	2	1,966.00	2,128.00	-	-
	5-1	산69-482임	(1,838.00)	(1,838.00)	철골조	(1)	(1,804.00)	(1,804.00)	-	5-1	산69-482임	(1,838.00)	(1,838.00)	철골조	(1)	(1,804.00)	(1,804.00)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게음식점	5-2	산69-1임	(175.00)	(175.00)	철골조	(1)	(162.00)	(324.00)	-	5-2	산69-1임	(175.00)	(175.00)	철골조	(1)	(162.00)	(324.00)	-	
	6	2개소	305.00	305.00	-	2	255.00	255.00	-	6	2개소	305.00	305.00	-	2	255.00	255.00	-	
	6-1	산69-1임	(79.00)	(79.00)	연와조	(1)	(45.00)	(45.00)	-	6-1	산69-1임	(79.00)	(79.00)	연와조	(1)	(45.00)	(45.00)	-	
	6-2	산69-1임	(226.00)	(226.00)	철골조	(1)	(210.00)	(210.00)	-	6-2	산69-1임	(226.00)	(226.00)	철골조	(1)	(210.00)	(210.00)	-	
화장실	7		144.94	144.94	철골조	4	127	127	-	7		144.94	144.94	철골조	4	127	127	-	
	7-1	산69-482임	(72.90)	(72.90)	철골조	(1)	(65.00)	(65.00)	-	7-1	산69-482임	(72.90)	(72.90)	철골조	(1)	(65.00)	(65.00)	-	
	7-2	망우동 산69-508	(28.50)	(28.50)	-	(1)	(28.50)	(28.50)	-	7-2	망우동 산69-508	(28.50)	(28.50)	-	(1)	(28.50)	(28.50)	-	
	7-3	면목동 31-50	(28.04)	(28.04)		(1)	(18.00)	(18.00)	-	7-3	면목동 31-50	(28.04)	(28.04)		(1)	(18.00)	(18.00)	-	
관리시설	7-4	망우동 113-13	(15.5)	(15.5)		(1)	15.5	15.5	-	7-4	망우동 113-13	(15.5)	(15.5)		(1)	15.5	15.5	-	
	소계			837.50	837.50	-	5	766.50	1,137.50	16		904.00	904.00	-	8	829.50	1,200.50	증 66.50㎡	
	8	5개소	837.50	837.50	-	5	766.50	1,137.50	-	8	5개소	837.50	837.50	-	5	766.50	1,137.50	-	
	관리시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8-1	망우동 산69-1입	(131.00)	(131.00)	철골조	(120.00)	(120.00)	-	8-1	망우동 산69-1입	(131.00)	(131.00)	철골조	(120.00)	(120.00)	-
	8-2	망우동 산69-1입	(193.00)	(193.00)	라멘조	(140.00)	(280.00)	-	8-2	망우동 산69-1입	(193.00)	(193.00)	라멘조	(140.00)	(280.00)	-
	8-3	망우동 산69-1입	(316.00)	(316.00)	라멘조	(309.00)	(540.00)	-	8-3	망우동 산69-1입	(316.00)	(316.00)	라멘조	(309.00)	(540.00)	-
	8-4	망우동 산69-1입	(178.00)	(178.00)	연외조	(178.00)	(178.00)	-	8-4	망우동 산69-1입	(178.00)	(178.00)	연외조	(178.00)	(178.00)	-
	8-5	망우동 산69-508	(19.50)	(19.50)	-	(19.50)	(19.50)	-	8-5	망우동 산69-508	(19.50)	(19.50)	-	(19.50)	(19.50)	-
근로자 휴게소								허	면목동 산16-8입	21.00	21.00	-	21.00	21.00	-	신설
차재창고								고	면목동 산16-8입	42.00	42.00	-	42.00	42.00	-	신설
관정								㉔	면목동 산16-8입	-	-	-	-	-	1	
농기구보관함								모	면목동 산16-8입	3.50	3.50	-	-	-	1	신설
도시 농업 시설	소계		6,146.78	6,146.78	-	-	6			8,237.26	8,237.26	-	1	330.00	330.00	증 2,090.4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도시 텃밭	서	망우동 113-13 외	6,146.78	6,146.78	-	-	망우동 113-13 외	6,146.78	6,146.78	-	-	-	-	-	6	
							면목동 산16-8임	1,358.84	1,358.84	-	-	-	-	-		
원예 체험장							노	401.64	401.64	-	-	-	-	-		신설
스마트팜							도	330.00	330.00	파이프 조	1	330.00	330.00			신설
소계			207,695.37	-	-	-		202,812.63	-	-	-	-	-	-	-	
누지 및 기타			207,695.37	-	-	-		202,812.63	-	-	-	-	-	-	-	감 4,882.74㎡

1-3. 용마산근린공원 망우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8,665.00	27,367.69 (1,064.9)				
변경					11,310.65	29,578.81 (1,064.9)				
당초	소로	계			2,718.50	16,147.49 (1,064.9)				
당초					131.7	1,185.30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2	
당초					9.0					
당초					9.0	855.36	연결로	광장 가-2	광장 가-3	
당초					7.0	211.19	연결로	소로 3-20	광장 가-7	
당초					3.0	102.69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7	
당초	소로	3-1	3-2	7.0	149.2	1,044.61	연결로	주차장 머-1	광장 가-6	
당초					7.0					
당초					7.0	1,044.05	연결로	광장 가-6	주차장 머-5	
당초					7.0					
당초					7.0	2,355.01	연결로	광장 가-7	소로 3-13	
당초					6.0	994.50	연결로	소로 3-5	광장 가-1	

구 분	구분 비고	류 별	변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류	3-7	3.0	28.5	85.47	연결로	쉽터 자-1	소로 3-6	
당 초		3류	3-8	3.0	27.6	82.77	연결로	광장 가-1	소로 3-13	
당 초		3류	3-9	3.0	25.0	74.94	연결로	광장 가-1	소로 3-13	
당 초		3류	3-10	3.0	95.9	287.55	산책로	하브원 라-2	하브원 라-2	
당 초		3류	3-11	3.0	41.5	124.38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0	
당 초		3류	3-12	3.0	49.5	148.53	연결로	소로 3-13	하브원 라-2	
당 초		3류	3-13	7.0	305.2	2,136.40	진입로	광장 가-3	공원경계	
당 초		3류	3-14	3.5	33.7	117.81	연결로	쉽터 자-3	하브원 라-2	
당 초		3류	3-15	7.0	105.8	740.88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4	
당 초		3류	3-16	7.0	40.2	281.12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당 초		3류	3-17	4.0	41.1	164.52	연결로	주차장 더-6	디자인 전시관 2	
당 초		3류	3-18	4.0~8.0	242.0	1,641.00	산책로	소로 3-13	소로 3-17	
당 초		3류	3-19	7.0	45.7	320.04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4	

구 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류	3-20	5.5~8.5	68.5	(440.60)	도시계획도로			
당초		3류	3-21	5.6	16.50	92.40	진입로	공원경계	신책로 27	
당초		3류	3-22	5.6	14.00	72.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9	
당초		3류	3-23	3.0	97.00	313.00	연결로	광장 가-9	쉼터 자-14	
당초		3류	3-24	6.0	104.0	(624.30)	도시계획도로			
당초		3류	3-25	1.0~3.0	68.0	115.0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당초		3류	3-26	1.0	14.0	14.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류	3-27	3.5	163.1	478.0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신책로	계			5,946.50	11,219.90				
변경					8,592.15	13,431.32				
당초			1	2.0	3.0	6.00	연결로	소로 3-3	주차장 마-2	
당초			2	2.0	116.8	233.68	신책로	소로 3-7	소로 3-6	
당초			3	2.0	40.8	81.58	연결로	캠핑장 아	광장 가-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단초			4	1.5	19.2	28.77	연결로	소로 3-4	산책로 5	
단초			5	2.0	128.2	256.32	연결로	쉼터 자-9	주차장 머-5	
단초			6	1.5	3.7	5.48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단초			7	1.5	3.0	4.47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단초			8	1.5	2.6	3.92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단초			9	1.5	4.5	6.75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단초			10	1.5	25.4	38.07	연결로	쉼터 자-13	소로 3-5	
단초			11	1.5	39.9	59.79	연결로	주차장 머-6	소로 3-12	
단초			12	1.2	25.0	30.05	연결로	쉼터 자-3	소로 3-14	
단초			13	1.2	25.0	30.05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단초			14	1.2	25.0	30.05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단초			15	1.2	25.0	30.05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단초			16	1.2	10.9	13.06	연결로	소로 3-14	하브원 라-2	

구 분	구분 비고	관 리 부 문	변호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7	1.2	25.1	30.06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초			18	1.2	25.1	30.06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초			19	1.2	25.1	30.06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초			20	2.5	20.8	52.03	연결로	주차장 머-6	소로 3-18	
당초			21	1.5	71.1	106.58	연결로	쉼터 자-8	미당 마-1	
당초			22	1.5	169.6	254.43	연결로	미당 마-1	미당 마-1	
당초			23	2.0	11.96	23.92	연결로	소로 3-18	골프연습장 파	
당초			24	2.0	302.00	604.00	연결로	허브원 라-2	쉼터 자-14	
당초			25	2.0	15.44	30.88	연결로	광장 가-8	골프연습장 파	
당초			26	2.0	7.00	14.00	연결로	광장 가-8	산책로 27	
당초			27	2.0	72.00	213.00	산책로	소로 3-21	산책로 24	
당초			28	2.5	78.00	195.00	연결로	쉼터 자-14	소로 3-22	
당초			29	2.0	107.00	214.00	산책로	쉼터 자-14	쉼터 자-14	
당초			30	1.2	8.00	96.00	연결로	축구장 거	산책로 29	

구 분	구분 비고	류 별	변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1	1.2	2.00	2.40	연결로	죽구장 거	신책로 29	
당초			32	2.0~6.0	6.50	20.00	산책로	소로 3-23	신책로 33	
당초			33	1.8	89.00	160.2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0	
당초			34	1.5	1.15	1.51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광장 가-10	
당초			35	1.2~2.5	23.30	28.64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신책로 34	
당초			36	2.0~3.0	7.70	16.50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공원경계	
당초			37	0.5~1.0	5.26	3.59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공원경계	
당초			38	2.0	13.0	26.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1	
당초			39	2.0	27.0	54.00	연결로	광장 가-11	신책로 40	
당초			40	1.5	26.5	39.75	연결로	광장 가-11	신책로 44	
당초			41	1.5	49.0	73.50	산책로	산책로 40	신책로 44	
당초			42	2.5	34.5	86.25	연결로	광장 가-11	신책로 44	
당초			43	2.5	8.0	20.00	연결로	쉽더 자-16	신책로 42	

구 분	구분 비고	리 번	변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44	2.5	288.0	720.00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44	
당초			45	2.0	54.5	109.00	연결로	산책로 44	광장 가-13	
당초			46	2.5	30.0	75.00	연결로	산책로 44	광장 가-13	
당초			47	2.5	11.0	27.50	연결로	광장 가-13	산책로 44	
당초			48	4.0	7.0	28.00	연결로	산책로 44	광장 가-13	
당초			49	2.5	7.0	17.50	산책로	산책로 44	산책로 44	
당초			50	2.0	27.5	55.00	연결로	산책로 44	쉼터 자-17	
당초			51	1.5	26.5	41.00	산책로	산책로 50	산책로 67	
당초			52	4.0	75.0	320.00	연결로	산책로 56	쉼터 자-17	
당초			53	1.5	14.0	25.00	연결로	산책로 52	쉼터 자-17	
당초			54	1.5	14.5	28.00	연결로	산책로 69	쉼터 자-17	
당초			55	1.2	5.0	6.00	연결로	쉼터 자-17	산책로 69	
당초			56	2.0	174.5	517.50	연결로	소로 3-24	광장 가-14	

구	구분	구분 비고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변 호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57	10.2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56	
당초						58	16.80	연결로	산책로 56	쉼터 자-18	
당초						59	23.00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14	
당초						60	15.00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14	
당초						61	61.80	연결로	산책로 62	광장 가-14	
당초						62	191.5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56	
당초						63	224.40	산책로	산책로 67	산책로 62	
당초						64	72.00	산책로	산책로 63	산책로 67	
당초						65	109.80	산책로	산책로 63	산책로 64	
당초						66	29.40	산책로	산책로 67	산책로 65	
당초						67	238.50	연결로	화장실 7-3	산책로 56	
당초						68	93.00	산책로	산책로 67	산책로 67	
당초						69	128.00	산책로	산책로 67	산책로 56	

구분	대표 비고	구분	변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70	4.0	19.3	80.29	연결로	진입광장 가-16	신책로 71	
변경			70	4.0-7.0	19.09	113.80	연결로	진입광장 가-16	신책로 71	
당초			71	3.0	52.8	159.02	연결로	중앙광장 가-19	중앙광장 가-18	
변경			71	3.0-4.5	188.57	827.49	연결로	중앙광장 가-18	광장 가-21	
당초			72	2.0	13.3	26.97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가-19	
당초			73	3.0	25.6	76.72	연결로	중앙광장 가-19	휴게쉼터 자-23	
폐지			73	-	-	-	-	-	-	
당초			74	2.0	98.8	198.25	연결로	중앙광장 가-18	중앙광장 가-18	
당초			75	1.5-2.0	86.1	147.77	연결로	진입광장 가-17	중앙광장 가-18	
당초			76	2.0	29.2	59.86	연결로	휴게쉼터 자-23	휴게쉼터 자-24	
폐지			76	-	-	-	-	-	-	
당초			77	2.0-3.0	470.0	1,099.64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쉼터 자-24	
변경			77	2.0-3.0	249.96	661.41	진입로	공원경계	신책로 124	

구 분	대표 비고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변 호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227.6	1.5	78	341.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77	
변 경			214.24	1.5-2.5	78	335.13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1	
당 초			14.9	1.5	79	29.6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78	
당 초			40.2	1.5	80	62.39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81	
당 초			66.4	1.5	81	103.93	연결로	쉼터 서	산책로 77	
당 초			32.0	1.0	82	32.00	연결로	산책로 77	쉼터 서	
당 초			25.6	1.0-1.8	83	35.78	연결로	산책로 77	휴게쉼터 자-26	
당 초			34.8	3.0	84	104.40	진입로	산책로 85	공원경계	
당 초			33.2	3.0	85	99.6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62.8	1.5	86	108.53	진입로	산책로 85	공원경계	
당 초			22.9	2.0	87	58.27	연결로	소로 3-27	휴게쉼터 자-27	
당 초			83.1	2.0	88	166.28	연결로	체육단관장 너-7	휴게쉼터 자-27	

구분	등급	리뷰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89	1.5	64.21	96.5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90	
당초			90	2.0	107.5	217.20	산책로	산책로 91	산책로 89	
당초			91	2.0	60.02	120.49	산책로	산책로 95	체력단련장 너-6	
당초			92	3.0	69.46	219.98	산책로	소로 3-27	광장 가-20	
당초			93	1.2	50.20	72.63	산책로	산책로 95	산책로 91	
당초			94	1.2	39.79	47.78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93	
당초			95	1.2	88.57	106.22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100	
당초			96	1.2	10.67	13.00	산책로	산책로 98	공원경계	
당초			97	1.2	45.59	54.83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98	
당초			98	1.2	116.55	134.25	산책로	산책로 93	공원경계	
당초			99	1.2	54.34	68.77	산책로	휴게실터 자-30	공원경계	
당초			100	1.2	95.44	112.89	산책로	산책로 95	산책로 101	

구	구분	면적 ㎡	연장 (m)	폭원 (m)	변호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84.26	1.2	101	102.56	산책로	산책로 101	광장 가-20	
당초			31.96	1.2	102	38.33	산책로	산책로 101	휴게쉼터 자-32	
당초			31.88	1.2	103	37.98	산책로	산책로 106	산책로 106	
당초			23.76	1.2	104	28.59	산책로	산책로 106	산책로 106	
당초			22.87	1.2	105	27.32	산책로	산책로 106	산책로 106	
당초			80.61	1.2	106	96.67	산책로	공원경계	관철데크 커-2	
당초			42.31	1.2	107	50.78	산책로	산책로 106	산책로 101	
당초			27.66	1.2	108	33.20	산책로	산책로 107	산책로 107	
당초			4.59	1.2	109	5.51	산책로	산책로 107	산책로 110	
당초			38.89	1.2	110	46.67	산책로	산책로 107	산책로 101	
당초			24.66	1.2	111	29.60	산책로	산책로 110	산책로 102	
신설			17.74	3.0	112	57.83	산책로	광장 가-21	산책로 127	

구분	디포팅	리뷰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113	2.0	65.21	133.35	산책로	신책로 127	신책로 127	
신설			114	2.0~3.0	110.96	306.38	진입로	관장 가-21	공원 경계	
신설			115	2.0	47.23	110.21	산책로	신책로 114	신책로 113	
신설			116	1.5	3.45	5.23	연결로	스미트광도	관장 가 -23	
신설			117	2.0	74.82	155.54	산책로	신책로 115	신책로 113	
신설			118	1.2	58.41	70.88	산책로	신책로 127	어린이놀이터 가-2	
신설			119	2.0	80.6	171.20	산책로	신책로 114	신책로 117	
신설			120	2.0	20.51	49.48	산책로	신책로 119	신책로 121	
신설			121	2.0	87.24	178.04	산책로	신책로 114	신책로 127	
신설			122	2.0	19.51	42.91	산책로	신책로 121	신책로 127	
신설			123	1.2	52.88	66.87	산책로	신책로 127	신책로 127	
신설			124	1.2	81.93	100.97	산책로	신책로 127	신책로 127	
신설		125	3.0	3.72	12.18	산책로	신책로 71	중앙광장 가-19		

구분	대표비고	점진률	층수	연면적 (㎡)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선로			126			8.52	신선로	신선로 7기	중영광장 가-19	
신선로			127			620.93	신선로	신선로 113	신선로 114	

2-1. 용마산근린공원 사가정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46.5, 면목약수터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계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기	소계	5,728.35	5,728.35	-	-	-	5,728.35	5,728.35	-	-	-	-	-		
		도로	4,962.18	4,962.18	-	-	-	-	4,962.18	4,962.18	-	-	-	-	-	
		광장	766.17	766.17	-	-	-	-	766.17	766.17	-	-	-	-	-	
조경시설		10,955.47	10,955.47	-	-	-	-	10,955.47	10,955.47	-	-	-	-	-		
휴양시설		625.75	625.75	-	-	-	27	625.75	625.75	-	-	-	27	-		
유흥시설		325.99	325.99	-	-	-	9	325.99	325.99	-	-	-	9	-		
운동시설		5,578.69	5,578.69	1	1,371.00	4,795.00	8	5,578.69	5,578.69	1	1,371.00	4,795.00	8	-		

구	부	경				정				비	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시설면적 (㎡)	부지면적 (㎡)	하				
				목수 (평)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목수 (평)	바닥면적 (㎡)
	교양시설	772.07	772.07	-	-	-	772.07	772.07	-	-	-	-	
		297.36	297.36	1	81.00	81.00	297.36	297.36	1	81.00	81.00	-	
복지 및 기타		46,425.62	-	-	-	-	46,425.62	-	-	-	-	-	

2-1. 용마산근린공원 2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46-5 일대, 면목약수터지구)

구	분	변				전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계	70,709.30	24,283.68	44	2	1,452.00	4,876.00	70,709.30	24,283.68	44	2	1,452.00	4,876.00	44	
	기	소계	5,728.35	5,728.35	-	-	-	-	5,728.35	5,728.35	-	-	-	-	-
		도로	4,962.18	4,962.18	-	-	-	-	4,962.18	4,962.18	-	-	-	-	-
		광장	766.17	766.17	-	-	-	-	766.17	766.17	-	-	-	-	-
조경시설		10,955.47	10,955.47	-	-	-	-	10,955.47	10,955.47	-	-	-	-	-	
휴양시설		625.75	625.75	27	-	-	-	625.75	625.75	27	-	-	-	27	
유흥시설		325.99	325.99	9	-	-	-	325.99	325.99	9	-	-	-	9	

구	경				경				경				비고
	면		전		면		전		면		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관리													
운동시설	5,578.69	5,578.69	1	1,371.00	4,795.00	8	5,578.69	5,578.69	1	1,371.00	4,795.00	8	
교양시설	772.07	772.07	-	-	-	-	772.07	772.07	-	-	-	-	
편익시설	297.36	297.36	1	81.00	81.00	-	297.36	297.36	1	81.00	81.00	-	
녹지 및 기타	46,425.62	-	-	-	-	-	46,425.62	-	-	-	-	-	

2-2. 용마산근린공원 사가정지구 시설조서

구분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70,709.30	24,283.68	-	2	1,452.00	4,876.00	44			70,709.30	24,283.68	-	2	1,452.00	4,876.00	44	
	소계		5,728.35	5,728.35	-	-	-	-	-			5,728.35	5,728.35	-	-	-	-	-	
기반시설	도로		4,962.18	4,962.18	-	-	-	-	-			4,962.18	4,962.18	-	-	-	-	-	
	가	4개소	766.17	766.17	-	-	-	-	-	가	4개소	766.17	766.17	-	-	-	-	-	
	가-1	면목동 산50-12 외 1326-152 외	(310.19)	(310.19)	-	-	-	-	-	가-1	면목동 산50-12 외 1326-152 외	(310.19)	(310.19)	-	-	-	-	-	
	가-2	면목동 산46-2	(203.83)	(203.83)	-	-	-	-	-	가-2	면목동 산46-2	(203.83)	(203.83)	-	-	-	-	-	
	가-3	면목동 산50-12 외	(108.03)	(108.03)	-	-	-	-	-	가-3	면목동 산50-12 외	(108.03)	(108.03)	-	-	-	-	-	
조경시설	가-4	면목동 산1-9	(144.12)	(144.12)	-	-	-	-	-	가-4	면목동 산1-9	(144.12)	(144.12)	-	-	-	-	-	
	소계		10,955.47	10,955.47	-	-	-	-	-			10,955.47	10,955.47	-	-	-	-	-	
계류	나	면목동 산50-20	563.97	563.97	-	-	-	-	-	나	면목동 산50-20	563.97	563.97	-	-	-	-	-	

구	분	변경						변경						비고						
		전			변			경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한양시청		다	2개소	10,391.50	10,391.50	-	-	-	-	다	2개소	10,391.50	10,391.50	-	-	-	-	-	-	-
		다-1	면목동 산46-4 외	(8,074.20)	(8,074.20)	-	-	-	-	다-1	면목동 산46-4 외	(8,074.20)	(8,074.20)	-	-	-	-	-	-	-
		다-2	면목동 산50-10외	(2,317.30)	(2,317.30)	-	-	-	-	다-2	면목동 산50-10외	(2,317.30)	(2,317.30)	-	-	-	-	-	-	-
		소계		625.75	625.75	-	-	-	-	27		625.75	625.75	-	-	-	-	-	27	-
	휴게소			-	-	-	-	-	-	-			-	-	-	-	-	-	-	-
		라	4개소	625.75	625.75	-	-	-	-	라	4개소	625.75	625.75	-	-	-	-	-	-	-
		라-1	면목동 산46-5	(121.11)	(121.11)	-	-	-	-	라-1	면목동 산46-5	(121.11)	(121.11)	-	-	-	-	-	-	-
		라-2	면목동 산46-4	(127.32)	(127.32)	-	-	-	-	라-2	면목동 산46-4	(127.32)	(127.32)	-	-	-	-	-	-	-
		라-3	면목동 산1-9	(127.32)	(127.32)	-	-	-	-	라-3	면목동 산1-9	(127.32)	(127.32)	-	-	-	-	-	-	-
		라-4	면목동 산1-9	(250.00)	(250.00)	-	-	-	-	라-4	면목동 산1-9	(250.00)	(250.00)	-	-	-	-	-	-	-
평가정	1	면목동 산1-9	-	-	-	-	-	1	면목동 산1-9	-	-	-	-	-	-	-	-	-	1	

구분	경 변 전										경 변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 회 시 설	파고라	① 전지역	-	-	-	-	-	-	4	① 전지역	-	-	-	-	-	-	-	4			
	정자	② 면목동 산46-4	-	-	-	-	-	-	1	② 면목동 산46-4	-	-	-	-	-	-	-	1			
	평일자	③ 전지역	-	-	-	-	-	-	21	③ 전지역	-	-	-	-	-	-	-	21			
	소 계		325.99	325.99	-	-	-	-	9		325.99	325.99	-	-	-	-	-	9			
	어린이 놀이터	마 2개소	325.99	325.99	-	-	-	-	-	마	2개소	325.99	325.99	-	-	-	-	-			
		마-1 면목동 산50-16	(132.32)	(132.32)	-	-	-	-	-	마-1	면목동 산50-16	(132.32)	(132.32)	-	-	-	-	-			
		마-2 면목동 산50-33	(193.67)	(193.67)	-	-	-	-	-	마-2	면목동 산50-33	(193.67)	(193.67)	-	-	-	-	-			
경사 미끄럼틀	④ 면목동 산50-33	-	-	-	-	-	-	-	1	④ 면목동 산50-33	-	-	-	-	-	-	-	1			
미끄럼틀	⑤ 면목동 산50-16	-	-	-	-	-	-	-	1	⑤ 면목동 산50-16	-	-	-	-	-	-	-	1			
놀이장	⑥ 면목동 산50-16	-	-	-	-	-	-	-	1	⑥ 면목동 산50-16	-	-	-	-	-	-	-	1			
놀이대	⑦ 면목동 산50-16	-	-	-	-	-	-	-	6	⑦ 면목동 산50-16	-	-	-	-	-	-	-	6			

구	분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민보시	소계			5,578.69	5,578.69	-	1	1,371.00	4,795.00	8			5,578.69	5,578.69	-	1	1,371.00	4,795.00	8	
	대민적 운동장	바	3개소	756.47	756.47	-	-	-	-	-	바	3개소	756.47	756.47	-	-	-	-	-	-
		바-1	면목동 산46-2	(264.00)	(264.00)	-	-	-	-	-	바-1	면목동 산46-2	(264.00)	(264.00)	-	-	-	-	-	-
		바-2	면목동 산1-9	(342.72)	(342.72)	-	-	-	-	-	바-2	면목동 산1-9	(342.72)	(342.72)	-	-	-	-	-	-
		바-3	면목동 산1-9	(149.71)	(149.71)	-	-	-	-	-	바-3	면목동 산1-9	(149.71)	(149.71)	-	-	-	-	-	-
		사	면목동 산46-5 외	1,051.75	1,051.75	-	-	-	-	-	사	면목동 산46-5 외	1,051.75	1,051.75	-	-	-	-	-	-
	다이나 트랙	아	면목동 산1-9	487.14	487.14	-	-	-	-	-	아	면목동 산1-9	487.14	487.14	-	-	-	-	-	-
	체력 단련장	자	면목동 산50-16	288.33	288.33	-	-	-	-	-	자	면목동 산50-16	288.33	288.33	-	-	-	-	-	-
	중량 문화 체육관	2	면목동 519 외	2,995.00	2,995.00	철근 콘크리트	1	1,371.00	4,795.00	-	2	면목동 519 외	2,995.00	2,995.00	철근 콘크리트	1	1,371.00	4,795.00	-	-
	체력 단련 시설	⑧	면목동 산50-16	-	-	-	-	-	-	-	⑧	면목동 산50-16	-	-	-	-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계			772.07	772.07	-	-	-	-	-	-	772.07	772.07	-	-	-	-	-
	자연 학습장	차	4개소	772.07	772.07	-	-	-	-	-	-	772.07	772.07	-	-	-	-	-
		차-1	면목동 산50-22 외	(148.89)	(148.89)	-	-	-	-	-	-	(148.89)	(148.89)	-	-	-	-	-
		차-2	면목동 산50-22 외	(237.07)	(237.07)	-	-	-	-	-	-	(237.07)	(237.07)	-	-	-	-	-
		차-3	면목동 산50-23 외	(192.46)	(192.46)	-	-	-	-	-	-	(192.46)	(192.46)	-	-	-	-	-
편의시설	소계			297.36	297.36	-	1	81.0	81.0	-	-	297.36	297.36	-	1	81.0	81.0	-
	주차장	카	2개소	147.36	147.36	-	-	-	-	-	-	147.36	147.36	-	-	-	-	-
		카-1	면목동 519	(35.92)	(35.92)	-	-	-	-	-	-	(35.92)	(35.92)	-	-	-	-	-
		카-2	면목동 519	(111.44)	(111.44)	-	-	-	-	-	-	(111.44)	(111.44)	-	-	-	-	-
		화장실	3	면목동 산1-9 외	150	150	-	1	81.0	81.0	-	3	150	150	-	1	81.0	81.0

구	분	변경				전				변경				경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 많기 단	소계			46,425.62	-	-	-	-	-				46,425.62	-	-	-	-	-	-	-
	부지			46,425.62	-	-	-	-	-				46,425.62	-	-	-	-	-	-	-

2-3. 용마산근린공원 사가정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소로	합 계			1,814.88 (75.84)	4,962.18 (859.61)				
당 초		계			500.88 (75.84)	2,244.64 (859.61)				
당 초		3류	3-1	4.0	335.27	1,341.09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4	
당 초		3류	3-2	4.0	72.46	345.02	진입로	소로 3-3	주차장 자-1	
당 초		3류	3-3	6.0	93.15	558.53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	
당 초		3류	3-1	12.0	(75.84)	(859.61)	도시계획도로			
당 초	산책로	계			1,362.62	2,717.54				
당 초			1	1.5	138.87	208.55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1	
당 초			2	1.0	36.65	36.6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 초			3	2.5	30.40	80.79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4	1.5	119.00	180.53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5	

구 분	대표 타입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5	1.5	97.52	146.85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다-3	
당초		6	2.0	4.41	8.82	연결로	광장 가-4	다목적 운동장 마-3	
당초		7	2.0	4.94	9.87	연결로	다목적 운동장 마-3	다이나믹트랙 사	
당초		8	2.0	78.85	148.99	연결로	소로 3-1	소로 3-1	
당초		9	1.8	23.61	43.99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당초		10	2.0	17.47	35.6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당초		11	1.5	12.71	19.78	연결로	소로 3-1	다목적 운동장 마-2	
당초		12	2.0	13.09	26.83	연결로	소로 3-1	다목적 운동장 마-2	
당초		13	1.5	13.02	23.52	연결로	소로 3-1	광장 가-3	
당초		14	2.5	27.15	71.19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3	
당초		15	1.8	44.84	81.62	산책로	소로 3-1	공원경계	

구 분	대표 팀명	구 번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6	1.5	10.50	15.75	연결로	소로 3-1	산책로 17	
당초		17	1.8	58.90	110.83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	
당초		18	1.5	95.51	143.86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2	
당초		19	2.5	66.62	167.46	연결로	산책로 21	휴게소 다-2	
당초		20	1.5	21.69	33.75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당초		21	2.5	112.13	280.44	연결로	공원경계	휴게소 다-2	
당초		22	2.5	77.53	193.95	연결로	공원경계	휴게소 다-2	
당초		23	3.0	49.19	151.14	연결로	소로 3-1	휴게소 다-2	
당초		24	2.0	96.80	194.97	연결로	계류 나	소로 3-1	
당초		25	3.5	15.71	56.20	연결로	산책로 21	중랑문화 응용관 2	
당초		26	1.5	6.08	9.18	연결로	소로 3-1	휴게소 다-1	

구	구분	대표 비고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답 초	답			27	1.8	13.22	26.14	연결로	소로 3-1	체력단련장 아	
	초			28	4.0	27.98	113.76	진입로	소로 3-1	-	
	초			29	2.0	48.23	96.48	연결로	광장 가-1	계류 나	

3-1. 용마산근린공원 3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1-4 일대, 채석장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반 시 설	계	199,712.30	45,854.41	10	2,132.53	2,712.70	303	199,712.30	45,854.41	10	2,132.53	2,712.70	303									
		소계	13,803.27	13,803.27	-	-	-	-	13,803.27	13,803.27	-	-	-	-								
		도로	8,844.77	8,844.77	-	-	-	-	8,844.77	8,844.77	-	-	-	-								
	광장	4,958.50	4,958.50	-	-	-	-	4,958.50	4,958.50	-	-	-	-									
조경시설	7,084.06	7,084.06	-	-	-	16	7,084.06	7,084.06	-	-	-	-	16									
	2,340.50	2,340.50	-	-	-	117	2,340.50	2,340.50	-	-	-	-	117									
유형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16,763.10	16,763.10	1	466.24	360.46	26	16,763.10	16,763.10	1	466.24	360.46	26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교양시설	3,303.58	3,303.58	2	916.39	1,602.34	17	3,303.58	3,303.58	2	916.39	1,602.34	17														
편익시설	1,847.80	1,847.80	2	113.80	113.80	4	1,847.80	1,847.80	2	113.80	113.80	4														
관리시설	712.10	712.10	5	636.10	636.10	123	712.10	712.10	5	636.10	636.10	123														
복지 및 기타	153,857.89	-	-	-	-	-	153,857.89	-	-	-	-	-	-													

3-2. 용마산근린공원 3지구 시설조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99,712.30	45,854.41	-	10	2,132.53	2,712.7	303			199,712.30	45,854.41	-	10	2,132.53	2,712.7	303				
	소계		13,803.27	13,803.27	-	-	-	-	-			13,803.27	13,803.27	-	-	-	-	-	-			
기반시설	도로		8,844.77	8,844.77	-	-	-	-	-			8,844.77	8,844.77	-	-	-	-	-	-			
	광장 가	5개소	4,958.50	4,958.50	-	-	-	-	-	가	5개소	4,958.50	4,958.50	-	-	-	-	-	-			
	광장 1 가-1	면목동 산 1-4	1,406.50	1,406.50	-	-	-	-	-	가-1	면목동 산 1-4	1,406.50	1,406.50	-	-	-	-	-	-			
	광장 2 가-2	면목동 산 1-4	688.00	688.00	-	-	-	-	-	가-2	면목동 산 1-4	688.00	688.00	-	-	-	-	-	-			
	광장 3 가-3	면목동 산 1-4	693.00	693.00	-	-	-	-	-	가-3	면목동 산 1-4	693.00	693.00	-	-	-	-	-	-			
광장 4 가-4	면목동 산 1-4	1,528.00	1,528.00	-	-	-	-	-	가-4	면목동 산 1-4	1,528.00	1,528.00	-	-	-	-	-	-	-			
광장 5 가-5	면목동 산 1-4	643.00	643.00	-	-	-	-	-	가-5	면목동 산 1-4	643.00	643.00	-	-	-	-	-	-	-			
소계			7,084.06	7,084.06	-	-	-	-	16			7,084.06	7,084.06	-	-	-	-	-	16			
조경시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인공 폭포	나-1	면목동 산 1-4	2,853.00	2,853.00	-	-	-	-	-	나-1	면목동 산 1-4	2,853.00	2,853.00	-	-	-	-	-	-
	사각 파고라	①	면목동 산 1-4	-	-	-	-	-	-	5	①	면목동 산 1-4	-	-	-	-	-	-	5	-
	파고라	②	면목동 산 1-4	-	-	-	-	-	-	3	②	면목동 산 1-4	-	-	-	-	-	-	3	-
	펼개 정자	③	면목동 산 1-4	-	-	-	-	-	-	2	③	면목동 산 1-4	-	-	-	-	-	-	2	-
	등나무 파고라	④	면목동 산 1-4	-	-	-	-	-	-	1	④	면목동 산 1-4	-	-	-	-	-	-	1	-
	아와 탑자	⑤	면목동 산 1-4	-	-	-	-	-	-	3	⑤	면목동 산 1-4	-	-	-	-	-	-	3	-
	원형 아와 탑자	⑥	면목동 산 1-4	-	-	-	-	-	-	1	⑥	면목동 산 1-4	-	-	-	-	-	-	1	-
	아와 테이블	⑦	면목동 산 1-4	-	-	-	-	-	-	1	⑦	면목동 산 1-4	-	-	-	-	-	-	1	-
	초화원	다	면목동 산 73-2	4,231.06	4,231.06	-	-	-	-	-	다	면목동 산 73-2	4,231.06	4,231.06	-	-	-	-	-	-

구	분	경										변										경			비 고			
		전					변					경					변					경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한 양 시 편	소 계			2,340.50	2,340.50	-	-	-	-	117			2,340.50	2,340.50	-	-	-	117			2,340.50	2,340.50	-	-	-	117		
		등의자			-	-	-	-	-	117			-	-	-	-	-	117			-	-	-	-	-	117		
	휴 게 침 더	라	9개소	2,340.50	2,340.50	-	-	-	-	-	라	9개소	2,340.50	2,340.50	-	-	-	-	-			2,340.50	2,340.50	-	-	-	-	
		라-1	면목동 산 1-4	(207.00)	(207.00)	-	-	-	-	-	라-1	면목동 산 1-4	(207.00)	(207.00)	-	-	-	-	-	-			(207.00)	(207.00)	-	-	-	-
		라-2	면목동 산 1-4	(1,067.00)	(1,067.00)	-	-	-	-	-	라-2	면목동 산 1-4	(1,067.00)	(1,067.00)	-	-	-	-	-	-			(1,067.00)	(1,067.00)	-	-	-	-
		라-3	면목동 산 1-4	(827.00)	(827.00)	-	-	-	-	-	라-3	면목동 산 1-4	(827.00)	(827.00)	-	-	-	-	-	-			(827.00)	(827.00)	-	-	-	-
		라-4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라-4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			(37.00)	(37.00)	-	-	-	-
		라-5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라-5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			(37.00)	(37.00)	-	-	-	-
		라-6	면목동 산 1-4	(56.00)	(56.00)	-	-	-	-	-	라-6	면목동 산 1-4	(56.00)	(56.00)	-	-	-	-	-	-			(56.00)	(56.00)	-	-	-	-
라-7		면목동 산 1-4	(15.50)	(15.50)	-	-	-	-	-	라-7	면목동 산 1-4	(15.50)	(15.50)	-	-	-	-	-	-			(15.50)	(15.50)	-	-	-	-	
라-8	면목동 산 1-4	(49.70)	(49.70)	-	-	-	-	-	라-8	면목동 산 1-4	(49.70)	(49.70)	-	-	-	-	-	-			(49.70)	(49.70)	-	-	-	-		

구	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9	면목동 산 1-4	(44.30)	(44.30)	-	-	-	-	-	-	라-9	면목동 산 1-4	(44.30)	(44.30)	-	-	-	-	-	-	-
	소계			16,763.1	16,763.1	-	1	466.24	360.46	26				16,763.1	16,763.1	-	1	466.24	360.46	26		
	평행운동장			-	-	-	-	-	-	4				-	-	-	-	-	-	4		
	철보			-	-	-	-	-	-	4				-	-	-	-	-	-	4		
	상하체 들어올리기			-	-	-	-	-	-	2				-	-	-	-	-	-	2		
	체력단련 시설			-	-	-	-	-	-	16				-	-	-	-	-	-	16		
	육상장	바	면목동 산 1-4	2,536.8	2,536.8	-	-	-	-	-		바	면목동 산 1-4	2,536.8	2,536.8	-	-	-	-	-	-	
	베드 민탄장	사	면목동 산 1-4	657.80	657.80	-	-	-	-	-		사	면목동 산 1-4	657.80	657.80	-	-	-	-	-	-	
	게이트 불장	아	면목동 산 1-4	352.40	352.40	-	-	-	-	-		아	면목동 산 1-4	352.40	352.40	-	-	-	-	-	-	
	테니스장	자	면목동 산 1-4	1,681.00	1,681.00	-	-	-	-	-		자	면목동 산 1-4	1,681.00	1,681.00	-	-	-	-	-	-	
	축구장	차	면목동 산 1-4	8,649.00	8,649.00	-	-	-	-	-		차	면목동 산 1-4	8,649.00	8,649.00	-	-	-	-	-	-	
	소운동장	카	면목동 산 1-4	1,521.00	1,521.00	-	-	-	-	-		카	면목동 산 1-4	1,521.00	1,521.00	-	-	-	-	-	-	

안보도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다목적 이용장	타	면목동 산 1-4	898.86	898.86	-	-	-	-	타	면목동 산 1-4	898.86	-	-	-	-	
	인공 임변장	파	면목동 산 1-4	466.24	466.24	철골 조	1	466.24	360.46	파	면목동 산 1-4	466.24	철골 조	1	466.24	360.46	
	소계			3,303.58	3,303.58	-	2	916.39	1,602.34			3,303.58		2	916.39	1,602.34	17
	척삼터	하	면목동 산 1-4	769.00	769.00	철골 조	1	281.35	326.72	하	면목동 산 1-4	769.00	철골 조	1	281.35	326.72	-
	화분	㉑	면목동 산 1-4	-	-	-	-	-	-	㉑	면목동 산 1-4	-	-	-	-	-	3
	두서옹 테이블	㉒	면목동 산 1-4	-	-	-	-	-	-	㉒	면목동 산 1-4	-	-	-	-	-	3
	염동벽	㉓	면목동 산 1-4	-	-	-	-	-	-	㉓	면목동 산 1-4	-	-	-	-	-	1
	철재 난간	㉔	면목동 산 1-4	-	-	-	-	-	-	㉔	면목동 산 1-4	-	-	-	-	-	1
	천체 관측 시설	거	면목동 1316-8	2,534.58	2,534.58	철근 콘크리트 조	1	635.04	1,275.62	거	면목동 1316-8	2,534.58	철근 콘크리트 조	1	635.04	1,275.62	
	조형 놀이대	㉕	면목동 1316-8	-	-	-	-	-	-	㉕	면목동 1316-8	-	-	-	-	-	1
과학 놀이대	㉖	면목동 1316-8	-	-	-	-	-	-	㉖	면목동 1316-8	-	-	-	-	-	3	
원형 클렌터	㉗	면목동 1316-8	-	-	-	-	-	-	㉗	면목동 1316-8	-	-	-	-	-	4	
자연거 보관대	㉘	면목동 1316-8	-	-	-	-	-	-	㉘	면목동 1316-8	-	-	-	-	-	1	

공 영 사 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판공시설	소계			1,847.80	1,847.80	-	2	113.80	113.80	4			1,847.80	1,847.80	-	2	113.80	113.80	4	
	주차장	너	면목동 산 1-4	1,734.00	1,734.00	-	-	-	-	-	너	면목동 산 1-4	1,734.00	1,734.00	-	-	-	-	-	
	화장실	더	면목동 산 1-4	113.80	113.80	-	2	113.80	113.80	-	더	면목동 산 1-4	113.80	113.80	-	2	113.80	113.80	-	
	음수장	⑧	면목동 산 1-4	-	-	-	-	-	-	2	⑧	면목동 산 1-4	-	-	-	-	-	-	2	
	대기실	⑨	면목동 산 1-4	-	-	-	-	-	-	2	⑨	면목동 산 1-4	-	-	-	-	-	-	2	
관리시설	소계			712.10	712.10	-	5	636.10	636.10	123			712.10	712.10	-	5	636.10	636.10	123	
	관리사무소	러	면목동 산 1-4	220.30	220.30	-	1	220.30	220.30	-	러	면목동 산 1-4	220.30	220.30	-	1	220.30	220.30	-	
	쓰레기통			(35.00)	-	-	-	-	-	35			(35.00)	-	-	-	-	-	35	
	위험표지판			(1.00)	-	-	-	-	-	3			(1.00)	-	-	-	-	-	3	
	방향표지판			(3.00)	-	-	-	-	-	3			(3.00)	-	-	-	-	-	3	
	종합안내판			(1.00)	-	-	-	-	-	2			(1.00)	-	-	-	-	-	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기 처리장			(7.50)	-	-	-	-	-	1	
			(4.00)	-	-	-	-	-	4	
			(68.00)	-	-	-	-	-	73	
	머	면목동 산 1-4	224.80	224.80	-	2	224.80	224.80	-	
	버	면목동 산 1-4	191.00	191.00	-	2	191.00	191.00	-	
	서	면목동 산 1-4	76.00	76.00	-	-	-	-	-	
	㉔		-	-	-	-	-	-	2	
	소계		153,857.89	-	-	-	-	-	-	
누지		153,857.89	-	-	-	-	-	-		

부 지 및 기 타

3-3. 용마산근린공원 3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구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1,996.49	8,844.77				
당초	소로	계			1,907.85	8,738.46				
당초		2류	1	5.5~12.5	155.73	1,229.57	진입로	녹지대	소로 3-17	
당초		3류	1	3.5~11.0	54.30	412.25	연결로	소로 2-1	휴게쉼터 다-1	
당초		3류	2	2.35	407.90	988.47	산책로	소로 3-2	소로 3-2	
당초		3류	3	4.5~5.5	43.40	211.27	연결로	주차장 타	소로 3-2	
당초		3류	4	3.0~4.0	71.04	298.42	연결로	소로 3-6	주차장 타	
당초		3류	5	5.0	14.25	70.51	연결로	소로 3-4	소로 3-2	
당초		3류	6	4.0~11.0	78.99	523.68	연결로	휴게쉼터 다-2	광장 가-3	
당초		3류	7	3.0~4.0	18.05	58.15	연결로	휴게쉼터 다-2	광장 가-5	
당초		3류	8	3.5~7.0	36.33	209.00	연결로	소로 3-17	교양시설 러	
당초				1.25	86.86	96.42	연결로	녹지대	소로 3-17	

구 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류	3류	10	1.5	17.84	26.93	연결로	녹지대	놀이터 라	
당초		3류	11	2.0	32.20	64.82	연결로	놀이터 라	공원 경계	
당초		3류	12	2.0	11.57	23.52	연결로	소로 3-11	다목적 운동장 카	
당초		3류	13	5.0	5.80	28.02	연결로	소로 3-8	광장 가-5	
당초		3류	14	2.0	25.24	50.86	산책로	공원 경계	휴게쉼터 다-3	
당초		3류	15	5.0-8.5	18.02	122.73	연결로	소로 3-17	광장 가-4	
당초		3류	16	5.0	8.67	43.42	연결로	소로 3-17	소운동장 차	
당초		3류	17	6.0-8.5	393.07	2,709.59	연결로	소로 2-1	소로 3-18	
당초		3류	18	2.5	41.03	103.04	연결로	소로 3-17	광장 가-2	
당초		3류	19	3.0-6.5	48.01	202.64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2	
당초		3류	20	4.0-5.5	29.43	150.58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1	
당초		3류	21	4.0-5.5	53.60	230.28	연결로	광장 가-3	광장 가-1	
당초		3류	22	2.0-5.0	29.15	82.20	연결로	소로 3-24	육상장 마	

구 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류	23	5.0	6.23	30.15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3	
당초		3류	24	3.5~5.0	186.05	684.72	연결로	소로 3-23	소로 3-2	
당초		3류	25	4.0	7.42	31.46	연결로	소로 3-24	베드민턴장 바	
당초		3류	26	2.0	27.67	55.76	연결로	축구장 자	소로 3-24	
당초	신책로	계			88.64	106.31				
당초			1	1.2	33.31	39.97	신책로	소로 3-26	소로 3-26	
당초			2	1.2	55.33	66.34	신책로	소로 3-26	소로 3-26	

4-1. 용마산근린공원 4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76-110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면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면			동수 (등)	건 축	면		공작물 (기)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5,283.80	7,566.61	-	-	-	6	15,283.80	7,566.61	-	-	-	6	-	-	-	-	-	6			
	기반 시설	소 계	1,526.02	1,526.02	-	-	-	-	1,526.02	1,526.02	-	-	-	-	-	-	-	-	-	-		
광장		101.42	101.42	-	-	-	-	101.42	101.42	-	-	-	-	-	-	-	-	-	-			
램프		-	-	-	-	-	-	-	-	-	-	-	-	-	-	-	-	-	-			
계단		-	-	-	-	-	-	-	-	-	-	-	-	-	-	-	-	-	-			
자연석 계단		-	-	-	-	-	-	-	-	-	-	-	-	-	-	-	-	-	-			
도로		1,424.60	1,424.60	-	-	-	-	1,424.60	1,424.60	-	-	-	-	-	-	-	-	-	-			
배수로		-	-	-	-	-	-	-	-	-	-	-	-	-	-	-	-	-	-			
조 경 시 설		4,484.29	4,484.29	-	-	-	-	4,484.29	4,484.29	-	-	-	-	-	-	-	-	-	-			
휴 양 시 설		558.12	558.12	-	-	-	6	558.12	558.12	-	-	-	-	-	-	-	-	-	6			

구	경						경						경			비	고
	면			전			면			경			경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복수 (보)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복수 (보)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유	회	시	설	184.93	-	-	-	184.93	184.93	-	-	-	-	-	-	-	
온	통	시	설	114.42	-	-	-	114.42	114.42	-	-	-	-	-	-	-	
편	익	시	설	698.83	-	-	-	698.83	698.83	-	-	-	-	-	-	-	
부	지	및	기	타	7,717.19	-	-	7,717.19	-	-	-	-	-	-	-	-	

5-1. 용마산근린공원 5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43-146 일대)

구	분	경						변						비	고	
		면			전			변			경					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본 시설	계	39,077.00	13,966.66	25	2	144.48	122.44	39,077.00	13,966.66	25	2	144.48	122.44	25		
	소계	5,148.28	5,148.28	-	-	-	-	5,148.28	5,148.28	-	-	-	-	-		
	도로	4,237.20	4,237.20	-	-	-	-	4,237.20	4,237.20	-	-	-	-	-		
	광장	911.08	911.08	-	-	-	-	911.08	911.08	-	-	-	-	-		
조경 시설		2,463.86	2,463.86	-	-	-	-	2,463.86	2,463.86	-	-	-	-	-		
휴양 시설		139.43	139.43	11	-	-	-	139.43	139.43	-	-	-	-	11		
운동 시설		628.90	628.90	12	-	-	-	628.90	628.90	-	-	-	-	12		
교양 시설		5,385.29	5,385.29	-	-	-	-	5,385.29	5,385.29	-	-	-	-	-		
편익 시설		107.70	107.70	-	1	92.48	70.44	107.70	107.70	-	1	92.48	70.44	-		
관리 시설		93.20	93.20	2	1	52.00	52.00	93.20	93.20	1	1	52.00	52.00	2		
복지 및 기타		25,110.34	-	-	-	-	-	25,110.34	-	-	-	-	-	-		

6-1. 용마산 근린공원 6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117, 구의지구)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배수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배수면적 (㎡)	연면적 (㎡)												
기	계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기	소 계	8,675.30	8,238.23	-	-	-	8,675.30	8,238.23	-	-	-	-					
		도	6,753.95	6,316.88					6,753.95	6,316.88								
		광	1,921.35	1,921.35					1,921.35	1,921.35								
조 경 시 설		9,287.51	9,287.51					9,287.51	9,287.51									
휴 양 시 설		4,105.01	4,105.01	1	72.00	72.00	73	4,105.01	4,105.01	1	72.00	72.00	73					
유 희 시 설		240.00	240.00					240.00	240.00									
교 양 시 설		21,174.47	21,174.47	2	349.72	474.34		21,174.47	21,174.47	2	349.72	474.34						
운 동 시 설		2,452.00	2,452.00				8	2,452.00	2,452.00				8					
편 익 시 설		1,200.00	1,200.00	5	149.76	149.76	4	1,200.00	1,200.00	5	149.76	149.76	4					
관 리 시 설		255.00	255.00	1	59.40	59.40	14	255.00	255.00	1	59.40	59.40	14					
녹 지 및 기 타		101,180.21						101,18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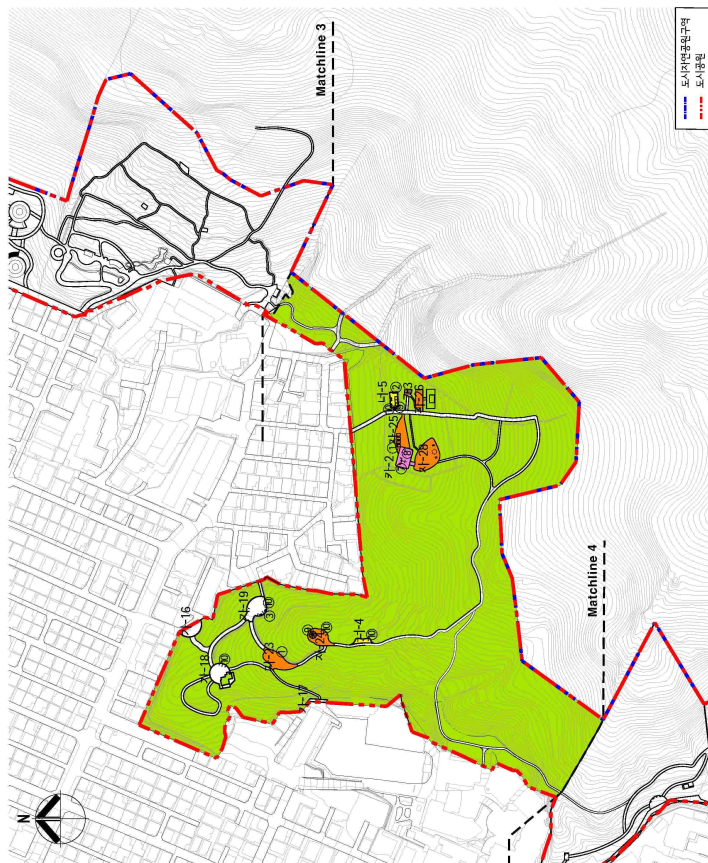
7-1. 용마산근린공원 7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38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반 시 설	계	74,266.10	30,142.75	-	-	-	48	74,266.10	30,142.75	-	48	
	소 계	8,324.52	8,324.52	-	-	-	-	8,324.52	8,324.52	-	-	
		도로	7,789.64	7,789.64	-	-	-	-	7,789.64	7,789.64	-	-
		광 장	534.88	534.88	-	-	-	-	534.88	534.88	-	-
조 경 시 설	5,224.84	5,224.84	-	-	-	2	5,224.84	5,224.84	-	2		
휴 양 시 설	377.65	377.65	-	-	-	24	377.65	377.65	-	24		
유 희 시 설	152.00	152.00	-	-	-	4	152.00	152.00	-	4		
운 동 시 설	14,210.64	14,210.64	-	-	-	17	14,210.64	14,210.64	-	17		
교 양 시 설	1,592.28	1,592.28	-	-	-	-	1,592.28	1,592.28	-	-		
편 익 시 설	260.82	260.82	-	-	-	-	260.82	260.82	-	-		
관 리 시 설	-	-	-	-	-	1	-	-	-	1		
누 지 및 기타	44,123.35	-	-	-	-	-	44,123.35	-	-	-	-	

부분조성계획도(변경전)

용마산그린공원(1-4지구)

14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호지번	면적(㎡)	구조	지대면적(㎡)	건축면적(㎡)	공용면적(㎡)
합계	가면	소계	68,692.00	5,631.70	빌딩 1동	18.00	18.00
	사설	도로	3,442.97	3,442.97	-	-	-
	정장	조각	2,196.17	2,196.17	-	-	-
		가-16	676.40	676.40	-	-	-
		가-17	(140.23)	(140.23)	-	-	-
		가-18	(41.33)	(41.33)	-	-	-
		가-18	(238.61)	(238.61)	-	-	-
		가-18	(955.29)	(955.29)	-	-	-
		소계	1,236.06	1,236.06	-	-	-
	유양	원비	가-25	1,236.06	1,236.06	-	-
가-25			(271.76)	(271.76)	-	-	-
가-26			(213.23)	(213.23)	-	-	-
가-26			(242.34)	(242.34)	-	-	-
가-26			(98.00)	(98.00)	-	-	-
피고라		가-26	(401.59)	(401.59)	-	-	-
		가-26	-	-	-	-	-
		가-26	-	-	-	-	-
		가-26	-	-	-	-	-
		가-26	-	-	-	-	-
유역	소계	가-26	193.67	193.67	-	-	-
		가-26	193.67	193.67	-	-	-
		가-26	193.67	193.67	-	-	-
		가-26	193.67	193.67	-	-	-
		가-26	193.67	193.67	-	-	-
	해안관리	나-4	139.36	139.36	-	-	-
		나-4	(53.13)	(53.13)	-	-	-
		나-5	(86.23)	(86.23)	-	-	-
		나-5	(86.23)	(86.23)	-	-	-
		나-5	(86.23)	(86.23)	-	-	-
운용	부합운동시설	나-5	-	-	-	-	-
		나-5	-	-	-	-	-
		나-5	-	-	-	-	-
		나-5	-	-	-	-	-
		나-5	-	-	-	-	-
	해안관리	나-5	-	-	-	-	-
		나-5	-	-	-	-	-
		나-5	-	-	-	-	-
		나-5	-	-	-	-	-
		나-5	-	-	-	-	-
관리	소계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화장실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주거	소계	나-5	63,005.40	-	-	-	-
		나-5	63,005.40	-	-	-	-
		나-5	63,005.40	-	-	-	-
		나-5	63,005.40	-	-	-	-
		나-5	63,005.40	-	-	-	-
	화장실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나-5	(28.04)	(28.04)	빌딩 1동	18.00	18.00

Scale = 1:1,500

10 40 80 160

부분조성계획도(변경후)

용마산근린공원(1-4지구)

[illegibl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6호

중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암동 125-35번지 일대(이하 ‘중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7.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중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암동 125-35번지 일대	-	증) 32,740.5	32,740.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고
합 계		32,740.5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008.2	9.19	
	도 로	2,717.2	8.30	
	공공공지	291.0	0.89	
획 지	소 계	29,732.3	90.81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획 지 1	28,562.3	87.2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1,170.0	3.57	종교용지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740.5	-	32,740.5	10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20.0	감) 6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620.5	감) 20,620.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1,240.5	21,240.5	64.88	
	제3종일반주거지역	11,500	-	11,500.0	35.1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20.0	일체적 도시관리를 위해 연접부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20,620.5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의무 순부담 최소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황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가. 추정비례율 산출근거

구 분	항 목		금 액 (천원)
수 입	소 계		601,161,063
	분양주택	토지등소유자분양	235,966,060
		일반분양	324,314,248
		보류지	2,299,259
	임대주택	법적 용적률	1,268,635
		상한 용적률	-
		도정법 관련	33,738,408
	근린생활시설	토지등소유자분양	3,511,332
		일반분양	-
		보류지	35,468
매출부가세		-2,347	
지 출	소 계		440,902,112
	공사비		315,332,387
	보상비		38,635,246
	관리비		3,594,757
	설계비		5,388,119
	감리비		4,731,129
	부대경비		51,501,591
	예비비		21,718,883
	종전자산 추정액		153,035,033
※ 추정비례율 104.72% (총 수입(6,011억원) - 총지출(4,409억원)) ÷ 종전자산(1,530억원)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물건에 대한 종전·종후 자산감정 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0%	-5.0%	0.0%	+0.5%	+10.0%
변동률		평균단가 (천원/3.3㎡)	11,333	11,962	12,592	13,222	13,851
분양가 (일반분양 기준)	+ 10.0%	35,479	154.72	140.32	125.91	111.51	97.10
	+ 5.0%	33,867	144.13	129.72	115.32	100.91	86.51
	0.0%	32,254	133.53	119.13	104.72	90.32	75.91
	- 0.5%	30,641	122.93	108.53	94.12	79.72	65.31
	- 10.0%	29,028	112.34	97.93	83.53	69.12	54.72

다.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39㎡형	4.40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4.72%)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46㎡형	5.16억		
전용 59㎡형	6.82억		
전용 74㎡형	7.64억		
전용 84㎡형	8.53억		

※ 추정비례율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정	중로	3	289	12	국지도로	470	종암동 79-482	종암동 57-136	일반 도로	-	-	-
변 경	중로	3	289	12	국지도로	445	종암동 79-482	종암동 57-132	일반 도로	-	-	-
신 설	소로	2	601	10	국지도로	207	종암동 78	종암동 125-206	일반 도로	-	-	-
신 설	소로	3	701	6	특수도로	62	종암동 57-135	종암동 57-148	일반 도로	-	-	입체적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289	중로 3-289	• 도로 연장 축소 - L = 470m → 445m	•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입체적 결정을 위한 도로 연장 축소
-	소로 2-601	• 도로 신설 - B = 10m / L = 207m	• 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
-	소로 3-701	• 도로 신설 - B = 6m / L = 62m	• 구역 내 기존 건축물 접근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로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 설	소로 3-701	보차 혼용도로	종암로 57-135 일대	길 이	-	증) 62.0m	62.0m	-	-
				폭	-	증) 6.0m	6.0m		
				높 이 (지표면기준)	-	증) 35~45m	35~45m		
				면 적	-	증) 395.8㎡	395.8㎡		

나.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	공공공지	공간시설	종암동 57-159 일대	-	증) 291.0	291.0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공간시설	종암동 57-159 일대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291.0㎡	개운산근린공원과의 연계성 확대 및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계획면적(㎡)
			법정		
			기준	면적(㎡)	
합 계		-	-	-	4,080.0
주민공동시설	소 계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 1.25	2,668.75 이상	3,500.0
	경로당	확지	500~1,000세대 미만	330.00 이상	350.00
	어린이집	확지		330.00 이상	350.00
	작은도서관	확지		158.00 이상	180.00
	다함께돌봄센터	확지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66.00 이상	100.00
	어린이놀이터	확지	300㎡ + (세대수 - 100) × 1	1,054.00 이상	1,100.00
	주민운동시설	확지	300㎡ + (세대수-500) ÷ (200 × 150)	565.50 이상	570.00
	주민공동시설	확지	-	-	100.00
	개방형커뮤니티	확지	-	-	750.00
근린생활시설		확지	-	-	500.00
부대시설	소 계	-	-	-	80.00
	관리사무소	확지	10㎡ + (세대수 - 50) × 0.05㎡	50.20 이상	80.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설	종암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32,740.5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123	2 (종교시설)	-	121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설	종암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32,740.5	획지1	28,562.3	종암동 125-3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5% 이하	257.18 이하	263.00 이하	해발고도 127m이하/ 22층 이하
			획지2	1,170.0	종암동 57-17	종교용지	관련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854세대									
	구 분		세대수							
			세대수(세대)	비율(%)						
	계		854	100.0						
	60㎡ 이하		551	64.52						
	60~85㎡ 이하		303	35.48						
85㎡ 초과		-	-							
구 분		건립규모	임대주택							
			소 계	40㎡이하	40㎡이상					
초과용적률 전 세대수		840	126	43	83					
구성비 (%)		100.00	15.00	5.12	9.88					
임대주택 구성비 (%)		-	100.00	34.13	65.87					
※ 구역 내 기존 SH공사 소유 매입임대주택 2개동 30세대에 대해 세대수만큼 SH조합원 분양 및 미리내집 공급으로 반영										
· 85㎡이하 규모의 주택비율 [기준: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 계획 100.0%										
· 임대주택 건설 비율 ※ [기준: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세대수의 15.00%										
· 전용면적 40㎡이하 비율 ※ [기준: 임대 30%이상 또는 전체 5% 이상] ▶ 전체 임대의 34.13%										
※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14세대) 제외										
· 국민주택규모(85㎡이하) 건설 [기준: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 계획 52.25%										
정비계획 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초과용적률		초과용적률의 50%		임대주택공급계획 (의무공급면적)		
257.18%		262.48%		5.30%		2.65%		790.9㎡ (756.9㎡)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심의완화 사항		· 기준용적률 20% 완화 (소형주택 40㎡이하 7.19%, 40㎡~50㎡이하 4.94%, 50~60㎡이하 7.88%) · 허용용적률(40%) : 공공보행통로 5.7%, 열린단지 5.0%, 돌봄시설 4.3%, 방재안전 5.0% 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40.0%)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도정법 제54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건축심의에서 최종확정)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종암로19길변 3m / 종암로19다길변 3m / 종암로9가길변 3m 입체적결정(도로)변 3m / 종교용지 이면부 3m								
기타 사항		· 보차혼용통로 : 공동주택 단지 내 개운산 산책로 진입구간 폭6m (지역권설정) ※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시 지역권 등 설정이 조건으로 부여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함								

나. 용적률 계획

1)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등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환산 (㎡)	새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32,740.5	28,562.30	3,008.20	-	1,626.00	1,248.20
지하공간 면적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3,008.20㎡ + 0.00㎡ - 1,626.00㎡ - 1,248.20㎡ = 134.00㎡ (0.41%)					
	신설 정비기반시설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면적	· 3,008.0㎡ - 도로 2,717.20㎡, 공공공지: 291.00㎡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해당없음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 가중평균 217.18%					
		· 189.92% + 소형완화 20% = 209.92			· 210% + 소형완화 20% = 230.00%		
허용용적률	· 가중평균 257.18%						
	· 249.9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보정계수 2.0 적용 (20% × 2.0 = 40%)			· 270.0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보정계수 2.0 적용 (20% × 2.0 = 40%)			

구 분		산 정 내 용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등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환산 (㎡)	새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32,740.5	28,562.30	3,008.20	-	1,626.00	1,248.20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	[입체적결정도로, 열린단지, 돌봄시설, 방재안전 등]			[입체적결정도로, 열린단지, 돌봄시설, 방재안전 등]			
	· 가중평균 257.18%						
	· 249.92%			· 27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인센티브 [허용용적률(소형완화 미적용) × 1.3 × 가중치 × a(토지)] = 249.92% + 209.92% × 1.3 × 0.0009 × 0.0073 = 249.92% + 0.00% = 249.92%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제1종 허용용적률 × 제1종 공공시설 순부담면적 + 제2종 허용용적률 × 제2종 공공시설 순부담면적 + 제3종 허용용적률 × 제3종 공공시설 순부담면적) ÷ 전체 공공시설 순부담면적} ÷ {(변경(제1종→제2종)허용용적률 × 획지면적 + 변경(제2종7층→제2종)용적률 × 획지면적) ÷ 제1종/제2종 획지면적} = {(150% × 506.4㎡ + 210% × 485.9㎡ + 230% × 113.5㎡) ÷ 134.0㎡} ÷ {(170% × 37.0㎡ + 210% × 18,195.3㎡) ÷ 18,232.3㎡} = 0.19% ÷ 209.92% = 0.0009 ※ a(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 중 토지 및 대지지분으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 제공한 후 대지면적 = (3,008.2㎡ - 1,626.0㎡ - 1,248.2㎡) ÷ 18,232.3㎡ = 0.0073						
법적상한 용적률	· 가중평균 262.48%						
	· 249.92%			· 284.64%(법적상한용적률은 제3종에서만 계획)			

2) 가중치 산출근거

용도지역		면적(㎡)				허용용적률 (변경 전 적용)
기정	변경(안)	구역	기반시설	무상양도	순부담	
-	-	32,740.5	3,008.2	2,874.2	134.0	0.19%
제1종	제2종	620.0	583.0	76.6	506.4	150.0
제2종(7층)		20,620.5	2,134.2	2,620.1	-485.9	210.0
제3종		11,500.0	291.0	177.5	133.5	230.0

구 분	가중치 산정근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0.19% ÷ 209.92% = 0.0009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소형완화 제외)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사업성 보정계수 미적용)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계획한 공공시설 부지가 없으므로 상한인센티브 없음 → 허용용적률과 동일

3) 기준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 완화량 최대 20% 이내)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40㎡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7.19% - $58.70\text{㎡}(39\text{㎡ 용적률 산정면적}) \times 35\text{세대} \div 28,562.3\text{㎡(대지면적)} = 7.19\%$ (임대주택 미포함)	최대 10%
40 ~ 50㎡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 ~ 50㎡ 이하 주택으로 건설: 4.94% - $67.16\text{㎡}(46\text{㎡ 용적률 산정면적}) \times 21\text{세대} \div 28,562.3\text{㎡(대지면적)} = 4.94\%$ (임대주택 미포함)	최대 15%
50 ~ 60㎡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50 ~ 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7.88% - $83.36\text{㎡}(59\text{㎡ 용적률 산정면적}) \times 27\text{세대} \div 28,562.3\text{㎡(대지면적)} = 7.88\%$ (임대주택 미포함)	최대 10%

4) 허용용적률 산출근거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기준	계획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및 입체 결정한 도로 포함)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기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 이하 - 적용 : $197.18\% \times \{ (395.8 + 424.5) / 28,562.3 \} \times 1 = 5.7\%$	최대 10%	5.7%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준공 이후에도 유지)	최대 5%	5%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높이·돌봄시설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제외)} $\times \alpha$ ※ $\alpha = 0.1$ 이하 - 적용 : $197.18\% \times (580 / 2,668.75) \times 0.1 = 4.3\%$	최대 5%	4.3%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최대 5%	5%
사업성 보정계수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가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한 값)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의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적용 : $5,860,220 / 02,808,846 = 2.08630 \approx 2.09 \geq 2.0$	1.0 ~ 2.0	2.0

5) 기부채납 계획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규 모	산 출 근 거	비 고
도로	소로 2-601	· B = 10m, L = 207m (기존 6m 도로 4m 확폭)	-	일부도로 확폭
	소로 3-701	· B = 6m, L = 62m	-	신설 (임체적 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 공공공지 면적: 291.0㎡	-	신설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주택 전체(법정상한 증가분 제외)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전용면적 40㎡ 이하 ·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비율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 물량에서 제외(도시정비법 제97조)		
구분	세대수 (세대)	비율 (%)	비 고	
총 세대수	840	-	전체 세대수(854세대)에서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세대수(14세대) 제외	
의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126	100.0	총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이상 적용 (840세대×15%=126세대<계획 126세대)	
40㎡ 이하	43	34.13	임대주택의 30%이상 (126세대×30% = 38세대 < 43세대)	
40㎡ 초과 ~ 60㎡ 이하	83	65.87	-	

※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법정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부지면적		· 28,562.30㎡			
법정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63% (262.48%,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 257.18%			
국민주택규모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62.48\% - 257.18\% = 5.3\%$			
	증가된 용적률의 50%	· $5.3\% \times 50\% = 2.65\%$			
	의무면적	· $28,562.3\text{㎡} \times 2.65\% = 756.9\text{㎡}$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 계획 7세대, 연면적 790.9㎡			
		구 분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84형	112.98㎡	7	790.9㎡
		합 계		7	790.9㎡
					≥ 756.9㎡

※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 · 도시생태계의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시설 설치 및 에너지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 사업시행시 공공공지 및 단지 내 녹화를 통해 최대한의 녹지공간 확보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설치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 유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바이오톱 및 등·식물상	바이오톱 보전 등급 향상 등·식물상 보호 자연환경 보전	○	·바이오톱유형평가 대부분 4등급, 일부 2등급, 개별비오톱평가 대부분 평가제외 등급, 일부 2등급으로 조사됨 ·현존식생은 시가지지역으로 기존 녹지는 전무한 상태임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서식환경개선 ·녹지공간 최대확보로 생물서식공간 마련
녹지 네트워크	녹지, 수생태 연결성 확보	○	·기존 시가지 상태로 주변 녹지는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없음 ·사업시행후 생태면적 및 식재에 의한 조경면적 증가 예상되며, 인접 개운산공원과 녹지네트워크 형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녹지평가지표 1등급으로 계획됨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공사장비를 통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계획 수립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개운산에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해발고도 40m이상이며, 대상지 내 표고차는 약 60m로 파악됨 ·평균경사도는 13.6%이며, 동고서저 지형으로 절토시 지형변경이 예상됨	·부지계획고는 계단식으로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절성토고를 최소화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생태면적을 30% 이상 확보토록 계획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임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등을 적용하여 생태면적을 32.91% 계획 ·허가단계시 녹지조성, 침투시설, 투수포장 등 세부계획에 의거하여 저영향개발(LID) 적용 검토 예정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수질현황(BOD기준 Ⅰa등급(매우좋음) ~ Ⅲ등급(보통))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지역 '한강H' 유역에 해당하며, 협의대상에 해당됨 ·공사시 우수유출량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예상 ·운영시 계획인구에 의한 용수공급량 필요, 오수 발생 예상	·향후 허가단계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배출량 지정 및 할당예정 ·공사시 토사유출저감대책(침사지, 가배수로 등), 및 유출지하수저감대책 수립 ·운영시 우수수, 상수공급대책 수립
바람·열	기후변화대응 바람길 확보 열환경 최소화	○	·대상지내 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와 상업지가 위치하여 바람 생성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지 서측으로 개운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찬바람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열환경공간유형도 확인결과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로 분류되어 열환경에 취약지역에 해당됨	·사업대상지 서측의 개운산공원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유입을 위하여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열쾌적성 향상을 위한 계획 기법으로 열쾌적성 향상(녹지등)과 열환경 대응공간조성을 통해 열저감계획 기법 비율을 약 47.5%이상 확보계획 수립
대기질·악취	대기오염 최소화	○	·대부분 국가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M-2.5 가 일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거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주변 악취배출시설 없음 ·공사시 및 운영시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공사시 저감방안(살수, 가설방진망 등) 수립 ·운영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친환경 보일러, 녹지 조성 등)
온실 가스·	기후변화대응	○	·사업시행전·후 도시가스, 전력 사용량 사용을 통한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녹색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에너지	온실가스 절감 에너지절약 / 효율 극대화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후 온실 가스 배출량이 약 4,857.11tonCO ₂ eq/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제품 사용 등) ·추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예정이며,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건축 물 인증취득, 녹지공간 최대 확보 등 저감방안 마련하 도록 할 계획임
자원 순환	폐기물발생 최소화	○	·공사시 생활·건설폐기물·폐유 및 분뇨 발생 예상 ·운영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발생 예상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폐유처리, 분뇨발생 저감대 책 수립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소음 및 진동 영향 예상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	·공사시 소음저감방안 수립(저소음장비, 가설방음판 넬 등)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시 행 방 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종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가칭)	414 (현황: 440세대, 계획: 854세대)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정비구역과 인접한 초등학교 주변으로 과속방지턱등의 차량속도 저감대책 마련 · 초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 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경우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및 초등학교 정문으로 스 쿨존 지정을 통해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계획	
	·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커뮤니티 공간 및 다 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 대상지는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미해당하며, 공동주택 및 공공공지 등의 계획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의 입지를 차단하였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환경위생구역에 적합 하게 계획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사업시기 및 예방시설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 고
조합설립 ~ 착공 전	· 팬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 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착공 ~ 공사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범죄예방시설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 내부가 보이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	증) 32,740.5	32,740.5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740.5	-	32,740.5	10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20.0	감) 6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620.5	감) 20,620.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1,240.5	21,240.5	64.88	
	제3종일반주거지역	11,500	-	11,500.0	35.1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20.0	일체적 도시관리를 위해 연접부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20,620.5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의무 순부담 최소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정	종로	3	289	12	국지도로	470	종암동 79-482	종암동 57-136	일반 도로	-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변 경	중로	3	289	12	국지도로	445	종암동 79-482	종암동 57-132	일반 도로	-	-	-
신 설	소로	2	601	10	국지도로	207	종암동 78	종암동 125-206	일반 도로	-	-	-
신 설	소로	3	701	6	특수도로	62	종암동 57-135	종암동 57-148	일반 도로	-	-	입체적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289	중로 3-289	도로 연장 축소 - L = 470m → 445m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입체적 결정을 위한 도로 연장 축소
-	소로 2-601	도로 신설 - B = 10m / L = 207m	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
-	소로 3-701	도로 신설 - B = 6m / L = 62m	구역 내 기존 건축물 접근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로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 설	소로 3-701	보차 혼용도로	종암로 57-135 일대	길 이	-	증) 62.0m	62.0m	-	-
				폭	-	증) 6.0m	6.0m		
				높 이 (지표면기준)	-	증) 35~45m	35~45m		
				면 적	-	증) 395.8㎡	395.8㎡		

2)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	공공공지	공간시설	종암동 57-159 일대	-	증) 291.0	291.0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공간시설	종암동 57-159 일대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291.0㎡	개운산근린공원과의 연계성 확대 및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획 지	획지1	28,562.3	종암동 125-35 일대	28,56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1,170.0	종암동 57-17 일대	1,170.0	종교용지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 지	면적(㎡)	주 용 도	비 고
신 설	획지1	28,562.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
신 설	획지2	1,170.0	종교시설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신 설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55% 이하 (가중평균 56.4%)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신 설	획지2	제3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규에 의함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비 고
신 설	획지1	가중평균	217.18%	257.18%	257.18%	263% 이하 (계획 262.48%)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92%	249.92%	249.92%	249.92%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00%	270.00%	270.00%	284.64%	
신 설	획지2	제3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규에 따름				-

■ 기준용적률 완화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40㎡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7.19% - $58.70\text{㎡}(39\text{㎡ 공급면적}) \times 35\text{세대} / 28,562.3\text{㎡}(\text{대지면적}) = 7.19\%$ (임대주택 $\square$ 미포함)	최대 10%
40㎡~50㎡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면적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4.94% - $67.16\text{㎡}(46\text{㎡ 공급면적}) \times 21\text{세대} / 28,562.3\text{㎡}(\text{대지면적}) = 4.94\%$ (임대주택 $\square$ 미포함)	최대 15%
50㎡~60㎡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7.88% - $83.36\text{㎡}(59\text{㎡ 공급면적}) \times 27\text{세대} / 28,562.3\text{㎡}(\text{대지면적}) = 7.88\%$ (임대주택 $\square$ 미포함)	최대 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기준	계획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도로 및 입체 결정한 도로 포함)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기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1$ 이하 - 적용 : $197.18\% \times \{ (395.8 + 424.5) / 28,562.3 \} \times 1 = 5.7\%$	최대 10%	5.7%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준공 이후에도 유지)	최대 5%	5%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높이·돌봄시설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제외)} $\times \alpha$ ※ $\alpha = 0.1$ 이하 - 적용 : $197.18\% \times (580 / 2,668.75) \times 0.1 = 4.3\%$	최대 5%	4.3%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최대 5%	5%
사업성 보정계수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가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한 값)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의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적용 : $5,860,220 / 12,808,846 = 2.08630 \approx 2.09 \geq 2.0$	1.0 ~ 2.0	2.0

■ 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분	획지	용적률 완화		합계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주택건설	
신설	획지1	0.00%	5.30%	5.30%

다) 높이 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높이	비고
신 설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해발고도 127m 이하 (22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 설	획지2	제3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규에 의함	

다. 건축물 배치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 종암로19길변 3m / 종암로19다길변 3m / 종암로9가길변 3m 입체적결정(도로)변 3m / 종교용지 이면부 3m	-

※구체적 위치는 관련도면 참조

2)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공동주택 도로변 등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보차혼용도로	공동주택 내	폭원 6m 이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개운산 산책로 진입구간 조성	지역권 설정 (등기)

※구체적 위치는 관련도면 참조

라. 경관계획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 사업부지	- 구릉지 특성을 고려한 주동 배치계획 수립 - 개운산 근린공원 주변은 중저층으로 배치해 개운산 경관을 보호하고 인근 공동주택과 인접한 종암로19길변에 중고층 주동 배치 - 단지 내 지형의 단차를 활용 및 일조 여건을 고려한 남동향 테라스 특화 주동 계획 - 개운산 산책로 초입에 위한 남측부지는 소규모 저층 세대 배치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 종암로19길변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 사업부지	- 종암로19길 가로활성화 고려하여 저층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배치(권장) - 단지 발생부분에 테라스형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배치해 구릉지 지형 극복
외부공간	공동주택 사업부지	- 경사형·수직형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을 보완하는 등 보행 장애 요소 최소화 - 십자형 단지 중심 보행로에 동서방향으로 다양한 외부 커뮤니티 공간 계획(권장) - 통경축과 연계하여 수변 커뮤니티, 클러스터 광장, 스텝가든 등 배치 - 종암로19길변은 주민편의시설 배치 시 차폐감 최소화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단지 내 일조 및 개방감 확보, 보행 연계, 건축적 요소의 다양화 등 입체적 변화를 통한 건축물의 디자인 특화 계획(권장)
저층부 외관	개방형 커뮤니티	- 가로활성화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 있는 입면 계획 권장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공동주택	- 저채도 위주의 색채계획으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진입구처리	공동주택	- 주거 세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진출입구는 건축물과 함께 디자인하여 계획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지양 - 불필요한 시각 차폐를 지양하고 진입광장 등 열린공간으로 활용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개방감	공동주택	- 개운산 조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공동주택의 녹지공간과 연계한 동서방향 통경축(15m) 계획 - 단지 내부에서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단지 내 주보행로와 연계한 남북방향 열린배치구간 계획
조명계획	공동주택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 개운산근린공원 경관자원과 인접 공동주택단지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높이의 주동계획으로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 종암로19길변 중고층, 개운산 근린공원 인접부 저층 배치로 개운산 경관 고려 - 개운산 마로니에공원(해발고도 127m)를 고려하여 최고높이 127m이하 높이계획

■ 경관계획 지침도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1)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오름 및 등·식물상	비오름 보전 등급 향상 등·식물상 보호 자연환경 보전	○	·비오름유형평가 대부분 4등급, 일부 2등급, 개별비오름평가 대부분 평가제외 등급, 일부 2등급으로 조사됨 ·현존식생은 시가화지역으로 기존 녹지는 전무한 상태임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서식환경개선 ·녹지공간 최대확보로 생물서식공간 마련
녹지 네트워크	녹지, 수생태 연결성 확보	○	·기존 시가지 상태로 주변 녹지는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없음 ·사업시행후 생태면적 및 식재에 의한 조경면적 증가 예상되며, 인접 개운산공원과 녹지네트워크 형성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녹지평가지표 1등급으로 계획됨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공사장비를 통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계획 수립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개운산에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해발고도 40m이상이며, 대상지 내 표고차는 약 60m로 파악됨 ·평균경사도는 13.6%이며, 동고서저 지형으로 절토시 지형변경이 예상됨	·부지계획고는 계단식으로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절성토고를 최소화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생태면적을 30% 이상 확보토록 계획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임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등을 적용하여 생태면적을 32.91% 계획 ·허가단계시 녹지조성, 침투시설, 투수포장 등 세부계획에 의거하여 저영향개발(LID) 적용 검토 예정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수질현황(BOD기준 Ⅰa등급(매우좋음) ~ Ⅲ등급(보통))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지역 '한강H' 구역에 해당하며, 협의대상에 해당됨 ·공사시 우수유출량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예상 ·운영시 계획인구에 의한 용수공급량 필요, 오수 발생 예상	·향후 허가단계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배출량 지정 및 할당예정 ·공사시 토사유출저감대책(침사지, 가배수로 등), 및 유출지하수저감대책 수립 ·운영시 우수수, 상수공급대책 수립
바람·열	기후변화대응 바람길 확보 열환경 최소화	○	·대상지내 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와 상업지가 위치하여 바람 생성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지 서측으로 개운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찬바람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열환경공간유형도 확인결과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로 분류되어 열환경에 취약지역에 해당됨	·사업대상지 서측의 개운산공원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유입을 위하여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열쾌적성 향상을 위한 계획 기법으로 열쾌적성 향상(녹지등)과 열환경 대응공간조성을 통해 열저감계획 기법 비율을 약 47.5%이상 확보계획 수립
대기질 ·악취	대기오염 최소화	○	·대부분 국가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M-2.5 가 일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거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주변 악취배출시설 없음 ·공사시 및 운영시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공사시 저감방안(살수, 가설방진망 등) 수립 ·운영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친환경 보일러, 녹지 조성 등)
온실 가스·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절감 에너지절약 / 효율 극대화	○	·사업시행전·후 도시가스, 전력 사용량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857.11tonCO ₂ eq/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녹색 제품 사용 등) ·추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예정이며,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취득, 녹지공간 확대 확보 등 저감방안 마련하도록 할 계획임
자원 순환	폐기물발생 최소화	○	·공사시 생활·건설폐기물·폐유 및 분뇨 발생 예상 ·운영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발생 예상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폐유처리, 분뇨발생 저감대책 수립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소음 및 진동 영향 예상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	·공사시 소음저감방안 수립(저소음장비, 가설방음판넬 등)

2)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의무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 분	공급면적	전체 세대수	분양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법 제10조)	원화용적률 관련 세대수	
					분양 세대수	임대 세대수
합 계		854	714	126	7	7
39타입	57.88	130	87	43	-	-
46타입	66.20	111	111	-	-	-
59타입	28.13	310	224	83	3	-
74타입	100.81	58	58	-	-	-
84타입	112.98	245	234	-	4	7

3)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점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신고), 2023.01」 「종암동 125-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 및 관리지역 지정(안), 2024.01」
	㉠	- 북측 종암로19다길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 B=10.0m, L=207m, 왕복2차로
	㉡	- 서측 사업지 내 보차혼용통로 설치 - B=6.0m, L=70m
	㉢	- 남측 종교용지 연결도로(입체적결정) 설치 - B=6.0m, L=62m
진출입동선	-	사업지 차량진출입구 설치(총 3개소)
	㉣	

구분	지점	개선방안			
	㉔	구분	접속도로	운영방안	회전방경
		북측 진출입구	종암로19다길	비신호 운영	R=6.0m
		동측 진출입구	종암로19길	비신호 운영	R=6.0m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㉕	• 서측 막다른 도로 상 마을버스 회차공간 설치(1개소)			
	-	• 사업지 인근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3개소)			
	-	• 사업지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780대)의 20% 이상 확보			
	㉖	• 동측 종암로19길 상 사업지 측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B=3.0m)			
구분	지점	개선방안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㉗	- 북측 종암로19다길 상 보도 및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 모아타운 구간 : 사업지 측 보도 설치(B=2.0m) - 사업지 건축한계선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B=3.0m) - 모아타운 건축한계선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B=2.0m) - 빌라 구간 : 사업지 건축한계선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B=3.0m) - 빌라구간 인접부 보도 설치(B=2.0m)			
	-	• 사업지 내 · 외부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11개소)			
주차	-	- 적정 규모의 주차대수 확보 - 법정 주차대수 : 780대 - 주차 수요대수 : 966대(2031년 원단위법) - 계획 주차대수 : 1,014대(법정대비 130.0%, 수요대비 104.97%, 1.30대/세대당)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 외부 속도저감 필요지점 과속방지턱 설치(3개소) - 사업지 외부 시거불량지점 도로반사경 설치(1개소) - 사업지 외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총 6개소) - 최고 속도제한(224) 2개소, 주차금지(219) 2개소, 견인지역(428) 2개소			

III. 2025년 제7차('25.07.18.)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조치계획
제7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가결	○수정사항 - 신속통합기획(안)의 당초 계획 취지(산책로 연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공공보행도로 5.7%, 돌봄시설 4.3%) 반영	○당초 신속통합기획(안)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공공보행도로 5.7%, 돌봄시설 4.3%) 수정 반영하였음
		○조건사항 - 구역 내 기존 SH공사 소유 매입임대주택 2개동 30세대에 대해 세대수만큼 SH조합원 분양 및 미리내집 공급으로 반영	○향후 사업시행계획 시, 기존 SH공사 소유 매입임대 주택 30세대에 대해 SH조합원 분양 및 미리내집 공급계획을 수립 하겠음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VI.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2),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78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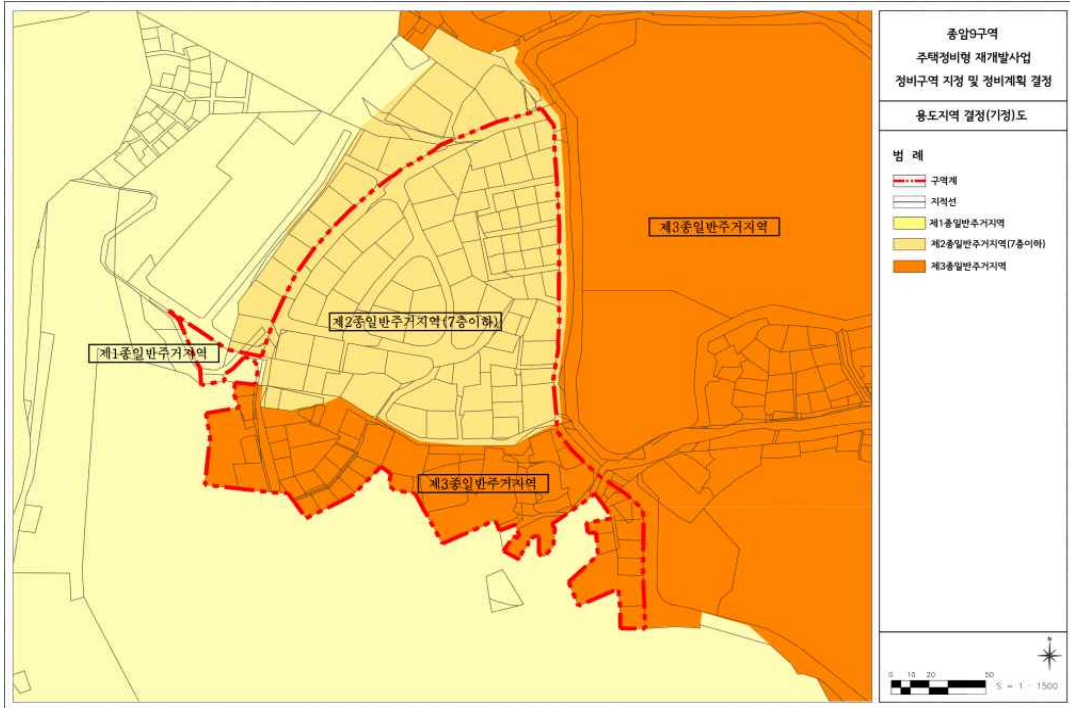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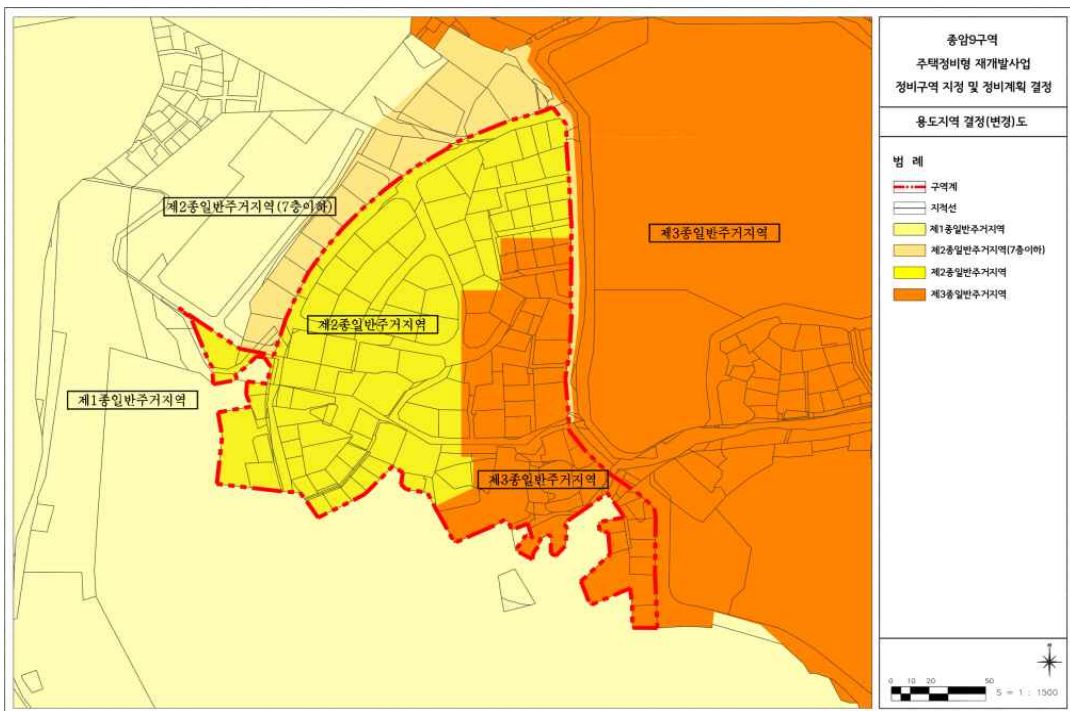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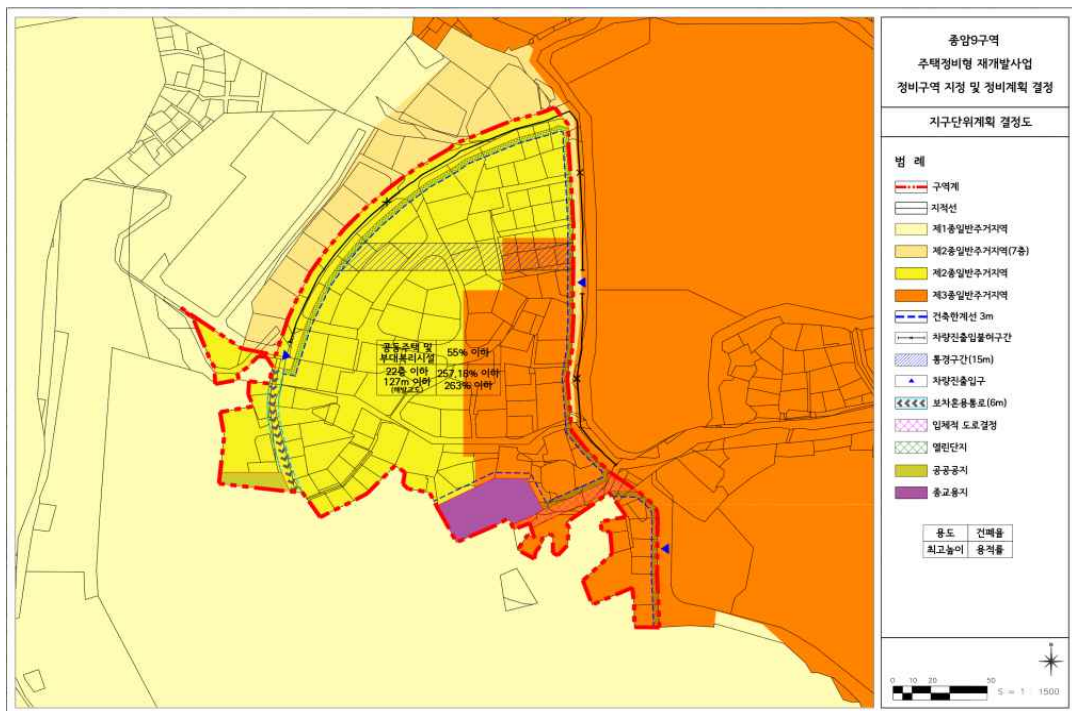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7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2011.10.27)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2012.10.11.), 제2013-292호(2013.09.05.), 제2015-181호(2015.6.25.), 제2017-26호(2017.1.26.), 제2018-29호(2018.2.8.), 제2018-224호(2018.7.19.), 제2019-104호(2019.3.21.), 제2019-149호(2019.5.16.), 제2019-221호(2019.7.11.), 제2020-173호(2020.5.1.), 제2023-139호(2023.4.20.), 제2024-239호(2024.5.16.), 제2024-603호(2025.12.12.)로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산업단지 개요

- 가. 관리기관: 서울경제진흥원
- 나. 단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 다. 구역면적: 1,123,790.3㎡
- 라. 조성목적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

마. 추진경위

- 2007.12.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
- 2008.12.30 실시계획 인가고시/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
- 2010.02.11 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
- 2010.09.30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
- 2011.09.22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
- 2011.10.2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
- 2011.12.29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
- 2011.12.29 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

- 2012.10.11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
- 2012.10.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
- 2013.07.25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
- 2013.09.0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
- 2013.11.14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
- 2014.05.08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183호)
- 2014.07.03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14-247호)
- 2014.12.26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453호)
- 2015.05.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5-150호)
- 2015.6.2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
- 2016.7.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225호)
- 2016.12.29.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424호)
- 2017. 1. 26.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7-26호)
- 2017. 5. 4.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161호)
- 2017. 7. 27.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273호)
- 2017. 12. 14.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455호)
- 2018. 2. 8.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8-29호)
- 2018. 7. 19.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8-224호)
- 2018. 12. 27.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8-417호)
- 2019. 3. 2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9-104호)
- 2019. 7. 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9-221호)
- 2019. 8. 22.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9-278호)
- 2019. 10. 4.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9-332호)
- 2019. 11. 2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9-377호)
- 2020. 1. 9. 마곡 도시개발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서울특별시 제2020-12호)
- 2020. 4. 9.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20-141호)

- 2020. 5. 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0-173호)
- 2020. 5. 7.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특별계획구역 I, II, III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0-187호)
- 2020. 9. 10.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20-377호)
- 2020. 12. 17.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20-549호)
- 2020. 12. 24.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20-575호)
- 2021. 6. 24.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1-290호)
- 2021. 10. 14.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21-569호)
- 2022. 3. 24.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2-123호)
- 2022. 3. 31. 마곡 도시개발사업(2공구) 공사완료 공고(서울특별시 제2022-906호)
- 2022. 8. 18.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2-348호)
- 2022. 12.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2-462호)
- 2023. 2. 9.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특별계획구역 V, VI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3-47호)
- 2023. 4. 20.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3-139호)
- 2023. 5. 25.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3-201호)
- 2023. 9. 14.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3-409호)
- 2024. 5. 16.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4-239호)
- 2024.12. 12.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4-603호)

바. 입지여건

1) 교통여건

- 인천국제공항(35km)과 김포공항(2km),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
- 대상지 내부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관통

2) 기반시설 공급계획

시설명	확충계획	
	규 모	시행기관
용 수	생활용수 : 9,363톤/일 공업용수 : 2,949톤/일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시설명	확충계획	
	규 모	시행기관
전 력	1,276,196 MWh/년	한국전력
통 신	미 정	개별 통신서비스 기관
환 경	오수발생량 : 10,899톤/일 폐수발생량 : 2,323톤/일	서울특별시

※ 2012. 10. 11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기준임.

2. 관리기본방향

가. 관리목표

-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
-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
-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관리방향

- 동북아 관문도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이자 국제교류의 중심으로 육성
- 차세대 융합산업의 전초지이자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생태계로서 생산에서 소비, 기술개발에서 상품화의 전과정이 이루어지는 창조거점으로 육성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구현되는 녹색도시의 모델로 기술과 감성, 생산과 생활, 그리고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녹색 도시 조성
- 연구기능, 교육 및 훈련기능, 지원서비스 및 시범적인 생산기능, 주거 및 생활공간 기능이 연계된 자족적 공동체 조성

다.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 도로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용수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 하수 및 폐수처리,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 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
- 배수펌프장 : 강서구
- 공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공공·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광장 : 서울특별시

2)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기반시설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함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관리제외면적
	1,123,790.3	729,006.0	82,492.3	224,917.0	75,609.4	11,765.6

※ 관리제외면적 :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2개소), 보육시설(3개소)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단, 시험연구시설은 제외)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사업화)의 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제28조(도시형공장)의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함)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설립자는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 운영하여야 한다.
(임대비율은 공고문에 따로 정함)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라) 녹지구역

-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1) 입주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 입주업종 >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업종별
공통	연구개발업	M	*70	연구개발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IT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정보통신, 정보처리	J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업종별
			63	정보서비스업
BT	유전공학,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A	011	작물재배업
		C	109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031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NT	나노소자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GT	그린생산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등)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자원순환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 70(연구개발업)의 경우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말함

※ 대학(원)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 입주신청 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

- 상기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함
-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위 입주업종 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2항에서 제5항에 해당하는 업종도 가능

※ 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9호의 ‘포장 및 충전업’, 같은조 제4항의 ‘자원비축시설’의 입주는 불가하며, 다른 입주 허용업종 없이 제6조제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12의 ‘신탁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한 업체는 입주 불가(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1)’은 위원회 심의 필요)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업종

2) 업종별 배분 비율

- 산업여건 및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업종배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3)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 기본 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
 - ※ 실수요기업과 관련 분야 인증·검사 기관, 소속협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분량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 「산업집적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 외 아래의 업종도 가능
 - 부동산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입주자격을 갖춘 자
 - ※ 마곡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마곡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처분 제한 기한내 처분한 자는 처분신청일로부터 향후 5년간 각각 입주자격을 제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사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업종별 배치계획

- 가) 업종별 배치는 융복합 트렌드와 산업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기업 입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별 배치
- 나) 클러스터는 지하철역, 도보생활권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분산 배치를 통해 입주 업종별 거점화와 융합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코어 클러스터는 마곡지구의 가장 중심지인 공항철도 및 9호선 환승 역세권 지역에 배치
- InT클러스터는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IT기술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코어 클러스터 인근 배치
- BiT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연구와 IT기술 연계가 가능한 중앙공원과 환승역세권 지역에 배치
- GeT클러스터는 주변 자연환경(저류지, 물재생센터, 공원 등)의 활용이 용이한 양천향교역 지역에 배치
- BmT클러스터는 의료·제약 산업 집적이 용이하도록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입주하는 지역 주변에 배치

다) 각 클러스터는 코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배치

라) 주변시설(업무시설, 의료시설, 자원회수시설, 주거시설 등)과 유치업종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다.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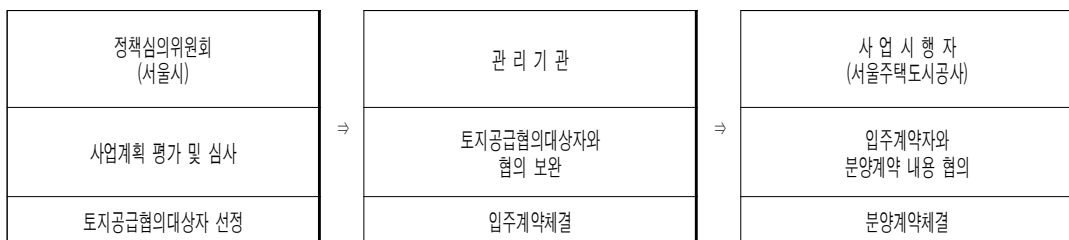
가) 입주계약 신청

- 당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된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나) 심사

- 심사절차

① 일반분양 및 처분신청용지



② 지식산업센터

· 토지분양



※토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건립 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임대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분양임대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필요 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분양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음.

－ 위원회 평가 및 심사방법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결과 작성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전검토 및 의견첨부 가능
- 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공급협의대상자를 선정

다) 계약체결

- － 위원회에서 선정된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용지공급조건(사업내용, 시기 등) 등에 대한 협의·보완을 거쳐 입주자 선정
- － 선정된 입주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선정된 입주자가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협의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족한 차순위자를 입주계약 협의대상자로 할 수 있다.

라) 공실활용 입주절차

- － 연구시설 공실 제공자는 관리기관에 공실활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변경계약(또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연구시설 공실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선정
- － 선정된 공실 입주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공실활용 제공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지원시설구역 입주절차

- － 당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와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사업개시 신고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가)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산업집적법」에 의거 사업개시 신고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나) 심사기준

- 사업개시

(1) 연구시설 면적 비율 : 입주기업체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구 분	연구시설(A)	부대시설(B)	제조시설/ 사업화시설(C)	기타시설 (주차장, 기계실)
면 적(㎡)				
비 율(%)	$A/(A+B+C)$		$C/(A+B+C)$	

※ 연구시설 :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공간

(2) 연구개발 인력 수 : 「마곡일반산업단지 일반분양 분양(입주)공고문」에 따라 협의·보완을 거친 사업계획서 상 연구인력 확대계획의 첫해연도 연구개발 인력 수

구 분	Y	Y+1	Y+2	Y+3	Y+4	Y+5
연구개발 인력 수(명)						

※ 연구개발 인력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 인력
- KOITA 미등록 연구개발 인력이 있는 경우 업무분장, 연구개발 실적자료,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관리기관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판단될 경우 인정

(3) 부대시설 인정 범위 : 3.가.2).가).1.에 따름

(4) 기타 시설물(장비 등) 설치 사항 : 입주기업체 개별 사업개시 신고서 기준

(5) 사업개시 후 입주기업체는 연구시설, 부대시설 등 각각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개시 요건 충족 및 공장등록사항, 변경사항 확인 등을 위해 입주기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음

- 공장설립등의 완료

(1) 사업개시 기준 및 공장신설승인 조건 모두 충족

(가) 사업개시 기준 : 상동

(나) 공장신설 승인 조건 : 제조시설비율 20% 이하(단, 기업별 연구시설면적 비율 유지)이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연구개발과 제조시설 생산간 연계성 확보

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계획

1)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용지의 분할제한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최초분양시 산업용지가 공유지분 형태(권소사업)의 분할인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 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150㎡ 이상이 될 것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다)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관련 법률로 정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를 처분하려는 경우 및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3)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제한

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4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의 신고(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이후 임대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임대신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3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 입주기업 중 임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변경계약(또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단, 임대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임대를 할 수 없음

- 사업개시의 신고(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이 본 관리기본계획 3.나.1).가)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다) 임대 가능 면적은 연구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사업화 시설의 50% 이내의 범위에 한함

- 부대시설 및 사업화시설 인정 범위 : 3.가.2).가).1에 따름

※ 단, 관리기관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 등은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함

4) 입주계약의 해지(「산업집적법」 제42조)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체결 후 5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 착수는 착공신고 시점을, 준공은 사용승인 받은 시점을 말함

※ 다만, 시정기한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경우 관리기관은 시정기한으로부터 최대 6개월 내에서 착공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및 자연재해에 준하는 요인(전염병 등)으로 착·준공이 지연될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 등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분할 기준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관리기관은 공실 입주자가 6개월 안에 사업계획서 미이행시 공실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연구개발환경의 보전

가)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강서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나)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다) 기반시설관리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6) 건축물 관리계획

가) 건축물 관리목적

- 건축물 관리의 목적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개발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건축물의 관리는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당초 사업계획서와 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건축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를 첨단R&D센터로 조성하는 한편,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건축물 조성을 유도함
- 기타사항은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 관리원칙

-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가 첨단기술R&D센터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자체에서 이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단계 및 인허가 단계, 준공단계에서 관리를 수행함
-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대상자가 토지공급을 위해 공급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준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과정과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사업계획에 준한 건축물 건축 여부를 점검함. 다만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건축의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

-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의 위상에 걸맞도록 건축물의 외관적 디자인이나 에너지, 환경 등 친환경성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환경은 물론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첨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8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3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0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6호(2010.09.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0호(2012.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6호(2016.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6호(2017.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6호(2017.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8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0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7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3호(2020.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9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9호(2021.10.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3호(2022.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21호(2022.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5호(2022.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호(2023.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호(2023.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7호(2023.03.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0호(2023.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0호(2024.0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0호(2024.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9호(2024.12.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1호(2024.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1호(2025.05.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23호(2025.0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54호(2025.07.0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지구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청량리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20만㎡이상)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원	358,087.80	감) 21.1	358,066.70	최초지정일: 서고 제2009-345호 (2009.09.10.)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가. 기준년도 : 2021년

나. 목표년도 : 2030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 도모

나.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58,087.8	감) 21.1	358,066.7	
촉진 구역	소계		148,070.3	감) 21.1	148,049.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청량리1재정비촉진구역	1,819.2	-	1,819.2	
		청량리2재정비촉진구역	1,938.3	-	1,938.3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7,020.6	-	7,020.6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41,573.9	-	41,573.9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51,665.9	감) 21.1	51,644.8	
		전농재정비촉진구역	27,815.4	-	27,815.4	
	주택재개발사업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16,237.0	-	16,237.0	
존치 지역	소계		210,017.5	-	210,017.5	
	존치지역		210,017.5	-	210,017.5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변경)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외 다른 구역 변경 없음

6. 용두1(3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용두1(3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용두동 26-14번지 일대	4,295.8	감) 21.1	4,274.7	-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 구역 면적 변경(구역계 변경 없음) - 4,295.8㎡ → 4,274.7㎡(감21.1㎡)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4,295.8	감) 21.1	4,274.7	100.0	
일반상업지역	4,216.4	감) 21.1	4,195.3	98.1	
준주거지역	79.4	-	79.4	1.9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동대문구 용두동 26-14번지 일대	- 일반상업지역 -4,216.4㎡→4,195.3㎡, 감21.1㎡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용도지역 결정도서 : 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295.8	감) 21.1	4,274.7	100.0	
획 지	소계	3,039.3	증) 6.6	3,045.9	71.3	
	획지 (3지구)	3,039.3	증) 6.6	3,045.9	71.3	
정비기반 시설	소계	1,256.5	감) 27.7	1,228.8	28.7	
	도로	1,256.5	감) 27.7	1,228.8	28.7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동대문구 용두동 26-14번지 일대	• 토지이용계획 경계 변경없음 - 획지 면적 3,039.3㎡→3,045.9㎡(증6.6㎡) - 도로 면적 1,256.5㎡→1,228.8㎡(감27.7㎡)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1	35~42.0 (42)	주간선 도로	3,300 (280)	종로6가89	청량리동749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대로	2	58	33~35 (33)	주간선 도로	1,850 (150)	용두동 (대2-14)	행당동 (118광장)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17	용두동24-2	용두동20-36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2	500	15	집산 도로	343	용두동47-7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2	501	15	집산 도로	85	용두동26-27	용두동20-80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2	502	15	집산 도로	152	용두동23-1	용두동20-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03	15 (13)	집산 도로	150	용두동14-20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78	용두동26-14	용두동26-17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 1. ()는 용두1구역 연장 및 폭원임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내용	비고
기정	1	도로	○기점부 - 용두동 23-12 ○종점부 - 용두동 23-47	길이	30	-
				폭	15	
				높이	지하2~지상15m이하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기정	2	도로	○기점부 - 용두동 14-10 ○종점부 - 용두동 14-21	길이	94	-
				폭	15	
				높이	지하2~지상15m이하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소공원	동대문구 용두동 26-1 일원	1,568.8	-	1,568.8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물시설계획 : 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용두1(3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4,295.8	-	-	용두동 26-14번지 일대	1	-	-	1	-	
변경	용두1(3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4,274.7 (감21.1)	-	-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지상/지하)	비고 (주거비율 제한)																																																					
	명 칭	면적(㎡)																																																												
기정	용두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4,295.8	용두동 26-14일대	주거,업무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지상28층이하 지하6층	90%이하																																																					
변경	용두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4,274.7	용두동 26-14일대	주거,업무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지상28층이하 지하6층	9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세대수</th><th rowspan="2">비율(%)</th></tr><tr><th>기정</th><th>증·감</th><th>변경</th></tr><tr><td colspan="2">계</td><td>288</td><td>-</td><td>288</td><td>100.0</td></tr><tr><td rowspan="3">공동주택</td><td colspan="2">소 계</td><td>209</td><td>증) 4</td><td>213</td><td>74.0</td></tr><tr><td colspan="2">40㎡이하</td><td>12</td><td>증) 13</td><td>25</td><td>8.7</td></tr><tr><td colspan="2">40㎡초과 ~ 50㎡이하</td><td>197</td><td>감) 9</td><td>188</td><td>65.3</td></tr><tr><td rowspan="3">공공 임대주택</td><td colspan="2">소 계</td><td>79</td><td>감) 4</td><td>75</td><td>26.0</td></tr><tr><td colspan="2">40㎡이하</td><td>36</td><td>감) 13</td><td>23</td><td>8.0</td></tr><tr><td colspan="2">40㎡초과 ~ 50㎡이하</td><td>43</td><td>증) 9</td><td>52</td><td>18.0</td></tr></table>									구 분		세대수			비율(%)	기정	증·감	변경	계		288	-	288	100.0	공동주택	소 계		209	증) 4	213	74.0	40㎡이하		12	증) 13	25	8.7	40㎡초과 ~ 50㎡이하		197	감) 9	188	65.3	공공 임대주택	소 계		79	감) 4	75	26.0	40㎡이하		36	감) 13	23	8.0	40㎡초과 ~ 50㎡이하		43	증) 9	52	18.0
	구 분		세대수			비율(%)																																																								
			기정	증·감	변경																																																									
	계		288	-	288	100.0																																																								
	공동주택	소 계		209	증) 4	213	74.0																																																							
		40㎡이하		12	증) 13	25	8.7																																																							
		40㎡초과 ~ 50㎡이하		197	감) 9	188	65.3																																																							
	공공 임대주택	소 계		79	감) 4	75	26.0																																																							
		40㎡이하		36	감) 13	23	8.0																																																							
		40㎡초과 ~ 50㎡이하		43	증) 9	52	18.0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실수</th><th rowspan="2">비율(%)</th></tr><tr><th>기정</th><th>증·감</th><th>변경</th></tr><tr><td colspan="2">계</td><td>120</td><td>감) 24</td><td>96</td><td>100.0</td></tr><tr><td>오피스텔</td><td>40㎡이하</td><td>120</td><td>감) 24</td><td>96</td><td>100.0</td></tr></table>									구 분		실수			비율(%)	기정	증·감	변경	계		120	감) 24	96	100.0	오피스텔	40㎡이하	120	감) 24	96	100.0																																
	구 분		실수			비율(%)																																																								
			기정	증·감	변경																																																									
	계		120	감) 24	96	100.0																																																								
오피스텔	40㎡이하	120	감) 24	96	100.0																																																									

심의완화 사항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 광역중심 이하 : 주거 90%(주거·오피스텔 등 80+임대주택10)+비주거10%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400% 이상 - 비주거 의무비율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고산자로변 : 3m

(3)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계획 : 변경

■ 용적률 계획(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4,295.8	3,039.3	1,256.5	583.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256.5㎡ - 583.0㎡ = 673.5㎡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도로(1,256.5㎡)				
기준/허용 용적률	• 800%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별도 허용용적률 적용 없음			

구 분	산 정 내 용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times (1+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 토지제공 면적 : 673.5㎡ $\Rightarrow 800\% \times [1+1.3 \times 1.0 \times (673.5/3,039.3)] \approx 1,030.5\%$ $\therefore$ 상한용적률 = 899% 적용	α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은 순부담 면적임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4,274.7	3,045.9	1,228.8	550.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228.8㎡ - 550㎡ = 678.8㎡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도로(1,256.5㎡)				
기준/허용 용적률	800%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별도 허용용적률 적용 없음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times (1+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 토지제공 면적 : 678.8㎡ $\Rightarrow 800\% \times [1+1.3 \times 1.0 \times (678.8/3,045.9)] \approx 1,031.7\%$ $\therefore$ 상한용적률 = 899% 적용			α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은 순부담 면적임	

(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일괄 매입하여 관리함.

계획기준		• 공공임대주택 건설 : 전체 연면적의 10% (15% 적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 : 45㎡이하		
기정	산출근거	• 전체 세대수 : 288세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79세대 - 전체 연면적 39,355.9㎡의 15.03%에 해당하는 연면적 5,916.5㎡ 공급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79세대	27.4%	100.0%
	40㎡이하	36세대	12.5%	45.6%
	40㎡초과 ~ 50㎡이하	43세대	14.9%	54.4%
변경	산출근거	• 전체 세대수 : 288세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75세대 - 전체 연면적 40,786.93㎡의 15.06%에 해당하는 연면적 6,143.5㎡ 공급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75세대	26.0%	100.0%
	40㎡이하	23세대	8.0%	30.7%
	40㎡초과 ~ 50㎡이하	52세대	18.0%	69.3%

사. 도시경관,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계획 - 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과 상호 연속성을 확보하되 주요부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 - 건축물 전면면 유효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가로망 확보, 보행자의 쾌적성 등을 제공	-
환경보전	• 토양오염방지 - 불투수 포장면 최소화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
재난방지	•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함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 • 건설소음 - 가설방음 판넬 설치 - 저소음 건설 기계 등을 선택하여 주간(08:00~18:00)에만 작업 실시 • 먼지 - 방진망 설치 :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 판넬과 연계된 방진망(H=1.5m) 설치 -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 - 주기적인 살수 실시(하계기준 1일 6회이상)	-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3년 이내	조합 등	-	288	288	-

7.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사업 명칭	위 치	면적(㎡)			구성비 (%)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용두1(3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용두동 26-14 일대	4,295.8	감)21.1	4,274.7	100.0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 구역면적 변경(구역계 변경 없음) - 4,295.8㎡ → 4,274.7㎡(감21.1㎡)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4,295.8	감)21.1	4,274.7	100.0	
일반상업지역	4,216.4	감)21.1	4,195.3	98.1	
준주거지역	79.4	-	79.4	1.9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동대문구 용두동 26-14번지 일대	- 일반상업지역 - 4,216.4㎡ → 4,195.3㎡(감21.1㎡)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①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1	35~42.0 (42)	주간선 도로	3,300 (280)	종로6가89	청량리동749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대로	2	58	33~35 (33)	주간선 도로	1,850 (150)	용두동 (대2-14)	행당동 (118광장)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17	용두동24-2	용두동20-36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2	500	15	집산 도로	343	용두동47-7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2	501	15	집산 도로	85	용두동26-27	용두동20-80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2	502	15	집산 도로	152	용두동23-1	용두동20-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2	503	15 (13)	집산 도로	150	용두동14-20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78	용두동26-14	용두동26-17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

※ 1. ()는 용두1구역 연장 및 폭원임

②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내용		비고
기정	1	도로	○기점부 - 용두동 23-12 ○종점부 - 용두동 23-47	길이	30		-
				폭	15		
				높이	지하2~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기정	2	도로	○기점부	길이	94		-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내용	비고
			- 용두동 14-10 ○종점부 - 용두동 14-21	폭	15	
				높이	지하2~지상15m이하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비도시계획시설

③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소공원	동대문구 용두동 26-1 일원	1,568.8	-	1,568.8	서울시고시 제2020-428호 (20.10.22.)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획지	3,039.3	증) 6.6	3,045.9	100.0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용 도	비 고
기정	주용도	●주거, 업무	복합기능

㉡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 계획

구 분	건폐율(%)	비 고
기 정	50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계획(%)	비 고
기 정	899	

■ 높이계획

구 분	높이(m)	층수(지상/지하)	비 고
기 정	90	지상28층이하/지하6층	

③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기정	건축한계선	고산자로	3m

④ 경관계획 : 변경 없음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 가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에 일치되도록 배치 권장
건물 진출입구	생활가로변 근린생활시설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벽면 및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색채 사용 금지 • 주변 자연과 조화를 유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 대항부에서 조망되는 옥탑부에 우수한 입면 계획 권장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지양
저층부 외관	생활가로변 근린생활시설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입면 계획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1층 벽면은 투시형으로 계획 • 장대한 입면 및 돌출경관 지양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공동주택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㉔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	• 주변지역 건축계획과 연계한 통경축 확보
조명계획	-	• 주변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 조명 설치계획
스카이라인	-	• 주변지역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계획 •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계획 유도

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㉕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내용
공개공지	-	• 단지 내 공개공지는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전면공지	고산자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와 연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단차는 최소화하여 조성함

㉠ 교통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고산자로 고산자로32길 고산자로34길	간선 및 일부 이면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 환경관리계획

구 분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1. 생태 면적률	20%	○	•생태면적률 20.12%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적용
2. 생태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현재 녹지가 미미한 수준임	•생태적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하여 환경성검토 녹지평가지표 1을 달성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본 대상지는 건축물 1개동이 있으며, 업무시설이 입지해있으며, 평탄한 지형임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 발생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최소화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흠막이공법 실시
4. 비오톱	3등급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대지면적 내 조경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
5.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대상지 서측과 북측은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일부 주거지역이 분포함	•일조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량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구 분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8. 경관	Skyline보전	○	•본 대상지 주변에 업무시설 및 상가시설이 고밀개발되어 지역중심지로서의 도시경관을 이룸	•인접지역 경관에 위압감 해소를 위해 기준 높이를 적용하여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 연속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함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합리적인 조경계획수립 및 자연지반 녹지, 인공지반 녹지를 통해 녹지공간 확보를 비롯한 녹색경관창출을 도모함
9. 휴식 및 여유평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 남측으로 용두공원과 한강이 위치함	•자연 · 인공지반 등 녹지공간 최대확보 •옥상녹화 등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 •대상지 동측에 소공원 조성계획
10.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사업지 북측으로 왕산로(6차로,30.0m), 서측으로 고산자로(6차로,30.0m)가 지나가고 있음	•용두1구역 내 도로 및 공공보행도로 계획 수립 •대상지 주변으로 도로 설치계획 수립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서측 고산자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11.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 패널 설치 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유지
12.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동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㉔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주택의 규모별 비율

－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구분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비고 (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기정	합 계	288	100.0	79	27.4	100.0	－
	40㎡이하	48	16.7	36	12.5	45.6	26㎡
	40㎡초과 ~ 50㎡이하	240	83.3	43	14.9	54.4	41㎡, 44㎡
변경	합 계	288	100.0	75	26.0	100.0	－
	40㎡이하	48	16.7	23	8.0	30.7	26㎡
	40㎡초과 ~ 50㎡이하	240	83.3	52	18.0	69.3	41㎡, 44㎡, 48㎡

8. 2020년 제10차('20.08.18.)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10차 도시재정비 위원회	수정 가결	1. 주거비를 완화(0→90%)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은 전체 연면적의 15%로 확보할 것	1.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39,355.9㎡)의 15.03%(5,916.5㎡) 수준인 79세대 확보하였음	반영
		2. 다음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토 및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도로계획은 용두1구역 개별지구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조성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은 남측 동에만 집중 배치되어 있으므로 평형을 다양화하여 북측 동에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상 건축물 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단지 동측에 있는 차량 진출입구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공개공지①, ②는 연계성이 있도록 계획하고, 공개공지가 주변 개별지구 개발상황과 연계되도록 검토할 것	2. 다음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음 - 도로계획은 용두1구역 개별지구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조성방안을 마련하겠음 - 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하여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지상 건축물 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구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 공개공지간 연계성이 있도록 계획하고, 공개공지가 주변 개별지구 개발상황과 연계되도록 검토하겠음	반영

9.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0.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11.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13) 및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29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9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2009.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92호(2012.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9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호(2013.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1호(2014.04.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7호(2014.06.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호(2015.0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2호(2015.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5호(2016.06.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2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5호(2017.06.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6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7호(2017.1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0호(2018.03.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2018.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6호(2018.0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4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3호(2018.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5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호(2020.0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호(2020.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1호(2020.03.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3호(2020.03.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3호(2020.10.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호(2021.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9호(2021.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0호(2022.11.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7호(2023.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34호(2023.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1호(2024.0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6호(2025.07.3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114호(2025.08. 14.)로 변경 결정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합니다.
2. 아울러,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I.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세대)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2,536 (13,642)	12,529 (13,607)	30,015 (31,121)	29,998 (31,076)	
촉진 구역	소 계	10,172	10,165	24,413	24,396	
	40㎡ 이하	743	779	1,783	1,870	
	40 ~ 60㎡	3,254	3,230	7,810	7,752	
	60 ~ 85㎡	5,007	4,990	12,017	11,976	
	85㎡초 과	1,168	1,166	2,803	2,798	
존치지역		2,364	2,364	5,602	5,602	

※ 변경사유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 결과 등 반영에 따른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 ()는 부분임대 포함시 세대수 및 인구수이며, 부분임대는 인구수 산정시 세대당 1명을 적용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카.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역명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고	
						평균		최고		
		기준	계획	기준	상한	기준	완화			계획
흑석1		-	-	-	-	-	-	-	-	
흑석2		60	52.26	388.41	600	-	-	49	해발고도185m이하 /특별건축구역	
흑석3		60	23.4	200	251	16.0	-	15.5	20	
흑석4		60	25	170	228	16.0	-	14.1	20	
흑석5		60	23	190	235	16.0	18.2	18.2	20	
흑석6		60	23	190	224	16.0	-	16.0	20	
흑석7		50	32.0	178.8	207.7	14.5	-	13.6	28	
흑석8		60	22.5	210	240.9	16.0	18.0	18.0	25	
흑석9		60	20.0	205	254.8	16.0	21.4	21.1	25	
흑석10		40	40.0	150	-	4.0	-	4.0	4	
흑석 11	기정	60	25.49	190	205.85	16.0	-	13.3	16	특별건축구역
	변경	60	23.61					13.5		

※ 변경사유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 결과 등 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 흑석1구역 건축계획은 향후 조합 등 추진주체 구성 시 용도지역 조정 등이 포함된 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음
 ※ 흑석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법적상한초과용적률 적용
 ※ 흑석2구역 계획높이는 「건축법」 제84조에 의한 건축물 높이 산정방식을 따름

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파.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하.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총계	임대					분양				부분 임대
		소계	40㎡ 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60~85㎡ 이하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흑석1	-	-	-	-	-	-	-	-	-	-	-
흑석2	1,012	352	59	-	207	86	660	54	233	373	-
흑석3	1,772	338	156	136	46	-	1,434	542	856	36	320
흑석4	863	147	62	62	23	-	716	28	518	170	-
흑석5	655	114	46	51	17	-	541	24	391	126	-
흑석6	963	165	70	68	27	-	798	48	559	191	34
흑석7	1,073	162	65	75	22	-	911	151	716	44	322
흑석8	545	94	40	44	10	-	451	184	237	30	77
흑석9	1,540	262	90	107	65	-	1,278	542	647	89	283

구 분		총계	임대					분양				부분 임대
			소계	40㎡ 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60~85㎡ 이하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흑석10		227	-	-	-	-	-	227	92	88	47	-
흑석 11	기정	1,522	260	114	108	38	-	1,262	524	676	62	70
	변경	1,515	266	141	92	33	-	1,249	530	659	60	42
총계	기정	10,172	1,894	702	651	455	86	8,278	2,189	4,921	1,168	1,106
	변경	10,165	1,900	729	635	450	86	8,265	2,195	4,904	1,166	1,078

※ 변경사유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 결과 등 반영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 변경

※ 존치지역은 2,364세대, 흑석2구역(기정) 오피스텔 85세대 포함

※ 흑석1구역 구체적인 일부 건축계획은 향후 조합 등 추진주체 구성시 용도지역 조정 등이 포함된 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음

거.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너.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변경없음)

더. 특성화계획(변경없음)

리.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머.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버.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흑석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2) 흑석2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없음)

3) 흑석3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②	-	근린 공원	흑석동 69-163 번지일대	10,240.9 (7,171.1)	-	10,240.9 (7,171.1)	서고 제307호 (08. 9.1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	현충근린공원	근린 공원	동작동 산30-7 번지일대	614,443.2 (2,372.6)	-	614,443.2 (2,372.6)	서고 제321호 (09.8.27)	

※ ()는 흑석3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 종전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사항 미반영되어 현충근린공원 기정 면적 정정(1,096,155.8㎡→614,443.2㎡)

-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 ☐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8) 생태면적률(변경없음)
-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0)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1) 건축계획(변경없음)

4) 흑석4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	근린 공원	흑석동 58-11번지일대	12,615.4 (550.7)	-	12,615.4 (550.7)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 1,2,4,5,9구역
기정	②	-	근린 공원	흑석동 69-163번지 일대	10,240.9 (3,069.8)	-	10,240.9 (3,069.8)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 3,4구역
기정	-	현충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614,443.2 (1,589.4)	-	614,443.2 (1,589.4)	서고 제321호 (09.8.27)	흑석 3,4,6,11구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13존치 관리구역

※ ()는 흑석4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 종전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사항 미반영되어 현충근린공원 기정 면적 정정(1,096,155.8㎡→614,443.2㎡)

- ☐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8) 생태면적률(변경없음)
-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0)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1) 건축계획(변경없음)

5) 흑석5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6) 흑석6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③	-	소공원	흑석동339-4 번지일대	254.8	-	254.8	서고 제434호 (05.12.29)	
기정	-	현충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614,443.2 (5,052.7)	-	614,443.2 (5,052.7)	서고 제321호 (09.8.27)	

※ ()는 흑석6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 종전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사항 미반영되어 현충근린공원 기정 면적 정정(1,096,155.8㎡→614,443.2㎡)

-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 ☐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 ☐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8) 생태면적률(변경없음)
-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0)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1) 건축계획(변경없음)

7) 흑석7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0) 흑석10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11) 흑석1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89,332.5	-	89,332.5	

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합 계		89,332.5	-	89,332.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6,780.0	-	16,780.0	18.8	
	도 로	3,903.9	-	3,903.9	4.4	
	공 원	5,336.1	-	5,336.1	6.0	
	녹 지	1,557.6	-	1,557.6	1.7	
	공공청사 (11-3, 8)	2,933.9	-	2,933.9	3.3	파출소(424.8) 공공청사(2,509.1)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문화시설 (11-4)	3,048.5	-	3,048.5	3.4	문화/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택 지 (획 지)	소 계	72,552.5	-	72,552.5	81.2	
	11-1	70,133.2	-	70,133.2	78.5	공동주택
	11-2	638.5	-	638.5	0.7	공동주택
	11-5	1,780.8	-	1,780.8	2.0	종교시설

※ 공동주택 부지내 옹벽(11-2 포함) 유지관리는 조합(분양 후 입주자)이 관리하며, 분양계약서 및 입주자 공고문에 명기하여 사업 추진

(2)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경 후	
총 계			89,332.5	-	89,332.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89,332.5	-	89,332.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97.6	-	10,797.6	12.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338.4	-	7,338.4	8.2
		제2종일반주거지역	71,196.5	-	71,196.5	79.7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43	35	주간선 도로	2,000 (341)	한강대교남 단	이수교	일반 도로	-	건고14 (77.1.31)	1,2,7,11 구역
기정	중로	2	5	15	국지 도로	144 (107)	흑석동 335-4	흑석동 288-3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5,11구역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55	흑석동 288-5	흑석동 293-10	일반 도로	-	서고 91호 (20.3.05)	

※ () 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나)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	현충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614,443.2 (5,336.1)	-	614,443.2 (5,336.1)	서고제321호 (09.8.27)	흑석3,4,6,11구역, 준치관리 13구역

※ () 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 종전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사항 미반영되어 현충근린공원 기정 면적 정정(1,096,155.8㎡→614,443.2㎡)

(다)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흑석동산88-14	1,557.6	-	1,557.6	서고 196호 (12.7.26)	

(라)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기정	⑤	공공청사	파출소	흑석동 335-7 일대	424.8	-	424.8	서고 196호 (12.7.26)	
기정	⑥	공공청사	-	흑석동 38-58일대	2,509.1	-	2,509.1	서고 479호 (21.9.2)	(서울시 기부채납)

※ 공공청사6 :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증고 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공공기여 시설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마)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기정	①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	흑석동 38-58일대	3,048.5	-	3,048.5	서고 91호 (20.3.05)	중복결정 (동작구 기부제납)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공동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내	376.29	감)120.35	255.94	
	경비실		36.00	증)8.34	44.34	
	경로당		681.02	증)62.16	743.18	
	어린이집		776.55	감)37.25	739.30	
	작은도서관		533.84	감)65.99	467.85	
	어린이놀이터		1,561.70	감)24.35	1,537.35	
	주민운동시설		370.93	증)67.64	438.57	
	근린생활시설		1,452.45	증)372.28	1,824.73	

※ 향후 인허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 변경사유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협의 결과 등 반영

(5)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	89,332.5	-	-	흑석동304 번지일대	347	-	-	345	2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흑석11 재정비 촉진 구역	89,332.5	택지11-1	70,133.2	흑석동 267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29이하	205.85 이하	13.3층이하/ 16층이하	
		택지11-2	638.5	흑석동 290-6 일대					
		택지11-3	424.8	흑석동 335-7 일대	공공청사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택지11-4	3,048.5	흑석동 38-58 일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택지11-5	1,780.8	흑석동 264 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택지11-8	2,509.1	흑석동 38-58 일대	공공청사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건설비용 - 세대 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 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 : 40%이상 ○건립예정세대수 : 1,522 세대 - 임대주택 건립시 전용면적 38㎡이상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 율(%)			
		40㎡미만	114	-	114	7.5			
		40~50㎡미만	108	-	108	7.1			
		50~60㎡미만	562	524	38	36.9			
		60~85㎡미만	676	676	-	44.4			
		85㎡이상	62	62	-	4.1			
		합 계	1,522	1,262	260	100			
		심의완화 사항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 수립을 통한 인동거리 등 완화 - 인동거리 : 0.5h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건축한계선 : 현충로변 공동주택 6m (단 건축물에서 1.5m이내 설치하는 방음벽[구조물 포함] 제외)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공공보행통로 : 4~6m ○흑석11구역 도시·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기타 사항	○공동주택 부지내 옹벽(11-2 포함) 유지관리는 조합(분양 후 입주자)이 관리하며, 분양계약서 및 입주자 공고문에 명기하 여 사업 추진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흑석11 재정비 촉진 구역	89,332.5	택지11-1	70,133.2	흑석동 267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90이하	205.85 이하	13.5이하/ 16층이하
			택지11-2	638.5	흑석동 290-6 일대				
			택지11-3	424.8	흑석동 335-7 일대	공공청사	60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택지11-4	3,048.5	흑석동 38-58 일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600이하	200이하	7층이하
			택지11-5	1,780.8	흑석동 264 일대	종교시설	600이하	200이하	7층이하
			택지11-8	2,509.1	흑석동 38-58 일대	공공청사	600이하	200이하	7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건설비용 - 세대 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 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 : 40%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1,515 세대 - 임대주택 건립시 전용면적 38㎡이상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 율(%)			
		40㎡미만	150	9	141	9.9			
		40~50㎡미만	102	10	92	6.7			
		50~60㎡미만	544	511	33	35.9			
		60~85㎡미만	659	659	-	43.5			
		85㎡이상	60	60	-	4.0			
합 계		1,515	1,249	266	100				
심의완화 사항		○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 수립을 통한 인동거리 등 완화 - 인동거리 : 0.5h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사항 반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건축한계선 : 현충로변 공동주택 6m (단 건축물에서 1.5m이내 설치하는 방음벽[구조물 포함] 제외)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4~6m ○ 흑석11구역 도시·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기타 사항	○ 공동주택 부지내 옹벽(11-2 포함) 유지관리는 조합(분양 후 입주자)이 관리하며, 분양계약서 및 입주자 공고문에 명기하 여 사업 추진								

※ 변경사유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 결과 등 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다)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89,332.5㎡	70,771.7㎡	27,145.0㎡	3,030.4㎡	14,372.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7,145.0\text{㎡} - 3,030.4\text{㎡} - 14,372.5\text{㎡} = 9,742.1\text{㎡}$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공공청사 토지환산면적(2,289.74㎡)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토지환산면적(3,199.62㎡), 학교부담금 및 건축비 토지환산면적(4,875.64㎡) 포함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text{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 토지} + 0.7 \times \alpha \text{ 현금} \cdot \text{건축물})$ ▶ 대상지 • $\alpha \text{ 토지} = -1.032.3/70,771.7 = -0.01458$ • $\alpha \text{ 현금} \cdot \text{건축물} = 10,365.0/70,771.7 = 0.1464$ ▶ 상한용적률 (원화가능용적률) $= 190\% \times (1 + 1.3 \times -0.01458 \times 1.0 + 0.7 \times 0.1464)$ $= 205.85\%$ $\alpha \text{ 토지} = \text{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가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가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alpha \text{ 현금} \cdot \text{건축물} = \text{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alpha \text{ 토지} = \text{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가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가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alpha \text{ 현금} \cdot \text{건축물} = \text{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6)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서울시에 매각(처분)

계획기준	• 임대주택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 40㎡이하 ※ 40㎡이하 : 40~50㎡ : 50~60㎡이하 = 40~50% : 40~50% : 10~20%		
산출 근거	• 전체세대수 : 1,515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266세대 $: 1,515\text{세대} \times 17\% = 257.55\text{세대} \quad \therefore 266\text{세대} > 257.55\text{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266세대	17.6%	100.0%
40㎡이하	141세대	9.3%	53.0%
40~50㎡이하	92세대	6.1%	34.6%
50~60㎡이하	33세대	2.2%	12.4%

※ 추후 등·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

※ 변경사유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 결과 등 반영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 변경

(7) 기부채납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규모	비 고
도로	대로 1-43	• 대로 1-43(현충로) 호선 일부 확장 - 폭 3m, 연장 152m	
	중로 2- 5	• 중로 2-5호선 일부 개설 - 폭 15m, 연장 107m	
	소로 3-6	• 중로 3-34호선 개설 - 폭 6m, 연장 155m	
공원	현충근린공원	• 현충근린공원 일부 조성 - 면적 : 5,336.1㎡	
녹지	경관녹지	• 경관녹지 조성 (면적 1,557.6㎡)	
공공시설	공공청사 (지구대)	• 공공청사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흑석동 335-7번지 일원 - 토지면적 : 424.8㎡, 건축면적 : 661.84㎡	경찰청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흑석동 38-58번지 일원 - 토지면적 : 3,048.5㎡ - 건축면적 : 5,970.0㎡ - 세부용도 : 문화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작구
	공공청사	• 공공청사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흑석동 38-58번지 일원 - 토지면적 : 2,509.1㎡ - 연면적 : 5,000.0㎡ - 세부용도 :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서울시
신설학교 부담 (신설)		• 신설학교 조성을 위한 공동부담금 및 학교 건축비 - 공동부담금 : 25.7억원 - 학교 건축비 : 240억원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 수			비고
			현황	계획	증감	
재개발사업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1,829세대	1,515세대	감) 314	

(10)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3) 생태 면적률(변경없음)

(14) 건축계획(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구역면적(㎡)		89,332.5	89,332.5	
대지면적(㎡)		70,771.7	70,771.7	특별건축구역
용적률산정용면적(㎡)		143,129.10	144,561.11	
건축면적(㎡)		18,037.73	16,706.10	
용적률(%)		202.24	204.26	
건폐율(%)		25.49	23.61	
주차대수	지상	-	-	근생 법정: 12대 공동 법정: 1,492대
	지하	2,530	2,568	
	계	2,530 (근생 15대 포함)	2,568 (근생 15대 포함)	법정: 1,504대

※ 변경사유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 결과 등 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다) 도시·건축 혁신계획(변경)

(1) 도시·건축 혁신 촉진계획지침(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용적률	• 기준용적률 190%, 상한 용적률 205.85% 이하	
층수/높이	• 최고층수 16층 이하, 평균층수 13.5층 이하(현충원에서 사업대상지가 보이지 않도록 계획) ※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지역커뮤니티시설) 도입 1개동은 16층 이하, 그 외 15층 이하로 계획	
순부담률	• 10%이상 (공공시설은 서울시·동작구 수요조사 및 「흑석 지역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지역필요시설을 우선적으로 반영)	
토지이용계획	• 종교시설(한가람교회)는 이전 배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 변경사유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 결과 등 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주1) 도시·건축 혁신 촉진계획의 세부내용은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공대안(흑석11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름

주2) '도시·건축 혁신 촉진계획 지침(이하 '촉진계획지침')'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된 촉진계획지침은 사업 완료 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3) 촉진계획지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시건축혁신단(가칭)(도시계획혁신임기화단) 및 관계부서 협의, 공공건축가 자문,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도시·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경관계획	- 현충원의 정온한 도시풍경을 유지하도록 높이관리 - 한강변 경관은 일률적 높이제한 보다는 구릉지에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5~16층) - 한강변·현충로~서달산 방향, 경사의 직각방향으로 주동배치를 통한 트임축 만들기	
보행축	- 기존 지형과 길을 고려한 가로구성 - 현충로변은 지역자원 생활가로, 단지 내 마을길은 커뮤니티 생활가로로 조성 - 마을길과 커뮤니티 시설을 통한 어울림, 보행가로와 커뮤니티 마당의 공간적 연계	
특화디자인	- 길과 마당을 가진 소규모 블록형 마을 만들기 - 단형 테라스형식의 주동계획과 옥상조경 - 특화된 외부공간을 통한 다양한 옥외활동 지원 - 특별건축구역 활용	
역사보전계획	비개마을의 옛 길과 마을의 기억을 일부 복원	
대지조성계획	절·성토와 응벽 발생을 최소화	
다양한 주거형태	- 다양한 주동타입의 변화있는 조합 - 다양한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하는 평면구성	
공공성	- 주민의 자발적 관리·운영이 담보되는 단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 타워동 상층부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스카이라운지 설치(1개동 이상)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 필요시설 확보	

주1) 도시·건축 혁신 촉진계획의 세부내용은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공대안 (혁신11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름

주2) '도시·건축 혁신 촉진계획 지침(이하 '촉진계획지침')'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된 촉진계획지침은 사업 완료 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3) 촉진계획지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시건축혁신단(가칭)(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관계부서 협의, 공공건축가 자문,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3)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 원

(가) 공원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비고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후	
합 계	13	56,261.7	-	56,261.7	
어린이공원	2	2,825.5	-	2,825.5	
소공원	4	2,230.9	-	2,230.9	
근린공원	5	47,594.8	-	47,594.8	
문화공원	2	3,610.5	-	3,610.5	

(나)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	문화 공원	흑석동 105번지일대	1,948.5	-	1,948.5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2구역
기정	②	-	문화 공원	흑석동 51-8번지일대	1,662.0	-	1,662.0	서고 제35호 (20.1.23)	흑석1구역
기정	①	-	근린 공원	흑석동 58-11번지일대	12,615.4	-	12,615.4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 1,2,4,5,9구역
기정	②	-	근린 공원	흑석동 69-163번지 일대	10,240.9	-	10,240.9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 3,4구역
기정	②	-	어린이 공원	흑석동 54-28번지일대	2,163.5	-	2,163.5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 1,5구역
기정	-	물새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흑석동 105번지 일대	662.0	-	662.0	서고 제79호 (80.3.3)	흑석12 존치관리구역
기정	①	-	소공원	흑석동 231-31번지 일대	1,420.1	-	1,420.1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8구역
기정	③	-	소공원	흑석동 339-4번지일대	254.8	-	254.8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6구역
기정	⑦	-	소공원	흑석동 186-135번지 일대	442.0	-	442.0	서고 제128호 (12.5.17)	흑석2 존치관리구역
기정	⑧	-	소공원	흑석동 198-90번지 일대	114.0	-	114.0	서고 제196호 (12.7.26)	흑석 10구역
기정	⑬	노량진 근린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 본동 노량진동 일대	415,610.0 (1,542.0)	-	415,610.0 (1,542.0)	총고 제208호 (40.3.12)	흑석 10구역
기정	-	현충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614,443.2 (16,509.5)	-	614,443.2 (16,509.5)	서고 제321호 (09.8.27)	흑석 3,4,6,11구역, 13존치 관리구역
기정	-	용봉정 근린공원	근린 공원	흑석동 본동 일대	82,997.0 (6,687.0)	-	82,997.0 (6,687.0)	총고 제208호 (40.3.12)	흑석7구역

※ ()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임

※ 종전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사항 미반영되어 현충근린공원 기정 면적 정정(1,096,155.8㎡→614,443.2㎡)

(2)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방재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II. 흑석11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조서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현충 근린공원	근린공원	동작동 산30-7 일대	614,443.2 (5,336.1)	-	614,443.2 (5,336.1)	서고 제321호 (09.8.27)	흑석3,4,6,11구 역, 존치관리 13구역

※ () 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 종전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사항 미반영되어 현충근린공원 기정 면적 정정(1,096,155.8㎡→614,443.2㎡)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획 지	11-1	70,133.2	-	70,133.2	공동주택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11-2	638.5	-	638.5	공동주택
	11-5	1,780.8	-	1,780.8	종교시설

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명칭	용도	비고
주용도	1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1-2		
	11-5	• 종교	

□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공동주택(11-1,2)	29% 이하	
종교,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공동주택(11-1,2)	190%	-	205.85% 이하	205.85% 이하	
종교,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없음)

구 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공동주택(11-1,2)	15.85%	-	

※ 단순 오기로 인한 정정(10.85%→15.85%)

○ 높이 계획(변경)

구분	높이기준	비 고
공동주택(11~12)	평균 13.5층 이하/최고 16층 이하	
종교,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현충로변	• 현충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통한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단 건축물에서 1.5m이내 설치하는 방음벽[구조물 포함] 제외)	

라. 경관계획(변경없음)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 공동주택	• 기존 경사지를 활용하여 지형변동을 최소화 • 현충원과 한강 등 주변지형을 고려한 자연순응형 친환경 계획
건물 진출입구	• 현충로변 근린생활시설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벽면 및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 공동주택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색채 사용 금지 • 주변 자연과 조화를 유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옥탑부에 우수한 입면 계획 권장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지양
저층부 외관	• 현충로변 근린생활시설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입면 계획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1층 벽면은 투시형으로 계획 • 정대한 입면 및 돌출경관 지양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재료/색채	• 공동주택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로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 공동주택	• 서달산으로 향하는 통경축 확보
조명계획	• 공동주택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 조명 설치 계획 •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한 야간조명 계획
스카이라인	• 공동주택	• 수변을 향해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 서달산 구릉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 계획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현충로변 공동주택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6m (단 건축물에서 1.5m이내 설치하는 방음벽[구조물 포함] 제외)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부지내	• 도시조직 및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4~6m 조성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서울시에 매각(처분)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 계	1,515	100.0	266	266	-	17.6	100.0	-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40㎡이하	150	9.9	141	141	-	9.3	53.0	-
40~50㎡이하	102	6.7	92	92	-	6.1	34.6	-
50~60㎡이하	544	35.9	33	33	-	2.2	12.4	-
60~85㎡이하	659	43.5	-	-	-	-	-	-
85㎡초과	60	4.0	-	-	-	-	-	-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

※ 변경사유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 결과 등 반영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 변경

□ 환경관리계획

구 분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 항목	계획에 반영 사항
1.생태면적율	30% (공동주택)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 계획대상지내 충분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율 30% 이상 확보
2.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 체계적인 녹지조성계획 수립
3.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구릉지형으로 형성	• 지형에 순응한 계획수립
4.비오톱	4,5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 개별비오톱 제외등급	• 공원,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향상
5.일조	-	• 서측 및 북측 주거지역임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서북서풍) 고려 계획
7.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절약 설비 및 계획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8.경관	Skyline보전	• 서달산 및 공동주택 입지	• 주변 서달산 및 공동주택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9.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기준	• 공사시 소음 및 진동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준수
10.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동작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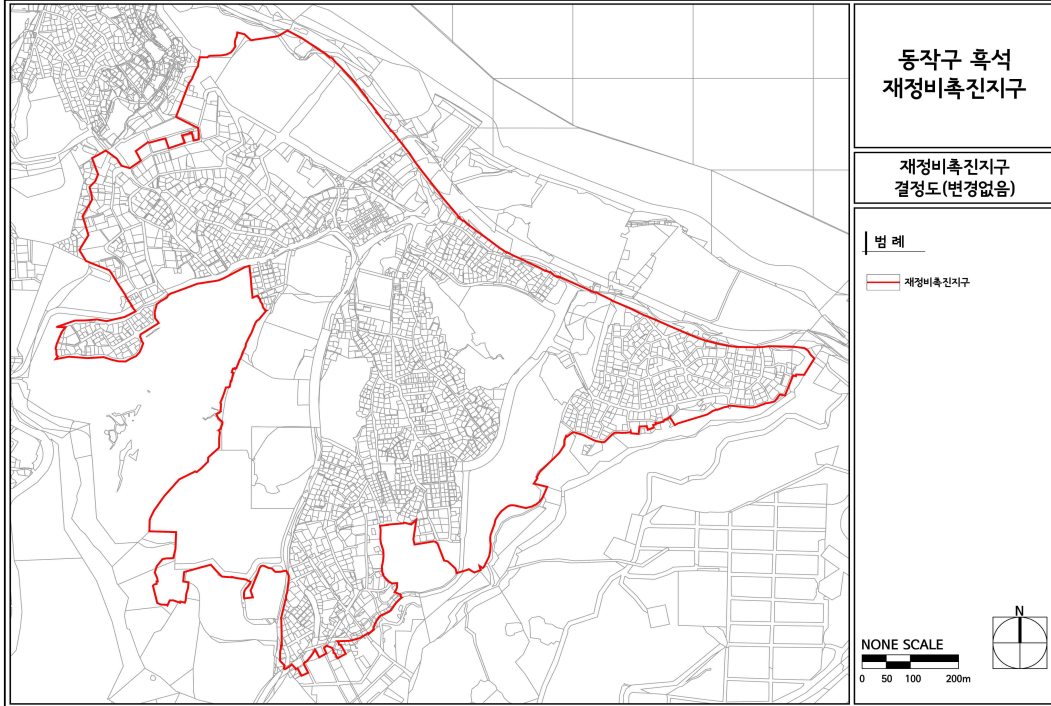
Ⅲ.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혹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Ⅳ.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및 동작구 도시정비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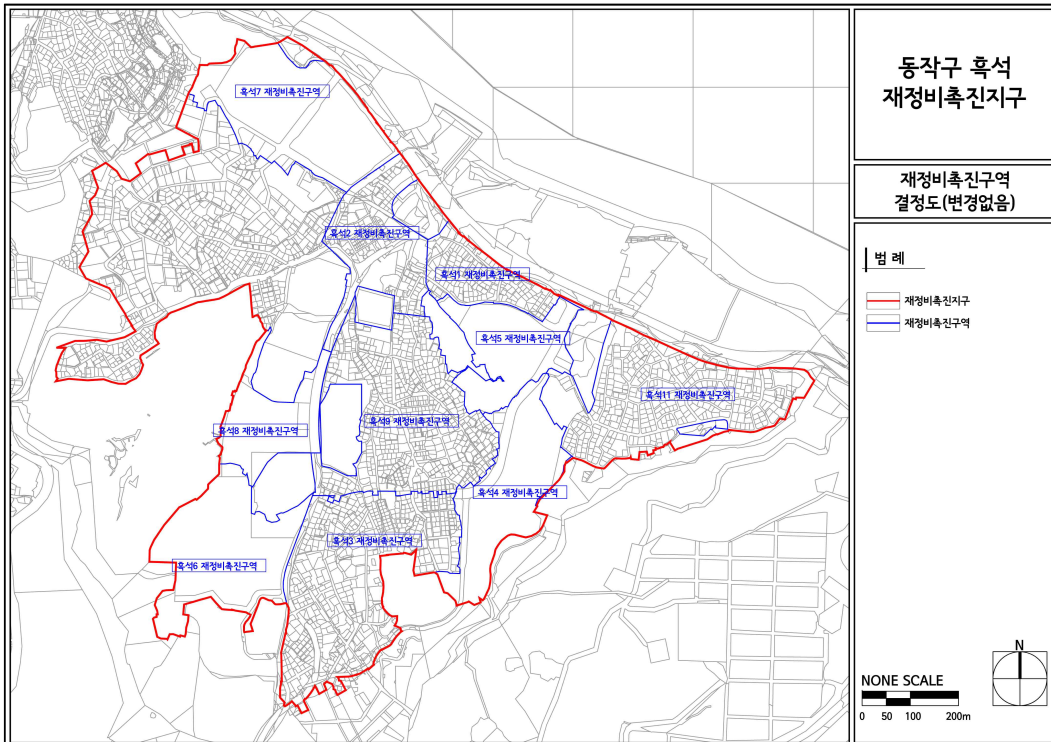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22) 및 동작구 도시정비1과(☎02-820-1980)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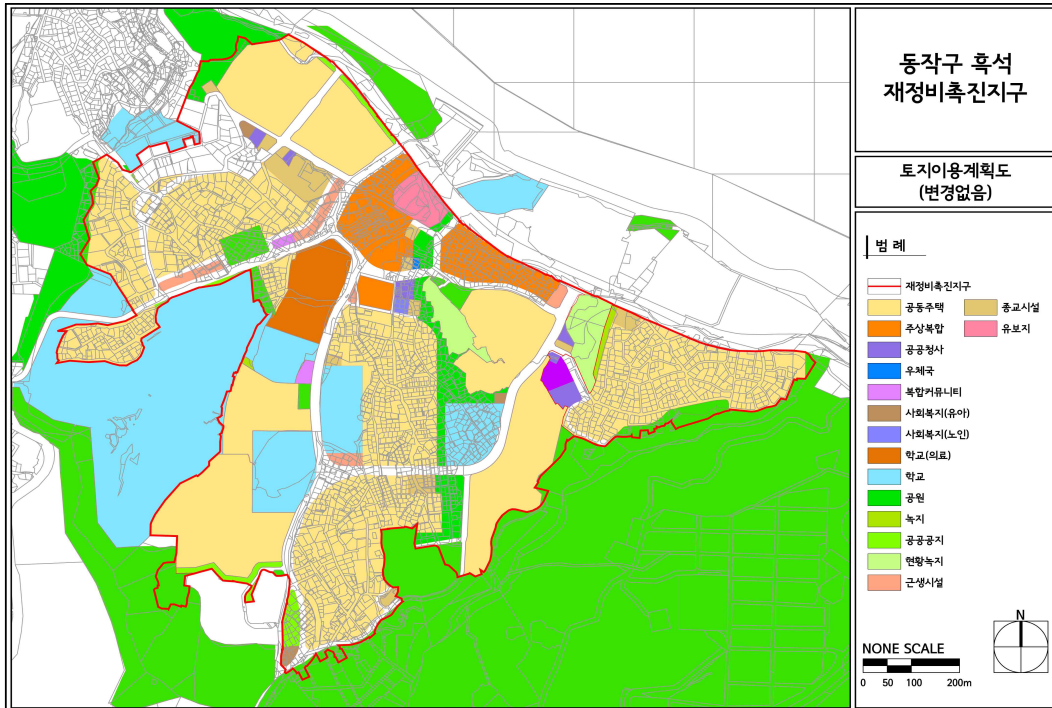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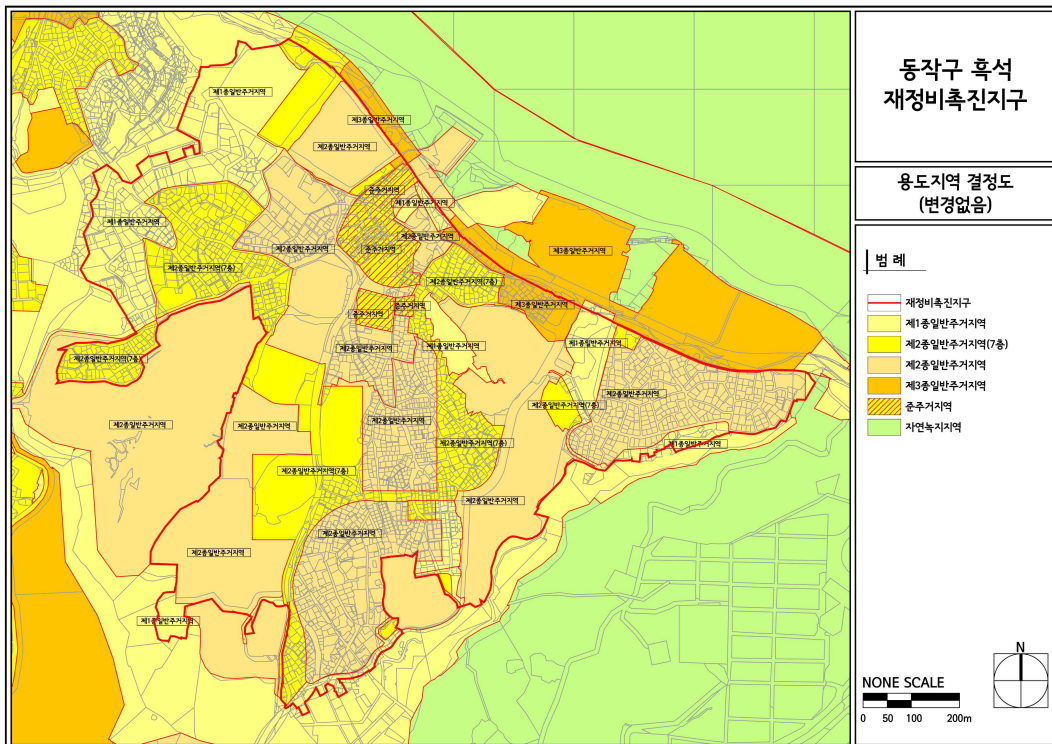
【흑석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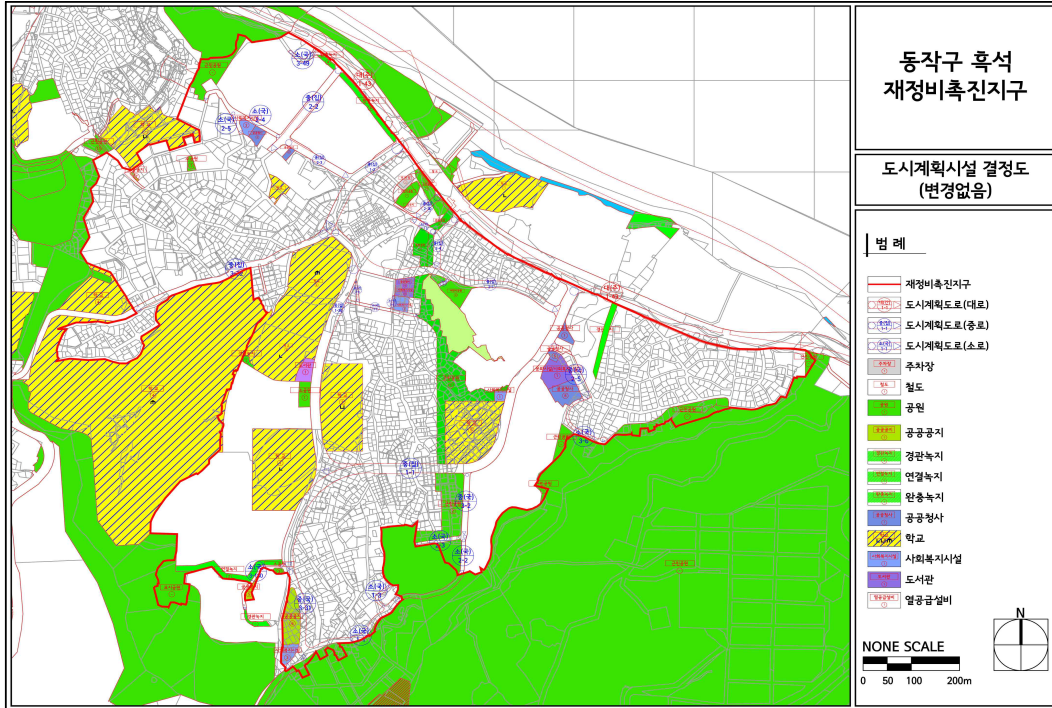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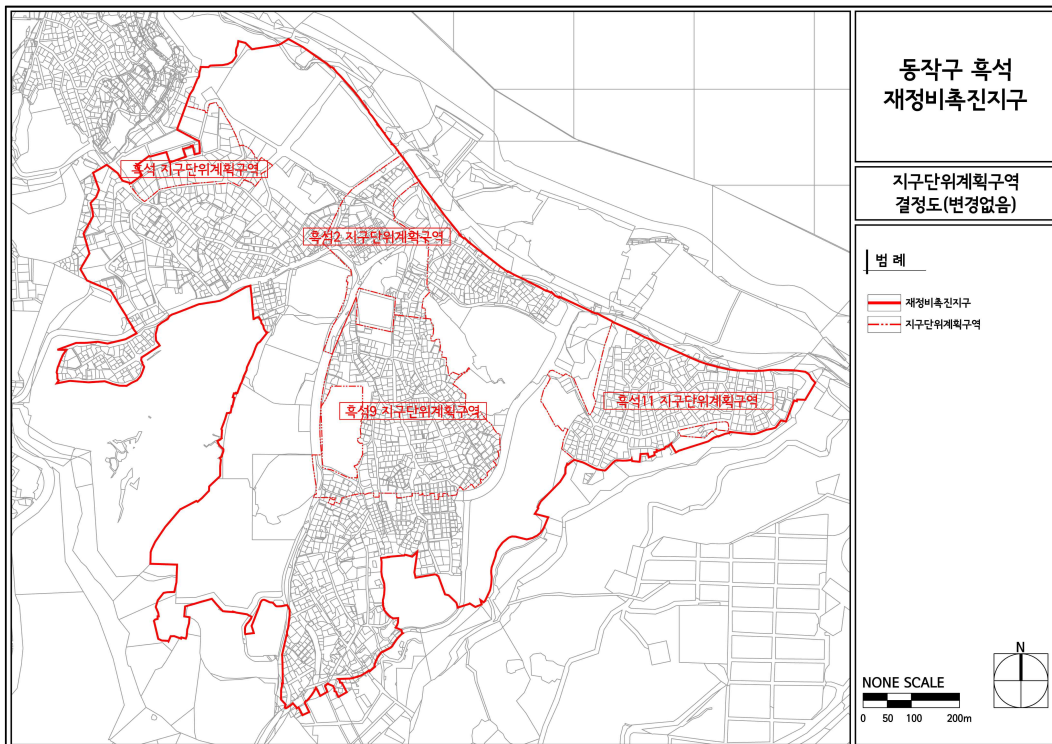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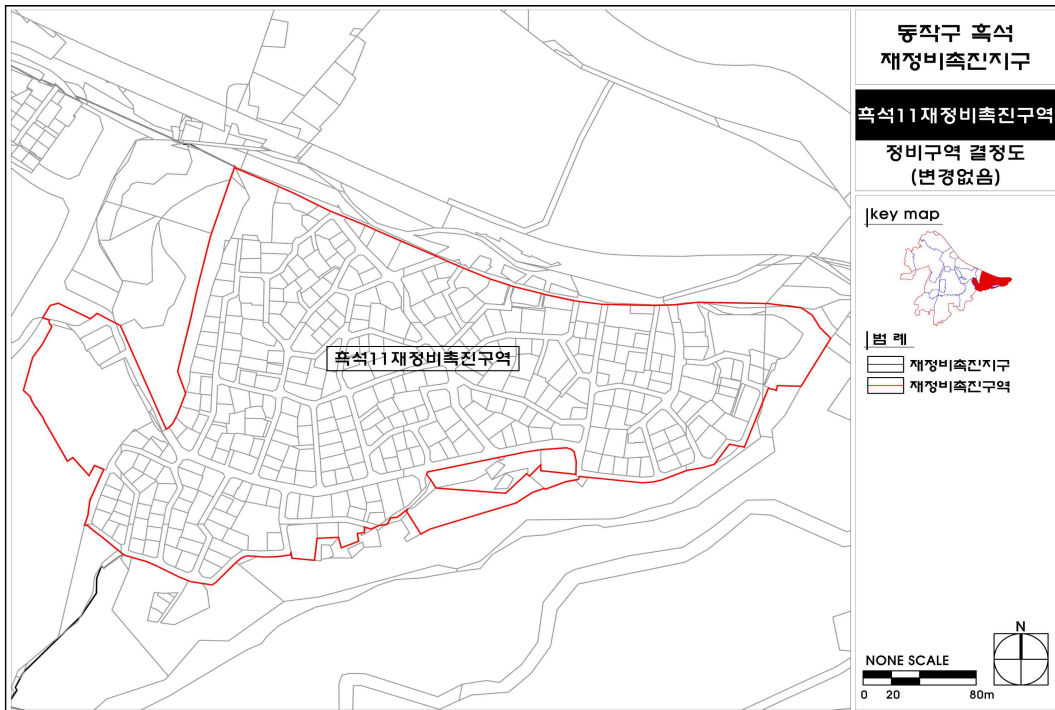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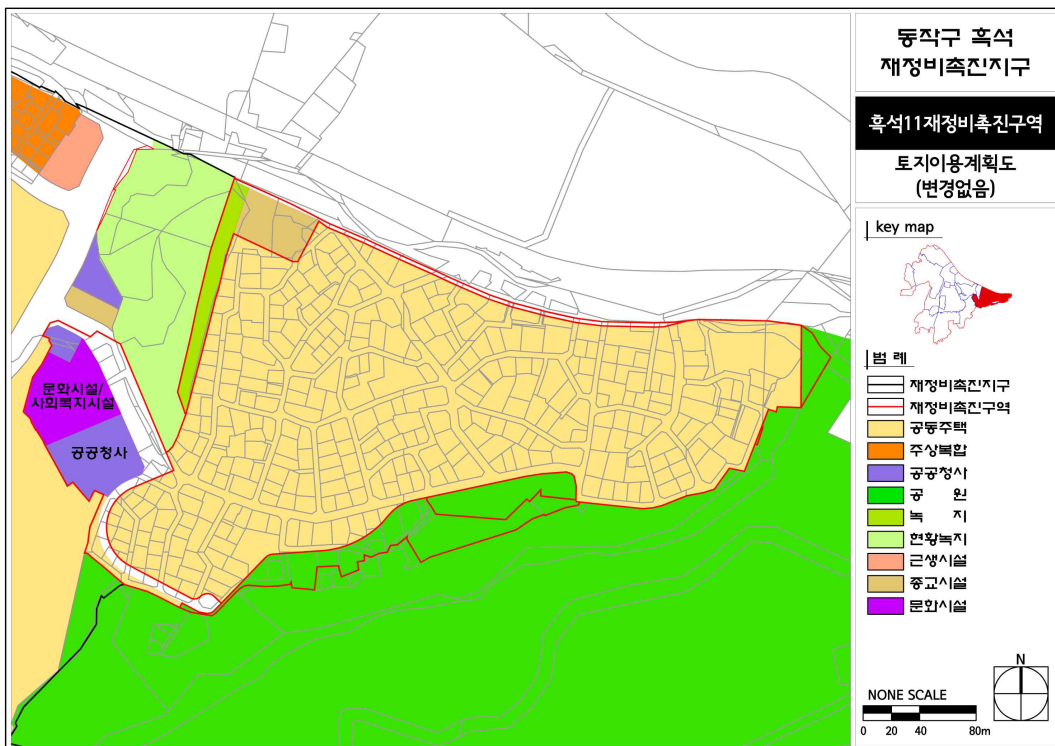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흑석11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동작구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 key map



|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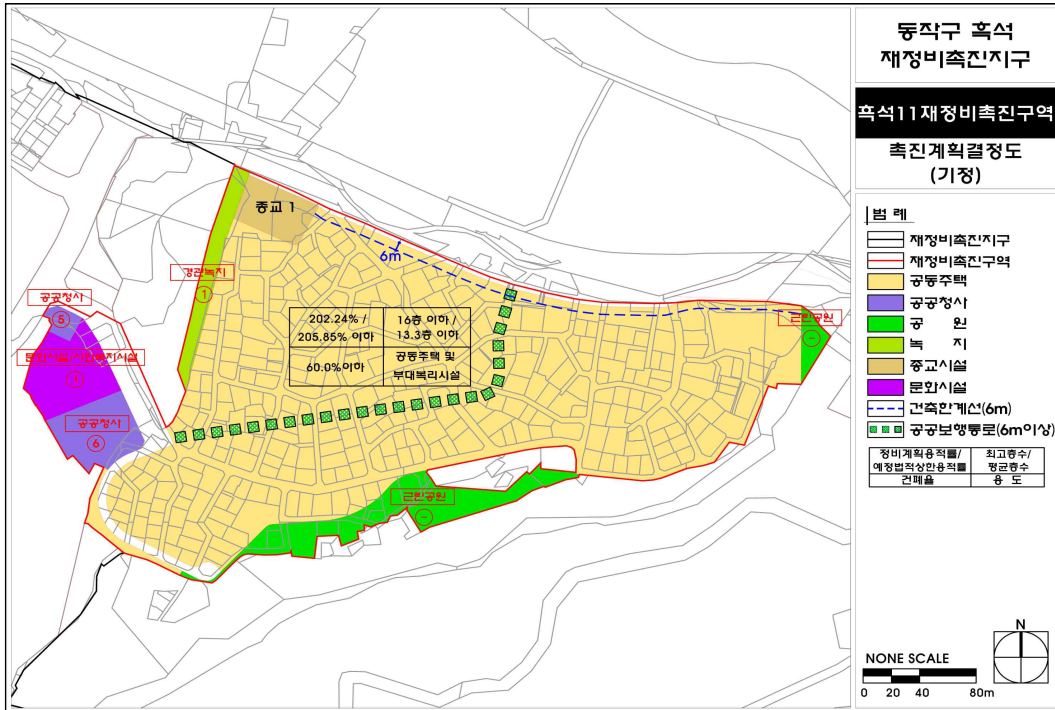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구역
- 제1종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7층)
- 제2종일반주거
- 제3종일반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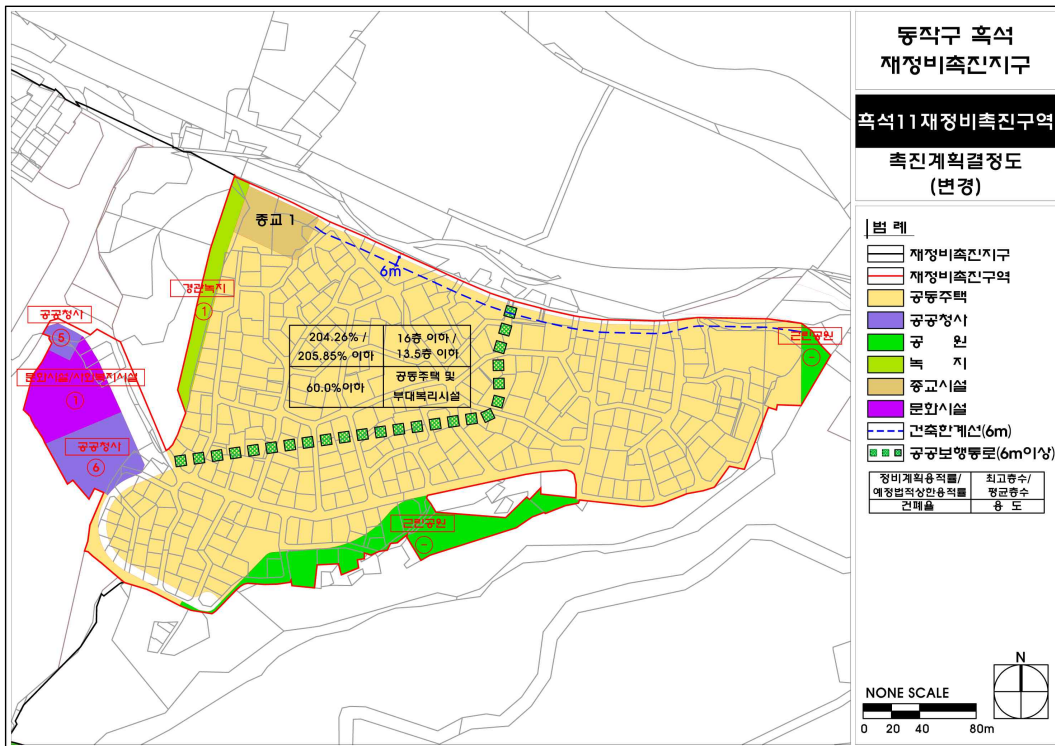
0 20 40 80m

NON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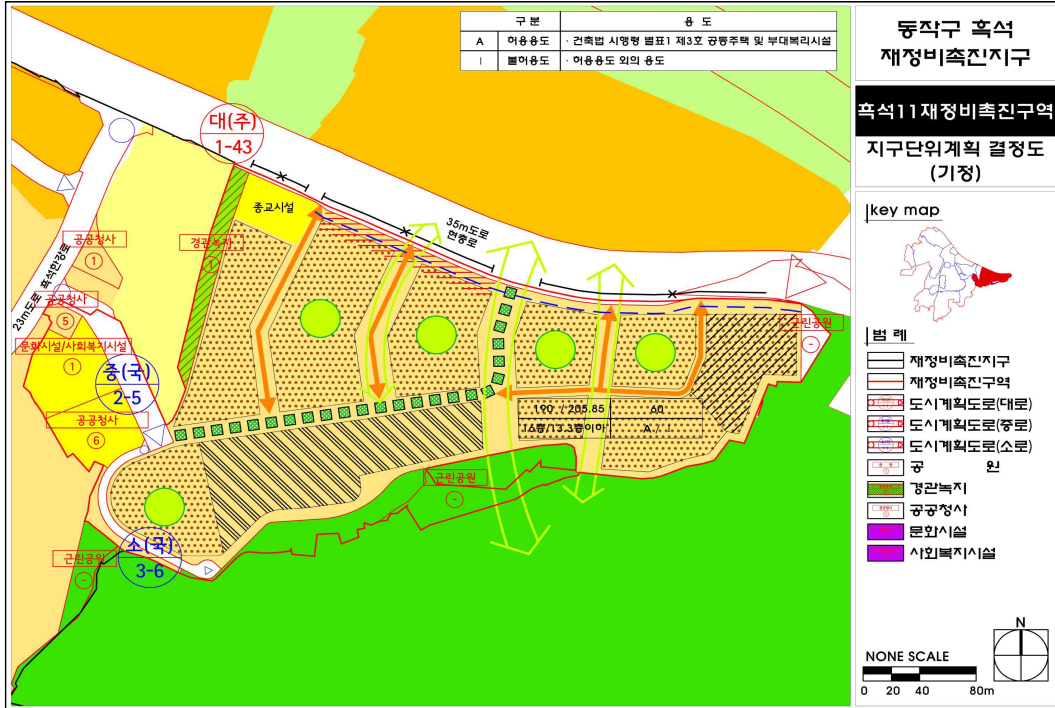
【후석1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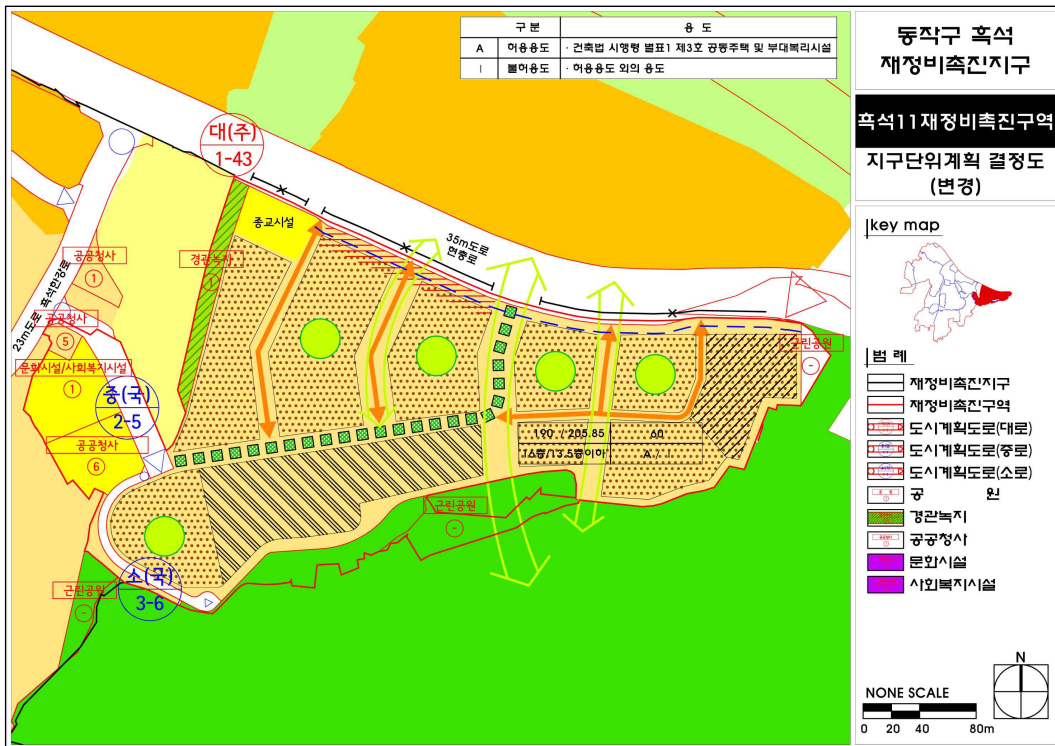
【후석1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흑석1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흑석1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60호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0호(2022.6.30.)로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1호로 결정된 「상계 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및 채원조달계획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 1) 수용인구 : 기정) 680인 , 변경) 563인
 - 2) 주택건설계획 : 299세대

[기정]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 주택	공공 기여	22-A TYPE	14	4.7	14	2.1	청년 안심주택 건설·공급
		23-A TYPE	12	4.0	12	1.8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소 계	26	8.7	26	3.9	
	SH 선매입	22-A TYPE	2	0.7	2	0.3	
		22-B TYPE	15	5.0	15	2.2	
		23-A TYPE	36	12.0	36	5.3	
		23-B TYPE	45	15.1	45	6.6	
		26 TYPE	19	6.4	19	2.8	
		소 계	117	39.2	117	17.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6 TYPE	19	6.4	51	7.5		
	48-A TYPE	4	1.3	11	1.6		
	48-B TYPE	4	1.3	11	1.6		
	48-C TYPE	1	0.3	3	0.3		
	48-D TYPE	19	6.4	51	7.5		
	49-A TYPE	4	1.3	11	1.7		
	49-B TYPE	4	1.3	11	1.7		
	51 TYPE	1	0.3	3	0.4		
	59-A TYPE	20	6.7	53	7.8		
	59-B TYPE	40	13.4	226	33.2		
	59-C TYPE	20	6.7	53	7.8		
	59-D TYPE	20	6.7	53	7.8		
	소 계	156	52.1	537	79.0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합 계	299	100.0	680	100.0	

※안심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변경]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 주택	공공 기여	22-A TYPE	14	4.7	14	2.5
		23-A TYPE	12	4.0	12	2.1
		소 계	26	8.7	26	4.6
	SH 선매입	22-A TYPE	2	0.7	2	0.4
		22-B TYPE	15	5.0	15	2.7
		23-A TYPE	36	12.0	36	6.4
		26 TYPE	9	3	9	1.6
		소 계	62	20.7	62	11.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3-B TYPE	45	15.1	45	8.0
		26 TYPE	10	3.4	10	1.8
		46 TYPE	19	6.4	51	9.0
		48-A TYPE	4	1.3	11	2.0
		48-B TYPE	4	1.3	11	2.0
		48-C TYPE	1	0.3	3	0.5
		48-D TYPE	19	6.4	51	9.0
		49-A TYPE	4	1.3	11	2.0
		49-B TYPE	4	1.3	11	2.0
		51 TYPE	1	0.3	3	0.5
		59-A TYPE	20	6.7	53	9.4
		59-B TYPE	13	4.4	35	6.2
		59-C TYPE	3	1.0	8	1.4

안심주택
건설·공급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59-D TYPE	3	1.0	8	1.4	
	소 계	150	50.2	311	55.2	
민간분양주택	59-B TYPE	27	9.0	72	12.7	
	59-C TYPE	17	5.7	46	8.2	
	59-D TYPE	17	5.7	46	8.2	
	소 계	61	20.4	164	29.1	
합 계		299	100.0	563	100.0	

※안심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제재생략)(변경없음)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4. 방재계획 (변경없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변경)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심주택)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칭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엘엔피개발	박 경 훈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13, 2층 228호 (현암동)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위탁자] 주식회사 엘엔피개발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13, 2층 228호 (현암동)	100%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5층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5년
-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5년 9월 30일

5. 사업개요(변경)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 나. 대지면적 : 2,892.3㎡
- 다. 건폐율 : 59.99%
- 라. 용적률 : 791.21%

마. 용도(변경)

구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
	공공임대	민간임대	민간분양	합계		
기정	143세대	156세대	-	299세대	-	-
변경	88세대,감)55	150세대,감)6	61세대,증)61	299세대	-	-

바. 규모 : 연면적 30,998.42㎡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 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63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및 비오톱1등급 토지 지형도면 고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제작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10개 주제도 및 토지별 비오톱 등급)의 결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202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가. 고시취지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자료로 환경성검토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재정비·제작된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의 시행을 알리고자 함

나. 고시내용 : 도시생태현황도(10개 주제도)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조류분포도, 양서파충류분포도, 어류분포도, 포유류분포도

다. 열람방법 : 서울도시공간포털 자료실(SHP파일) 및 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2. 202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 고시

가. 고시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자 함

나. 고시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를 위한 조사 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면서,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다. 열람방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 필지별) 참고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조회 가능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91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과태료(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및 재산(부동산, 자동차)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시보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5.08.21. ~ 2025.09.04.

2. 공시송달 대상 및 압류 내역

연번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압류 물건	압류일
	성명	주소			
1	전*준	경기도 평택시 신대고잔길 9-9, 406호 (신대동)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폭 초과 체납액:503,400원	자동차 11*5468 전*준 지분	2025.09.05
2	민*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93, 604동 802호 (작전동, 까치마을데하아파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총중량 초과 체납액:599,000원	자동차 경기66*6416	
3	박*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388번길 7-4, 408호 (세류동)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총중량 초과 체납액:563,000원	자동차 38*3557	
4	김*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룡길23번길 23, 102호 (용현동, 정광빌라)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총중량 초과 체납액:563,000원	자동차 200*8177	
5	고*성	경기도 화성시 동화새터길 121, 309동 703호 (봉담읍, 휴먼시아 동화마을)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총중량 초과 체납액:563,000원	자동차 45*7683	
6	안*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40번가길 17, 302호 (원종동, 엘리트아파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축하중 초과 체납액:797,000원	자동차 52*1902	

연번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압류 물건	압류일
	성명	주소			
7	이*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125번길 11, 401호 (문학동, 한솔파크빌)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총중량 초과 체납액:563,000원	자동차 107*2895	
8	임*복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안길 4-2, 502호 (원창동, JK하우스)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총중량 초과 체납액:575,000원	자동차 경기35*2818	
9	박*한	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308 (추자동)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속하중 초과 체납액:623,000원	건설기계(덤프트럭) 서울06*6174 박*한 지분	

※ 체납액은 2025.08.05일 기준이며, 가산금 등으로 실제 체납금액은 다를 수 있음.

3.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김석천 (☎ 02-3284-5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5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5. 8. 21. ~ 2025. 9. 3.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273070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612동 512호 (하계동, 장미)	수도요금	2023. 9월 등 11납기	11회	249,39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612동 512호 (하계동, 장미)	김**	920721-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607동 202호 (하계동, 장미)	249,390원	2025 9. 4.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경옥(☎02-3146-32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7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예금)압류 통지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초본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5. 8. 21. ~ 2025. 9. 4.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020033907	용산구 후암로57길 3-14, 2동 4층	수도 요금	2022-06 ~2025-06	19회	189,220원	· 등기번호 : 1152101230152 ·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압류구분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9-3 내제4층4호	조*호	6506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60, 302동 602호		189,220	2025-09-05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통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체납요금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실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21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74호

서서울호수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31호(2008.9.2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9호(2020.1.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865호(2008.10.2.)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52호(2019.12.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양천구 149-20번지 일대 서서울호수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서서울호수문화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149-20번지 일대
3. 면 적 : 216,663㎡
4.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 방문자센터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일부 공원 부지면적 감소 반영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300-5536)
8.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서울호수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49-20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속 물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속 물		공작물	
	(㎡)	(㎡)	동수(동)	버다면적(㎡)	연면적(㎡)	(㎡)	(㎡)	동수(동)	버다면적(㎡)	연면적(㎡)	
계	217,946.00	77,513.84	5	2,124.16	1,379.77	216,663.00	77,513.84	5	2,124.16	1,756.80	부지면적감:1,283.00㎡ 연면적증: 377.03㎡
	소 계	12,728.49				12,728.49	12,728.49			18	
	도 로	(9,901.00)				(9,901.00)	(9,901.00)				
	광 장	(2,827.49)				(2,827.49)	(2,827.49)			18	
조 경 시 설	11,173.38	11,173.38				11,173.38	11,173.38			7	
휴 양 시 설	9,239.42	9,239.42				9,239.42	9,239.42			22	
운 동 시 설	25,142.60	25,142.60	1	142.4	225.08	25,142.60	25,142.60	1	142.40	225.08	
교 양 시 설	18,415.98	18,415.98	1	1,826.72	999.65	18,415.98	18,415.98	1	1,826.72	1,376.68	연면적증: 377.03㎡
편 의 시 설	813.97	813.97	1	155.04	155.04	813.97	813.97	1	155.04	155.0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	(㎡)				(기)	(㎡)	(㎡)				(기)	
관 리 시 설						202						202	
녹지및기타	140,432.16						139,149.16					부지면적감:-1,283.00㎡	
공 원 시 설 율	$(77,513.84㎡ \div 217,946.00㎡) \times 100\% = 35.56\%$					$(77,513.84㎡ \div 216,663.00㎡) \times 100\% = 35.77\%$							
공 원 건 폐 율	$(2,124.16㎡ \div 217,946.00㎡) \times 100\% = 0.97\%$					$(2,124.16㎡ \div 216,663.00㎡) \times 100\% = 0.98\%$							

나. 시설조서

구 분	전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217,946.00	77,513.84	3	2,124.16	1,379.77	378			216,663.00	77,513.84	3	2,124.16	1,756.80	378	부지면적합: 1,283.00㎡ 연면적합: 377.03㎡
소 계			12,728.49	12,728.49				18			12,728.49	12,728.49				18	
도 로	가	전지역	9,901.00	9,901.00					가	전지역	9,901.00	9,901.00					
기 본 시 설	입구 광장	나 신월 267-1	422.78	422.78					나	신월 267-1	422.78	422.78					
	입구정식벽 ①	신월 267-1						3 ①	신월 267-1							3	
	송수관연주 ②	신월 267-1						3 ②	신월 267-1							3	
	진입광장	다 신월 267-1	1,663.01	1,663.01					다	신월 267-1	1,663.01	1,663.01					
	입구문주 ③	신월 267-1						1 ③	신월 267-1							1	
	승수관 있음벽 없음벽 ④	신월 267-1						11 ④	신월 267-1							11	
광장	소광장	라 신월 149-20	741.70	741.70					라	신월 149-20	741.70	741.70					
	소광장 1	라-1 신월 149-20	(239.67)	(239.67)					라-1	신월 149-20	(239.67)	(239.67)					
	소광장 2	라-2 신월 149-20	(109.59)	(109.59)					라-2	신월 149-20	(109.59)	(109.59)					
	소광장 3	라-3 신월 149-20	(21.90)	(21.90)					라-3	신월 149-20	(21.90)	(21.90)					
	소광장 4	라-4 신월 149-20	(246.36)	(246.36)					라-4	신월 149-20	(246.36)	(246.36)					
	소광장 5	라-5 신월 149-20	(31.72)	(31.72)					라-5	신월 149-20	(31.72)	(31.72)					
	소광장 6	라-6 신월 149-20	(92.46)	(92.46)					라-6	신월 149-20	(92.46)	(92.46)					

기반
시설

광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조경 시설	소 계			11,173.38	11,178.38				7			11,173.38	11,178.38					7	
	열린마당	마	신월 149-20	7,889.95						마	신월 149-20	7,889.95	7,889.95						
	잔디마당	마-1	신월 149-20	(7,717.55)						마-1	신월 149-20	(7,717.55)	(7,717.55)						
	간천1	⑤	신월 149-20	(172.40)					1	⑤	신월 149-20	(172.40)	(172.40)					1	
	장식벽	⑥	신월 149-20						1	⑥	신월 149-20							1	
	정자	㉓	신월 149-20						2	㉓	신월 149-20							2	
	재생정원	바	신월 149-20	3,083.43						바	신월 149-20	3,083.43	3,083.43						
	초화마당	바-1	신월 149-20	(2,090.14)						바-1	신월 149-20	(2,090.14)	(2,090.14)						
	놀이마당	바-2	신월 149-20	(631.50)						바-2	신월 149-20	(631.50)	(631.50)						
	조합놀이시설	바-3	신월 149-20						1	바-3	신월 149-20							1	
	그네	바-4	신월 149-20						1	바-4	신월 149-20							1	
	시소	바-5	신월 149-20						1	바-5	신월 149-20							1	
조경 시설	간천2	㉠	신월 149-20	(361.79)						㉠	신월 149-20	(361.79)	(361.79)						
	조형분수	하	신월 149-20	200						하	신월 149-20	200	200						
휴양 시설	소 계			9,239.42	9,239.42				22			9,239.42	9,239.42					22	
	열린로발	사	신월 149-20	8,956.42						사	신월 149-20	8,956.42	8,956.4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비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비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운동시설	100인의식탁	⑧	신월 149-20	(461.88)				1	⑧	신월 149-20	(461.88)	(461.88)				1	
	아외테이블	⑨	전지역					4	⑨	전지역						4	
	목재벤치	⑩	전지역					8	⑩	전지역						8	
	조형벤치	⑪	전지역					1	⑪	전지역						1	
	메쉬앉음벽	⑫	전지역					1	⑫	전지역						1	
	쉼터	㉓	다목적운동장					4	㉓	다목적운동장						4	
	쉴터	㉔	신월 149-20	283	283			3	㉔	신월 149-20	283	283				3	
	소계			25,142.60	25,142.60	1	142.40	225.08	115			25,142.60	25,142.60	1	142.40	225.08	115
	다목적운동장	아	신월 149-20	5,654.28	5,654.28				아	신월 149-20	5,654.28	5,654.28					
	베드민턴장	아-2	신월 149-20	(1,050.00)	(1,050.00)			1	아-2	신월 149-20	(1,050.00)	(1,050.00)				1	
운동시설	간이운동장							1								1	
	풋살장	아-3	신월 149-20	(1,061.63)	(1,061.63)	1면			아-3	신월 149-20	(1,061.63)	(1,061.63)	1면				
	족구장	아-4	신월 149-20	(1,641.80)	(1,641.80)	2면			아-4	신월 149-20	(1,641.80)	(1,641.80)	2면				
	체력단련장1	아-1	신월 149-20	(1,900.85)	(1,900.85)			25	아-1	신월 149-20	(1,900.85)	(1,900.85)				25	
	체력단련장2	너	열린마당 부근	82.55	82.55				너	열린마당 부근	82.55	82.55					
	체력단련시설	㉓	신월 149-20					17	㉓	신월 149-20						17	

운동
시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농구장	타	신월 149-20	210.00	210.00				1	타	신월 149-20	210.00	210.00					1	
	자	신월 149-20	18,821.77	18,821.77				70	자	신월 149-20	18,821.77	18,821.77					70	
	1	신월 283-4	(142.40)	(142.40)	철골 조	1	142.40	225.08	1	신월 283-4	(142.40)	(142.40)	철골 조	1	142.40	225.08		
	거	신월 149-20	374.00	374.00					거	신월 149-20	374.00	374.00						
	소 계			18,415.98	1	1,826.72	999.65	5				18,415.98	18,415.98	1	1,826.72	1,376.68	5	연면적증: 377.03㎡
문화대크미당	차	신월 149-20	7,388.62	7,388.62					차	신월 149-20	7,388.62	7,388.62						
	차-1	신월 149-20	(3,591.15)	(3,591.15)					차-1	신월 149-20	(3,591.15)	(3,591.15)						
	차-2	신월 149-20	(1,386.69)	(1,386.69)					차-2	신월 149-20	(1,386.69)	(1,386.69)						
	차-3	신월 149-20	(549.30)	(549.30)					차-3	신월 149-20	(549.30)	(549.30)						
	㉔	신월 149-20						1	㉔	신월 149-20							1	
기벽	㉕	신월 149-20						1	㉕	신월 149-20							1	
	2	신월 149-20	(1,826.72)	(1,826.72)	철근 콘크리트 지상 횡층		1,826.72	999.65	2	신월 149-20	(1,826.72)	(1,826.72)	철근 콘크리트 지상 횡층		1,826.72	1,376.68		연면적증: 377.03㎡
	카	신월 149-20	11,027.36	11,027.36					카	신월 149-20	11,027.36	11,027.36						
	카-1	신월 149-20	(1,308.05)	(1,308.05)					카-1	신월 149-20	(1,308.05)	(1,308.0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편의 시설	잔디마당	카-2	신월149-20	(600.00)	(600.00)		신월149-20	(600.00)	(600.00)		카-2	신월149-20	(600.00)	(600.00)				
	휴게마당	카-3	신월149-20	(1,035.79)	(1,035.79)		신월149-20	(1,035.79)	(1,035.79)		카-3	신월149-20	(1,035.79)	(1,035.79)				
	야생화정원	카-4	신월149-20	(874.84)	(874.84)		신월149-20	(874.84)	(874.84)		카-4	신월149-20	(874.84)	(874.84)				
	메타원	카-5	신월149-20	(1,009.05)	(1,009.05)		신월149-20	(1,009.05)	(1,009.05)		카-5	신월149-20	(1,009.05)	(1,009.05)				
	자작원	카-6	신월149-20	(247.39)	(247.39)		신월149-20	(247.39)	(247.39)		카-6	신월149-20	(247.39)	(247.39)				
	휴게정원	카-7	신월149-20	(825.09)	(825.09)		신월149-20	(825.09)	(825.09)		카-7	신월149-20	(825.09)	(825.09)				
	진임마당	카-8	신월149-20	(1,679.42)	(1,679.42)		신월149-20	(1,679.42)	(1,679.42)		카-8	신월149-20	(1,679.42)	(1,679.42)				
	데크쉼터	카-9	신월149-20	(2,101.30)	(2,101.30)		신월149-20	(2,101.30)	(2,101.30)		카-9	신월149-20	(2,101.30)	(2,101.30)				
	몬드라인플래터	㉞	신월149-20	(534.73)	(534.73)		신월149-20	(534.73)	(534.73)	1	㉞	신월149-20	(534.73)	(534.73)		1		
	미디어벽천	㉟	신월149-20	(700.30)	(700.30)		신월149-20	(700.30)	(700.30)	1	㉟	신월149-20	(700.30)	(700.30)		1		
	브릿지	㊱	신월149-20				신월149-20			1	㊱	신월149-20				1		
	소 계				813.97	813.97	1	155.04	155.04	9			813.97	813.97	1	155.04	155.04	9
편의 시설	주차장	타	신월267-1	478.23	478.23		신월267-1	478.23	478.23		타	신월267-1	478.23	478.23				
	자전거보관소1	㉡	신월267-1	48.00	48.00		신월267-1	48.00	48.00	3	㉡	신월267-1	48.00	48.00			3	
	자전거보관소2	㉢	신월267-1	85.10	85.10		신월267-1	85.10	85.10	5	㉢	신월267-1	85.10	85.10			5	
	화장실	㉣	신월 267-1	155.04	155.04	1	신월 267-1	155.04	155.04		㉣	신월 267-1	155.04	155.04	1	155.04	155.04	
	음수대	㉤	신월149-20 (놀이마당 부근)				신월149-20 (놀이마당 부근)			1	㉤	신월149-20 (놀이마당 부근)					1	
	약수터	더	신월149-20 (열린마당 부근)	47.60	47.60		신월149-20 (열린마당 부근)	47.60	47.60		더	신월149-20 (열린마당 부근)	47.60	47.60				
	소 계								202								202	
	공원등	㉥	전지역				전지역			159	㉥	전지역					159	
	조명탑	㉦	다목적운동장				다목적운동장			4	㉦	다목적운동장					4	
	관리 시설																	

구 분	변경				전진				변경				후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관리초소 1	㉔ 신월 149-20						1	㉔ 신월 149-20							1	
	관리초소 2	㉔ 디목적운동장						1	㉔ 디목적운동장							1	
	CCTV	㉔ 전지역						37	㉔ 전지역							37	
녹지 및 기타	소 계		140,432.16								139,149.16						부지면적합:1,283.00㎡
	호수	파 신월 149-20	19,429.86						파 신월 149-20		19,429.86						
	녹지	전지역	121,002.3						전지역		119,719.3						부지면적합:1,283.00㎡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3,453	9,901				
당초	소로	소계			1,146	4,623				
당초		3	1	6	127	762	진입도로	입구광장	진입마당	
당초		3	2	5	402	2,010	진입도로	진입광장	다목적운동장	
당초		3	3	3	617	1,851	연결도로	사업지경계	야구장	
당초	산책로	소계			2,307	5,278				
당초		3	1	1	100	100	산책로	소로 3	소광장 6	
당초		3	2	3	319	957	산책로	소로 3	소광장 6	
당초		3	3	1.5	52	78	산책로	소광장 6	다목적운동장	
당초		3	4	2	110	220	산책로	산책로 15	메타원	
당초		3	5	2.5	29	73	산책로	잔디마당	공원진입로	
당초		3	6	2	117	234	산책로	잔디마당	공원진입로	
당초		3	7	1	25	25	산책로	사업지경계	소광장 1	
당초		3	8	2	78	156	산책로	소광장 1	소광장 3	
당초		3	9	1.5	29	44	산책로	소광장 1	소광장 2	
당초		3	10	1	74	74	산책로	소광장 3	산책로 12	
당초		3	11	1	25	25	산책로	소광장 2	사업지경계	
당초		3	12	2	121	242	산책로	사업지경계	소광장 4	
당초		3	13	2	40	80	산책로	소광장 4	소광장 5	
당초		3	14	1.5	106	159	산책로	사업지경계	소광장 5	
당초		3	15	3.5	360	1,260	산책로	소로 2	진입마당	
당초		3	16	2.5	276	690	산책로	소로 2	산책로 15	
당초		3	17	3	100	300	산책로	산책로16	입구광장	
당초		3	18	3.0	32	96	산책로	소로 2	문화데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19	1.5	92	138	산책로	소로 3	미디어벽천	
당초		3	20	1.5	80	120	산책로	메타원	소광장 6	
당초		3	21	1.5	38	57	산책로	산책로 2	공원경계	
당초		3	22	0.6~1.2	58	60	산책로	사업지경계	공원경계	
당초		3	23	1.5~2.4	46	90	산책로	잔디마당	공원경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7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원*트*스 등 476명
4. 공고기간 : 2025. 8. 21. ~ 2025. 9. 4.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8. 21. ~ 2025. 9. 4.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 (<http://cartax.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치(<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257가88**	(*)원*트*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5 17:4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	56라56**	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1 13: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	58누53**	신*훈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1 11: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	145다99**	제*박*컴*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1 11:1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	09거72**	주*희*애*치*플*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7 17:47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6	372나92**	주*희*한*건*	경기도 시흥시	2025-07-17 18: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	65나06**	C*E*J*A*W*I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7 19:2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	서울32자52**	정*열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7 08:3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	59여02**	J*O*G*E*N*E*J*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7 09:5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	374나18**	박*규	경상남도 창원시	2025-07-17 10: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	372나92**	주*희*한*건*	경기도 시흥시	2025-07-17 18:5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	137구39**	주*희*제*	경기도 용인시	2025-07-17 20:3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3	06주82**	김*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7 17:1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4	45마06**	장*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8 09: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	316거64**	주*희*계*엔*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8 11: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6	155버54**	김*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07-18 19:28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7	69두85**	송*영	경기도 김포시	2025-07-18 19:2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8	경기45바59**	정*익	경기도 고양시	2025-07-18 17:1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9	20오05**	농*희*법*주*희*아*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5-07-18 1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	178수65**	김*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7-18 07:5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	16부18**	노*향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8 17:4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2	82여88**	주*희*월*미*	경기도 화성시	2025-07-18 10: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	24구38**	변*운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1 09: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4	811여36**	주*희*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1 07:4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5	106오37**	이*진	경기도 화성시	2025-07-11 10:0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6	82로52**	최*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12 08:0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	373여63**	이*천	경기도 구리시	2025-07-11 15:11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28	37마03**	박*경	경기도 양주시	2025-07-11 20: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9	서울91자82**	박*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1 17:4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0	47나64**	김*완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1 18:3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1	91로54**	주*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1 17:3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2	170버95**	J*N*U*이*E*H*N*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07-13 23:0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3	174마50**	B*T*H*L*U*U*A*G*	대전광역시 동구	2025-07-13 13: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4	60라12**	정*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12 14:4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5	127다58**	김*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4 16:4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36	26마79**	장*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4 08: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	125하37**	박*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2 18:4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8	156더25**	주*희*게*에*원*트*스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4 09:09	삼육대~태릉	50,000
39	200고16**	박*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8 09:0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0	258서65**	한*범	경기도 고양시	2025-07-18 08:0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1	50오51**	김*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8 19:5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2	23주67**	(*)*도*합*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6 09:13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43	서울32자20**	정*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4 09:10	태릉~ 서울여대	50,000
44	383루74**	황*수	경기도 고양시	2025-07-14 18:2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5	60도84**	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15 19:1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6	서울31아17**	최*호	경기도 성남시	2025-07-15 20: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7	08가08**	이*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15 20: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8	163주78**	(*)*그*퍼*	경기도 하남시	2025-07-16 17:54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49	804조13**	최*삼	경기도 고양시	2025-07-16 16:1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50	36모32**	이*현	경기도 시흥시	2025-07-16 19: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1	393라36**	오*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7-16 14: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2	경기88사68**	정*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7 09:45	sk주유소~삼육에코팜센터	50,000
53	102가98**	김*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6 18: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4	135마58**	김*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5-07-16 19:5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5	377부83**	조*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5 09:02	태릉~ 서울여대	50,000
56	15부48**	이*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20 19:29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57	205고88**	재*법*천*교*삼*수*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9 00:1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58	15러57**	나*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19 13:5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9	경기32바54**	박*재	경기도 성남시	2025-07-18 07:13	북정역~장지역	50,000
60	320여87**	김*훈	경기도 고양시	2025-07-18 07:54	은평뉴타운CNG충전소~은평지문교	50,000
61	서울87자19**	권*강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6-17 09:27	말죽거리공원사거리~양재시민의숲역	50,000
62	59마31**	Y*A*Z*E*G*U*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17 14:1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3	113저78**	이*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8 15:49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64	경기83사79**	심*섭	경기도 부천시	2025-07-18 08: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5	115하70**	주*회*차*자*타*	충청북도 충주시	2025-07-20 20:2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6	11노58**	K*M*U*이*A	경기도 안산시	2025-07-19 10: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7	11노58**	K*M*U*이*A	경기도 안산시	2025-07-19 10:5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8	116하71**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5-07-04 17:5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9	15가87**	윤*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6 11:5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50,000
70	172호26**	(*)*명*찰*보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01 08: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1	177호78**	박*태	경기도 하남시	2025-07-04 05:45	잠원동 현대힐미리아파트	50,000
72	101호48**	진*민	경상북도 칠곡군	2025-06-17 17: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3	156호47**	김*현	경기도 성남시	2025-07-08 18:5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4	149하22**	김*준	경기도 고양시	2025-07-09 19: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5	179하34**	김*욱	경상남도 김해시	2025-07-10 17:4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76	84무37**	다*유*주*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1 07: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7	96가44**	김*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11 0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8	282우36**	권*자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11 17:3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79	290두29**	김*민	울산광역시 동구	2025-07-12 11:4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0	43러34**	알*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4 09:06	성내교(잠실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1	82너81**	박*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11 18:21	수유역~강북구청사거리	50,000
82	258루81**	김*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14 09:09	몽촌토성역~ 송파구청교차로	50,000
83	824너20**	엄*기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11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4	62모83**	김*주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1 20:1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85	183자43**	김*연	경기도 김포시	2025-07-12 17: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6	803마38**	성*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4 14: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7	서울31자72**	박*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14 17:2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8	52거65**	김*지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4 17:4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89	65오06**	이*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5 09: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90	101허44**	주*희*유*옌*카	경기도 화성시	2025-07-16 19:1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1	08구09**	정*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7 1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2	228주84**	주*희*옌*미*	경기도 광주시	2025-07-17 18:5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93	59마31**	Y*A*Z*E*G*U*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17 14:1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94	서울89자63**	육*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18 07:46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95	153하62**	옌*스*옌*주*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9 08:1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6	284부34**	사*나*식*사	경기도 용인시	2025-07-11 08:18	암구정역~ 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97	264노67**	서*녀	경기도 광명시	2025-07-11 07:0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98	17버08**	(*)*월*스*	광주광역시 남구	2025-07-11 10: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9	87주73**	(*)*마*프*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11 09:0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00	서울35아17**	이*석	경기도 고양시	2025-07-11 18:59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01	40고27**	이*진	경기도 성남시	2025-07-11 18:22	잠원동 현대힐미리아파트	50,000
102	215머24**	박*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5-07-11 17:2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03	161도56**	주*희*옌*	경기도 김포시	2025-07-11 19:0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4	인천32바18**	김*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11 19:5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5	02모78**	주*희*커*텀*시*	경기도 하남시	2025-07-12 16:2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06	42더41**	김*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5-07-11 20:2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07	56라94**	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1 17: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8	13버04**	김*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11 20: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09	158거50**	이*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7-11 17: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0	서울32바71**	최*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4 02:30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스산부인과	50,000
111	49오63**	A*S*A*T*M*H*N*D*M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2 14:1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2	46어16**	송*자	경기도 용인시	2025-07-14 09: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3	31거58**	P*K*V*E* *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14 17: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4	68도16**	(*)*민*축*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5 16: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1-3	50,000
115	317거23**	박*용	인천광역시 중구	2025-07-15 14:3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16	210머98**	서*균	경기도 구리시	2025-07-15 12: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7	182저94**	최*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7-15 09:0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18	01누03**	김*한	경기도 양주시	2025-07-15 18:2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19	108주98**	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5 08:5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20	23하74**	송*자	광주광역시 서구	2025-07-08 17:1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21	서울31사61**	김*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6 08:52	대치역~도곡역	50,000
122	23조05**	김*후	충청남도 서산시	2025-07-16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3	184다75**	염*학	경기도 안산시	2025-07-16 08:1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4	822오10**	조*덕	경기도 용인시	2025-07-16 0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5	54구84**	문*선	경기도 시흥시	2025-07-16 11:2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26	서울32사85**	이*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19:0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27	서울31자62**	변*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4 16:01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4 (신사동)	50,000
128	52거65**	김*지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6 17: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29	37다81**	박*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16 19: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30	252도71**	노*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17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1	37고73**	서*섭	광주광역시 북구	2025-07-17 18: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2	51노31**	박*일	경기도 가평군	2025-07-17 20: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3	107누16**	이*미	경기도 양주시	2025-07-16 19:1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34	225호27**	(*)*이*이*엠*	경기도 평택시	2025-06-30 13:5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5	308누17**	최*수	충청남도 천안시	2025-07-15 12:41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36	85너68**	주*희*유*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4 08: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7	152호60**	곽*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9 20:0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38	192호38**	이*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08 16:5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39	153호42**	노*범*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8 17:20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140	152가42**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5-07-09 15:3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41	197호39**	(*)*익*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9 17: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42	192하46**	이*남	경기도 김포시	2025-07-02 08:10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43	175하27**	일*케*칼*식*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1 07:39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44	153하96**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3 09:5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45	65더61**	주*희*상*지*에*	경기도 이천시	2025-07-13 17: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46	71더21**	서*준	경기도 부천시	2025-07-11 18:50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147	49루18**	김*진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4 07:08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148	169호89**	(*)*마*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09 07:24	영등포역~영등포로터리	50,000
149	143하54**	주*희*에*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13: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50	70하10**	홍*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8 16:49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51	802버15**	주*희*현*필*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11 13: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52	145다99**	제*박*컴*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1 10: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53	136더49**	주*희*에*인	경기도 광주시	2025-07-11 09:0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54	서울31사38**	김*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12 08:02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155	52무69**	김*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7-12 19: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56	104하26**	주*희*주*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8 20: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57	176호35**	나*주	경기도 화성시	2025-06-25 16: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58	338마57**	최*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7-13 10:3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9	86고19**	신*정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5 07:11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160	69더45**	박*호	경기도 수원시	2025-07-14 08:13	개화교	50,000
161	69모99**	춘*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4 19:2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2	86버67**	(*)*춘*드	경상남도 창원시	2025-07-14 23:56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163	서울32아37**	우*제	경기도 용인시	2025-07-14 10: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4	148호85**	김*현	경기도 부천시	2025-07-09 07:41	국립현충원 교차로~흑석역	50,000
165	148호96**	(*)*앤*인*내*널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05 13:02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66	290도79**	(*)*신*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1 10:1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50,000
167	815두25**	김*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2 17:3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8	경기49사10**	주*희*하*의*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2 16:2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69	26주61**	이*진	경기도 안양시	2025-07-14 18: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70	813노87**	손*순	경기도 양주시	2025-07-14 08:4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71	04저58**	이*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4 17:43	염창역~등촌역	50,000
172	20루77**	서*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5 17:3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73	55오86**	김*민	경기도 안산시	2025-07-15 08: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4	326모55**	방*우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5 19: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5	61더40**	최*철	경상남도 창원시	2025-07-15 09:09	미아역~수유사거리	50,000
176	22다63**	박*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6 09:18	개봉동 우리은행 교척동지점	50,000
177	152호74**	정*숙	충청북도 진천군	2025-07-10 17:24	암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178	171하52**	빅*데*터*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0 18: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79	279저92**	복*진	경기도 평택시	2025-07-14 18:5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80	서울32자52**	정*열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4 08:0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81	380보27**	배*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4 22:3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82	170루10**	이*현	대전광역시 서구	2025-07-14 10:5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83	53소60**	C*이*H*N*U*	경기도 안산시	2025-07-15 19:4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84	101하35**	주*희*위*인*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6 18: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5	35오27**	김*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1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86	97서45**	주*희*뷰*디*	경기도 김포시	2025-07-16 20: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87	54도42**	금*휘	경기도 하남시	2025-07-11 09:5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88	307나28**	최*아	경기도 광주시	2025-07-11 09: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9	70구90**	K*M*E*!*S*A*!*O*!*H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11 08:41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90	83버53**	중*엔*니*링*식*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09 08:53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50,000
191	54조77**	이*오	경기도 고양시	2025-07-11 17: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92	68나78**	이*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1 18:5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93	21라83**	주*화*천*삼	경기도 광주시	2025-07-14 07:0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94	244루17**	윤*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4 08: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5	96소95**	(*)*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14 17:3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96	92여65**	서*호	경기도 안양시	2025-07-14 08:45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97	253모16**	김*선	전라남도 화순군	2025-07-17 10:38	성수대교남단교차로~압구정역교차로	50,000
198	04나60**	신*호	경기도 하남시	2025-07-17 10:3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99	84수57**	주*화*우*유*	경기도 하남시	2025-07-17 07: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0	231부18**	주*화*록*자	경기도 안성시	2025-07-17 10:4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01	61두24**	주*화*웅*	경기도 김포시	2025-07-17 08:5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02	50누24**	말*니*발*식*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1 18:3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03	65더61**	주*화*상*지*에*	경기도 이천시	2025-07-13 17:2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04	34마67**	Z*A*P*N*C*E*G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2 23: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05	249주58**	J*N*O*G*U*	경기도 안산시	2025-07-12 06:38	상봉동 중량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206	서울31자15**	조*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1 09:05	월계1교~하계5-6단지 교차로	50,000
207	42루48**	이*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8 20: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08	43라84**	K*M*!*!*L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07-18 17:0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09	38소99**	박*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4 19:2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10	서울32바69**	김*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4 07:2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11	122소88**	최*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4 09:2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12	서울31아23**	최*조	경기도 고양시	2025-07-15 18: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3	53러59**	김*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7-02 09:54	연신내역~구산역	50,000
214	335더31**	이*협	경기도 용인시	2025-07-15 1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5	서울38아53**	이*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5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6	서울32사54**	노*서	경기도 용인시	2025-07-16 18:0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17	서울38아44**	정*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6 17: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8	95더49**	김*조	경기도 고양시	2025-07-09 08:54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50,000
219	811여36**	주*희*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3 12: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20	65더61**	주*희*상*지*에*	경기도 이천시	2025-07-13 17:2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21	153하96**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3 09: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22	264더56**	주*희*아*넷	울산광역시 북구	2025-07-14 09: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23	53너01**	K*M*R*A*I*E*G*N*V*C*	충청남도 아산시	2025-07-14 16: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24	32조01**	양*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5 09: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5	62마15**	이*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5 09: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6	85다14**	신*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15 17:4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27	서울31자71**	유*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15 20:3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28	224무23**	김*미	경기도 성남시	2025-07-17 09: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29	82구19**	서*원	경상남도 함안군	2025-07-17 16:3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30	서울32자41**	함*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8 08:4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31	822무45**	(*)*이*스*터*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8 10:0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32	46도47**	최*옥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18 10: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3	32도25**	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16 18: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34	37너83**	신*철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6 10: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5	27너79**	이*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5 08:39	영등포역~영등포로터리	50,000
236	267주66**	백*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6 16:13	서울시체육회교차로	50,000
237	81러71**	한*량	경기도 파주시	2025-07-16 20: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38	331저52**	홍*서	경기도 수원시	2025-07-16 09: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39	182누11**	조*익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6 20: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40	101허44**	주*희*유*렌*카	경기도 화성시	2025-07-16 19:2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41	153버38**	주*희*임*트*디*	경기도 파주시	2025-07-16 14:0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2	67모03**	주*희*세*로*스	경기도 평택시	2025-07-19 11: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43	서울31아62**	김*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6-26 12:22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244	61수23**	조*라	경기도 용인시	2025-07-15 07:33	강남소방서앞	50,000
245	서울31아60**	홍*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8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6	103루90**	주*희*엘*이*지*	충청북도 청주시	2025-07-18 16:4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47	282버45**	김*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5-07-20 12:51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248	843모84**	하*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5-07-20 16:25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49	237우54**	김*섭	충청남도 천안시	2025-07-20 12: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0	75오61**	(*)*렐*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8 12:01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251	209보86**	장*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18 18:3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52	319더96**	민*진	경기도 성남시	2025-07-19 07:4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53	45어89**	김*숙	경기도 용인시	2025-07-19 12: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54	169허20**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9 11: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55	23누84**	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7-18 10: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56	서울88바65**	이*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8 08:5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57	45오56**	주*희*라*프*스*리*(*)*E*A *(K*R*A*Q*,*)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18 16:0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58	165머32**	김*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8 09:2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59	40러70**	안*홍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8 19:3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60	82가18**	송*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8 08:4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61	23가72**	김*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18 17:4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62	61가53**	이*민	인천광역시 중구	2025-07-20 19:10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63	105다50**	김*항	경상북도 상주시	2025-07-20 05:5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64	311나28**	박*훈	경기도 성남시	2025-07-20 17:0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5	46소28**	이*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5 18: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66	31가48**	이*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5 07: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67	199하77**	주*희*오*스*엠*스	경기도 수원시	2025-07-09 17: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1-4	50,000
268	197주10**	정*엽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6-21 21:43	명동성당교차로~퇴계로2가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9	52도18**	김*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1 10:4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70	158루76**	김*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1 08:5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71	811여36**	주*희*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1 07: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72	11고88**	배*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7-11 19:2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73	03두68**	김*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1 20: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74	서울31자66**	한*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7-14 13:06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275	135고31**	이*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0 09:15	삼육대~태릉국제스케이트장	50,000
276	서울31사33**	채*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1 08:26	삼육대~태릉국제스케이트장	50,000
277	262여49**	허*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4 09: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78	서울80자70**	정*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4 09:5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79	서울31바54**	김*생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4 17:4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0	809마99**	임*섭	전라남도 담양군	2025-07-14 08:3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81	172하92**	주*희*애*앤*열*이*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08 07:44	천호대교~광나루역	50,000
282	143호84**	(*)*니*인*스*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7 09:17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283	43라84**	K*M*지*L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07-14 17: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84	58마92**	엄*웅	경기도 광주시	2025-07-14 10:5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5	23로14**	김*아	경기도 시흥시	2025-07-15 09:2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6	87보51**	주*희*백*디*애*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15: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87	24구70**	한*석	경기도 군포시	2025-07-16 13:5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8	40너02**	이*원	경기도 안양시	2025-07-17 13: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9	125호77**	홍*웅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5 12:46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90	228호14**	(*)*노*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9 13: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1	09부11**	권*림	경기도 하남시	2025-07-18 09:2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92	77서81**	박*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1 08:36	개화교~개화사거리	60,000
293	177서75**	이*희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1 08:37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294	814라99**	김*섭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11 11:22	염곡IC~청계산입구삼거리	50,000
295	19노43**	양*철	경기도 화성시	2025-07-11 08:4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6	58루16**	이*옥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1 08:5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97	54저96**	양*기	경기도 동두천시	2025-07-11 08:2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98	82주75**	(*)*진*탈*리*	경기도 군포시	2025-07-11 07:2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9	24호44**	주*희*삼*랜*카	경기도 고양시	2025-07-11 17: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0	31누03**	Z*A*W*N*I*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14 18:21	이화사거리~해회역	50,000
301	65더61**	주*희*상*지*에*	경기도 이천시	2025-07-13 10:0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02	227서42**	류*동	경상북도 성주군	2025-07-14 10:4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03	26러05**	정*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4 18:2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04	131버62**	이*희	경기도 고양시	2025-07-14 14: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5	19러66**	유*민	경기도 고양시	2025-07-14 19: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06	128소41**	허*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4 18:4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07	서울32자12**	장*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5 11:06	종합운동장역	50,000
308	37우28**	오*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15 17:4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09	69오93**	유*기	경기도 시흥시	2025-07-15 20:4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10	89노78**	송*주	경기도 고양시	2025-07-15 17:42	동산육교~은평뉴타운	50,000
311	서울36바17**	김*춘	경기도 시흥시	2025-07-15 15:33	관악고등학교앞	50,000
312	경기87바95**	김*구	경기도 고양시	2025-07-13 11:15	고척교	50,000
313	46구38**	송*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0 08:05	상계15단지앞	50,000
314	246마99**	서*국	경기도 고양시	2025-06-25 18:54	거북골로	50,000
315	60버19**	김*남	경기도 오산시	2025-07-16 07:5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16	81러93**	허*연	경기도 성남시	2025-07-14 08:04	월계1교교차로~ 하계5단지6단지교차로	50,000
317	331루50**	(*)*엔*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6-21 14:22	염창역~ 등촌역	50,000
318	59마31**	Y*A*Z*E*G*U*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17 14:1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9	80무73**	권*형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7 20: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20	16소64**	김*영	경기도 김포시	2025-07-11 17:44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321	256오36**	김*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11 18:38	천호대교~천호역	50,000
322	45주72**	S*N*I*G*U*	경상북도 경산시	2025-07-11 18:04	노원구민회관교차로~중계근린공원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3	396여87**	조*스기카노	충청남도 예산군	2025-07-13 12:31	구반포역~신반포역	50,000
324	서울31바96**	유*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4 10:02	금천구청입구교차로~말미사거리	50,000
325	08누56**	이*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5 09:2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26	37구43**	김*석	경기도 고양시	2025-07-03 07:25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50,000
327	230오14**	(*)*사*에*앤*	경기도 화성시	2025-07-14 11:33	길음역교차로~미아사거리	50,000
328	05누20**	동*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15 09:30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29	02다69**	김*수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9 10: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30	서울86자94**	이*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8 08: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1	인천81바44**	(*)*진*합*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18 17:5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32	309다72**	최*기	대구광역시 북구	2025-07-18 17:1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33	경기48바54**	이*현	경기도 구리시	2025-07-18 08:1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34	27저06**	김*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8 18:5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35	224하67**	정*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9 17:28	염창역~등촌역	50,000
336	179하62**	강*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0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37	205마59**	김*은	세종특별자치시 다듬*로	2025-07-10 14:21	잠원동 현대힐미리아파트	50,000
338	82주75**	(*)*진*탈*리*	경기도 군포시	2025-07-11 07:2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39	22주86**	최*원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3 06:2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40	811여36**	주*희*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3 12:2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41	153하96**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3 09: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42	817조97**	이*환	경기도 부천시	2025-07-11 07:3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343	811여36**	주*희*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1 07: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44	20마07**	유*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12 17:08	상봉역~상봉지하차도교차로	50,000
345	인천30바84**	유*암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11 09:22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46	62조39**	오*벨*교*아*주*(*)*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1 09:17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347	158거50**	이*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7-11 17:2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48	811여36**	주*희*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3 12:2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49	75오61**	(*)*렐*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4 12:23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50	65더61**	주*회*상*지*에*	경기도 이천시	2025-07-13 10:0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51	338머57**	최*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7-13 10:3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52	02나65**	D*C*S*A*D*O*E*E*O*E	경기도 평택시	2025-07-13 20:4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53	321머96**	주*회*태*씨*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4 08: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54	10로04**	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4 15:5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55	인천30바72**	이*술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14 09:2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56	48무79**	김*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14 17: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57	56무01**	A*B*R*K*E*H*M*A*H*A*I	경기도 시흥시	2025-07-15 16:5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58	10오72**	김*식	경기도 화성시	2025-07-15 19:18	잠원동 현대힐미리아파트	50,000
359	서울31아30**	정*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5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60	103누51**	윤*근	충청남도 천안시	2025-07-15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61	381루25**	티*스*코*래*션*식*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5 19: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62	337우12**	C*I*H*N*I	경기도 시흥시	2025-07-15 0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63	서울31사24**	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5 09: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64	35오27**	김*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16: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65	92머58**	다*그*인*리*(*)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16 07: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66	269너19**	서*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18:1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67	서울89자33**	길*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6 21:25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368	255수50**	김*철	경기도 고양시	2025-07-16 20:5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69	서울32자56**	김*수	경기도 고양시	2025-07-16 20:1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70	251노34**	주*회*아*뜸	경기도 하남시	2025-07-17 08: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71	240머82**	이*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17 20: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72	15누23**	권*중	경기도 파주시	2025-07-17 18:4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73	54구11**	정*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2025-07-17 15:21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374	251소97**	이*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7 19: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75	82구19**	서*원	경상남도 함안군	2025-07-17 16: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76	59마31**	Y*A*Z*E*G*U*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17 14:2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77	서울32자19**	윤*호	경기도 고양시	2025-07-18 08:3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78	125호67**	김*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9 10:3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79	58려86**	유*란	경기도 수원시	2025-07-16 18: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80	69수41**	오*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7 09:3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81	266다24**	박*자	대전광역시 서구	2025-07-14 09: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82	52버85**	(*)*이*티*드	경기도 안양시	2025-07-16 19:0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83	166마10**	(*)*테*스*코*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4 10:0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384	342다65**	주*희*딘*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11 17: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85	서울31사39**	이*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1 20:3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86	60우63**	김*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0 16:30	연희ic~연세대학교차로	50,000
387	25모09**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6-28 17:52	한성대입구역 교차로	50,000
388	50모98**	김*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1 19:16	태릉~서울여대	50,000
389	70부36**	이*자	경기도 광주시	2025-07-17 08: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390	07고71**	손*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6 18: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91	11노58**	K*M*U*i*A	경기도 안산시	2025-07-19 10:4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92	290두29**	김*민	울산광역시 동구	2025-07-12 11:5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93	49머64**	박*신	인천광역시 중구	2025-07-11 20: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94	45루38**	황*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5 17: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95	161마98**	황*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7-17 10:2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96	189조85**	주*희*디*알*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14 14:2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97	203루84**	주*희*디*공*	경기도 용인시	2025-07-04 18:0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98	28로59**	오*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4 18:5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99	338머88**	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7 08:0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00	36하20**	주*희*줍*길	경기도 고양시	2025-07-07 18: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01	233도79**	현*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1 13:5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02	58서01**	김*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1 09:2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03	서울32사30**	김*오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4 17:1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04	08서81**	주*회*배*트*터*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1 10:0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405	45누07**	박*순	전라남도 고흥군	2025-07-15 09:13	천호대교북단	50,000
406	121다66**	이*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6-18 13:26	양재ic~반포ic	50,000
407	53하43**	주*회*패*먼*코*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025-07-09 18:1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08	180버30**	L*E*E*N*Y*N*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8 17:4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09	18모11**	윤*순	경기도 포천시	2025-07-16 09: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10	64라52**	이*석	충청북도 제천시	2025-07-15 09:1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11	95라09**	이*복	인천광역시 중구	2025-07-15 17:15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412	806거25**	이*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7 06:28	잠원동 현대힐미리아파트	50,000
413	63모86**	권*혁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0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14	142무47**	Y*R*A*T*N	경상남도 김해시	2025-07-11 15:2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15	104호71**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4 09: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16	88도76**	홍*표	경기도 평택시	2025-07-18 11:34	상봉동 중량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417	30소80**	최*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1 10:3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18	16나50**	주*회*민*종*건*사*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6 17:3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19	111보62**	박*범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4 19: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20	서울31아38**	오*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7-18 19:21	을지로1가교차로~ 한국은행앞교차로	50,000
421	서울31아27**	윤*원	경기도 고양시	2025-07-11 0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22	04무30**	김*완	경기도 화성시	2025-07-16 18:5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23	194거98**	금*물*센*(*)	경기도 파주시	2025-06-25 17:1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24	39러54**	양*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9 09:3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25	58부51**	김*릉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7-15 09:4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26	서울31아51**	김*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15 18:22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427	47여88**	김*자	경기도 고양시	2025-07-20 17:15	교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428	92조47**	김*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6 07: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29	30구93**	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4 1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30	25로99**	이*원	경기도 광주시	2025-07-08 09:25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431	802우32**	김*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10 09:21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교차로	50,000
432	서울32자44**	박*영	경기도 김포시	2025-07-14 08:38	고촌IC~개화교	50,000
433	서울31아78**	김*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6-25 19:42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434	53구64**	서*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5 07:36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435	86저05**	장*	경기도 안산시	2025-07-18 09:1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36	252터56**	주*회*3*0*레*	경기도 성남시	2025-07-14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37	170하91**	(*)*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8 17:3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438	26나88**	박*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4 18: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39	221호76**	이*선	경기도 파주시	2025-07-03 17:5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40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08 17: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8 (잠실동)	50,000
441	294고22**	C*O*U*N*A*H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5 17:2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42	40고01**	장*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7 19:2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443	191오31**	이*은	경기도 화성시	2025-07-19 11:3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44	252로14**	농*회*법*도*주*회*	경기도 광주시	2025-07-12 20: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45	349도22**	(*)*긴*보*스*퍼*	경기도 고양시	2025-07-15 20: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46	서울31자66**	문*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08: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47	57고90**	주*적*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8 16: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48	62노53**	크*스*레*크*트*스*한*임*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8 11: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49	78보33**	Y*G*O*H*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18 09:1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60,000
450	247너52**	김*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15 0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51	43누84**	손*련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1 08:28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452	서울32사69**	최*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6 07:29	몽촌토성역~송파구청교차로	50,000
453	63버69**	주*회*엘*스	경기도 수원시	2025-06-13 16:40	양재ic~서초ic	50,000
454	264저68**	명*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10 09: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50,000
455	107터80**	J*A*G*H*N*H*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7-19 06:20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트산부인과	50,000
456	109허75**	주*회*한*랜*카	경기도 고양시	2025-07-14 17:5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57	58마92**	엄*웅	경기도 광주시	2025-07-14 10: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58	05노08**	정*교	경기도 파주시	2025-07-14 19: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59	166호89**	그*이*메*칼	인천광역시 서구	2025-06-30 18: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60	82구19**	서*원	경상남도 함안군	2025-07-17 16:3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61	212고72**	황*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4 18:5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462	14우61**	조*희	경기도 이천시	2025-07-11 19:59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463	37더97**	홍*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1 09: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64	39버17**	허*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2 13:09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465	29머61**	최*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7 10:49	중화동 중랑역 메디켄노산부인과	50,000
466	303구86**	김*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17 18:38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467	16무09**	나*주	대전광역시 동구	2025-07-11 13: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68	86더37**	(*)*앤*스*크	경기도 수원시	2025-07-18 13: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69	155하14**	문*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6-22 01: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70	02나65**	D*C*S*A*D*O*E*E*O*E	경기도 평택시	2025-07-20 09:1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71	166호89**	그*이*메*칼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02 18: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72	52노72**	조*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7 08: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73	224수80**	한*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6 20:4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74	53소60**	C*I*H*N*U*	경기도 안산시	2025-07-15 19: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75	87머08**	김*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7 17:1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76	02나65**	D*C*S*A*D*O*E*E*O*E	경기도 평택시	2025-07-20 09:1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02조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로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견제출서		〒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시간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른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산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24.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 : 과태료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제1항 제2호)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법령·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가 규정되어 있거나 이미 거친 경우	☐
B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1호)	☐
C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2호)	☒
D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3호)	☐
E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4호)	☐

5. 작성자 : 안영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80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이*혁 포함 7명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16 ***호(호계동,현대프라자) 외
- 서류의 명칭: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 서류의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 ※ 상세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5년 7월 30일 등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5년 9월 4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채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공시송달[2025년 8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납세자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	680-140003-202401-2-640-500014	법인지방소득세	이*혁	2025.07.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16, ***호 (호계동, 현대프라자)	수취인 불명	2025.08.21.	170,449,830
2	680-140003-202401-2-640-500012	법인지방소득세	이*혁	2025.07.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16, ***호 (호계동, 현대프라자)	수취인 불명	2025.08.21.	125,049,640
3	680-140003-202401-2-640-500011	법인지방소득세	이*혁	2025.07.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16, ***호 (호계동, 현대프라자)	수취인 불명	2025.08.21.	21,328,780
4	680-140003-202401-2-640-500014	법인지방소득세	(주) 메*프	2025.06.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08-1, ***호 (봉천동)	이시불명	2025.08.21.	170,449,830
5	680-140003-202401-2-640-500012	법인지방소득세	(주) 메*프	2025.06.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08-1, ***호 (봉천동)	이시불명	2025.08.21.	125,049,640
6	680-140003-202401-2-640-500011	법인지방소득세	(주) 메*프	2025.06.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08-1, ***호 (봉천동)	이시불명	2025.08.21.	21,328,780
7	140-140003-202406-2-635-100003	법인지방소득세	박*정	2025.07.08.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49길15, 로렘하이츠 ***호 (두류동)	폐문부재	2025.08.21.	9,881,070
8	140-140003-202406-2-635-100003	법인지방소득세	김*정	2025.07.08.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49길15, 로렘하이츠 ***호 (두류동)	폐문부재	2025.08.21.	9,881,090
9	380-140003-202310-2-580-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전*홍	2025.07.15.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21, ***동 ***호 (방축동, 주공아파트)	폐문부재	2025.08.21.	3,718,490
10	380-140003-202311-2-999-500001	법인지방소득세	김*혁	2025.07.1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55, ***호 (이동)	폐문부재	2025.08.21.	19,246,480
11	320-140003-202201-2-522-500001	법인지방소득세	박*균	2025.07.15.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113, ***동 ***호 (외동동, 별하람마을1단지 제일공영채그라운드)	폐문부재	2025.08.21.	7,234,55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81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이*길 포함 23명
- 서류의 송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논현동) 외
- 서류의 명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서류의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한 납부최고
 - ※ 상세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5년 7월 8일 등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5년 9월 4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치고 공시충달[2025년 8월]

연번	과세번호	세 목명	납세자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충달지)	공시충달사유	공시충달일자	세액(원)
1	680-140003-202407-2-531-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이*결	2025.0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수취인불명	2025.08.21.	115,022,570
2	680-106001-202112-1-531-002702	자동차세	이*결	2025.0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수취인불명	2025.08.21.	334,340
3	680-104102-202110-2-531-000042	주민세(사업소분)	이*결	2025.0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수취인불명	2025.08.21.	506,390
4	680-140004-202109-2-531-100190	지방소득세(특별경수)	이*결	2025.0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수취인불명	2025.08.21.	2,400,390
5	680-140004-202110-2-531-100118	지방소득세(특별경수)	이*결	2025.0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수취인불명	2025.08.21.	2,863,730
6	680-106001-202108-2-531-200039	자동차세	이*결	2025.0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수취인불명	2025.08.21.	53,040
7	680-106001-202108-2-531-200057	자동차세	이*결	2025.0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수취인불명	2025.08.21.	31,290
8	680-140004-202111-2-531-100048	지방소득세(특별경수)	이*결	2025.0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수취인불명	2025.08.21.	1,981,030
9	680-140004-202108-2-531-100044	지방소득세(특별경수)	이*결	2025.0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수취인불명	2025.08.21.	3,116,470
10	680-106001-202108-2-531-200003	자동차세	이*결	2025.0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수취인불명	2025.08.21.	49,600
11	710-140003-202408-2-562-500003	법인지방소득세	이*근	2025.06.09.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9길 53 ***호 (상동)	폐문부재	2025.08.21.	17,801,890
12	710-140003-202408-2-562-500005	법인지방소득세	이*근	2025.06.09.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9길 53 ***호 (상동)	폐문부재	2025.08.21.	14,158,040
13	710-140003-202304-2-562-500004	법인지방소득세	이*근	2025.06.09.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9길 53 ***호 (상동)	폐문부재	2025.08.21.	22,520
14	710-104102-202310-2-562-000039	주민세(사업소분)	이*근	2025.06.09.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9길 53 ***호 (상동)	폐문부재	2025.08.21.	64,370
15	710-104102-202410-2-562-000378	주민세(사업소분)	이*근	2025.06.09.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9길 53 ***호 (상동)	폐문부재	2025.08.21.	64,370
16	710-104102-202210-2-562-001065	주민세(사업소분)	이*근	2025.06.09.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9길 53 ***호 (상동)	폐문부재	2025.08.21.	64,370
17	710-104102-202110-2-562-000681	주민세(사업소분)	이*근	2025.06.09.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9길 53 ***호 (상동)	폐문부재	2025.08.21.	19,67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납세자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8	680-140003-202406-2-650-100100	법인지방소득세	김*경	2025.07.08.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40번길 28-*** (소하동)	폐문부재	2025.08.21.	19,195,220
19	650-140003-202406-2-631-100004	법인지방소득세	신*경	2025.06.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42길 2 ***동 ***호 (염리동, 마포저어)	폐문부재	2025.08.21.	9,688,110
20	530-140003-202411-2-540-500003	법인지방소득세	이*원	2025.06.11.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99 ***동 ***호 (금정동, 주공아파트)	폐문부재	2025.08.21.	13,829,070
21	500-140003-202412-2-510-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이*규	2025.06.1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58 ***동 ***호 (호자동1가, 비사별아파트)	폐문부재	2025.08.21.	11,052,410
22	650-140003-202409-2-651-500006	법인지방소득세	현*식	2025.06.1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1** (전우리)	폐문부재	2025.08.21.	15,056,290
23	650-140003-202409-2-651-500007	법인지방소득세	현*식	2025.06.1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1** (전우리)	폐문부재	2025.08.21.	24,592,100
24	650-140003-202409-2-651-100010	법인지방소득세	현*식	2025.06.1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1** (전우리)	폐문부재	2025.08.21.	12,490,350
25	650-140003-202410-2-520-500002	법인지방소득세	이*은	2025.07.2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7, ****호 (서초동, 밀리텔 셰르빌)	수취인불명	2025.08.21.	18,199,810
26	650-140003-202406-2-520-100050	법인지방소득세	이*은	2025.07.2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7, ****호 (서초동, 밀리텔 셰르빌)	수취인불명	2025.08.21.	512,124,600
27	215-140003-202406-2-750-500003	법인지방소득세	(주)조***거	2025.07.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리로 118 **층 ****호(성수동2가, 성수아카데미타워)	이사불명	2025.08.21.	22,219,710
28	680-140003-202204-2-630-500002	법인지방소득세	권*옥	2025.07.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길 7*(남현동)	주소불명	2025.08.21.	12,532,070
29	215-140004-202304-2-730-10006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안*선	2025.07.11.	경기도 파주시 송학길 135-26, ***동 ***호(아당동)	수취인불명	2025.08.21.	6,714,570
30	215-140004-202301-2-730-10000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안*선	2025.07.11.	경기도 파주시 송학길 135-26, ***동 ***호(아당동)	수취인불명	2025.08.21.	6,510,700
31	215-140004-202210-2-730-10007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안*선	2025.07.11.	경기도 파주시 송학길 135-26, ***동 ***호(아당동)	수취인불명	2025.08.21.	7,744,690
32	200-140003-202106-2-720-500004	법인지방소득세	티*엠㈜	2025.07.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75 3층 ****호 (송정동, 세신빌딩)	이사불명	2025.08.21.	95,008,870

연번	과세번호	세 목명	납세자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33	680-101501-202407-2-640-000006	취득세 부동산	조*철	2025.0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7길 23, ***호(역삼동)	폐문부재	2025.08.21.	678,677,400
34	680-101501-202407-2-640-000008	취득세 부동산	조*철	2025.0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7길 23, ***호(역삼동)	폐문부재	2025.08.21.	1,174,292,800
35	680-101501-202407-2-640-000007	취득세 부동산	조*철	2025.0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7길 23, ***호(역삼동)	폐문부재	2025.08.21.	27,834,940
36	680-101501-202407-2-640-000009	취득세 부동산	조*철	2025.0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7길 23, ***호(역삼동)	폐문부재	2025.08.21.	347,102,180
37	140-140003-202305-2-605-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이*규	2025.07.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62, ***호(신림동)	폐문부재	2025.08.21.	18,976,550
38	140-140003-202305-2-605-500002	법인지방소득세	이*규	2025.07.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62, ***호(신림동)	폐문부재	2025.08.21.	5,779,500
39	140-140003-202305-2-605-500003	법인지방소득세	이*규	2025.07.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62, ***호(신림동)	폐문부재	2025.08.21.	77,470,670
40	140-140003-202305-2-605-500004	법인지방소득세	이*규	2025.07.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62, ***호(신림동)	폐문부재	2025.08.21.	148,917,550
41	140-140003-202305-2-605-500005	법인지방소득세	이*규	2025.07.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62, ***호(신림동)	폐문부재	2025.08.21.	47,829,400
42	140-140004-202307-2-600-50000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규	2025.07.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62, ***호(신림동)	폐문부재	2025.08.21.	4,961,380
43	560-140003-202306-2-540-500019	법인지방소득세	장*연	2025.07.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6길 141 ***호(능동)	폐문부재	2025.08.21.	12,347,610
44	680-140003-202306-2-565-100190	법인지방소득세	쥬메**인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3*~ (청담동, 가비(GABI))	이사불명	2025.08.21.	14,974,100
45	680-104102-202310-2-565-000222	주민세(사업소분)	쥬메**인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3*~ (청담동, 가비(GABI))	이사불명	2025.08.21.	64,370
46	680-104102-202410-2-565-002250	주민세(사업소분)	쥬메**인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3*~ (청담동, 가비(GABI))	이사불명	2025.08.21.	64,370
47	680-140004-202307-2-565-10045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쥬메**인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3*~ (청담동, 가비(GABI))	이사불명	2025.08.21.	511,060
48	680-140004-202309-2-565-50000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쥬메**인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3*~ (청담동, 가비(GABI))	이사불명	2025.08.21.	123,780
49	680-140004-202412-2-565-10028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쥬메**인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3*~ (청담동, 가비(GABI))	이사불명	2025.08.21.	17,080
50	680-140003-202408-2-565-500004	법인지방소득세	쥬메**인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3*~ (청담동, 가비(GABI))	이사불명	2025.08.21.	46,009,81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납세지역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51	680-140003-202306-2-565-100190	법인지방소득세	아*덕	2025.07.1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26*--*	수취인불명	2025.08.21.	14,974,100
52	680-104102-202310-2-565-000222	주민세(사업소분)	아*덕	2025.07.1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26*--*	수취인불명	2025.08.21.	64,370
53	680-104102-202410-2-565-002250	주민세(사업소분)	아*덕	2025.07.1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26*--*	수취인불명	2025.08.21.	64,370
54	680-140004-202307-2-565-10045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아*덕	2025.07.1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26*--*	수취인불명	2025.08.21.	511,060
55	680-140004-202309-2-565-50000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아*덕	2025.07.1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26*--*	수취인불명	2025.08.21.	123,780
56	680-140004-202412-2-565-10028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아*덕	2025.07.1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26*--*	수취인불명	2025.08.21.	17,080
57	680-140003-202408-2-565-500004	법인지방소득세	아*덕	2025.07.1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26*--*	수취인불명	2025.08.21.	46,009,810
58	680-140003-202307-2-580-100014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2025.07.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캐널로 270 ***호 (청라동, 캐널힐스빌)	기타	2025.08.21.	26,682,960
59	680-140003-202401-2-580-500015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2025.07.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캐널로 270 ***호 (청라동, 캐널힐스빌)	기타	2025.08.21.	8,740,000
60	680-140003-202103-2-640-500013	법인지방소득세	하*웅	2025.07.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00 *** (목동)	기타	2025.08.21.	25,273,990
61	500-140003-202209-2-570-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유*진	2025.07.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길 * (독산동)	기타	2025.08.21.	53,024,090
62	350-104102-202210-2-595-000374	주민세(사업소분)	정*덕	2025.07.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97-1 *동 ***호 (주인동, 오담빌라)	기타	2025.08.21.	64,370
63	350-104102-202310-2-595-000430	주민세(사업소분)	정*덕	2025.07.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97-1 *동 ***호 (주인동, 오담빌라)	기타	2025.08.21.	64,370
64	350-104102-202110-2-595-000403	주민세(사업소분)	정*덕	2025.07.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97-1 *동 ***호 (주인동, 오담빌라)	기타	2025.08.21.	64,370
65	710-140003-202403-2-642-500013	법인지방소득세	김*관	2025.07.16.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13번길 6 ***호 (태정동, 미진아파트)	폐문부재	2025.08.21.	14,209,650
66	680-140004-202402-2-730-10000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1길 18 ***호(일원동,공전하우스)	수취인불명	2025.08.21.	281,100
67	680-140003-202406-2-730-100014	법인지방소득세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1길 18 ***호(일원동,공전하우스)	수취인불명	2025.08.21.	39,091,040

연번	과세번호	세 목명	납세자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68	680-104102-202410-2-730-000148	주민세(사업소분)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1길 18 ***호(일원동,공전하우스)	수취인불명	2025.08.21.	64,370
69	680-140004-202312-2-730-100024	지방소득세(특별정수)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1길 18 ***호(일원동,공전하우스)	수취인불명	2025.08.21.	260,460
70	680-140004-202401-2-730-100019	지방소득세(특별정수)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1길 18 ***호(일원동,공전하우스)	수취인불명	2025.08.21.	190,900
71	680-104102-202310-2-730-000154	주민세(사업소분)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1길 18 ***호(일원동,공전하우스)	수취인불명	2025.08.21.	64,370
72	680-140004-202402-2-730-100006	지방소득세(특별정수)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7길 34 ***호(일원동)	기타	2025.08.21.	281,100
73	680-140003-202406-2-730-100014	법인지방소득세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7길 34 ***호(일원동)	기타	2025.08.21.	39,091,040
74	680-104102-202410-2-730-000148	주민세(사업소분)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7길 34 ***호(일원동)	기타	2025.08.21.	64,370
75	680-140004-202312-2-730-100024	지방소득세(특별정수)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7길 34 ***호(일원동)	기타	2025.08.21.	260,460
76	680-140004-202401-2-730-100019	지방소득세(특별정수)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7길 34 ***호(일원동)	기타	2025.08.21.	190,900
77	680-104102-202310-2-730-000154	주민세(사업소분)	산+은	2025.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7길 34 ***호(일원동)	기타	2025.08.21.	64,37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97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독촉고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 법적근거

가.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나. 연 체 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확정부과 고지

대상자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비고
박○주	- 무단점유재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41-8 - 점유기간: 2019. 1. 1.~2024. 12. 31. - 점유면적 및 요율: · 2019~2020년: 287.0㎡, 5% · 2021~2024년: 276.6㎡, 5% - 변상금액: 761,912,970원	서울시 송○구 송○○로 30길 90 (석○동 200-8)	폐문부재로 인한 고지서 미도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시송달 기간: 2025. 8. 21. ~ 2025. 9. 4.(게시일로부터 15일 간)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규 칙]

◆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59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최호정 인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정담당관” 을 “인사과장” 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의2에 따라 임용 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인사위원회에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임용 시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제24조의제1항 중 “실·담당관”을 “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 회 인사담당관은 의정담당관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 하는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u><신 설></u>	제3조(인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의회 인사담당관은 인사과장 ----- -----.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의2에 따라 임용 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를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 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 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 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 검위원회위원을 위원장 포함 2 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 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인사위원회에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 협업무 등의 경협이 있는 공무원

2.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 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제24조(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속 실·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을 단위로 한다.	<u>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u> <u>3.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u> <u>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임용 시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u> <u>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별도 조치</u> <u>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u> 제24조(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속 과-----, -----.
---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내용 반영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3조, 제24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규정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60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인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실·담당관” 을 “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 ② 근무상황부는 실·담당 관·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의 특성상 의회 전체 또는 팀단 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어 사무처장이 달리 정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 ② 근무상황부는 관 ----- ----- -----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구 고 시

◆ 강북구고시 제2025-1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강북구고시 제2019-112호(2019.8.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하고, 강북구고시 제2020-53호(2020.4.23.), 강북구고시 제2020-184호(2020.12.3.), 제2022-86호(2022.6.23.), 강북구고시 제2023-26호(2023.3.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하고, 강북구고시 제2023-95호(2023.8.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변경없음)

나. 사업 개요(변경없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비고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2차)	우이동 272-11~224-38, 우이동 294	폭 6→7m, 연장100m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23-26호(2023.3.9.)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당 초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 2) 변 경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우이동먹거리마을 도로확장(2차)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 내 용	
1	우이동 224-71	임야	4	4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수유동) 강북구						
2	우이동 224-72	잔존지	5	5							
3	우이동 224-73	잔존지	1	1							
4	우이동 224-74	잔존지	3	3							
5	우이동 224-75	임야	1	1							
6	우이동 225-4	임야	14	14							
7	우이동 272-11	대	3	3							
8	우이동 224-27	임야	4	4							
9	우이동 224-38	임야	5	5							
10	우이동 224-60	잔존지	48	48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사업의 명칭 : 우이동먹거리마을 도로확장(2차)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우이동 224-71, 224-72, 224-73, 224-74, 224-75, 225-4, 224-27, 224-38, 224-60	수목		1식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수유동)	강북구					
2	우이동 294	지붕		1식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수유동)	강북구					

□ 위치도(우이동 224-25 주변)

☐ 현황사진

구 공 고

◆ 성북구공고 제2025-14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43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1일

성 북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A	25-31	집산	676	상월곡동 23-112	장위동 233-30	일반도로	-	서고시 제2024-448호 (‘24.9.19.)	
변경	대로	3	A	25-31	집산	676 (94)	상월곡동 23-112	장위동 233-30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702	6	국지	45	장위동 68-440	장위동 48-449	일반도로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 3-A	대로 3-A	- 도로 신설 - B = 2m(구역 내) - L = 94m(구역 내)	- 장위15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대로 3-A호선 내 일부 구간을 확폭하는 사항으로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정요건 충족 및 지역주민의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활한 교통소통과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폭
신설	-	소로 3-702	- 도로 신설 - B = 6m - L = 45m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정요건 충족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 확폭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02-2241-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5-149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부고시 제465(1971.08.0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9-11호(1999.01.20.)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9-92호(2019.05.16.)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42호(2021.09.30.)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최종 고시된 개웅산근린공원 일부(오류동 산13-7 1필지)에 대하여 공원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구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13-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명칭 :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개웅산)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 가. 면적 : 193㎡
 - 나. 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구로구청장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5. 사업기간 : 2019. 5. 16. ~ 2024. 10. 31.
6. 관계도서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02-860-3088)

◆ 금천구공고 제2025-1558호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시흥4구역(시흥4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1일

금 천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5. 08. 22.(금) ~ 2025. 09. 22.(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02-2627-1560), 시흥4동 주민센터
3. 의견제출 방법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에 공람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4. 공람내용
 - 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1) 정비사업의 명칭 :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	증) 99,536	99,536	

3)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위치	내용	사유	비고
신규	시흥4구역	정비구역 지정	공공주도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9,536	100.0	
획 지	소 계	79,194	79.6	
	획 지	79,194	79.6	
정비기반시설	소 계	19,953	20.0	
	도 로	9,138	9.2	
	보행자전용도로	1,315	1.3	
	공 원	8,088	8.1	공원 내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공지	1,412	1.4	
기 타	소 계	389	0.4	
	종교시설	389	0.4	

다.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9,536		99,53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2,699	감) 42,088	10,611	10.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6,837	감) 37,106	9,731	9.8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79,194	79,194	79.6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금천구 시흥동 3-11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2,088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금천구 시흥동 796-36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7,106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06	12	집산 도로	540	시흥동 3-43	시흥동 산209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78-288호 (1978.06.15.)	-
변경	중로	3	106	12~23	집산 도로	855	시흥동 789-70	시흥동 3-2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A	6	국지 도로	104	시흥동 805-47	시흥동 800-1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	중로	3	1	13~14	국지 도로	104	시흥동 798-39	시흥동 799-3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B	6	국지 도로	286	시흥동 793-25	시흥동 794-1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	중로	3	2	15	국지 도로	286	시흥동 799-39	시흥동 794-11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3	14	국지 도로	82	시흥동 4-14	시흥동 4-8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200	시흥동 792-1	시흥동 798-71	일반 도로	-	금천구고시 제2001-4호 (2001.03.10.)	-
변경	소로	1	-	10	국지 도로	81	시흥동 792-1	시흥동 794-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460	시흥동 808-15	시흥동 798-64	일반 도로	-	금천구고시 제2008-6호 (2008.02.28.)	-
변경	소로	1	(-)	10~17	국지 도로	440	시흥동 808-15	시흥동 4-8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1	4	특수 도로	323	시흥동 3-216	시흥동 3-2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C	6	국지 도로	327	시흥동 799-36	시흥동 795-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폐지	소로	3	D	6	국지 도로	157	시흥동 796-39	시흥동 796-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폐지	소로	3	E	6	국지 도로	324	시흥동 704-36	시흥동 797-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폐지	소로	3	F	4	국지 도로	39	시흥동 799-14	시흥동 799-9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폐지	소로	3	G	4	국지 도로	39	시흥동 795-31	시흥동 795-34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H	4	국지 도로	39	시흥동 795-16	시흥동 795-19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폐지	소로	3	I	4	국지 도로	40	시흥동 796-31	시흥동 796-34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폐지	소로	3	J	4	국지 도로	40	시흥동 796-22	시흥동 796-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폐지	소로	3	K	4	국지 도로	40	시흥동 796-40	시흥동 796-16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폐지	소로	3	L	6	국지 도로	117	시흥동 797-2	시흥동 796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2-310호 (1982.08.10.)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06	중로3-106	-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 B = 12m → 12~23m 증) 0~9m - L = 540m → 855m 증) 115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진출입로 확보 및 대상지 주변과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소로3-A	중로3-1	도로 폭원 변경 - 소로3-A → 중로3-1 - B = 6m → 13~14m 증) 7~8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진출입로 확보 및 대상지 주변과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소로3-B	중로3-2	도로 폭원 변경 - 소로3-B → 중로3-2 - B = 6m → 15m 증) 9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진출입로 확보 및 대상지 주변과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폭원 변경
-	중로3-3	- 도로 신설 - B = 14m - L = 82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진출입로 확보 및 대상지 주변과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1-	소로1-	도로 연장 변경 - L = 200m → 81m 감) 119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진출입로 확보 및 대상지 주변과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연장변경
소로1-(-)	소로1-(-)	- 도로 축소 및 폭원 변경 - B = 10~12m → 10~17m 증) 0~5m - L = 460m → 440m 감) 20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진출입로 확보 및 대상지 주변과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축소 및 폭원 변경
-	소로3-1	- 도로 신설 - B = 4m - L = 323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동측 사방지 관리 및 경계부 보행등선 연결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C	-	- 도로 폐지 - B = 6m - L = 327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폐지
소로3-D	-	- 도로 폐지 - B = 6m - L = 157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폐지
소로3-E	-	- 도로 폐지 - B = 6m - L = 324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폐지
소로3-F	-	- 도로 폐지 - B = 4m - L = 39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폐지
소로3-G	-	- 도로 폐지 - B = 4m - L = 39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폐지
소로3-H	-	- 도로 4지 - B = 4m - L = 39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폐지
소로3-I	-	- 도로 폐지 - B = 4m - L = 40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폐지
소로3-J	-	- 도로 폐지 - B = 4m - L = 40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폐지
소로3-K	-	- 도로 폐지 - B = 4m - L = 40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폐지
소로3-L	-	- 도로 폐지 - B = 6m - L = 117m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폐지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	주차장	기타주차장	시흥동 3-129	1,152	감)1,152	-	금천구고시 제2003-27호 (2003.09.05.)	
신설	①	주차장	주차장	시흥동 799-30	-	증)3,003	3,003	-	소공원 중복결정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A = 1,152㎡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A = 3,003㎡	대상지 인근 저층 노후 주거지역 주차수요를 대비한 주차장 신설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	장미공원	어린이공원	시흥동 3-82	1,207	감) 1,207	-	서울시고시 제1995-141호 (1995.05.20.)	
폐지	-	효봉공원	어린이공원	시흥동 4-28	503	감) 503	-	서울시고시 제1995-141호 (1995.05.20.)	
폐지	-	산장공원	어린이공원	시흥동 3-17	678	감) 678	-	서울시고시 제1995-141호 (1995.05.20.)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시흥동 799-30	-	증) 3,003	3,003	-	주차장 중복결정
신설	②	공원	소공원	시흥동 3-31	-	증) 5,085	5,085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미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A = 1,207㎡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	효봉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A = 503㎡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	산장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A = 678㎡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①	공원	- 소공원 신설 - A = 3,003㎡	대상지 내 주민 휴식·휴게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②	공원	- 소공원 신설 - A = 5,085㎡	대상지 내 주민 휴식·휴게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4)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시흥동 798-29	-	증) 1,412	1,412	-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A = 1,412㎡	정비계획에 수립에 따른 장래 공공시설 수요를 고려한 공공공지 신설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증) 8,325	8,325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소계	-	증) 8,000	8,000	
	작은도서관	-	증) 500	500	
	경로당	-	증) 900	900	
	주민운동시설	-	증) 1,200	1,200	
	어린이집	-	증) 900	900	
	어린이놀이터	-	증) 3,200	3,200	
	주민공동시설	-	증) 1,000	1,000	
	다함께돌봄센터	-	증) 300	300	
부대복리시설	소계	-	증) 325	325	
	관리사무소	-	증) 250	250	
	경비실	-	증) 75	7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구역	99,5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353	-	-	-	353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99,536	획지	79,194	시흥4동 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기준 : 189.0 허용 : 229.0 상한 : 241.09 법적상한 : 273.0	최고 3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수 : 2,696세대 (분양 2,202세대, 임대 494세대)

※ 초과용적률(법적상한-상한)에 따른 세대 수 : 432세대 (분양 185세대, 국민주택 : 154세대, 공공분양 : 93세대)

구 분		계 획	
		세대수	비율(%)
계		2,696	100.0
분양주택	소 계	2,202	81.7
	36㎡	198	7.4
	46㎡	595	22.1
	51㎡	334	12.4
	59㎡	408	15.1
	74㎡	254	9.4
	84㎡	413	15.3
임대주택	소 계	494	18.3
	36㎡	207	7.7
	46㎡	160	5.9
	51㎡	31	1.2
	74㎡	96	3.6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계획 : 100.0%(2,696세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연면적의 10% 이상 → 계획 : 10.0%(19,098.8㎡)

- ①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 계획 : ① 30.3%(103세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154세대) 제외

-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85㎡ 이하)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은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구간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60%이상 70%이하

상한용적률 : 241.09%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250.00%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초과용적률 (법적상한-상한)	50%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241.09%	250.00%	8.91%	4.46%	3,533.50㎡ (3,528.09㎡ 이상)

	<table><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계획용적률</td><td>초과용적률 (계획-법적상한)</td><td>60%</td><td>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td></tr><tr><td>250.00%</td><td>272.98%</td><td>22.98%</td><td>13.79%</td><td>10,923.00㎡ (10,919.27㎡ 이상)</td></tr></table>	법적상한 용적률	계획용적률	초과용적률 (계획-법적상한)	60%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250.00%	272.98%	22.98%	13.79%	10,923.00㎡ (10,919.27㎡ 이상)
법적상한 용적률	계획용적률	초과용적률 (계획-법적상한)	60%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250.00%	272.98%	22.98%	13.79%	10,923.00㎡ (10,919.27㎡ 이상)							
	-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40% 이상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지분형 주택 건설 2,696(전체세대수) - 1,701(토지등소유자 분양분) = 995세대 995세대의 40% = 398세대 이상 공공임대 등 공급 필요 → 계획 : 587세대										

심의 완화 사항	• 용도지역 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을 20% 상향한 부분을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건설 •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 법적상한 용적률 250.00% - 상한용적률(241.09%) = 8.91%의 50%인 4.46%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계획 용적률에서 법적상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6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 계획용적률 272.98% - 법적상한 용적률 250.00% = 22.98%의 60%인 13.79%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table><tr><td>구분</td><td>건축선 지정 내용</td><td>비고</td></tr><tr><td rowspan="3">사업부지</td><td>동측, 남측 목골산 경계부 10m</td><td rowspan="3">도면참고</td></tr><tr><td>북측 도로 경계부 5m</td></tr><tr><td>그 외 도로 3m</td></tr></table>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사업부지	동측, 남측 목골산 경계부 10m	도면참고	북측 도로 경계부 5m	그 외 도로 3m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사업부지	동측, 남측 목골산 경계부 10m	도면참고							
	북측 도로 경계부 5m								
	그 외 도로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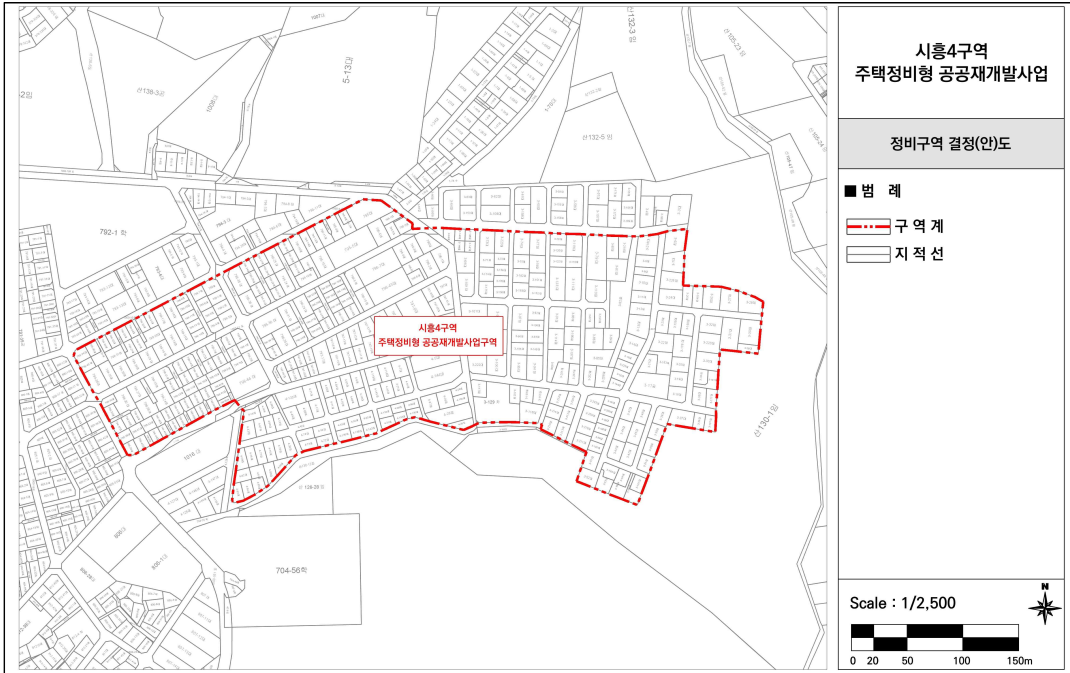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1개소 조성 (10m 내외) - 버스정류장, 학교 등 보행 다발 시설과 단지 내 보행 동선이 연계되도록 조성
----------------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안)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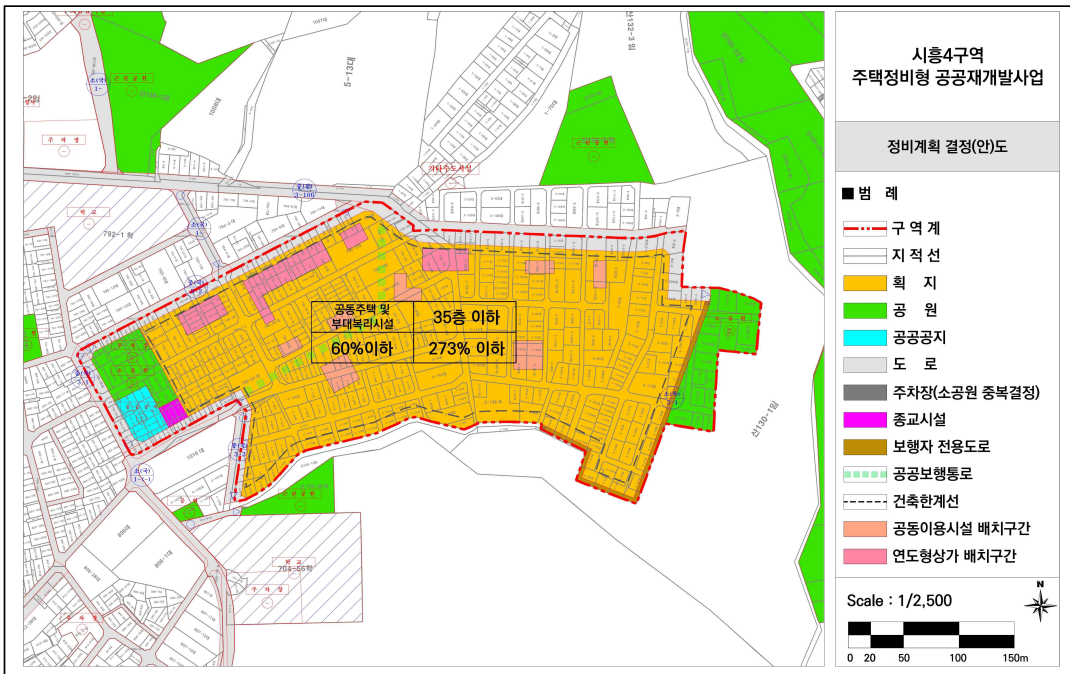
6. 기타사항 : 해당 계획내용은 협의·심의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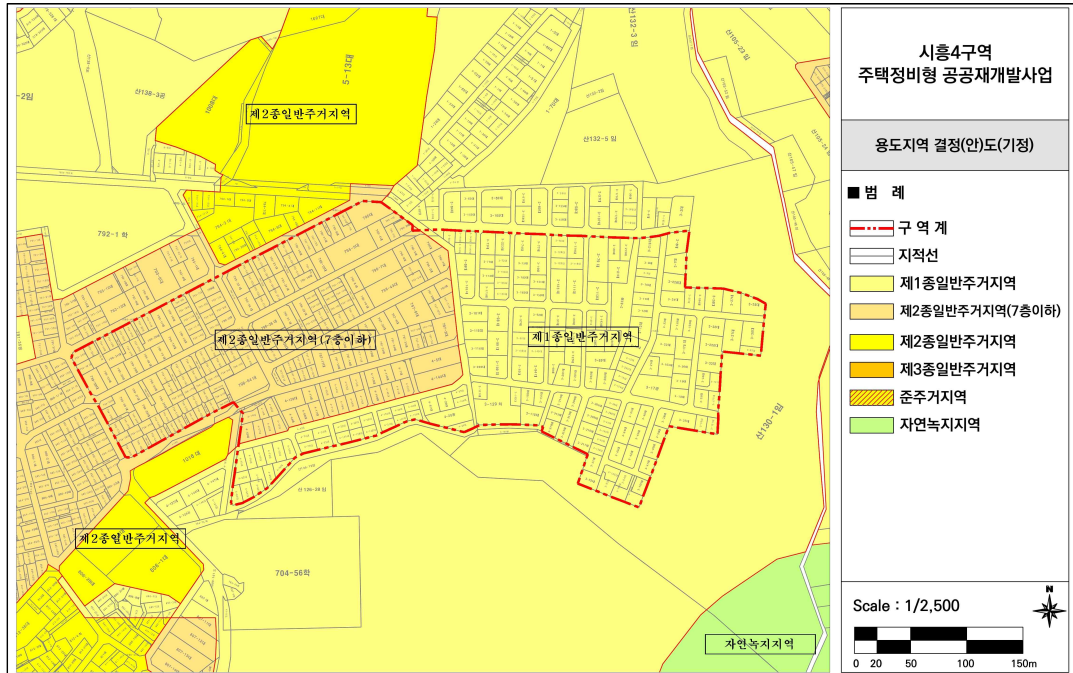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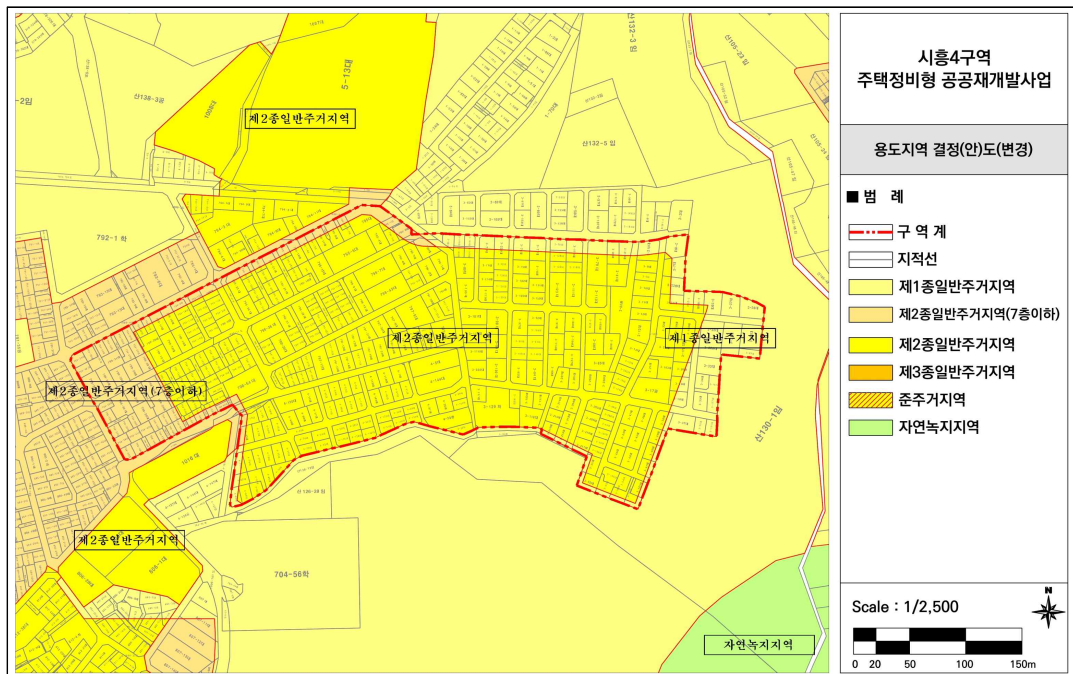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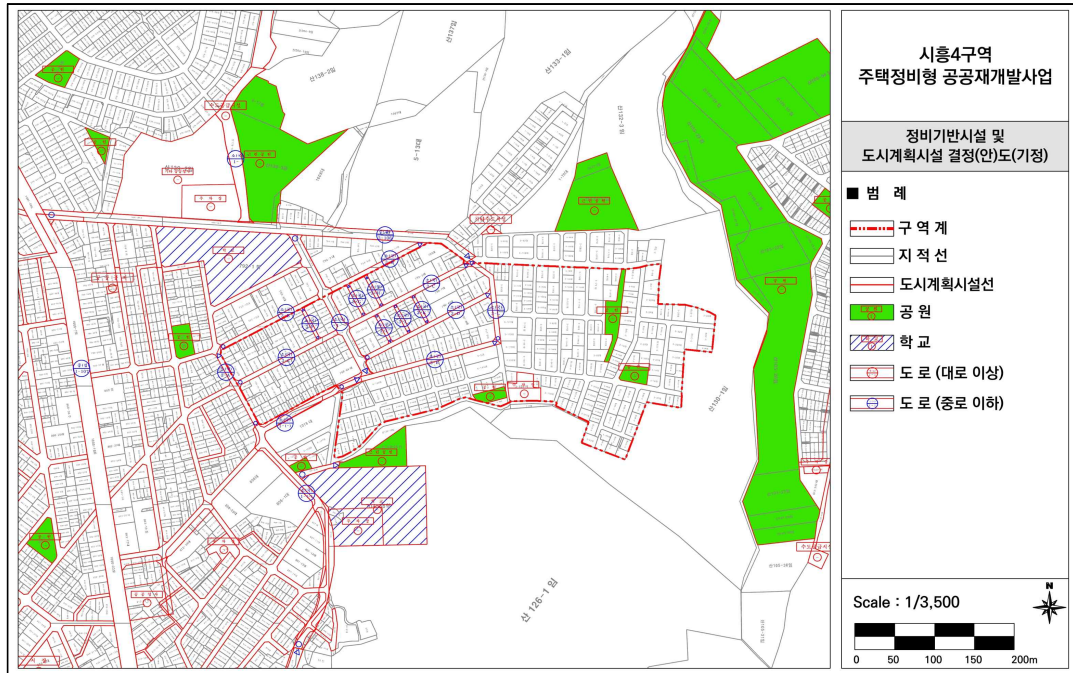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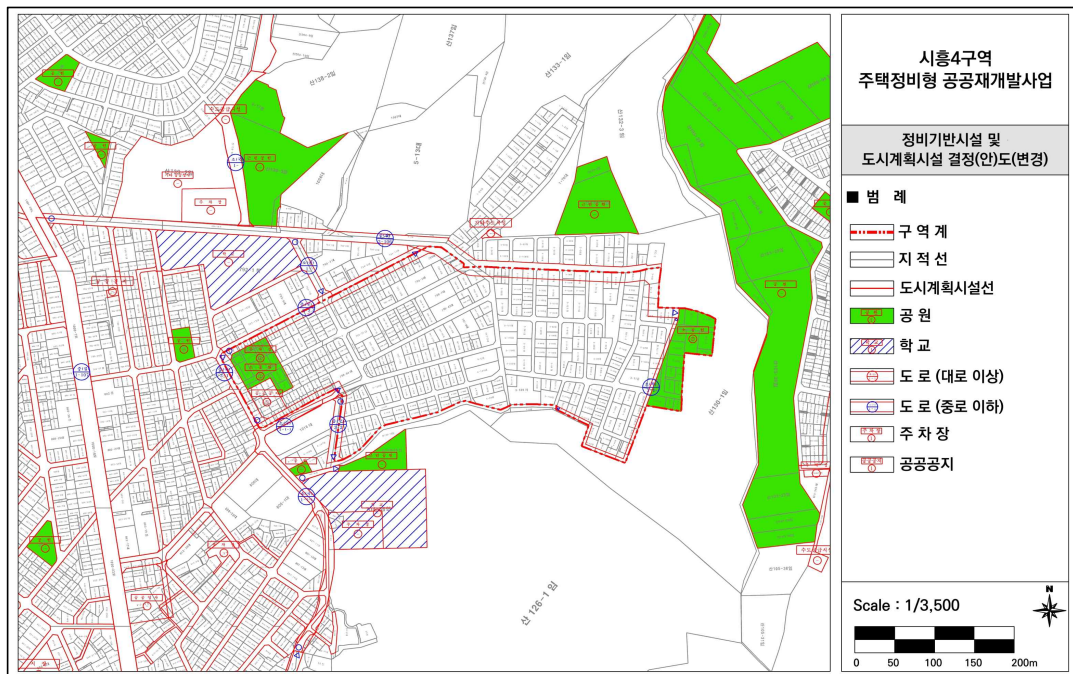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의견제출서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공 람 개 요	사 업 명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공람기간	2025. 8. 22. ~ 9. 22. (30일 이상)		
	공람내용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 견 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물건소재지			
	연 락 처			
(공람(안)에 대한 의견)				

2025. . .

의견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 관악구공고 제2025-1619호

도시계획시설(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5-172호(2025.4.3.)로 조성계획(변경)결정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1일

관 악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관악산근린공원(관음사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산57-41 일대

다. 면 적 : 1,765,534.7㎡(관음사지구 24,754㎡)

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 붙임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관악구청 6층 공원녹지정책과(☎02-879-6522)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지구별 : 관악구 봉천동 산48-5일대, 금천구 독산동 산118-4 일대)

구	분	변				경				변				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등수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배수면적 (㎡)	연면적 (㎡)						배수면적 (㎡)	연면적 (㎡)						
시설 지구	계	1,765,534.70	494,756.13	63	32,356.84	86,481.43	882	계	1,765,534.70	500,676.78	64	32,420.82	86,545.41	904	증 5,920.65㎡			
	소계	1,765,534.70	494,756.13	63	32,356.84	86,481.43	882	소계	1,765,534.70	500,676.78	64	32,420.82	86,545.41	904	증 5,920.65㎡			
	독산지구	102,145.00	16,302.32	4	81.00	81.00	113	독산지구	102,145.00	16,302.32	4	81.00	81.00	113				
	금천체육지구	103,306.80	44,931.36	5	4,339.36	12,862.80	146	금천체육지구	103,306.80	44,931.36	5	4,339.36	12,862.80	146				
	산기슭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산기슭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목골지구	6,213.50	1,160.87	-	-	-	11	목골지구	6,213.50	1,160.87	-	-	-	11				
	맏골지구	2,115.00	246.25	-	-	-	13	맏골지구	2,115.00	246.25	-	-	-	13				
	삼성산지구	37,874.90	9,235.41	-	-	-	49	삼성산지구	37,874.90	9,235.41	-	-	-	49				
	금천삼각지구	47,205.30	9,100.28	-	-	-	33	금천삼각지구	47,205.30	9,100.28	-	-	-	33				
	은행숲지구	1,145.00	33.36	-	-	-	-	은행숲지구	1,145.00	33.36	-	-	-	-				
	선유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선유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난곡지구	23,409.00	5,548.55	-	-	-	12	난곡지구	23,409.00	5,548.55	-	-	-	12				
	난향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난향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목골산지구	57,402.50	4,329.67	-	-	-	4	목골산지구	57,402.50	4,329.67	-	-	-	4				
미성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미성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난우지구	22,425.20	4,664.72	-	-	-	31	난우지구	22,425.20	4,664.72	-	-	-	31					
법원단지지구	7,634.30	295.05	-	-	-	8	법원단지지구	7,634.30	295.05	-	-	-	8					
양지지구	10,586.00	2,453.24	-	-	-	37	양지지구	10,586.00	2,453.24	-	-	-	37					
하늘지구	21,039.90	5,578.78	1	27.80	27.80	56	하늘지구	21,039.90	5,578.78	1	27.80	27.80	56					

시설
지구

구	분	변				경				변				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난곡로지구	409.70	409.70	-	-	-	-	난곡로지구	409.70	409.70	-	-	-	-	-	-				
	난향술길지구	25,838.20	534.71	-	-	-	22	난향술길지구	25,838.20	534.71	-	-	-	-	-	22				
	원신지구	51,453.70	5,613.31	246.80	246.80	1	246.80	원신지구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46.80	22	22				
	약수암지구	62,302.30	9,833.53	267.88	267.88	5	211.54	약수암지구	62,302.30	9,833.53	5	211.54	267.88	267.88	8	8				
	신우지구	9,401.20	-	-	-	-	-	신우지구	9,401.20	-	-	-	-	-	-	-				
	고시원지구	31,712.30	11,581.88	-	-	-	5	고시원지구	31,712.30	11,581.88	-	-	-	-	5	5				
	샘말지구	12,284.00	8,728.42	13.80	13.80	1	13.80	샘말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13.80	30	30				
	희망지구	10,119.10	780.23	-	-	-	-	희망지구	10,119.10	780.23	-	-	-	-	-	-				
	신림계곡지구	379,598.90	93,390.68	16,091.62	16,091.62	12	4,093.59	신림계곡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6,091.62	19	19				
	청룡산지구	86,287.30	17,338.82	2,662.66	2,662.66	3	2,027.32	청룡산지구	86,287.30	17,338.82	3	2,027.32	2,662.66	2,662.66	34	34				
	낙성대지구	487,033.30	193,251.43	49,935.24	49,935.24	26	18,515.80	낙성대지구	487,033.30	193,251.43	26	18,515.80	49,935.24	49,935.24	81	81				
	인현지구	5,030.00	1,541.91	-	-	-	-	인현지구	5,030.00	1,541.91	-	-	-	-	32	32				
	남현지구	14,446.20	-	-	-	-	-	남현지구	14,446.20	-	-	-	-	-	-	-				
	관음사지구	24,754.00	2,613.32	-	-	-	-	관음사지구	24,754.00	8,533.97	1	63.98	63.98	63.98	22	증 5,920.65㎡				
시 설 륙 (법정 40%)		(494,756.13 / 1,765,534.70) × 100 = 28.02%						(500,676.78 / 1,765,534.70) × 100 = 28.36%						(500,676.78 / 1,765,534.70) × 100 = 28.36%						증 0.34%
건 폐 율 (법정 10%)		(32,356.84 / 1,765,534.70) × 100 = 1.83%						(32,420.82 / 1,765,534.70) × 100 = 1.84%						(32,420.82 / 1,765,534.70) × 100 = 1.84%						증 0.01%

2. 시설조서 (시설별 : 관악구 봉천동 산48-5일대, 금천구 독산동 산118-4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본 시 설	계	1,765,534.70	494,756.13	882	63	32,356.84	86,481.43	882	1,765,534.70	500,676.78	64	32,420.82	86,545.41	904				
	소 계	176,250.54	136,774.29	-	-	-	-	-	178,510.35	139,034.10	-	-	-	-	-	증 2,259.81㎡		
		도 로	149,995.89	110,519.64	-	-	-	-	2	151,903.36	112,427.11	-	-	-	2	증 1,907.47㎡		
광 장		26,254.65	26,254.65	-	-	-	-	-	26,606.99	26,606.99	-	-	-	-	-	증 352.34㎡		
	조 경 시 설	27,606.47	27,606.47	-	-	-	-	21	30,189.55	30,189.55	-	-	-	21	증 2,583.08㎡			
휴 양 시 설		45,798.50	45,798.50	516	1	125	125	516	46,419.05	46,419.05	1	125	125	532	증 620.55㎡			
유 희 시 설		12,727.06	12,727.06	59	-	-	-	59	12,879.85	12,879.85	-	-	-	59	증 152.79㎡			
운 동 시 설		81,184.43	81,184.43	225	12	8,971.43	21,926.87	225	81,384.01	81,384.01	12	8,971.43	21,926.87	231	증 199.58㎡			
교 양 시 설		166,976.55	166,976.55	10	24	20,239.12	59,792.65	10	166,976.55	166,976.55	24	20,239.12	59,792.65	10				

구 분	변			경 전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편 의 시 설	20,074.77	20,074.77	15	2,199.91	3,671.53	7	20,179.61	20,179.61	16	2,263.89	3,735.51	7	증 104.84㎡
관 리 시 설	2,714.06	2,714.06	11	821.38	965.38	42	2,714.06	2,714.06	11	821.38	965.38	42	
그 밖의 시설	900.00	900.00	-	-	-	-	900.00	900.00	-	-	-	-	
녹지 및 기타	1,231,302.32	0.00	-	-	-	-	1,225,381.67	0.00	-	-	-	-	감 5,920.65㎡
시 설 륜 (법정 40%)	(494,756.13 / 1,765,534.70) × 100 = 28.02%						(500,676.78 / 1,765,534.70) × 100 = 28.36%						
건 폐 율 (법정 10%)	(32,356.84 / 1,765,534.70) × 100 = 1.83%						(32,420.82 / 1,765,534.70) × 100 = 1.84%						

관악산근린공원(관음사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산57-41번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응답 (기)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응답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응답 (기)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응답 (기)				
기	본	24,754.00	2,613.32	-	-	-	-	-	24,754.00	8,533.97	1	63.98	63.98	22					
		1,653.32	1,653.32	-	-	-	-	-	3,913.13	3,913.13	-	-	-	-	증 2,259.81㎡				
		1,653.32	1,653.32	-	-	-	-	-	3,560.79	3,560.79	-	-	-	-	증 1,907.47㎡				
		-	-	-	-	-	-	-	352.34	352.34	-	-	-	-	증 352.34㎡				
조	경	-	-	-	-	-	-	-	2,583.08	2,583.08	-	-	-	-	증 2,583.08㎡				
		-	-	-	-	-	-	-	620.55	620.55	-	-	-	16	증 620.55㎡				
		-	-	-	-	-	-	-	152.79	152.79	-	-	-	-	증 152.79㎡				
		960.00	960.00	-	-	-	-	-	1,159.58	1,159.58	-	-	-	6	증 199.58㎡				
관	리	-	-	-	-	-	-	-	-	-	-	-	-	-	-				
		-	-	-	-	-	-	-	104.84	104.84	1	63.98	63.98	-	증 104.84㎡				
		-	-	-	-	-	-	-	-	-	-	-	-	-	-				
		22,140.68	-	-	-	-	-	-	16,220.03	-	-	-	-	-	감 5,920.65㎡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양(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양(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관장	-	-	24,754.00	2,613.32	-	-	-	-	-	-	24,754.00	8,533.97	-	1	63.98	63.98	22		
		-	-	1,653.32	1,653.32	-	-	-	-	-	-	3,913.13	3,913.13	-	-	-	-	-	증 2,259.81㎡	
		-	-	1,653.32	1,653.32	-	-	-	-	-	-	남원동 산57-34	3,560.79	3,560.79	-	-	-	-	-	증 1,907.47㎡
		-	-	-	-	-	-	-	-	-	-	가	352.34	352.34	-	-	-	-	-	증352.34㎡
조경 시설	소계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남원동 산57-34	61.98	61.98	-	-	-	-	-	신설
		-	-	-	-	-	-	-	-	-	-	남원동 산57-34	226.28	226.28	-	-	-	-	-	신설
		-	-	-	-	-	-	-	-	-	-	남원동 산57-34	36.22	36.22	-	-	-	-	-	신설
조경 시설	소계	-	-	-	-	-	-	-	-	-	-	남원동 산57-34	27.86	27.86	-	-	-	-	-	신설
		-	-	-	-	-	-	-	-	-	-	-	2,583.08	2,583.08	-	-	-	-	-	증 2,583.08㎡

구분	시설명	변경								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영구(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영구(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명 잔디 마당	-	-	-	-	-	-	-	-	-	나	남원동 산57-34	2,012.93	2,012.93	-	-	-	-	-	증2,012.93㎡
		-	-	-	-	-	-	-	-	-	다	4개소	570.15	570.15	-	-	-	-	-	증 570.15㎡
		-	-	-	-	-	-	-	-	-	다-1	남원동 산57-34	56.31	56.31	-	-	-	-	-	신설
		-	-	-	-	-	-	-	-	-	다-2	남원동 산57-34	95.21	95.21	-	-	-	-	-	신설
	정원	-	-	-	-	-	-	-	-	-	다-3	남원동 산57-34	314.43	314.43	-	-	-	-	-	신설
		-	-	-	-	-	-	-	-	-	다-4	남원동 산57-34	104.20	104.20	-	-	-	-	-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경전								비고		
		변경				경전				변경				경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휴양 시설	시설명																			
	소계	-	-	-	-	-	-	-	-	-	-	-	-	-	-	-	-	-	16	증 620.55㎡
	휴게 쉼터	-	-	-	-	-	-	-	-	-	-	-	-	-	-	-	-	-	-	증 460.09㎡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전망 데크	-	-	-	-	-	-	-	-	-	-	-	-	-	-	-	-	-	-	증 160.46㎡	

구분	시설명	변경								경전								비고		
		변경				경전				변경				경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신설	시설명	-	-	-	-	-	-	-	-	마-1	남원동 산57-34	55.46	55.46	-	-	-	-	-	-	-
		-	-	-	-	-	-	-	-	마-2	남원동 산57-34	105.00	105.00	-	-	-	-	-	-	
	이외 테이블	-	-	-	-	-	-	-	-	①	남원동 산57-34	-	-	-	-	-	-	-	2	
		바 테이블	-	-	-	-	-	-	-	-	②	남원동 산57-34	-	-	-	-	-	-	-	7
	파고라		-	-	-	-	-	-	-	-	③	남원동 산57-34	-	-	-	-	-	-	-	7
		소계	-	-	-	-	-	-	-	-	-	-	152.79	152.79	-	-	-	-	-	152.79㎡ 중
유형 시설	물류 터미널	-	-	-	-	-	-	-	-	바	남원동 산57-34	152.79	152.79	-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영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영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소계	-	-	-	-	-	-	-	-	-	-	-	1,159.58	1,159.58	-	-	-	-	6	증 199.58㎡
	운동 공간	-	-	-	-	-	-	-	-	-	사	남원동 산57-34	199.58	199.58	-	-	-	-	-	신설
	배드민턴 장	가	남원동 산57-34	960.00	960.00	-	-	-	-	-	아	남원동 산57-34	960.00	960.00	-	-	-	-	-	-
	체력 단련시설	-	-	-	-	-	-	-	-	-	④	남원동 산57-34	-	-	-	-	-	-	6	신설
편의 시설	소계	-	-	-	-	-	-	-	-	-	-	남원동 산57-34	104.84	104.84	-	1	63.98	63.98	-	증 104.84㎡
	공중 화장실	-	-	-	-	-	-	-	-	-	1	남원동 산57-34	104.84	104.84	-	1	63.98	63.98	-	신설
복지 및 기타	소계	-	-	22,140.68	-	-	-	-	-	-	-	남원동 산57-34	16,220.03	-	-	-	-	-	-	감 5,920.65㎡
	녹지	나	-	22,140.68	-	-	-	-	-	-	차	남원동 산57-34	16,220.03	-	-	-	-	-	-	감 5,920.65㎡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44.92	1,653.32				
변경					1,221.59	3,560.79				증 1,907.47㎡
당초	소로	3	1	5.0	149.14	746.0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	
변경		3	1	3.0	66.50	205.54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	감 540.55㎡
당초		3	2	5.0~8.0	4.73	28.51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3-1	
변경		3	2	6.0	91.26	545.95	진입로	소로3-1	공원경계	증 517.44㎡
당초		3	3	3.0~10.0	120.19	699.2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	3	3.0	38.67	118.67	진입로	광장 가-1	소로3-4	감 580.54㎡
신설		3	4	2.5~10.0	38.07	104.45	진입로	광장 가-2	소로3-5	
신설		3	5	3.0	63.27	183.64	진입로	광장 가-1	산책로 9	
신설		3	6	3.0~10.0	120.19	699.2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1	1.5~3.5	54.10	135.81	산책로	소로3-1	공원경계	
변경	산책로	3	1	1.9~2.9	29.77	62.28	산책로	소로3-1	소로3-1	감 73.53㎡
당초		3	2	2.0~3.5	16.76	43.70	산책로	소로3-3	배드민턴장	
변경		3	2	2.0	65.91	122.06	산책로	산책로16	운동공간 사	증 78.36㎡
신설		3	3	2.0~2.5	6.82	26.51	산책로	소로3-1	산책로2	증 26.51㎡
신설		3	4	2.4~10.0	6.17	30.35	산책로	소로3-1	산책로2	증 30.35㎡
신설		3	5	2.0	5.90	11.76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2	증 11.76㎡
신설		3	6	2.0	9.97	19.67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증 19.67㎡
신설		3	7	2~1.9	8.56	17.10	산책로	소로 3-5	소로3-3	증 17.10㎡
신설		3	8	1.5~1.8	18.88	28.34	산책로	휴게쉼터 라-4	소로 3-4	증 28.3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3	9	2.5	9.44	23.60	산책로	소로3-5	산책로10	증 23.60㎡
신설		3	10	2.0	76.66	155.52	산책로	산책로9	공원경계	증 155.52㎡
신설		3	11	2.0	65.46	130.64	산책로	산책로10	광장 가-5	증 130.64㎡
신설		3	12	2.0	58.08	117.27	산책로	산책로13	광장 가-5	증 117.27㎡
신설		3	13	2.0~ 4.5	16.76	43.70	산책로	소로3-6	배드민턴장 아	증 73.70㎡
신설		3	14	2.5	7.00	17.50	산책로	운동공간 사	산책로12	증 17.50㎡
신설		3	15	2.0~ 2.2	47.65	106.20	산책로	산책로16	운동공간 사	증 106.20㎡
신설		3	16	2.2~ 6.0	43.90	101.86	산책로	소로3-4	산책로14	증 101.86㎡
신설		3	17	2.0	23.44	46.42	산책로	산책로15	공원경계	증 46.42㎡
신설		3	18	1.8	17.88	35.73	산책로	소로3-4	산책로15	증 35.73㎡
신설		3	19	1.8	3.51	6.33	산책로	소로3-4	휴게쉼터 라-5	증 6.33㎡
신설		3	20	1.8	57.97	103.74	산책로	산책로15	광장 가-4	증 103.74㎡
신설		3	21	1.8~ 2.7	11.00	21.61	산책로	소로3-4	광장 가-4	증 21.61㎡
신설		3	22	2.0	32.32	58.18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2	증 58.18㎡
신설		3	23	1.8	14.46	26.31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21	증 26.31㎡
신설		3	24	2.5	120.54	309.57	산책로	소로3-1	산책로 21	증 309.57㎡
신설		3	25	2.5	43.14	78.17	산책로	산책로2	소로3-5	증 78.17㎡
신설		3	26	1.2	2.44	2.91	산책로	소로3-1	휴게쉼터 라-6	증 2.91㎡

조성계획도 [변경전]

관음사지구



■ 시설규모

구분	부속	부속면적 (㎡)	사당면적 (㎡)	주요 건물	건축물(㎡)	주차량 (대)
기타	합계	24,564.00	3,073.30	-	-	-
	교차	1,033.30	1,033.30	-	-	-
시설	교차	1,033.30	1,033.30	-	-	-
	교차	900.00	900.00	-	-	-
합계	합계	900.00	900.00	-	-	-
	합계	22,140.00	-	-	-	-
합계	합계	22,140.00	-	-	-	-
	합계	22,140.00	-	-	-	-



◆ 서초구공고 제2025-163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137호(2025.08.07.)로 결정 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도시계획시설 내 산림(식생) 이전 및 복원을 통한 정형화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체 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교지(학교시설) 합계	34,724.4	증) 323	35,047.4	100.0	
체육장	9,171	-	9,171	26.2	
교사용대지	25,553.4	증) 323	25,876.4	73.8	

- 학교시설 부지 내 식생 이전 및 복원 예정지 면적 : 323.0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학교법인 동덕학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0.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방배동	592	학	5,766	학교법인 동덕학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	-	-
방배동	593-40	잡	31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	-
방배동	593-96	도	90	학교법인 동덕학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	-	-
방배동	산81-5	임	10,084	학교법인 동덕학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	-	-
방배동	산82	임	18,248	학교법인 동덕학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	-	-
방배동	산84-17	임	99	학교법인 동덕학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	-	-
방배동	산84-22	임	592	학교법인 동덕학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	-	-
방배동	산81-35	임	323	방배대우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4길 56-29	-	-	-

사.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서초구공고 제2025-163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1996-64호(1996.12.4.)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자치행정과(02-2155-86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대상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0-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명칭 :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다. 면적 및 규모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0-7번지		
대지면적	1,182.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1층	지하3층/지상2층	4층 이하
건축면적	192.36㎡	633.76㎡	
건폐율	16.27%	53.61%	60% 이하
연면적	3,053.22㎡	3,779.86㎡	
용적률	16.27%	77.74%	150% 이하
주차대수	총 78면	총 72면	

- 층별 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변경 전)	(변경 후)	
지하3층	985.33	985.33	주차장
지하2층	957.02	957.02	주차장
지하1층	918.51	918.51	주차장
(소 계)	2,860.86	2,860.86	
지상1층	164.22	584.0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	334.97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 계)	164.22	919	
합 계	3,025.08	3,779.8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년 9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명세	
서초구 반포동	90-7	차	1,18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	-	-	

사. 열람장소 : 서초구청 자치행정과 (02-2155-8619)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서초구공고 제2025-164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06.23.)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22-210호(2022.11.24.), 서초구고시 제2023-56호(2023.4.20.), 서초구고시 제2024-218호(2024.11.21.) 및 서초구고시 제2025-86호(2025.6.12.)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반포동 19-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명칭 : 호남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체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정류장			-
대지면적	59,149.40 m ²			-
건축규모	지하 5층, 지상 32층			-
주 용 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변경인가 - 기존)	
건축면적	25,738.34m ²	25,738.34m ²	-	-
연 면 적	288,322.22m ²	287,986.90m ²	-335.32m ²	대수선(철거)에 의한 면적감소
용 적 륜 산정면적	162,658.92m ²	162,345.93m ²	-312.99m ²	
건 폐 율	43.51%	43.51%	-	-
용 적 율	275.00%	274.47%	- 0.53 %	-
주차대수	법정(최고) : 2,475 대			용도변경(주차장→판매(창고))에 따른 주차대수 감소
	계획 : 2,459 대	계획 : 2,435 대	- 24 대	
호텔 객실수	379실	379실	변경없음	-
조 경	법정 : 8,872.41 m ² (15.00 %)			-
	9,282.92m ² (15.69%)	9,275.92m ² (15.68%)	-7.00m ² (-0.01%)	
공개공지	법정 : 5,914.94 m ² (10.00 %)			-
	5,953.12m ² (10.06%)	5,953.12m ² (10.06%)	변경없음	

- 층별면적

층 별	층 별 면 적 (㎡)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변경후-변경전)	
지하 5층	7,303.69	7,303.69	0.00	변경없음
지하 4층	23,750.79	23,750.79	0.00	대수선 (방화구획변경)
지하 3층	29,043.09	29,043.09	0.00	대수선 및 용도변경
지하 2층	29,197.33	29,197.33	0.00	대수선 및 용도변경
지하 1층	35,050.21	35,027.88	-22.33	대수선 및 용도변경
지하 1층 중층	913.18	913.18	0.00	변경없음
지하층 소계	125,258.29	125,235.96	-22.33	
지상 1층	25,395.79	25,247.55	-148.24	대수선 및 용도변경
지상 1층 중층	9,505.78	9,364.12	-141.66	대수선 및 용도변경
지상 2층	12,524.57	12,501.48	- 23.09	대수선 및 용도변경
지상 3층	12,244.73	12,244.73	0.00	변경없음
지상 4층	12,031.86	12,031.86	0.00	변경없음
지상 5층	11,913.97	11,913.97	0.00	변경없음
지상 6층	10,789.06	10,789.06	0.00	대수선(방화구획변경)
지상 7층	10,500.65	10,500.65	0.00	변경없음
지상 8층	9,732.77	9,732.77	0.00	
지상 9층	9,580.07	9,580.07	0.00	
지상 10층	9,586.51	9,586.51	0.00	
지상 11층	5,017.50	5,017.50	0.00	
지상 12층	1,172.09	1,172.09	0.00	
지상 13층	1,172.09	1,172.09	0.00	
지상 14층	1,172.09	1,172.09	0.00	
지상15~30층	18,753.44	18,753.44	0.00	
지상 31층	1,172.09	1,172.09	0.00	
지상 32층	798.87	798.87	0.00	
지상층 소계	163,063.93	162,750.94	-312.99	
총 계	288,322.22	287,986.90	-335.32	

- 시설별 면적

구분	시설용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 (변경후 - 변경전)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기 준	금회
운수 시 설	주 시 설	대합실	9,796.35	9,799.99	+3.64	77.05	77.31
		승강장 (승차 대기장)	실내	1,436.73	1,436.73		
			실외	536.30	536.30		
		정류장소 (승하차장)	실내	117.23	117.23		
			실외	2,224.42	2,224.42		
		사무실	1,428.32	1,539.23	+110.91		
		세차장	실내	265.74	265.74		
			실외	301.23	301.23		
		박차장	13,995.69	13,995.69	0.00		
		전체공유	3,621.56	3,621.56	0.00		
	부대 시설	정비고	927.07	927.07	0.00	10.43	10.43
		주유소	210.69	210.69	0.00		
		부속시설 (매표소 등)	3,385.59	3,385.59	0.00		
		가스점압실	42.00	42.00	0.00		
	편의 시설	소화물취급소	164.38	164.38	0.00	12.52	12.26
		식당,소매 등	5,314.75	5,201.61	-113.14		
	운수시설 소계		43,768.05	43,769.46	+1.41	100.00	100.00
비운 수 시 설	숙박시설		43,588.74	43,575.31	-13.43	16.66	16.68
	판매시설		143,458.56	143,343.20	-115.36	54.84	54.86
	문화 및 집회		3,023.71	3,023.71	0.00	1.16	1.16
	업무시설		3,583.76	3,506.28	-77.48	1.37	1.34
	운동시설		9,954.44	9,954.44	0.00	3.81	3.81

구분	시설용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 (변경후 - 변경전)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기 존	금 회
	자동차관련시설	123.93	123.93	0.00	0.05	0.05
	근린생활시설	654.72	910.96	256.24	0.25	0.35
	주차장	57,223.95	56,837.25	-386.70	21.86	21.75
	소 계	261,611.81	261,275.08	-336.73	100.00	100.00
합 계 (운수+비운수)		305,379.86	305,044.54	-335.32		
합계-1 (옥외시설제외)		288,322.22	287,986.90	-335.32		

- 대수선

구 분	해당층	시설용도	내용	면적 (㎡)	비 고
대수선	지하2층	판매시설	하역 ELEV 철거 및 신설	-	비시설 변경
		숙박시설	기동 신설	-	
	지하1층	판매시설	하역 ELEV 철거 및 신설	-	
			장애인 ELEV 신설	-22.33	
			ESC 철거 및 신설	-	
			출입문 변경	-	
	지상1층	판매시설	바닥철거	-177.33	
			바닥신설	63.90	
			장애인 ELEV 신설	-22.33	
			ESC 철거 및 신설	-	
		운수시설	ESC 철거 및 신설	-	면적변경 없음
			출입문 변경	-	
	지상 중1층	판매시설	바닥철거	-184.36	비시설 변경
			바닥신설	54.99	
			장애인 ELEV 신설	-22.33	
			ELEV 정지층 추가	10.04	
			ESC 철거 및 신설	-	
	지상2층	숙박시설	장애인 ELEV 신설	-10.14	비시설 변경
판매시설		장애인 ELEV 신설	-12.95		
		덤웨어터, AD신설	-		
공 통 (지하4층~지상2층, 지상6층)			방화구획 변경	-	면적변경 없음

- 용도변경

구 분	해당층	변경전	변경후	면적 (㎡)	비 고
용도 변경	지하3층	주차장	판매시설(창고)	100.16	비시설 변경
	지하2층	주차장	판매시설	378.32	
		판매시설	주차장	91.78	
	지하1층	운수시설(주시설/대합실)	판매시설	207.82	운수시설 변경
		판매시설	운수시설(주시설/대합실)	209.23	
		운수시설(편익/근생)	운수시설(주시설/대합실)	15.00	
	지상1층	운수시설(편익)	운수시설(주시설/사무실)	110.91	운수시설내 세부변경
		운수시설(주시설/대합실)	운수시설(편익)	12.77	
	지상 중1층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256.24	비시설 변경
	지상2층	업무시설	판매시설	80.77	
		숙박시설	업무시설	3.29	
운수시설 변경 검토			감소	증가	비고
			-207.82㎡	209.23㎡	+1.41㎡

- 기타

구 분	내용	비 고
기타	주차대수	24대 감소
	조경면적	-7.0㎡
	기재변경	지상1층 판매시설 -12.48㎡
		면적정정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성명 : (주)신세계센트럴 대표: 박주형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반포동	19-3	대	58,432.00	58,432.00	주신세계 센트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반포동	19-12	대	717.40	717.40	주신세계 센트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계			59,149.40	59,149.40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공고 제2025-1945호

**도시관리계획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르네상스 호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3호(2025. 5. 8.)로 결정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676(르네상스호텔)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 내용

-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 － 역삼동 676번지(르네상스호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주석	주1)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당해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포함)의 16.2%이상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비율 84.2%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객실비율:관광숙박시설 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2014.2)’ 용적률세부운영기준))	주1)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당해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포함)의 16.2%이상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비율 8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객실비율:관광숙박시설 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2014.2)’ 용적률세부운영기준))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사유	비고
지정용도 주1)	· 관광숙박시설의 객실비율 수용기준 변경 － 84.2%→80%	· 글로벌 융복합도시 테헤란로 조성 목표에 발맞춰, 강남 도심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용에 대응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품격높은 호텔로 재정비하기 위해 일부 객실을 관광호텔 부대시설로 변경코자 함.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2014. 2.)’ 용적률 세부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객실비율 수용기준 변경	

나.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2025. 8. 21. ~ 2025. 9. 3.)

다.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12)

라.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의견제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 끝.

◆ 강동구공고 제2025-1752호

**도시관리계획(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강동구 공고 제2024-2127호(2024. 10. 30.)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5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1일

강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025. 8. 22. ~ 2025. 9. 4.)

나. 열람장소: 강동구청 제2청사 3층 도시계획과(☎ 02-3425-6032)

다. 도시관리계획(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428-5번지 일원	143,223	증) 101,194	244,417	서고 제2014-288호 (' 14.08.14.)	-
폐지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2,372	감) 2,372	-	서고 제2022-213호 (' 22.05.12.)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라. 관련도서: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마. 기타 관련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6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3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서울요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52,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계류장	마리나선박 대여업	동력 1척 (DALBIT호)	2025.8.13. ~ 2025.12.31.	2025. 8.1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3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로알마리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1-9	마리나선박 1척 (블루원호/33톤)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	2025. 08. 15. ~ 2025. 12. 31.	2025. 08. 1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3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 세빛섬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반포 세빛섬 인근	353.64㎡ (기선1척, 부선1척)	세빛섬 와이어 교체 바지선 사용	' 25. 8. 18. ~ ' 25. 8. 20.	' 25. 8. 1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3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본청 11층	성산대교 일원	448.82㎡ (기선1척, 부선1척)	선박 운항	' 25. 8. 19. ~ ' 25. 8. 31.	' 25. 8. 12.

사업소공고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25-3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영 등 포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쥬선유이엔지	제 서울(영등포)- 2025-0002호 (2025. 8. 12.)	오아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ISBIZ 904호	02-597-919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7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348호

하천점용(일시)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식회사 거송(대표 : 최영국) ☎ 070-4741-3566
 -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C동 805호(인덕원 IT밸리)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89-1(2개소)
 - 면 적: 45.0㎡(2개소, 일시)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지반조사(용산국제업무지구 선로테크(구조물) 기본설계 관련)
 - 내 역: 시추조사 1공(굴착깊이 20m, 굴착지름 76mm 이내)
5. 점용기간: 2025.09.01. ~ 2025.09.30. (기간 중 3일)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